

발 간 물 등 록 번 호

11-1620000-000633-01

2016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12.

연구수행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공동연구자	김정혜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노진석 (강원도 인권보호관) 류민희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승현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조승미 (동경대 박사 수료)
보조연구원	문유진 (숙명여대 석사과정) 설정은 (서울대 석사과정)

요 약

본 연구의 목표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혐오표현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혐오표현의 의미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혐오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개념에 관한 각종 국제문서와 국내외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혐오표현 개념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혐오표현의 유형화를 시도했다. 한편으로 혐오표현의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의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 광의의 개념만으로는 혐오표현의 해악이나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또한 혐오표현 규제를 제안하기 위한 사전 논의로,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에 관한 논의와 규제찬반론을 검토했으며, 어떤 행태로든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요청된다는 점을 중간결론으로 제시했다.

3장은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들이 검토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종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유엔과 유럽의 여러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도 함께 검토했고, 각국 별 사례로는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기준이나 입법뿐만 아니라 주요 결정례, 판결 등을 수집하여, 혐오표현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했다. 3장은 2장의 어떤 식으로든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중간결론을 다시 한 번 뒷받침해주는 것이며, 5장과 6장에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대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4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에서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이번 연구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혐오표현의 실태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 세 파트로 나누어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혐오표현 실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을 설정하였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한 내용은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가해 경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혐오에 대한 두려움 및 혐오표현 대응 지식 등이었다. 먼저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은 주요 표적집단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성적 소수자집단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둘째,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게시물보다 댓글에서 더 많이 발생했으며, 온라인 뉴스 사이트, 카페/커뮤니티, 페이스북, 블로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웹툰 등에서 자주 목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무시하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많았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은 표적집단의 온라인 활동 반경을 좁히고 온라인 이용에서 표현을 위축시키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존감 하락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은 온라인보다는 낮았지만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은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이나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에게서 경험한 경우가 많았지만, 방송, 유명인, 공공장소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경험한 사례도 매우 많았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여 보면,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소 적고 반대한다는 표현도 많았으나,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온라인보다는 더 많은 편이었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경험은 온라인에서의 경험보다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혐오표현 피해 경험에 비하여 가해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험에 비해 가해 경험이 낮게 나타는 이유로 혐오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의 표현은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섯째,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체로 단순한 비난 표현보다 차별·폭력

을 선동하는 표현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편이었고, 온라인의 표현과 오프라인의 표현에 대해서는 태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기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의 경우 관리자에 의한 게시물 삭제,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에서의 징계 등의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았다.

설문조사에서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했다. 특히 표적집단의 당사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2명, 이주민 3명, 성소수자 6명, 장애인 8명, 남성 이성애자 1명 등 20명이었으며, 1:1 대면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했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사회적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폭력·차별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심각한 혐오표현의 피해실태가 드러났다. 또한 혐오표현이 일상과 온라인에서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을 두루 겪고 있었다.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혐오표현의 유형인 ‘차별표시’는 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들어 특정 소수자 개인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은 노골적으로 적의나 차별을 표명하거나, 온정주의적인 차별 표시,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 등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에 대한 증오나 적의의 감정을 부추기거나 고무하는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도 확인되었는데, 특히 혐오표현이 피해를 받은 소수자집단 곁에 있는 다수자에게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대량으로 확산되면서 소수자에 대한 극도의 경계나 위협, 폭력의 조장이 사회 전체로 증폭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심각한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로 인하여 결국 소수자는 심리적 해악뿐만 아니라 일이나 학업의 중단, 사회공론장 참여에 대한 제한 등과 함께, 낙인·편견의 강화, 사회적 배제를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다. 둘째, 소수자가 입은 혐오표현의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심리적 영향으로,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등의 심리적 해악,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스트레스성 심리반응이 나타

났다. 사회적 영향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대상자 중 절반이 혐오 표현의 피해 이후 일이나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전학하는 등 교육권과 노동권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혐오표현은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강화하여,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한 관점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거나, 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제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물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다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소수자에 대해 끊임없이 '정상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는 물론 소수자 주변에 있는 다수자(친구, 가족, 동료)까지 성적 대상화된 혐오표현을 겪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들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혐오표현으로 인한 폭력 피해나 차별 발생 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개선 조치 실시와 피해자 안전 확보,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교육, 지역사회·학교·직장·세대별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을 소수자로서 인지하고, 커뮤니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손상, 교육권과 노동권의 침해, 공론장 참여의 제한 등 사회적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혐오표현의 확산에는 온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지속성, 확산성, 다양한 플랫폼, 익명성, 초국가성, 그리고 대기업이 서비스공급을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해악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으로는, 혐오 관련 집단/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 뉴스 기사와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식영역과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깊게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5장과 6장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먼저

5장에서는 4장의 혐오표현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체적인 규제대안의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2장부터 4장까지의 연구·조사결과에 따라 혐오표현의 규제가 요청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여기서 규제는 단순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규제, 행정규제, 기타 교육 등을 통한 형성적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들 규제들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현행법상 규제 중 형사규제, 민사규제, 행정규제, 인터넷 규제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입법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현행법상으로는 혐오표현의 일부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을 다루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법적 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염두에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새로운 입법을 도입하더라도 혐오표현 자체를 규제하는 것 외에, 시민사회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형성적 규제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혐오의 근본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6장은 5장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론을 기관별로 나누어 자세히 서술했다. 혐오표현 규제에 협력해야 하는 모든 기관을 망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공공·교육기관, 사기업, 정보통신 심의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나뉘서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기술했다.

목 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I. 연구 배경과 목적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9
2. 국내의 논의	11
3. 혐오표현의 정의	14
4. 혐오표현의 유형	21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28
III.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32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28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29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31
1. 규제 찬성론	31
2. 규제 반대론	33
V.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34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	73
I. 국제기준	77
1. 유엔	77
2. 유럽	51
3. 국제인권단체	57
II. 외국 사례	57
1. 미국	58
2. 독일	61

3. 캐나다-----	64
4. 일본-----	71
5. 영국-----	74
III. 중간결론-----	76
4장 혐오표현의 실태-----	79
I. 설문조사 분석-----	79
1. 조사개요-----	79
2. 조사결과-----	81
3. 소결-----	145
II. 면접조사 분석-----	150
1. 조사개요-----	150
2. 조사결과-----	156
3. 중간결론-----	226
III.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232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232
2. 온라인 혐오표현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233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234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239
I.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239
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240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240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247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평가-----	252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253
1. 법적 규제의 한계-----	255
2. 형성적 규제-----	257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261
I. 국가인권위원회-----	261
1. 인권정책-----	261

2. 인권침해 구제	264
3. 인권교육·홍보·협력	265
II. 입법부	267
1. 관련 입법 추진	267
2. 정책 및 교육	273
III. 정부·지방자치단체	27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73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274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275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275
IV. 사법부	276
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276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277
V. 공공·교육기관	277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277
2. 법·제도 및 정책	278
3. 지원 및 구제 방안	278
VI. 사기업	279
1. 직장의 자율적 조치	279
2. 직장 내 지원 정책	280
VII. 정보통신 심의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281
1. 방송통신위원회	28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82
3. 언론중재위원회	284
4. 자율규제기구	284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284
7장 결론	286
I. 연구 내용 요약	286
II. 전망과 과제	288
참고문헌	290

부 록	301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입법례	31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32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39

세부 목차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I. 연구 배경과 목적	1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5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5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8
1. 국제사회·해외의 논의	9
2. 국내의 논의	11
3. 혐오표현의 정의	14
(1) 표적집단 소수자	16
(2) 적대성	18
(3) 표현행위성	19
(4) 중간결론	20
4. 혐오표현의 유형	21
(1) 차별적 괴롭힘	21
(2) 차별표시	23
(3)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24
(4) 증오선동	25
(5) 중간결론	26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28
III.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82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28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29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3

1. 규제 찬성론	31
2. 규제 반대론	33

V.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4
-----------------	---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	73
----------------------------	----

I. 국제기준	37
---------	----

1. 유엔	37
(1) 관련 규정	37
1) 반차별과 혐오표현의 규제	37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증오의 고취' 금지	40
3) 인종주의적 사고의 보급, 인종차별 촉진 고무 등에 대한 형사적 규제	41
4) 제노사이드 선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	42
(2)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관련 결정례와 최종견해	43
1) 자유권위원회	43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47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49
4) 아동권리위원회	49
5) 장애인권리위원회	50
(3) 유엔인권기구의 헤이트혐오표현스피치 규제 관련 문서	50
1) 인종주의와 미디어에 관한 공동 의견서	50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에 관한 라바트 행동계획	51
2. 유럽	51
(1) 관련 규정	51
1)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식에 관한 기본 결정	51
2)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52
3)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	52
(2)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위원회) 관련 판례	52

1) 협약 제17조 권리 남용 금지 조항 적용한 판례	53
2)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54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 결정	56
3. 국제인권단체	57
II. 외국 사례	57
1. 미국	58
(1) 괴롭힘	58
(2) 즉각적 폭력 선동과 ‘도발적 언어’	59
2. 독일	61
(1)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	62
(2) 민족·인종·종교·국적·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인간존엄성 침해	62
(3) 민족·인종·종교·국적·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	63
(4) 제노사이드 범죄의 부인 혹은 정당화	64
3. 캐나다	64
(1) 괴롭힘	65
(2) 차별·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출판 및 게시	66
(3) 차별금지 사유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68
(4) 증오선동 및 고무	69
(5) 제노사이드 옹호 및 고무	70
4. 일본	71
(1)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71
(2)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72
(3) 혐오표현 관련 판례	72
1) 재특회의 조선제일초급학교의 ‘가두선전 금지 등 청구사건’	72
2) 재특회의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과 전 서기장에 대한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73
3) 재특회의 재일 조선인 이신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74
5. 영국	74
(1) 차별적 괴롭힘	74
(2) 증오선동	75

III. 중간결론	76
4장 혐오표현의 실태	79
I. 설문조사 분석	79
1. 조사개요	79
(1) 조사대상	79
(2) 조사방법	80
(3) 조사내용	81
2. 조사결과	81
(1) 응답자의 특성	81
(2) 혐오에 대한 두려움	88
(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지식	91
(4) 혐오표현 경험	93
1) 온라인 혐오표현	93
2) 오프라인 혐오표현	114
(5) 혐오표현 가해 경험	135
(6)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138
1) 온라인 혐오표현	139
2) 오프라인 혐오표현	140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향에 대한 태도	141
(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142
3. 소결	145
II. 면접조사 분석	150
1. 조사개요	150
(1) 조사목적과 내용	150
(2) 조사대상자 선정	152
(3) 조사방법과 진행	155
2. 조사결과	156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	158
1) 차별적 괴롭힘	159

2) 차별표시 -----	171
3)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	175
4) 증오선동 -----	187
(2) 혐오표현의 심리적인 영향 -----	190
1) 부정적 심리반응 -----	191
2) 스트레스성 심리 반응 -----	200
(3)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	203
1)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	204
2)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	210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	218
1) 소수자로서의 어려움 -----	219
2) 공공기관의 대응 -----	221
(5)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	223
3. 중간결론 -----	226
(1) 혐오표현 피해 실태 주요 조사결과 -----	226
(2) 소수자가 입은 혐오표현의 영향 -----	228
(3)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	230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	231
III.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	232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	232
2. 온라인 혐오표현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	233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	234
(1) 집단/커뮤니티 활동 -----	234
(2) 온라인 뉴스와 SNS -----	236
(3) 공공영역과 오프라인으로의 확대 -----	237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	239
I.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	239
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	240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	240

(1) 형사규제 -----	240
(2) 민사규제 -----	242
(3) 행정규제 -----	243
(4) 인터넷상의 규제 -----	246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	247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평가 -----	252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	5
1. 법적 규제의 한계 -----	255
2. 형성적 규제 -----	257
(1)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환경의 조성 -----	258
(2) 평등과 반차별 권리의 보장 -----	258
(3) 공공기관의 적극적 조치 -----	259
1)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응 -----	259
2) 공무원 교육 -----	259
3) 공공 교육과 홍보·캠페인 -----	260
(4) 시민사회의 자율역량 강화 -----	260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	21
I. 국가인권위원회 -----	261
1. 인권정책 -----	261
(1) 정책 권고 -----	261
(2) 기관별 자문 및 대책 지원 -----	262
(3) 연구 및 정책 대응 -----	262
2. 인권침해 구제 -----	264
3. 인권교육·홍보·협력 -----	265
(1) 인식제고 교육 및 캠페인 -----	265
(2) 교육 -----	265
(3)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	266
(4) 언론사, 기업 등과의 협력 -----	266
(5) 심의기관과의 협력 -----	267

II. 입법부	267
1. 관련 입법 추진	267
(1) 형법	267
(2) 차별금지법	270
(3) 국가인권위원회법	271
(4) 기타 법률	272
2. 정책 및 교육	273
III. 정부·지방자치단체	273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273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274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275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275
IV. 사법부	276
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276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277
V. 공공·교육기관	277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277
2. 법·제도 및 정책	278
3. 지원 및 구제 방안	278
VI. 사기업	279
1. 직장의 자율적 조치	279
2. 직장 내 지원 정책	280
VII. 정보통신 심의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281
1. 방송통신위원회	281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82
3. 언론중재위원회	284
4. 자율규제기구	284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284
7장 결론	286
I. 연구 내용 요약	286
II. 전망과 과제	288
참고문헌	290
부 록	301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입법례	㉠
(1) 국제기준	301
1) 세계인권선언	301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01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02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302
5)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303
6) 유럽연합,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기본 결정'	304
7) 유럽평의회,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304
8) 유럽평의회,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	305
9)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폰 원칙 (2009)	306
(2) 혐오표현 관련 각국 입법례	307
1) 미국	307
2) 독일	308
3) 캐나다	309
4) 일본	312
5) 영국	317
6) 덴마크	319
7) 뉴질랜드	319
8) 프랑스	320
9) 오스트리아	321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	32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	39

표목차

<표 1> 혐오표현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15
<표 2> 혐오표현의 유형 -----	26
<표 3> 응답자의 특성: 기타남성-----	82
<표 4> 응답자의 특성: 기타여성-----	83
<표 5> 성적 소수자 인구 추정-----	84
<표 6> 응답자의 특성: 성적 소수자-----	85
<표 7> 응답자의 특성: 장애인-----	86
<표 8> 응답자의 특성: 이주민-----	87
<표 9> 이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95
<표 10> 이주민의 직업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95
<표 11> 이주민의 월평균가구소득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95
<표 12>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1): 별 생각이 없었다-----	108
<표 13>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2): 재미있었다-----	109
<표 14>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3):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109
<표 15>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4):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109
<표 16>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111
<표 17>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1):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112
<표 18>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2):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112
<표 19>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3):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13
<표 20>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4):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113
<표 21>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5): 자존감이 떨어졌다-----	114
<표 22> 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118
<표 23>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1):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128
<표 24>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2): 별 생각이 없었다-----	129

<표 25>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3): 재미있었다	129
<표 26>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4):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130
<표 27>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131
<표 28>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1):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132
<표 29>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2): 그런 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133
<표 30>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3):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	133
<표 31>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4):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 다	134
<표 32>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 움을 경험하였다	134
<표 33>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6): 자존감이 떨어졌다	135
<표 34> 온라인 혐오표현(비난) 규제 의견	139
<표 35> 온라인 혐오표현(차별·폭력 선동) 규제 의견	140
<표 36> 오프라인 혐오표현(비난) 규제 의견	140
<표 37> 오프라인 혐오표현(차별·폭력 선동) 규제 의견	141
<표 38>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표현 영향의 심각성 태도	142
<표 39>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비난의 정당성	143
<표 40>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비난 이유 (중복응답)	144
<표 41> 면접조사 질문목록	150
<표 42> 면접조사 대상자 정체성 및 분포	152
<표 43> 면접조사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154
<표 44> 조사대상자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의 공통적 특징	157
<표 45> 조사대상자들의 혐오표현을 들은 이후의 감정과 심리상태	191
<표 46>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207
<표 47> 혐오표현의 규제방법	240
<표 48>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253

그림목차

<그림 1> 혐오의 피라미드 -----	19
<그림 2> 혐오표현의 의미 -----	20
<그림 3>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1): 비난의 두려움 -----	89
<그림 4>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2): 범죄 피해의 두려움 -----	90
<그림 5>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3): 정체성을 숨긴 경험 -----	91
<그림 6>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지 여부 -----	92
<그림 7>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 는지 여부 -----	93
<그림 8>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	94
<그림 9>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빈도 -----	96
<그림 10>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	97
<그림 11>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	98
<그림 12>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남성 (중복응답) -----	99
<그림 13>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여성 (중복응답) -----	100
<그림 14>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성적 소수자 (중복응답) -----	101
<그림 15>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장애인 (중복응답) -----	102
<그림 16>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이주민 (중복응답) -----	103
<그림 17>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	115
<그림 18>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빈도 -----	116
<그림 19>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	117
<그림 20> 표적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	119
<그림 21>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남성 (중복응답) -----	120
<그림 22>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여성 (중복응답) -----	121
<그림 23>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성적 소수자 (중복응답) -----	122
<그림 24>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장애인 (중복응답) -----	123
<그림 25>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이주민 (중복응답) -----	124
<그림 26>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 -----	136

<그림 27>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이유-----	137
<그림 28> 오프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	137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I. 연구 배경과 목적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대략 2010년경부터다. 당시에는 반(反)다문화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혐오표현이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화된 것은 2012년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혐오표현’, ‘혐오발언’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된 바 있고, 시민사회에서도 찬반양론이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며, 학계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혐오표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6년만 해도,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지면서 ‘혐오범죄’가 이슈로 떠올랐고, 여성혐오에 대해 이른바 ‘미러링’(mirroring)이라는 방식으로 반격을 가하는 메갈리아에 대한 찬반 논의가 벌어졌다.

하지만 지난 몇 년 간의 뜨거운 논의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그러다보니 규제기준과 목표가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채 이런저런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무엇이 혐오표현인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곤 했다. 형사처벌법 도입이라는 강벌주의적 대안에만 의존하려고 하거나, 무책임하게 사회의 자정에만 맡기려고 하는 등, 극단적인 의견대립이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곤 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혐오표현 개념을 철저히 분석하고 각 국의 관련 입법이나 판례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았다. 다른 한편, 혐오표현의 문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보고된 바 있지만, 그 정확한 실태가 파악된 적은 없다. 혐오표현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혐오표현이 어떤 사회적 해악을 미치고 있으며 일반대중들은 혐오표현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이 제대로 조사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설

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을 활용해서 혐오표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대안의 측면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각 기관별 대응으로 나눠서도 살펴보았다. 이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어떤 하나의 조치로 귀결될 수는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의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II.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을 제시한다. 혐오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혐오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총망라하여 혐오표현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혐오표현의 유형화를 시도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광의의 개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혐오표현의 해악이나 규제에 대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서 논의를 전개한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에 관한 논의와 규제찬반론을 검토함으로써,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으로 중간결론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5장과 6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들을 검토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들이 검토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정리할 것이다. 유엔과 유럽의 여러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도 함께 검토했으며, 각 국별 사례는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정리할 것이다. 특히, 기준이나 입법뿐만 아니라 주요 결정례, 판결 등도 최대한 제시할 것인데, 이러한 작업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대안을 모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분석했다. 한국에서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된 것은 이번 연구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혐오표현의 실태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 등 세 파트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 및 대면 조사 방법으로 총 1,014건의 설문을 수집, 분석하였다.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을 설정하였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사람들의 경험과 의견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한 내용은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가해 경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혐오에 대한 두려움 및 혐오표현 대응 지식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 방법을 병행했다. 특히 표적집단의 당사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2명, 이주민 3명, 성소수자 6명, 장애인 8명, 남성 이성애자 1명 등 20명이었으며, 1:1 대면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했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 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문제실태를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장과 6장은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먼저 5장에서는 4장의 혐오표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체적인 규제대안의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와 법적 규제의 한계를 살펴본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현행법상의 규제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규제만이 대안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본다. 즉, 현재 상황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인식개선, 각 기관별 대책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할 때 혐오표현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은 5장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론을 기관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혐오표현 규제에 협력해야 하는 모든

4 ■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기관을 최대한 망라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입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공공·교육기관, 사기업, 정보통신 심의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나뉘서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최대한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2장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

I. 혐오표현의 등장배경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의 역사만큼 혐오표현의 역사도 길다. 여성 및 유대인에 대한 혐오는 역사적으로도 많은 자취를 남겼고, 인종 간 결혼은 지금까지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¹⁾ 미국 건국 초기에는 종파 간 갈등이 혐오표현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²⁾ 1992년의 미국 콜로라도 주 헌법 수정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 주창자들은 게이들이 배변을 먹고 인간의 피를 마신다고 적은 선전물을 배포하기도 하였으며,³⁾ 이 밖에도 현재 여성, 유대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광범위한 혐오표현들이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 역사 속에서 천민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 및 혐오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지금도 사용되는 ‘화냥녀’ 혹은 ‘화냥년’이라는 용어를 통해서도 당시 조선 사회의 구조적 책임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대신 희생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적 현상으로서의 혐오표현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 비로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혐오표현과 유사한 개념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학술적으로는 1999년 이후부터이고, 언론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⁴⁾

한국의 현실문제로서 혐오표현이 대두된 것은 2010년 이후이다. 2010년 즈음부터 ‘반(反)다문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외국인혐오가 유행했는데, 이 당시에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 대신 ‘인종차별적 표현’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었다.⁵⁾ 2010년에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문제에 대

1) Martha C.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151쪽.

2) Steven J. Heyman (ed.), *Hate Speech and the Constitution: Vol 1. The Development of the Hate Speech Debate*, Routledge, 1996, 1-2쪽.

3)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191쪽.

4)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4쪽.

5) 관련 기사로 “인권위 ‘인터넷상 ‘인종차별’ 표현 없애야”’, 『연합뉴스』, 2011.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3274>, 최종검색일: 2016.11.12.)

처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종차별 모니터링 사례 발표와 의견표명⁶⁾ 그리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에 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⁷⁾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일베의 등장 등 2012년 이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베가 사회문제화된 후부터 여러 언론이 이 문제를 다뤘고,⁸⁾ 혐오표현이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민주당 등에서는 일베 사이트 폐쇄 등의 논의가 나왔다. 또한 인권·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혐오표현에 대응하기도 하였다.⁹⁾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구조 개편이 이루어졌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여러 영역에서 증가하여, 남녀 간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계층 갈등 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혐오는 이러한 경제적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문제에 대한 희생양을 찾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희생양을 찾는 패턴은 중세의 마녀사냥이나 나치 시대의 유대인 탄압 등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혐오표현도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찾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및 혐오표현 증가는 이러한 원인에 의한 결과일 뿐 아니라 갈등에 대한 사회적 해소 및 통합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전의 사회통합위원회를 개편하여 현재 대통령

-
-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인터넷상에서의 인종차별적 표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2010.12.30.)
- 7)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2011. 2. 14. 결정). 인권위의 이 결정은 외교통상부가 작성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5차, 제16차 통합 정부보고서’에 대하여 「인종차별철폐협약 정부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일반지침」에 부합하도록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 8) 대표적인 특집연재기사로 [‘일베 현상’에서 한국 사회를 본다]의 “일베가 세력화하기엔 통일된 이념이 없다, 그들은 배설을 할 뿐”, 『경향신문』, 2013.6.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62218235&code=940202, 최종검색일: 2016.11.12.) 등 참조.
- 9)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토론회>, 표현의 자유를위한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민주노총교육원, 2013.7.18.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있지만,¹⁰⁾ 위원회의 공식적인 업무로 혐오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제어되지 못하는 점이 이를 더욱 만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2014년 연말 서울시 인권현장 사태와 관련하여 동성애혐오적인 발언이 확산될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의 반대편에서 서는 듯한 정치적 행보를 보인 바 있고,¹¹⁾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2014년 말 위기 성소수자 청소년 지원 사업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을 “목사와 약속해서 예산 배정을 못하겠다”고 하여¹²⁾ 유력 정치인들이 혐오표현을 주도적으로 생산하는 집단에 굴복하거나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은 일본의 경우에서와 유사하게 혐오표현에 대한 정치지도자들의 행태가 민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¹³⁾ 최근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소수자 비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고, 그의 당선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혐오표현 사례가 실제로 급증했다고 한다.¹⁴⁾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 중 하나로 인터넷 이용의 급격한 증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혐오표현 문제를 논할 때, 항상 온라인 혐오표

10)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즉 2014년의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홈페이지 참조: <http://www.pcnc.go.kr>) 그런데 시행령상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상근인력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첫째, 근거 법률이 필요하지 않는지, 둘째 조직의 규모에 비하여 사회 갈등 통합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지지할 수 없다’”, 『한겨레』, 2014.1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7517.html, 최종검색일: 2016.12.21.)

12) “성소수자 혐오의 뿌리, 보수 기독교-정치권의 ‘더러운 커넥션’”, 『참세상』, 2016.3.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5>, 최종검색일: 2016.11.16.)

13) 2000년 4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의 발언이 결과적으로 ‘용인’된 후 정부 고관이나 정치가의 혐오표현이 일본에 횡행하고, 또 그것이 민간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주장으로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 홍상헌 옮김, 나람북스, 2016, 79-83쪽.

14) “SNS 혐오표현은 세계적 문제… 씻기 힘든 상처 입혀”, 『연합뉴스』, 2016.11.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067900017.HTML>, 최종검색일: 2016.11.16.)

현이 특별한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있는 국가이므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이 혐오표현의 급격한 전파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⁵⁾

II. 혐오표현의 개념과 의의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다양각색이며, 개별국가의 법률상 개념도 일치하지 않는다.¹⁶⁾ 특히 국내에서의 논의는 ‘혐오표현’ 혹은 ‘증오표현’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 2000년대 초반의 해외 인용기사이고, 그 즈음 이후로 학술적 연구들이 나오기는 했지만,¹⁷⁾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이 2013년 전후로 연구가 매우 일천한 수준이라 할 것이다.¹⁸⁾

혐오표현 자체가 원래 외국에서 수입된 개념이고,¹⁹⁾ 지금까지의 혐오표현

15)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유”, 『오마이뉴스』, 2016.3.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629, 최종검색일: 2016.11.16.) 참조.

16)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2015, 290쪽.

17) 논문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재진,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언론학보』 19, 1999, 99-125쪽; 이재진,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6, 2000, 104-146쪽; 조소영,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8(2), 2002, 249-270쪽; 조소영,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공법연구』 30(4), 2002, 124-130쪽; 박배근, “국제인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증오표현언론에 대한 규제”, 『언론과 정보』 9, 2003, 27-54쪽; 조소영,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 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 2004, 91-111쪽;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18(1), 2007, 39-80쪽.

18)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4쪽.

19) 그동안 ‘hate speech’의 번역어로 “혐오표현”, “증오언론”, “증오연설”, “증오적 표현”, “(공격적)혐오발언”, “증오표현행위”, “적의적 표현행위”, “혐오언론” 등이 사용되어 왔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혐오표현”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이유는 우선 ‘hate’를 차별적인 의견이나 신념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혐오’라고 옮겼으며, ‘speech’는 의견이나 사상을 표출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출판, 유포, 예술, 상징물

에 관한 논의는 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해외의 찬반 논의를 소개하거나 해외 입법례,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에 이를 대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²⁰⁾, 국제인권법이나 해외 학계의 연구 결과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 국제사회 해외의 논의

국제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확고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논의가 진전되어 합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혐오표현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 논의되는 맥락이 차이가 있기도 하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특정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 폭력, 적의, 차별적 선동표현을 규제하여 왔으며, 미국에서 특정집단에 대한 적의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지칭하면서 현재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하지만 혐오표현 개념의 이해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²¹⁾

국제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문제가 가장 먼저 문서화된 것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이다.²²⁾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에서는 체결국이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결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면서,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

게시 등)를 의미하기 때문에, ‘언론’, ‘발언’, ‘연설’보다는 ‘표현’이라고 하였다.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번 각주 참조.

20)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13(2), 2014, 135쪽.

21)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5쪽.

22)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무를 의법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의 1997년 권고 제20호에서는 혐오표현을 “인종적 적대감,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그리고 편협함에 기반을 둔 적대감을 확산, 선동, 촉진,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이때 편협함이란 공격적인 민족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 그리고 소수자, 이주민, 이주민 출신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으로 표현되는 편협함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³⁾ 유네스코(UNESCO)는 2015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매뉴얼을 발간했는데, 여기서는 혐오표현을 “특정한 사회적, 인구학적 집단으로 식별되는 대상에 기반을 두고 위해를 가하도록 하는 선동(특히,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옹호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²⁴⁾

한편 국제인권단체로서는 범국가적 민간단체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단체인 아티클19(Article 19)에서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을 빌려와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적대감의 고취”를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의(hostility)’는 표적집단에 대한 경멸, 적의 및 혐오를 격렬하고 비이성적인 감정으로 나타내는 것, ‘고취(advocacy)’는 표적집단에게 공연하게 향해진 증오를 촉진할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 ‘선동(incitement)’은 표적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이라는 압박한 위협을 불러오는 국민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⁵⁾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서는 혐오표현을 “여성, 민족적이거나 종교적인 단체 또는 다른 차이점을 가진 소수자나 소수집단에 대한 공격적인 표현의 형태”라고 정의한다.²⁶⁾

23)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30 October 1997.

24) Iginio Galliardone, Danit Gal, Thiago Alves, and Gabriela Martinez,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2015, 10쪽.

25)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쪽.

26) Samuel Walker, *Hate Speech: The History of an American Controvers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8쪽.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에는 2016년 5월 6일 날짜로 일본의 학교에서 배제되는 성소수자(LGBT) 학생들에 관한 보고서가 탑재되어 있다 (<https://www.hrw.org/report/2016/05/06/nail-sticks-out-gets-hammered-down/lgbt-bullying-and-exclusion-japanese-schools>, 최종검색일: 2016.11.21.). 그러나 혐오표현 관련 내용은 위의 보고서 외에 특별한 것이 없고, 표현에 대해서는 대체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계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으로 “인종, 민족성, 종교, 성적 지향이나 취향에 기한 언어적인 공격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어들”²⁷⁾, “인종, 종교, 민족성 또는 민족적 출신을 이유로 한 적대감을 촉진하려는 발언”²⁸⁾, “인종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정체성을 이유로 타인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표현”²⁹⁾ 등을 제시하고 있다.³⁰⁾

2. 국내의 논의

국내에서는 hate speech를 “증오언론”, “증오연설”, “증오적 표현”, “(공격적) 혐오발언”, “증오표현행위”, “적의적 표현행위”, “혐오언론”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여 소개해 왔는데, 그 개념정의에 대해선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다.

2002년 조소영 교수는 휴먼라이츠워치 등의 견해³¹⁾를 소개하면서 ‘적의적 표현행위’를 “여성, 레즈비언, 동성애자를 포함한 다른 차별적인 집단 또는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인 이유로 대상자들을 비방하는 적의를 가진 공격적이고 인종주의적인 표현”이라고 정의했다.³²⁾ 2003년 박배근 교수는 ‘증오적 표현’을 다른 논문에서 외국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독자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며,³³⁾ 2007년 심경수 교수는 ‘증오언론’을 “특정 인종·성·종교에 대한 편파·경멸적 발언”이라고 간단히 정의하고,³⁴⁾ 개인 내지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의 증표로 여러 가지 상징이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

27) Rodney A. Smolla, “Academic Freedom, Hate Speech, and the Idea of a Universit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3(3), 1990, 195쪽.

28) Michael Rosenfeld,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in Michael Herz and Peter Mol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42쪽.

29) Heyman (ed.), *Hate Speech and the Constitution*, ix쪽.

30) 기타 다른 학자들의 정의에 대하여는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1-22쪽.

31) 소개된 견해는 본문의 해외 논의 중 Human Right Watch, Walker, Smolla의 내용들이다.

32) 조소영,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123쪽.

33) 박배근, “국제인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증오표현언론에 대한 규제”, 37쪽.

34)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42쪽.

다.³⁵⁾

혐오표현에 관한 학술논문은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2014년 박용숙 박사는 '증오표현'을 "인종·민족·성별 등의 이유로 증오 등을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했으며,³⁶⁾ 같은 해 이준일 교수는 '혐오표현'을 "특정 대상에 대한 내면의 혐오감을 외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행위(또는 표현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⁷⁾ 김민정 교수는 더 구체적으로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에서 핵심적인 사항으로 표현의 대상과 표현의 유형을 검토하여, 전자는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가진 소유자로 이들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소수자에 속해 왔으며, 편견과 조롱의 대상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핍박을 받아온 경험"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후자에 있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선동/유도행위"라는 미국식 혐오의 개념과 "혐오의 감정을 옹호, 조장, 정당화하는 모든 표현행위"라는 유럽식 광의의 개념을 제시한다.³⁸⁾

이주영 박사는 '혐오표현'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인종,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속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들에게 언어로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괴롭힘'과³⁹⁾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여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자로 하여금 그 집단에 대해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차별, 폭력과 같은 구체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증오선동'으로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⁴⁰⁾ 홍성수 교수는 "소수자집단에 대한 혐오에 근거해 소수자와 일반청중들을 대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보면서, '차별과 혐오의 의

35)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가에 관한 판례경향", 44쪽.

36)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 2014, 469쪽.

37)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2014, 66쪽.

38)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148-152쪽.

39) Alan E. Brownstein, "Hate Speech and Harassment: The Constitutionality of Campus Codes that Prohibit Racial Insults",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3(1), 1994, 179-180쪽.

40)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2015, 200쪽.

견 표시'와 '차별, 증오, 폭력의 고취·선동'로 양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⁴¹⁾ 이승현 박사는 혐오표현을 “인종,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라고 정의한 바 있다.⁴²⁾

언론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 혐오표현 유사개념들이 기사에서 등장한다. 2000년 이전에는 '혐오'라는 개념이 '정치혐오', '혐오시설' 등 복합명사 형태로 사용되었으며, 현재의 혐오표현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쓰여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외국인혐오”⁴³⁾, “헤이트스피치”⁴⁴⁾, “동성애혐오표현”⁴⁵⁾, “증오표현”⁴⁶⁾ 등의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이후 일베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는 혐오표현에 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었다. 2013년 5월 김동철 의원은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위안부 강제동원, 친일반민족행위 등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반인륜 범죄와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부인하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⁴⁷⁾ 같은 해 6월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제2항 제8호)이 포함되어 있었다.

4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90-291쪽.

42)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43쪽.

43) “英, 외국인 혐오 언론, 정치권이 조장”<UNHCR>, 『연합뉴스』, 2001.8.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91750>, 최종검색일: 2016.11.12.)

44) “미 정부, 「헤이트스피치 금지령」에 반대”, 『ZDnet Korea』, 2002.11.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00616>, 최종검색일: 2016.11.12.)

45) “프랑스 ‘동성애 차별’ 처벌 논란”, 『세계일보』, 2004.12.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0068587>, 최종검색일: 2016.11.12.)

46) “스웨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표현’ 논란”, 『연합뉴스』, 2005.1.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898943>, 최종검색일: 2016.11.12.)

47) 그 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처벌하는 입법이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관련 입법동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보고서 5장 II.1.(5) 참조.

또한 2013년 6월 안효대 의원은 인종 및 출신지를 근거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제311조의2) 형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 밖에 2013년 11월 이종걸 의원이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고, 2015년 6월에는 진영 의원이 특정 지역·사람을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다.⁴⁸⁾ 또한 이미 몇 차례 발의된 바 있는 차별금지법안에는 ‘괴롭힘’을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는 것처럼(2장 II. 4.), 괴롭힘은 혐오표현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는 괴롭힘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따라서 현재 혐오표현을 별도로 규정하는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정의되어 있다(제3조 제20호, 제32조). 즉, 현행법상으로는 혐오표현 중 ‘장애인 괴롭힘’에 해당하는 표현이 금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혐오표현의 정의

누스바움(Nussbaum)에 따르면, 혐오(disgust)라는 감정은 단순한 기피나 분노 및 분개와는 다르고, 오염물체의 접근이나 체내화에 대한 이질적 거부감이 핵심이다.⁵⁰⁾ 오염물이라고 평가되는 대상은 광범위하지만, 초점은 동물

48) 추가적인 자세한 법안 정보는 본 보고서 5장 참조.

49) 차별금지법안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11.6.) 참조. 다른 차별금지법안들도 유사한 개념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성별 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13.2.12.),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2.20.).

과 그것의 부산물, 배설물, 부패 등이다. 즉 혐오에 대한 핵심적인 사고는 자신이 오염될 것이라는 생각이며, 혐오감정은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⁵¹⁾ 이러한 감정은 사전적으로 극히 싫어하는 일상적인 감각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며, 그 감정의 근원도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⁵²⁾ 반면 혐오표현에서의 ‘혐오’의 내용들은 단순히 이러한 감정뿐 아니라 증오나 적의 등의 다른 감정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혐오표현과 감정과의 관련성은 혐오표현의 ‘원인’을 밝히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나 혐오표현을 어떤 ‘감정’ 상태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다. 왜냐하면 혐오표현 논의는 대체로 규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전개되는 것인데, 규제는 감정상태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 비로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의 논의에서는 앞서 살펴본 혐오표현의 여러 정의들을 토대로 개념정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의 여러 논의를 종합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혐오표현의 정의를 대상, 내용, 방법, 다시 말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해볼 수 있다.⁵³⁾

<표 1> 혐오표현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누구에게 (대상)	무엇을 (내용)	어떻게 (방법)
소수자(집단)	1) 차별 2) 혐오(조롱 및 증오 등) 3) 선동의 적대적인 내용	표현 1) 발언 2) 글 3) 기타 등등

50)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166-170쪽.

51) Nussbaum, 『혐오와 수치심』, 185-186쪽.

52) 극히 싫어하는 감정과 이의 표출은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어서 혐오 표현을 이러한 것으로 이해할 때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논의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주장으로 Jeremy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34-36쪽.

53)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6-47쪽.

(1) 표적집단 소수자

혐오표현의 대상은 소수자이다.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은 소수자(집단)인 것이다. 소수자에 관한 세계적으로 확립된 개념 정의는 없다.⁵⁴⁾ UN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의 특별보고관 카포토르티의 1977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수자는 ㉠ 한 나라에서 다른 주민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집단 ㉡ 비지배적인 입장에 있으며 ㉢ 해당국 국민 ㉣ 나머지 국민들과 다른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특징을 갖는 동시에 ㉤ 자기 문화, 전통, 종교, 언어를 유지하고 암시적으로라도 연대의식을 보이는 자이다. 이 중 ㉢은 1994년 자유권위원회의 일반의견에 따라 불필요해졌다. ㉠의 요건 즉 수적 열세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논쟁이 있으나 필요하다는 게 통설이다.⁵⁵⁾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수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된 (discrete and insular)” 집단이라는 표현을 소수자 관련 헌법적 논의과정에서 사용한 바 있다.⁵⁶⁾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제기된 헌법상의 분류에 따른 소수자의 예로는 유색인종, 여성, 소수종교의 신자, 경제적 약자, 도덕적 소수자 등이다.⁵⁷⁾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이 많지만, ‘소수자’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소수자’ 자체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데다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법학 분야에서는⁵⁸⁾ 안경환 교수가 소수자를 ‘사회구성체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제반 영역에서 인종, 성, 경제적 능력, 사상이나 도덕, 기타의 이유로 지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치와 상이한 입장에 있는 부류’라고 정의한 바 있다.⁵⁹⁾

54) 그 원인이 어떤 사람을 소수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 즉 주권을 제약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Anja Siegert, *Minderheiten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ncker und Humblot, 1999, 24쪽.

55)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조승미·이혜진 옮김, 오월의 봄, 2015, 77-78쪽.

56) *United States v. Carolene Products Co.*, 304 U.S. 144 (1938), footnote 4 참조.

57)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법과 사회』 12, 1995, 9쪽.

58) 사회학 연구로는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2005, 161-162쪽에서 소수자의 개념이라는 목차로 다루고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소수자의 개념 정의를 했다기보다는 특징을 나열했다고 판단된다. 2007년 이우영 교수가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 48(3), 2007, 163-165쪽에서 소수자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본문에서 소개하는 안경환 교수의 소수자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혐오표현의 대상이 소수자에만 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데, 경험적·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로 특정하는 것이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나 그 해악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된다.⁶⁰⁾ 5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혐오표현이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고, 그 해악의 파급력이 막대하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혐오표현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혐오표현을 다른 비도덕적 표현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과 구분하게 해주는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다.

여기서 소수자는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새로운 집단이 새롭게 소수자로 포섭될 수 있다.⁶¹⁾ 이와 같은 관점에서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이제까지 발견된 소수자의 범위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집단을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일차적으로 각국의 차별금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규정된) 차별속성을 가진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청중에게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 혐오표현은 일반청중들에게도 차별과 혐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들을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에 동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59) 안경환,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 사회』 2, 1990, 115쪽. 한편 세부적으로 이 소수자 개념은 내용상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의 숫자에 따른 ‘수적 소수자’와 숫자와는 무관한 ‘질적 소수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대적 소수자’와 어떠한 경우에도 다수가 될 수 없는 ‘절대적 소수자’로 구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자는 ① 수적으로 소수자이면서 질적인 소수자와 ② 수적으로 소수자는 아니지만 질적인 소수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준일, “소수자와 평등원칙”, 『헌법학연구』 8(4), 2002, 221쪽 참조.

60) 헌법상의 분류로서 의미를 가지는 소수자란 단순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한 소수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수자는 특정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 집단이다.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보호”, 9쪽.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164쪽.

61) 수적 소수자이면서 동시에 질적 소수자인 집단의 경우 소수자는 이미 발견된 일정한 집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발견된다. 소수자는 늘 그늘진 곳에 자리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힘이 없어 그들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그 사람들의 문제를 공론영역으로 끌어내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비로소 등장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이준일, “소수자와 평등원칙”, 223쪽.

를 보통 ‘선동’(incitement)이라고 한다. 이 때 혐오표현은 일반청중을 향해 동참을 유도하거나 호소하는 것이 된다. 선동은 즉각적인 행동을 야기함으로써 해악을 초래할 수 있어서 혐오표현의 유형 중에서도 특히 그 해악이 큰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⁶²⁾

(2) 적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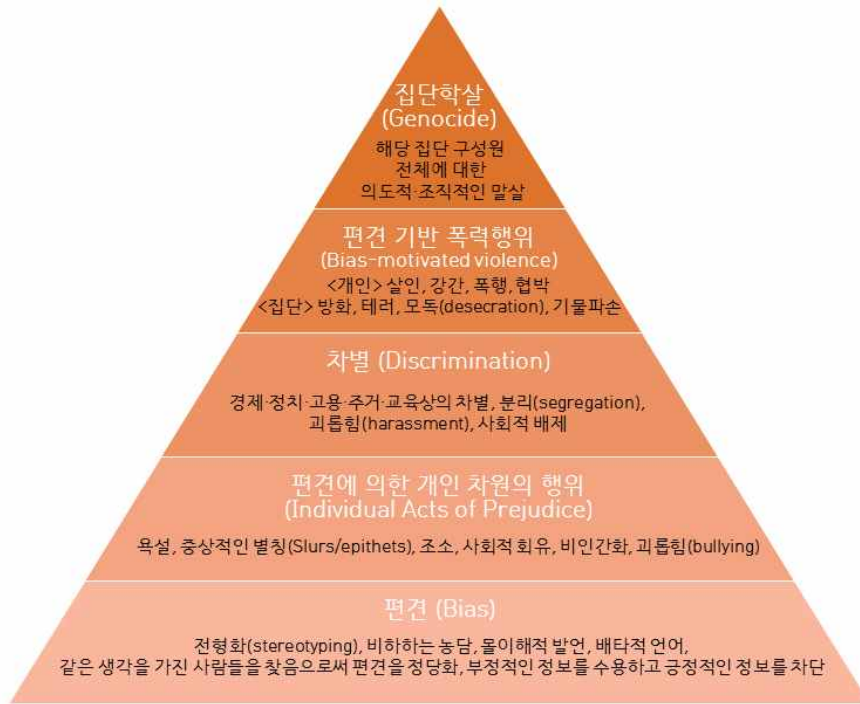
혐오표현들의 공통요소에는 표현성질로서 적의, 적대, 모욕, 비하, 조롱, 비방, 경시, 모멸, 박해, 혐오, 폄하 혹은 폭력이나 살해의 선동 등과 같이 적대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념요소들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존 규제 대상이 되었던 표현행위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가지고 있으며, 치안방해나 내란선동죄와 같은 국가질서에 반하는 선동행위에 있어서의 적대적 성질도 내포하고 있다.⁶³⁾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 발생하는 이러한 적대성은 기본적으로 표적집단으로서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전제하고 있으며, 표현행위, 표현을 매개로 한 선동행위, 물리적 폭력, 제노사이드 등의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발전이 반드시 순차적인 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중간단계를 건너 뛰어 한꺼번에 극단적인 폭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적대성이 그런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1>은 이를 ‘혐오의 피라미드’로 형상화하고 있다.⁶⁴⁾

62) 많은 국가들이 혐오표현의 유형 중 ‘중요선동’을 형사범죄화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본 보고서 2장 II. 3. (2) 혐오표현의 유형 참조.

63)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32쪽.

64) Anti-Defamation League, “Pyramid of Hate” (<http://www.adl.org/assets/pdf/education-outreach/Pyramid-of-Hate.pdf>, 최종검색일: 2016.11.21.); Brian Levin, “A Long Arc if Justice”, in Barbara Perry (ed.), *Hate Crimes: Understanding and Defining Hate Crimes*, Praeger, 2009, 5쪽 참조.



<그림 1> 혐오의 피라미드

이러한 혐오표현에서의 ‘혐오’는 문구 그대로 ‘극히 싫어함’이라는 주관적인 적대적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을 가지고 집단적 차별과 편견의 대상인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적대성의 표출을 의미한다. 다만 혐오표현의 적대성은 분노, 욕설, 공격적, 모욕적 언어의 사용뿐만 아니라 미묘하고, 온건하며, 비감정적이고 심지어 단조로운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적대성에 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⁶⁵⁾

(3) 표현행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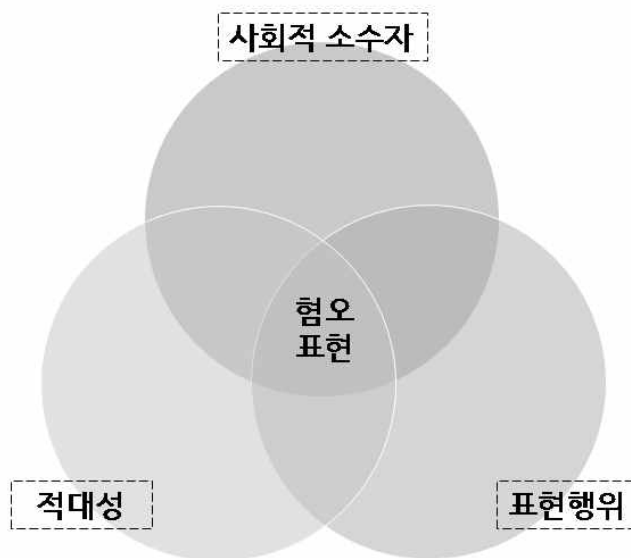
혐오‘표현’은 앞서 제시한 <표 1>에서와 같이 발언, 글, 기타의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표현행위는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인간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언어를 영위하는 인간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표현행위는 말이나 글로 이루어진다.

65)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38-39쪽.

표현행위는 말·글 이외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사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표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침묵하고 앉아 있는 행위도 어떤 맥락에서 수행되는가에 따라 강력한 항의표시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혐오표현도 말·글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나 신념을 상징하는 몸짓, 복장, 제스처, 그림, 포장, 기장 등으로도 가능하다.⁶⁶⁾ KKK단이 고유의 복장을 입고 시위를 벌이거나 십자가를 소각하는 것, 나치문양의 게시 같은 것들이 혐오표현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행위들이며, 한국에서도 일베의 손모양 조각이 혐오표현일 수 있는지가 문제된 바 있다.

(4) 중간결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혐오표현은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듯이, 사회적 소수자가 대상이며, 적대성이라는 특징을 가진 표현행위를 뜻한다.



<그림 2> 혐오표현의 의미

66)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39-41쪽.

이에 따라,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해 본다면,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⁶⁷⁾ 여기에는 소수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표현,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표현,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을 포함한다.⁶⁸⁾

4. 혐오표현의 유형

앞서 혐오표현의 정의에서 구체적 내용을 1) 차별 2) 혐오 (조롱 및 증오 등) 3) 선동으로 구분하였는데, 1)의 차별은 다시 ① 차별적 괴롭힘과 ② 차별표시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으로 분류했다.

(1)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괴롭힘’은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67) 즉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서 나타나는 표현으로, 표현의 형식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이재승 교수는 혐오표현을 “부정적인 표현 중에서도 권력관계의 반영으로, 기성의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표현”으로 정의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적 사태에 대한 발언은 혐오표현이 되기 힘든데,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그것이 형식적으로는 저급하더라도 권력관계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치인에 대한 비판에 다른 혐오가 숨어있다면 혐오표현이 될 수 있다. 이 교수는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보수적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비판이 여성편하에 기초해 있다면 혐오표현에 해당할 것”이라고 한다. 홍인택, “혐오표현, ‘일베충’은 아니고 ‘유족충’은 맞다”, 『서울대 저널』, 2015.6.17. (<http://www.snujn.com/news/13535>, 최종검색일: 2016.8.22.)

68) 혐오와 유사하게 비하(demean)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Deborah Hellman, 『차별이란 무엇인가』, 김대근 옮김, 서해문집, 2016, 71-83쪽. 여기서 비하는 사람을 깎아내리고 가치를 떨어뜨리고 격하하는 것으로서 비하가 가능하려면 행위자가 상대의 동등한 인간성을 무시하는 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그런 표현을 통해 상대를 경시하는 것이 가능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즉 권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차별적 괴롭힘은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고용, 재화·용역 제공, 교육 등의 영역에서 소수자 개인이나 집단을 그 속성과 관련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이 언어 등 ‘표현’에 의해서 행해진다면, 혐오표현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괴롭힘은 소수자에게 직접 발언함으로써도 가능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인종혐오 발언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표현물을 게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차별적 괴롭힘은 직장, 공공기관 혹은 사업장, 학교, 대학 등 일정한 공간이나 고용,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교육 등의 일정 영역과 관련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는 주된 취지가 노동권, 학습권, 재화 및 서비스의 이용 등에서의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이 만연한 직장에 다니는 소수자는 직장에서 차별받고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차별적 괴롭힘을 특정 영역이나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용하는 입법례도 있다.

해외에서는 보통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통해 괴롭힘을 규제하고 있다.⁶⁹⁾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성적 괴롭힘)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다른 차별사유에 의한 괴롭힘으로 확대하는 차별금지 법률안이 몇 차례 제출된 바 있다.⁷⁰⁾ 이 중 김재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괴롭힘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호).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차별행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제3조 제3호). 여기서 “성별 등”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뜻하기 때문에(제2조 제1호),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기반한 괴롭힘을 인정하는

69) 유럽연합의 평등에 관한 4개 지침, 영국 평등법 제27조, 캐나다 인권법 제14조,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Part1, para3(3), 미국 민권법 제7절(고용차별로 간주) 등 참조.

70) 차별금지법안(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11.6.);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13.2.12.);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3.2.20.).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차별금지법(안)상 차별행위는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법령·정책의 집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괴롭힘’ 역시 이러한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만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행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3조 제20호에서 “괴롭힘” 개념을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만을 다루고 있는 법률이긴 하지만, 고용, 서비스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괴롭힘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2) 차별표시

‘차별표시’는 차별과 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를 뜻한다. 여기서 차별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뜻한다.⁷³⁾ 합리성/불합리성의 기준은 고정적이지 않으나 기본적으로 국제인권법, 헌법, 관련 법률에서 제시되는 차별금지사유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차별을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차별표시이다. 차별표시는 반드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욕설의 형태로 소수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아도 성립가능하다. 모욕적·위협적인 표현이 아니더라도, 사실의 진술, 개인적 신념의 표명, 정책 제안 등의 형태로 차별을 의도·암시하는 표현이 가능하며 이것 또한 일정한 사회적 해악을 야기할 수

73) 이준일,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학연구』 18(2), 2012, 178-179쪽.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표시도 혐오표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차별표시를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제는 캐나다 인권법이다. “차별적 표지 등의 공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제12조에 따르면, 차별행위 또는 그와 같은 차별행위를 할 의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현물을 공개출판·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3)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은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를 뜻한다. 차별적 괴롭힘과는 달리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로 한정되지 않으며, 차별표시와는 달리 일반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유형의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정도를 넘어 표적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일본 재특회 시위에서의 구호 중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김치 냄새 난다!”, “조선인은 똥이나 먹어!”, “일본에 살게 해주고 있잖아! 너희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돼!”⁷⁴⁾, “아줌마, 당신 말이야, 조선인한테 몸이나 팔아서 어찌자는 거야!” 등의 표현이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⁷⁵⁾ 해외 법제 중에서는 독일형법이 인종소수자 등을 향해 악의적 중상 또는 명예훼손을 통해 인간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하지만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과 차별표시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컨대 “유럽정신을 부정하는 이슬람교도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동성애는 인류재생산에 위협이 된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차별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표적집단 소수자에게 강한 모욕감이나 굴욕감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행위로서 표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 관람 중 “검둥아 집에 가라(Niggers go home)”나 인종주의적 슬로건을 외친다면 언어적 표현 행위이겠지만, 원숭이

74) 야스다 고이치, 『거리로 나온 넷우익: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데』, 김현욱 옮김, 후마니타스, 2013, 101쪽.

75)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24-27쪽.

흥내를 내는 것은 비언어적 행위이다.⁷⁶⁾

(4) 증오선동

‘증오선동’(incitement to hatred)은 소수자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를 뜻한다. 증오선동에 대해서는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며, 유럽연합 내 20여 개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콜롬비아 등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⁷⁷⁾

괴롭힘 등 다른 혐오표현의 경우는 청자가 차별받는 집단의 특정 개인(들)이며, 표현이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상을 가하거나 차별을 야기한다는 점이 주된 문제인 반면, 증오선동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청자를 상대로 특정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조장하고 선동한다는 점이 중요한 지점이다. 그럼으로써 그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 적의감의 확대, 증오범죄와 같은 폭력, 사회 구성원들 간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위협 등을 야기할 위험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위험은 형법상 금지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⁷⁸⁾ 기존 형법에서도 현실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표현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증오선동의 범죄화와 관련한 논란의 소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⁷⁹⁾ 앞서 서술한 재특회 시위대의 발언 중 “조선인을 없애는 일은 해충 구제와 같다”, “죽여라, 죽여, 조선인”, “착한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다 죽여라”, “바퀴벌레 조선인을 몰아내자!”, “조선인 꺼져라!”, “조선인을 보면 돌을 던지시고 조선인 여자는 강간해도 됩니다.” 등이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⁸⁰⁾ 이러한 표현들은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차별과 폭력을 실행하자고 청중들을 선동하는 것이며, 특히 조선인 거주 지역에서의 집단시

76)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38쪽.

77)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200쪽.

78)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200-201쪽.

79) 아티클 19(Article 19)과 같은 국제인권단체에서도 법으로 금지되는 혐오표현은 증오선동에 한정되어야, 남용이나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 참조.

80)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24-27쪽, 61쪽.

위를 통해 발언되었다는 맥락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위험을 창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5) 중간결론

위에서 구분한 혐오표현의 유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혐오표현의 유형

유형	내용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표시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증오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

혐오표현에 관한 본 보고서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정의를 비교적 넓게 제시했는데, 이는 혐오표현이라는 말로 포착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심각성에 있어 경중이 있기는 하지만, 일정한 공통점과 연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혐오표현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차별적 괴롭힘]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너희 나라 사람들은 왜 다 그렇게 무식하고 게으르나?”

[차별표시] “대한민국이 금방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불어난다면 우리나라의 50프로가 혼혈아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⁸¹⁾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흑인 두 명이 우리 기숙사에 있는데, 어휴 ○○ 냄

81)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2010.12.30.) 중 ‘붙임 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참조.

새가 아주 ㅋㅋㅋㅋㅋㅋ”⁸²⁾

[증오선동] “착한 한국인 나쁜 한국인 같은 건 없다, 다 죽여 버려!”⁸³⁾

이러한 표현들은 수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점점 심각한 수준의 표현으로 나아가거나 실제 차별이나 폭력(증오범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어로 포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수위와 무관하게 공통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혐오표현’이라는 광의의 개념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광의의 혐오표현 개념만을 사용한다면,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유형으로 혐오표현을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규제대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혐오표현 유형이 더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각각에 따른 표적집단, 비표적집단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장에서는 이러한 혐오표현 유형을 참조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혐오표현의 규제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혐오표현의 유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형사범죄화를 추진한다고 할 때, 모든 혐오표현을 그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보고서는 각 혐오표현의 유형에 따라 어떤 규제대안이 유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다만, 이 유형화는 잠정적인 것이며, 4가지 유형이 언제나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책제안이나 의견제시를 빌미로 짐작게 표현된 경우에도 맥락에 따라 강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선동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 구분은 실태조사와 규제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잠정적 구분이며, 구체적인 규제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범위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82)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2010.12.30.) 중 ‘붙임 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참조.

83)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24쪽.

5. 혐오표현과 증오범죄

혐오표현의 관련 개념으로 증오범죄(hate crime)가 있다. 증오범죄란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특정 소수자집단에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을 가해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⁸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 제정되어 있는 ‘증오범죄법’은 편견과 증오라는 ‘동기’에서 기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증오범죄에 대한 통계 산출 등 증오범죄를 가시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폭력을 포함하지 않는 혐오표현과는 증오범죄는 다른 개념이다.⁸⁵⁾ 하지만 차별과 혐오, 적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혐오표현이 증오범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둘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공통의 원인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대책을 수립할 때도 하나의 맥락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

한국에서는 증오범죄법이 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증오범죄, 혐오범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2013년 12월 이종걸 의원이 “출신지·인종·사상·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상 살인,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지만 입법에는 실패했다.

III.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 문제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그 배경

자유주의적인 근대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에게 보장된 대표적인 기본권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의 가치 및 의의에 관하여 가장 고전적인 이론은 영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하여 미국 판례법상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론’으로서 미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뒷받침하고 있다.⁸⁶⁾

84) 증오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로는 김지영·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참조.

85)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44(4), 2016, 144쪽.

우리의 경우도 헌법상 해석되는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누리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촛불시위, 국가의 대(對)시민 소송, 인터넷 행정심의 강화, 교사 및 공무원 시국선언, 공직선거 시 허위사실 유포 등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면서 비로소 ‘표현의 자유’가 독자적인 의제로 대두되었다.⁸⁷⁾

다른 선진국과 우리의 경우도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그에 따라 여러 주장을 전개하는 주체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적이거나 진보적인 입장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일베 등에서 혐오표현이 증가한 이후인 2013년부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접근법이 등장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범위로 포함시켜 인정하거나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도태되도록 불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범진보진영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 호남, 여성,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 게시물이 유통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일베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은 표현의 자유를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주체들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듯한 모양새로 이해될 수 있다.⁸⁸⁾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는 표현의 자유를 그 자체의 의미나 정당성 차원에서 수인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정파적 차원에서 활용했던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지 못했던 것도 문제였다. 그러다 보니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혐오표현의 의의

혐오표현이 과연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⁸⁹⁾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86)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25쪽.

87)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88쪽.

88)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88-289쪽.

89)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음란표현’의 경우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음란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판단해왔다. 초기에는 음란표현이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헌

로 보면, 이론적으로 혐오표현 제한입법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정당성의 검토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⁰⁾

하지만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쨌든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한의 이론적 과정이 달라질 뿐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1차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혐오표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보고서에서의 필요성과 목적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한다.

다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혐오표현’에 ‘표현’이라는 개념이 사용됨에 따라 개념필연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할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첨언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의 혐오표현 개념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혐오표현은 사상적, 이론적인 주장 외에도 혐오나 증오 등의 강렬한 감정도 포함한다. 또한 많은 경우는 특정한 사상이나 견해의 소통이 목적이 아니라 혐오나 증오의 감정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혐오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혐오표현 개념은 특히 후자의 경우처럼 혐오표현의 대상에게 오로지 해악을 줄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식의 표현들로 이해할 때 의의가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코엔 소송에서 수정헌법 제1조가 감정 그 자체를 피력하는 발언도 그런 감정의 토로가 특정한 사상과 견해를 소통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다.⁹¹⁾ 이러한 판결은 즉 표현의 자유가 감정까지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에 감정적인 언어의 사용도 포함되어야 하는

제 1998.4.30., 95헌가16), 최근에는 포함된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헌재 2002.4.25., 2001헌가27, 헌재 2009.5.28., 2007헌바83, 헌재 2015.6.25.,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관련 내용은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저스티스』 153, 2016, 6-8쪽. 하지만 음란표현과 혐오표현의 사회적 파급력과 해악은 상이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특히 증오선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90)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149쪽.

91)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연방대법원의 다른 판결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가 순수하게 감정적인 표현을 보호하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로, John Deigh, “육설: 코엔 대 캘리포니아 소송”, Saul Levmore and Martha C. Nussbaum (역음), 『불편한 인터넷』, 김상현 옮김, 에이콘, 2012, 310쪽 참조.

가, 특히 그런 언어가 감정을 배출하고 촉발하는 것 외에는 해당 표현에 아무런 의미도 더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⁹²⁾ 감정적 표현들이 인지적 내용에 대한 표현과 동일하게 정부 규제로부터 면책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물론 양자가 분리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상과 사고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면책권이 감정적 언어에도 적용될 것이다. 그렇지만 타인의 경멸과 적대감의 대상이 된 사람은 발가벗기고 무력해진 느낌을 경험하며, 그러한 행위가 사상과 의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⁹³⁾

요컨대, 감정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보호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존재와 자존감을 부정할 정도로 적대적 감정을 분출하거나 오로지 타인에게 경멸과 혐오의 감정을 전해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만 이루어지는 감정 표현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혐오표현이 당연히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⁹⁴⁾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1. 규제 찬성론

혐오표현 규제에 찬성하는 첫 번째 근거는 소수자에 대한 해악이다. 우선 혐오표현은 일차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구성원인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한다.⁹⁵⁾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겪는 심리적 해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르면, 혐오표현에 노출된 소수자들이 편견, 공포, 모욕감, 긴장, 위축감, 자신감 상실, 자책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때로는 육체적 고통과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⁹⁶⁾ 즉 혐오표현은 소수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영혼의 살인’이라는 것이

92) Deigh, “욕설: 코엔 대 캘리포니아 소송”, 311쪽.

93) Deigh, “욕설: 코엔 대 캘리포니아 소송”, 314-315쪽.

94) 이준일, “#혐오표현을_법으로_차별할_수_있을까?”, 박권일 외, 『#혐오_주의』, 알마, 2016 참조.

95)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152쪽.

96)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152쪽;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

다.⁹⁷⁾

둘째, 혐오표현은 개별적인 사회적 소수자를 넘어 그 소수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가 주장되기도 한다. 혐오표현 자체가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겨냥하여 발화되기도 하고, 그러한 표현이 소수자집단 자체뿐 아니라 소수자집단을 바라보는 다른 청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혐오표현은 청중들로 하여금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고, 차별에 동참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⁹⁸⁾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소수자들을 침묵시키고 공적 토론에 참여할 실질적 기회를 박탈하도록 만든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공적 토론의 장에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상대적으로 억제될 것이다.⁹⁹⁾ 또한 소수자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피해를 드러내지 않거나 피해를 드러내더라도 무관심한 사회적 반응에 절망함으로써 더더욱 공개적인 의사표현을 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¹⁰⁰⁾

셋째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는 표현이 실제 행위로 이어져서 실질적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 때문이다. 앞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개념상 구분하기는 했지만, 증오범죄가 혐오표현을 전제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증오범죄로 나아가는 전단계로 이해하는 견해들도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들이 혐오표현에서 증오범죄로의 단선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혐오표현과 혐오폭력 및 증오범죄와의 일정한 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¹⁰¹⁾

넷째, 앞서 혐오표현을 표현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바, 후자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와 다른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평등 등 다른 가치들과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들 간의 조화를 위해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어 이론적으로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혐오표현이

제”, 293쪽.

97)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87-97쪽.

98)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94쪽.

99)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152-153쪽.

100)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97쪽.

10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95쪽.

라 할지라도 제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수자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이다.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통하여 혐오표현이 퇴출되는 것은 신화에 불과하며,¹⁰²⁾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해악은 연계적으로 결합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영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¹⁰³⁾

2. 규제 반대론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하는 여러 이론들이다.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함께 숙고하는 속의 민주주의와 관련시키기도 하고,¹⁰⁴⁾ 정치적 참여뿐만 아니라 비정치적인 영역까지 확대하여 국민이 생각을 발전시키고 정신적 탐구를 통하여 스스로를 긍정시키기 위한 국민의 자기만족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¹⁰⁵⁾ 무엇보다 중요한 이론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이다. 이에 따르면, 표현의 문제는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¹⁰⁶⁾

특히 이 ‘사상의 자유시장론’은 영국의 자유주의적 전통에서 출발하였지만 미국 판례법상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자유로운 언론은 진리를 발견하고 사상의 오류를 확인시키는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언론은 억압할 것이 아니라 이를 촉진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¹⁰⁷⁾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례도 이 입장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인물이 홈즈(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이며,¹⁰⁸⁾ 실상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용어도 그의 1919년

102) Waldron, *The Harm in Hate Speech*, 33쪽.

103)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153쪽.

104) Alexander Meiklejohn, *Politic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People*,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105)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저스티스』 153, 2016, 19쪽.

106) John Stuart Mill,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41쪽 이하.

107)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25쪽.

108) 17세기 밀턴(John Milton)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을 구체적인 이론의 형태로 세운 이가 홈즈 판사이다. 김재홍, “정보사회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사회과학』 8(1), 1996, 2-3쪽.

판결에서 유래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 행하여지는 추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사상의 시장’을 상징하고, 여기에 경제학상의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차용하여 정부의 불간섭을 주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유론이며, 이른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도 이 이론에 입각한다.¹⁰⁹⁾

둘째,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소수자가 입는 해악이 특별하다고 보지 않는 관점이다. 개별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괴로울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이라면 민사배상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며,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특정한 소수자집단이 일반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막연한 가정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로 인정하여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¹¹⁰⁾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의 개념이 아직 명확히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 특히 형사범죄화가 시도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존재한다. 이미 혐오표현을 금지 및 처벌하고 있는 타국의 경우 집행 실적이 미미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설사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법적’ 규제가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¹¹¹⁾

V.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

혐오표현의 개념 범위를 어떻게 확정하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혐오표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표현의 자유 옹호이고, 이 표현의 자유를 핵심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그런데 이 사상의 자유시장론에서 ‘자유시장’이라는 개념은 훌륭한 은유 혹은 비유이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상대로 실현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으며,¹¹²⁾

109) 박용상, 『표현의 자유』, 26-27쪽. 관련 논문으로는 김민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 홈즈(Mr. Justice Oliver W. Holmes)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33, 2006; 이춘구,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연원과 현대적 발전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10(1), 2014.

110)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297쪽.

111)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00쪽.

112) 시장이라는 장소적 개념은 유사 이래 계속 존재하였지만, 경쟁과 수요·공급의 원칙이 전제되는 시장체계적 관념은 결코 자연스럽게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실

이 점은 혐오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시장에서도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여 평등한 경제 주체간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관념이 저해되듯이 사상의 시장에서도 부유하거나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의 의견이 보다 용이하고 빈번하게 접근되고, 약자의 의견은 접근의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기도 한다.¹¹³⁾

또한 이 이론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 거짓과 진리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궁극적으로 당연히 진리가 승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념은 일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보거나 현대적 의미에 비추어보더라도 회의적이다. 시장은 계속성을 가지고 진리를 관철하지 못하며, 좋은 의견은 그 자체로 소중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쁜 의견을 몰아내는 데 무력하기도 하다. 나치의 등장이나 미국의 KKK단,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견과 증오에의 호소가 관용과 이해의 속고를 압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¹¹⁴⁾

혐오표현에 대한 소수자의 ‘맞받아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이 이론의 현실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실의 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상과 관념의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하여 국가가 불개입으로 일관하는 것은 혐오표현을 ‘허용’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도 이는 정당하지 않다. 이러한 허용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2차적인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결론 내릴 수 있듯이 개입이나 불개입이나의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¹¹⁵⁾

다만 그러한 관여는 시장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이라는

제로 ‘자유’시장은 ‘강제’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아담 스미스도 경쟁촉진을 위한 법과 정부의 역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Adam Smith, 『국부론』, 유인호 옮김, 2008, 765쪽. 또한 ‘시장실패’의 사례와 경향도 혐오표현의 경우에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시장실패의 이론적 설명으로는 대표적으로 John Maynard Keynes,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이론』, 이주명 옮김, 필맥, 2010, 40-54쪽 참조.

113) 박용상, 『표현의 자유』, 30쪽.

114) Rodney A. Smolla, and Melville B. Nimmer,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A Treatise on the First Amendment*, Matthew Bender, 1994, 2-18쪽.

115)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07쪽.

점에서 정부 개입도 필요최소한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혐오표현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법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규제반대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한편으로 민사구제, 행정구제, 자율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¹¹⁶⁾ 다른 한편 혐오표현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적합한 규제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제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특별히 예방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인 형성적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사회적 소수자가 입는 해악에 대해서는 혐오표현의 정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과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동일하게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경험적 선례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해악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¹¹⁷⁾ 언어적 폭력은 물리적 폭력에 비해 그 해악의 심각성이 간과되곤 하지만, 실제 언어적 폭력의 사회적 해악은 상당한 수준이다. 예컨대 인터넷 악성 댓글을 보고 깊은 심적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16)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86-87쪽;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01-306쪽 참조.

117) ‘교토 조선학교 습격 사건’에서 재특회 회원들에 의해 모욕을 당한 아이들은 자다가 오줌을 싸거나, 한밤중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외출할 수 없게 되거나, 확정기 소리에 히스테리 증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피해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57쪽, 61쪽 참조.

3장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¹¹⁸⁾

I. 국제기준

1. 유엔

(1) 관련 규정

1) 반차별과 혐오표현의 규제

인종, 출신 민족, 종교, 성별,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집단과 그에 속한 개인의 인간존엄성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혐오표현은 대상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차별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통한 존엄성 훼손과 차별로부터 해당 집단과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차별금지조항과 사회적 취약집단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 하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에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은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이 국가보고서 심사 후 채택하는 최종 견해에서 확인된다. 자유권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2010년 폴란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자유권규약 제2조(차별금지 조항)를 근거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hate speech) 및 증오범죄(hate crime)를 형법상 범죄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¹¹⁹⁾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 핀란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인터넷

118) 본 장은 공동연구원인 이주영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2015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며, 편의상 일일이 인용표시하지는 않았다.

119)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Poland*, 27 October 2010, CCPR/C/POL/CO/6, Para. 8. “[...]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all allegations of attacks and threats against individuals targeted because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re thoroughly investigated. It should also: legally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mend the Penal Code to define hate speech and hate crimes based on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among the categories of punishable offenses; and intensify awareness-raising activities aimed at the police force and wider public.”

토론게시판과 소셜미디어 등에서 여성과 여아, 특히 소수민족에 속하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책 강화를 요구했다.¹²⁰⁾ 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 뉴질랜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없애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권고했다.¹²¹⁾ 아동권리위원회도 2015년 스위스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사건들과 그것이 성소수자인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면서, 공개적인 증오 또는 차별의 선동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관련 조항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혐오표현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¹²²⁾

이와 같이 차별금지 사유를 근거로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를 요구하는 기본적인 근거 규범은 ‘차별금지’와 ‘법의 평등한 보호’이다.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

120)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Finland*, 28 February 2014, CEDAW/C/FIN/CO/7, paras. 14-15.

121) CRP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New Zealand*, 31 October 2014, CRPD/C/NZL/CO/1, paras. 5-6.

122)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 of Switzerland*, 26 February 2015, CRC/C/CHE/CO/2-4, paras. 24-25.

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은 차별금지 와 평등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 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제1조)고 선언함으로써,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의 존중을 인권규범의 기본 가치로 천명하였다. 이러한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를 선언 상의 모든 권리와 관련한 공통의 원 칩(제2조)으로 규정하는 한편, ‘차별이나 차별의 선동에 대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제7조)를 인정하였다. 자유권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 공히 인종, 피부색, 언어, 성별, 종교 등에 근거한 차별 없이 모두가 규약상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 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¹²³⁾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는 인종, 출신 민족 및 국가, 종교,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 모든 금지된 사유에 근거 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평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¹²⁴⁾로 차별을 정의한다. 권리의 실질적 향유나 행사 이전 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을 구성함을 알 수 있 다. 즉, 인종, 민족, 성별, 종교, 성적 지향 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한

123)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124) 자유권위원회와 사회권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의 차별 정의를 참고하되 모든 금지된 사유로 범위를 확장하여, 위 본문과 같이 차 별을 정의한다. CCPR, *General Comment No. 18: Non-Discrimination*, 10 November 1989, HRI/GEN/1/Rev.9 (Vol. I), paras. 6-7; CESCR,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2 July 2009, E/C.12/GC/20, para. 7.

후, 그 구분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 혹은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는 동등한 존엄과 인권을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부터 차별은 시작된다. 자유권규약 제26조¹²⁵⁾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대하여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단지 국가의 공적행위를 통해 차별을 하지 않을 의무뿐 아니라 법률로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부터 모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증오의 고취’ 금지

나아가 국가는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법률에 의하여 금지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하여 증오(혐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을 당사국의 의무로서 부과한다. 아울러 동 조항상의 규범은 국제관습법에 속하기 때문에 유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자유권위원회의 견해이다.¹²⁶⁾ 동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은 첫째, 차별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소수자집단에 대해 증오를 고취하는

125) 자유권규약 제26조는 동 규약 제2조 제1항과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과 달리, 규약 상의 권리에 그 보호범위가 한정되지 않는다. *Zwaan - de Vires v. the Netherlands*, Communication No. 182/1984, UNHRC, 9 April 1987.

126) HRC, *General Comment No. 24 Issues Relating to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4 November 1994, CCPR/C/21/Rev.1/Add.6, para. 8.

행위여야 하며, 둘째, 그 증오의 고취는 선동적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이라는 해악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¹²⁷⁾

3) 인종주의적 사고의 보급, 인종차별 촉진·고무 등에 대한 형사적 규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하에서 당사국은 ㉠ 인종적 우월주의나 혐오에 기반을 둔 사고의 보급, ㉡ 인종차별을 촉진·고무하는 선전활동, ㉢ 인종, 피부색이나 출신민족이 다른 집단에 대한 폭력의 선동을 법률상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과 달리, 인종주의적 사고의 보급까지 금하고 있어, 규제범위가 더 넓다. 제4조(c)에서 인종차별 고취 및 선동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

127)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Frank La Rue, Report on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Hatred, 7 September 2012, 1/67/357, para. 43.

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4) 제노사이드 선동에 대한 형사적 규제

혐오표현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는 제노사이드의 선동이다. 제노사이드 선동을 국제법상 범죄로 공식화한 것은 「제노사이드 협약」으로서, 동 협약 제3조(c)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해지는 일련의 행위¹²⁸⁾ 즉 제노사이드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행위를 형사적 범죄로 규정하였다. 제노사이드 협약 체결 이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 전쟁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전범재판에서 제노사이드 선동이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서 다루어진 바 있다.¹²⁹⁾ 1994년에 르완다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동 재판소 설립규정 제2조(3)(c), 구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규약 제4조(3)(c),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c)에 근거해, 신문, 방송, 대중집회 등을 통해 투치족을 몰살시키라고 후투족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언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노사이드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노사이드 범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였다.¹³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도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제노사이드 범죄 선동'을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제25조(3)(마)).

128) 제노사이드 협약상 집단살해(제노사이드)의 정의는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129)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전범재판의 재판부는 반유대주의 신문 'Der Stürmer (돌격대)'의 발행인인 율리우스 스트라이허(Julius Streicher)에 대해 25년간 매주, 매달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를 독일인들의 마음에 새겨, 나치의 '유대인 박해·절멸정책'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1946년 10월 1일 유죄선고를 내렸다.

130) *The Prosecutor v. Ferdinand Nahimana, Jean-Bosco Barayagwiza, Hassan Ngeze* (Appeal Judgment), ICTR-99-52-A, ICTR, 28 November 2007.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중략]

마.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죄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2)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관련 결정례와 최종견해**1) 자유권위원회**

자유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인지(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관하여 3건의 개인통보를 심리,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자유권위원회는 국가의 자유권규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 심사에서도 차별금지 맥락에서 혐오표현 상황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을 권고하는 내용을 최종견해에 포함하고 있다. 자유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관한 개인통보 결정 3건의 내용 및 당사국에 대한 최종견해들을 소개한다. 혐오표현에 관한 최종견해는 최근 몇 년 간의 내용만을 소개한다.

• ***J.R.T and the W.G. Party v. Canada, Communication No. 104/1981* (반유대주의)**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유대인들이 세계를 전쟁, 실업, 인플레이션 등으로 이끈다는 반유대주의 음성메시지를 전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캐나다 인권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지명령을 받았다. 당시 캐나다 인권법 제13조 제1항은 차별금지 사유에 기반하여 다른 사람(들)을 증오와 경멸에 노출시킬 수 있는 내용을 전기통신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표현의 자유 제한의 정당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반유대주의 음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제20조 제2항이 금하는 행위, 즉 증오의 고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심리적격 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 **Ross v. Canada, Communication No. 736/1997 (반유대주의)**

본 사건에서 신청인은 수년 간에 걸쳐 반유대주의 내용의 출판 활동을 한 교사로서 뉴 브룬스빅 인권법(New Brunswick Human Rights Code) 제5조 제1항 차별금지조항¹³¹⁾에 근거해 수업이 없는 자리로의 직무 이동에 관한 행정명령을 받았다. 당사국이 제20조 제2항을 원용하면서 사건의 각하를 요청하자, 자유권위원회는 ‘제20조에 해당하는 표현에 대한 제약도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심사요건을 규정한 제19조 제3항하에서’ 심사되어야 한다¹³²⁾며 기준을 새로이 정립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신청인에 대한 직무이동 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이같은 행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신청인에게 주어졌다는 점, 편견, 불관용이 없는 공교육체제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등 유대신앙을 가진 사람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할 목적으로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졌다는 점, 해당 교사의 활동이 학군 내 학교들에 영향을 미친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교사의 반유대주의 글이 “학생들의 일부 차별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학교의 “오염된 환경”과 교사의 수년간에 걸친 출판 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한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심리 내용에 주목하면서 신청인을 교사직에서 배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 이상의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¹³³⁾ 본 사

131) Section 5(1) of the New Brunswick Human Rights Code (1988년 당시)

No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alone or with another, by himself or by the interpretation of another, shall

(a) deny to any person or class of persons with respect to any accommodation, services or facilities available to the public, or

(b) discriminate against any person or class of persons with respect to any accommodation, services or facilities available to the public,

because of race, colour, religion, national origin, ancestry, place of origin, age, physical disability, mental disability, marital status, sexual orientation or sex

132) *Ross v. Canada*, Communication No. 736/1997, UNHRC, 18 October 2000, para. 10.6.

133) *Ross v. Canada*, Communication No. 736/1997, UNHRC, 18 October 2000, para. 11.4-6

건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Faurisson v. France, Communication No. 550/1993 (반유대주의)*

뉘렌베르크 국제군사법정에서 확정된 반인도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행위를 형사범죄화한 프랑스의 게이소법(Loi Gayssot, Gayssot Act)¹³⁴⁾에 따라, 유대인 절멸정책과 그러한 목적의 가스실의 존재를 부인하는 역사학자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것이 표현의 자유 위반인지에 관한 사건이다.¹³⁵⁾ 본 사건에서 자유권위원회는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우려와 비판적 견해가 있음을 인지하는 한편, 심리대상은 해당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임을 밝혔다.¹³⁶⁾ 본안 심리에서 위원회는 프랑스 법원의 유죄 결정은 신청인이 견해를 갖고 표현할 자유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발언이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였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발언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반유대주의를 야기하거나 강화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반유대주의의 환경 속에서 공포를 느끼지 않고 살고 싶은 유대인들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며, 해당 법률은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¹³⁷⁾ 별도의 동조의전문에서 일부 위원들은 확립된 역사적 사실에 도전하는 연구를 비롯해 진정한 학문적 연구는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 구체적 사건의 경우, 저자(신청인)의 진술에서 반유대주의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유추해 냄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역사연구에 대한 제약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선을 긋고자 하였다.¹³⁸⁾

134) 게이소(Jean-Claude Gayssot)가 제안한 법으로 일명 ‘게이소법’이라고 불리나, 법률의 정식명칭은 “Loi n° 90-615 du 13 juillet 1990 tendant à réprimer tout acte raciste, antisémite ou xénophobe” (모든 인종차별, 반유대인 또는 외국인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1990년 7월 13일자 법률)이다.

135) *Faurisson v. France, Communication No. 550/1993, UNHRC, 16 December 1996.*

136) *Ibid.* paras. 9.2-9.3.

137) *Ibid.* paras. 9.5-10.

138) Individual opinion by Elizabeth Evatt and David Kretzmer, co-signed by Eckart Klein (concurring) para. 10 in *Faurisson v. France, Communication No. 550/1993, UNHRC, 16 December 1996.*

- 폴란드 제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¹³⁹⁾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8. [...] 당사국은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개인들이 공격을 받고 위협을 당했다는 모든 주장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기초로 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를 처벌한 가능한 범죄로 포함하도록 형법을 개정하고, 경찰 및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우크라이나 제7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¹⁴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10. [...] 윤리와 문화의 국제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이 인권의 보편성과 반차별 원칙을 항상 따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동성애, 양성애, 또는 트랜스젠더에 관한 사회적 낙인,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또는 차별 및 폭력의 그 어떠한 형태도 용납하지 않음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

“11. [...] 당사국은 인권존중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을 통해 혐오표현, 인종주의적 공격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 대한민국 제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¹⁴¹⁾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15. 당사국은 소위 ‘전환치료’, 혐오표현 및 폭력 등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에 기초해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낙인찍거나 차별하는 어떠한 형태도 용납될 수 없음을 명백히 공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139)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Poland*, 27 October 2010, CCPR/C/POL/CO/6, para. 8.

140)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Ukraine*, 26 July 2013, CCPR/C/UKR/CO/7.

141)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Republic of Korea*, 3 December 2015, CCPR/C/KOR/CO/4, para. 15.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주의적 사고의 보급, 인종차별 촉진·고무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협약 제4조 관련 개인/집단통보를 여러 건 심리, 결정하였다.¹⁴²⁾ 또한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서 심사 결과를 발표한 최종견해에서도 인종주의적 혐오표현 및 증오선동에 관한 우려를 표하며 형사적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대책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

- *The Jewish Community of Oslo v. Norway, Communication no. 30/2003*¹⁴³⁾
(반유대주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노르웨이가 반유대주의 및 인종주의를 전파하는 연설을 한 신나치 단체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와 제6조 위반이라고 결정하였다. 본 건에서 신나치주의자 집단(the Bootboys)이 나치 지도자 중 한명의 추모식을 열어 나치 지도자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면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을 비방하였고, 비노르웨이적 사고를 몰아내고 국가사회주의(나치)의 원칙에 맞게 노르웨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연설을 한 책임자를 기소하였으나 노르웨이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을 다수 결정으로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신청인인 The Jewish Community of Oslo는 이 집회 직후 the Bootboys 지부가 새로 생겼고, 그 후 1년 동안 흑인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 중 가나 출신 아버지와 노르웨이 출신 어머니를 둔 소년이 살해되는 사건은 직접 the Bootboys가 관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the Bootboys의 해당 발언은 인종적 우월주의에 기반한 사고의 전파이자 인종차별의 선동으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에 해당하는 내용이며,¹⁴⁴⁾ 이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가 효과적인 보

142) 예를 들어, *Zentralrat Deutscher Sinti und Roma et al. v. Germany, Communication No. 38/2006, CERD, 3 March 2008; The Jewish community of Oslo v. Norway, Communication no. 30/2003, CERD, 22 August 2005; TBB-Turkish Union in Berlin/Brandenburg v. Germany, Communication no. 48/2010, CERD, 10 May 2013.*

143) *The Jewish community of Oslo v. Norway, Communication no. 30/2003, CERD, 22 August 2005.*

호와 구제를 제공(제6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4조, 제6조 위반¹⁴⁵⁾이라고 논증하였다.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대한민국의 5-6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단락 10¹⁴⁶⁾ (인종주의)**

“10. 위원회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자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이 보다 확산되고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인종적 우월주의의 전파 또는 인종적 증오선동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밝힌다. 인종차별 철폐 법제에 관한 일반권고 7호(1985), 출신민족에 근거한 조직화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5호(1993), 비-국민 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0호(2004)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우월주의적 사고를 전파하거나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증오를 선동하는 개인 혹은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행위의 발화자를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한다.”

•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본 제7-9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단락 11¹⁴⁷⁾ (인종주의)**

11. “위원회는 외국인과 소수자, 특히 코리안들을 상대로 인종주의적 시위 및 집회를 조직하는 우파 운동 혹은 집단이 임박한 폭력 선동을 포함한 혐오표현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당사국에 대한 보고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는 공무원 및 정치인들이 혐오표현과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집회와,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혐오표현과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선동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느낀다. 더욱이 당사국이 그러한 행위를 늘 제대로 수사,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인종주의적 혐오표현 방지에 관한 일반권고 35호(2013)를 상기하며, 위원회

144) Ibid. para. 10.4.

145) Ibid. para. 10.5.

146)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n Republic of Korea*, 23 October 2012, CERD/C/KOR/CO/15-16, para. 10.

147)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n Japan*, 29 August 2014, CERD/C/JPN/CO/7-9, para. 11.

는 인종주의적 표현을 모니터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혐의의 표현을 제한하는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인종주의적 혐오표현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취약집단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당사국의 중요성 역시 환기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국이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한다.

- (a) 증오와 인종주의의 표출 및 집회 중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의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 (b)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의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 그러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수사하고, 적절한 경우, 기소해야 한다.
- (d) 혐오표현 및 증오선동을 전파하는 공무원 및 정치인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
- (e)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의 근본원인에 대해 대처하는 한편, 인종차별을 야기하는 편견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민족 및 인종집단 간 이해, 관용 및 우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 문화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

3)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최종견해에도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 의견이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 핀란드에 대해 “인터넷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여성과 여아, 특히 민족적 소수자에 속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터넷 게시판,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에서 민족적 소수자에 속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¹⁴⁸⁾

4)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도 당사국의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 심사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상황을 차별금지 맥락에서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 2015-2016년에

148)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Finland*, 10 March 2014, CEDAW/C/FIN/CO/7, paras. 14, 15(c).

발표된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예로 들자면, 2015년 스위스 정부에 대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표현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혐오표현에 관한 형법조항(261bis)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도 관련 사유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¹⁴⁹⁾ 2016년에는 불가리아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난민신청인과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마련할 것, 모든 단계와 지역 차원에서 로마그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로마그룹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¹⁵⁰⁾

5) 장애인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도 당사국의 이행 보고서 심사 때 장애 관련 혐오표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정부에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뉴질랜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구글 뉴질랜드 검색엔진에서 자폐증을 가진 사람 관련 검색을 하면 혐오표현이라 볼 수 있는 문구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이러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구글 뉴질랜드와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¹⁵¹⁾

(3) 유엔인권기구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문서

1) 인종주의와 미디어에 관한 공동 의견서¹⁵²⁾

견해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언론의 자유에 관한 유럽안

149)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 of Switzerland*, 26 February 2015, CRC/C/CHE/CO/2-4, paras. 24-25.

150)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Bulgaria*, 3 June 2016, CRC/C/BGR/CO/3-5, paras. 50-53.

151) CPR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New Zealand*, 31 October 2014, CRPD/C/NZL/CO/1, paras. 7-8.

152)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Joint Statement on Racism and the Media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London, 27 February 2001.

보협력기구 대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주기구 특별보고관은 2001년 ‘인종주의와 미디어에 관한 공동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이 의견서는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에 관한 라밧 행동계획¹⁵³⁾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주관 하에 2012년 인권전문가들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 금지에 관한 라밧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문서는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과 관련해 2011년에 4개 지역에서 개최한 전문가 워크숍의 결론과 권고 내용을 담고 있다.

2. 유럽

(1) 관련 규정

1)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기본 결정¹⁵⁴⁾

유럽연합은 2008년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기본결정’을 채택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과 관련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폭력과 증오의 선동 등을 형법상 범죄로 규정, 처벌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제1조에 따르면,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그 일원에게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등이 의도적으로 행해졌을 때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며, ‘소책자, 이미지, 기타 자료의 공개적 보급 혹은 배포’를 통해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53)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5 October, 2012.

154)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2)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¹⁵⁵⁾

유럽인권협약에는 혐오표현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하지만 유럽평의회는 1997년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여, 정부, 공권력, 공공기관 및 관료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을 특별히 강조하였고,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형법뿐 아니라 민법, 행정법 등으로 이뤄진 종합적인 법제를 수립할 것, 형사적 제재수단으로서 사회봉사명령을 도입할 것 등을 회원국에 요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독려했다.

3)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¹⁵⁶⁾

온라인상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적 선전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유럽평의회는 2003년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해, 각국에서 이와 관련한 형사적 규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2) 유럽인권재판소(유럽인권위원회) 관련 판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에서 행해진 혐오표현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아니면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수의 사건을 다루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세 단계로 심사한다. 첫째, 그 개입은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 아니라, 해당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시민들이 자신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¹⁵⁷⁾ 둘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등 동 조항에서 인정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155)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30 October 1997.

156)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Strasbourg, 28 January 2003.

157) *The Sunday Times v.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6538/74, ECHR, 26 April 1979, para. 49.

한다. 셋째,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제약에 ‘중대한 사회적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 맥락과 함께, 그 개입이 정당한 목적의 추구를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 그 개입으로 인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에 비해 보호되는 권리 혹은 공익이 더 큰지를 심사한다.¹⁵⁸⁾

하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상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협약 제17조 권리 남용 금지 조항¹⁵⁹⁾에 근거해, 표현의 자유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사건을 심리적격 단계에서 각하한다. 아래는 협약 제17조 권리 남용 금지 조항을 적용해 심리적격 여부 심사 단계에서 청구를 각하한 판례와 제10조 제2항에 의거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 여부를 심사해 침해 결정이 내려진 판례, 정당한 제한 결정이 내려진 판례의 일부이다.

1) 협약 제17조 권리 남용 금지 조항 적용한 판례

- *Pavel Ivanov v. Russia, Application no. 35222/04, ECHR, 20 February 2007*

유대인을 사회악의 근원으로 묘사하며 사회생활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련의 글들을 직접 작성, 게재한 신문의 편집인이 인종, 민족적 증오를 선동한 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내 법원에서 확정한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민족집단에 대한 이 같은 맹렬한 공격은 협약의 기본 가치, 대표적으로 관용, 사회의 평화, 반차별에 반하는 것으로 협약 제17조에 따라 신청인은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 *Glimmerveen and Hageneek v. the Netherlands, Applications no. 8348/78*

158) *Zana v. Turkey, Application no. 18954/91, ECHR, 25 November 1997, para. 51.*

159) 제17조 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nd 8406/78, ECHR, 11 October 1979

모든 비백인들을 네덜란드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소책자를 작성하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극우 민족주의 정당의 대표가 형법상 인종차별 선동죄 위반으로 2주간의 자유형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도록 용인할 경우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보호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 **Norwood v. the United Kingdom, Application no. 23131/03, ECHR, 16 November 2004**

극우민족주의 정당의 지역 조직담당자가 ‘이슬람은 영국을 나가라. 영국국민을 지키자’라는 문구, 테러공격을 당한 미국 트윈타워 이미지, 이슬람을 상징하는 달과 별에 금지 기호를 담은 포스터를 집 유리창에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두 달 여 동안 부착하여, 다른 인종 혹은 종교집단에 대한 적의를 갖고 위협적,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글, 표시, 기타 시각적 표현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질서법(1986) 제5조 위반으로 300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의 포스터는 영국 내 모든 무슬림을 공격하는 공개적인 표현으로서,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전체를 심각한 테러와 연결시켜 그 종교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는 협약 제17조가 금지하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결정

• **Jersild v. Denmark, Application no. 15890/89, ECHR(Grand Chamber), 23 September 1994**

덴마크의 한 방송 시사프로그램이 극단적 인종주의자들의 인터뷰 발언을 내보낸 것으로 인해,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언론인이 그러한 발언을 하도록 돕거나 교사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덴마크 형법 규정은 공개적으로 다수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인종, 출신 민족, 종교 등과 관련해 사람들을 위협, 모욕, 비하하는 발언이나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인종주의적 관점과 사고를 증진하기보다는, 그러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알리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언론인에 대한 유죄 선고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관련 정보나 현상을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을 때, 증오선동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립하였다.

• ***Erbakan v. Turkey, Application no. 59405/00, ECHR, 6 July 2006***

터키 이슬람주의 정당의 대표가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를 나누고, 종교에 따라 정치세력을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연설을 한 것과 관련, 4년 5개월 후 종교, 인종, 지역에 관한 증오선동죄로 기소돼 국내 법원에서 1년의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건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문제가 된 공공연설이 종교 간 적의를 일으킬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그럴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 ***Otegi Mondragon v. Spain, Application no. 2034/07, ECHR, 15 March 2011***

바스크 좌파정당 대변인이 기자회견 중 스페인 왕에 대해 ‘정말로 정치적 망신’, 스페인 경찰과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고문을 옹호하고 고문과 폭력을 통해 군주제를 우리 인민들에게 강요하는 이’라고 말해 왕을 중대하게 모욕한 죄로 1년의 징역형과 해당 기간 중 선거권 박탈의 형을 받은 사건이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신청인이 다소 과장되고 강한 언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는 정치적 논쟁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며, 국가의 상징으로서 왕이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도록 보호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의 발언은 왕의 국가수반으로서의 제도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으로 왕의 ‘인간존엄의 핵심’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군다나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혐오표현이나 증오선동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제한에 속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해, 신청인의 해당발언은 혐오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제한, 특히 징역형을 동반한 형사적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 결정

•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Application no. 1813/07, ECHR, 9 February 2012*

신청인 4명이 고등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의 사물함에 백여 장의 유인물을 두고 나왔는데, 그 유인물은 ‘변태 성향’, ‘사회에 윤리적으로 파괴적인 효과’를 미친다, 동성애의 ‘문란한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HIV와 에이즈라는 ‘현대적 역병’이 확산되고 있다, 동성애 로비단체들이 아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들은, 성적지향에 근거로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경멸을 표현하는 발언행위를 처벌하는 스웨덴 형법 규정에 따라 기소되어, 행위의 중함에 따라 각각 200에서 2000유로의 벌금형 또는 보호관찰의 형을 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유인물에 담긴 진술들이 해악적인 행위를 범하도록 직접 권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심각하고 편견에 가득 찬 주장들이며,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은 인종, 출신 민족, 피부색에 기반을 둔 차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라는 점, 유인물 배포 대상이 학생들이었다는 점, 처벌의 성격과 정도가 과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스웨덴 법원의 처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다.

• *Féret v. Belgium, Application no. 15615/07, ECHR, 16 July 2009*

벨기에 국민전선 의장이자 국회의원이 신청인은 선거기간 중 여러 종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에는 이민자들을 범죄자, 복지 혜택을 남용하는 집단으로 묘사하는 내용과 ‘벨기에의 이슬람화에 맞서 일어나자’, ‘거짓 통합정책을 중단하라’, ‘비유럽 구직자들을 집으로 보내자’ 등의 구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인종차별 선동죄로 기소되어, 사회봉사 및 10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 박탈의 형을 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인물에 담긴 신청인의 발언은 외국인에 대한 불신, 거부, 심지어 증오심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이러한 현상은 교육수준이 낮은 대중들 사이에서 더욱 그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거 상황에서 신청인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그 전파력이 더욱 높고 이는 인종적 증오선동임이 명백하다고 규정하면서, 벨기에 법원의 신청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다른 사람들, 특히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닌 것

으로 판시하였다.

3. 국제인권단체

국제인권단체 중에서는 표현의 자유 전문 인권단체인 아티클19이 혐오표현에 관해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주도해 왔고,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조화롭게 옹호, 증진할 수 있는 혐오표현 대응 기준과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의 결과물을 발간해 왔다. 아래는 혐오표현과 관련된 대표적인 발간물들이다.

-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캠든 원칙 (2009)¹⁶⁰⁾
-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 금지 (2012)¹⁶¹⁾
-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에 대한 혐오표현 대응 방안 (2013)¹⁶²⁾
- ‘혐오표현’ 설명 툴킷 (2015)¹⁶³⁾

II. 외국 사례

이 절에서는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일본의 혐오표현 규제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규제의 목적에 따라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의 범주가 달라지는데, 2장에서 구분한 대로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으로 나뉘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의 혐오표현은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범주는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의, 적용범위 및 규제방법은 각국의 해당 법률마다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160) Article 19,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2009.

161) Article 19,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

162) Article 19,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2013.

163) Article 19, *'Hate Speech' Explained: A Toolkit*, 2015.

1. 미국

미국은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입각해, 매우 좁은 범위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영역에서의 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을 고용차별 위반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그 이외의 혐오표현 중에서는 폭력을 일으킬 명백하고 임박한 위협이 있는 선동이라는 매우 좁은 범위를 제외하고서는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 괴롭힘

미국은 고용 영역에서의 괴롭힘을 1964년 민권법 제7장 703(a)(1) 고용차별 위반¹⁶⁴)으로 규제한다. 이 법에는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인종, 피부색, 종교, 임신 여부를 포함한 성별, 출신국가, 연령(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정보에 기초해, 관리자, 동료, 기타 직장관계자가 욕설, 놀림, 위협, 조롱, 모욕, 불쾌한 농담 등 괴롭힘(harassment)으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적대적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1964년 민권법 제7장, 1967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에 관한 법(ADEA), 1990년 미국장애인법(ADA)을 위반하는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결들을 통해 확립되었다.¹⁶⁵) 그러나 미국 법원은 캠퍼스에서의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대학 규정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화하였다.¹⁶⁶)

*UMW Post, Inc. v.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위스콘신 대학 측은 민권법 제7장하에서 적대적 업무 환경을 만드는 차별적

164) Section 703(a)(1) of Title VII, 42 U.S.C. § 2000e-2(a) provides: It shall be an unlawful employment practice for an employer (1) to fail or refuse to hire or to discharge any individual, or otherwise to discriminate against any individual with respect to his compensation, terms conditions or privileges of employment, because of such individual's race, color, religion, sex, or national origin.

165) *Rogers v. EEOC*를 시작으로 이어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대적 업무환경’ 이론이 확립되었다.

166) *Corry v. Stanford* (1995) No. 740309 (Cal. Super, Ct., 27 Feb); *Doe v. University of Michigan* (1989) 721 F. Supp. 852 (E.D. Mich.).

표현을 금지하듯이, 학업을 하는 데 적대적 환경을 만드는 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대학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연방지방법원은 민권법 제7장은 고용영역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대학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은 ‘그 말만으로 폭력적 반응을 부추기는 의도를 가진’ 도발적 언어뿐이라는 법원의 판례를 재차 강조하였다.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교육환경에 매우 해롭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이 나라에서 거의 절대적이며 도발적 언어 법리가 허용하는 유일한 제한은 폭력적 반응의 위협에 기초한 것뿐’이며 재판의 대상이 된 대학 규정과 같이 ‘내용 기반 금지는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할지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¹⁶⁷⁾

(2) 즉각적 폭력 선동과 ‘도발적 언어’

미 연방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내용 규제는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며, 유일하게 브란덴버그 기준이라고 불리는 즉각적인 폭력 선동과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하는 ‘도발적 언어(fighting words)’에 대한 규제만이 허용되는 것이란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발적 언어’에 대한 규제를 수정헌법 제1조의 예외로 보는 해석은 1942년의 *Chaplinsky v. New Hampshire*¹⁶⁸⁾ 판례에서 비롯된 것이며, 단순히 폭력의 옹호를 금지하는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며, 발언이 즉각적 불법행위를 선동하려는 의도로 행해졌고 이를 선동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이른바 브란덴버그 기준은 *Brandenburg v. Ohio*¹⁶⁹⁾에 의해 확립되었다. 앞에서 보았던 대학의 혐오표현 규정을 포함해, 이후 혐오표현 관련 판례들에서 이러한 법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National Socialist Party of America v. Vill. of Skokie*¹⁷⁰⁾에서 연방대법원은

167) *UMW Post, Inc. v. Board of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Wisconsin*, 774 F. Supp. 1166 (E.D. Wis. 1991) 한편, 헌법상 규정은 국립대학 및 주립대학에만 직접 구속력을 가지며, 차별적 사유에 근거해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교육환경을 만드는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 대학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168) 315 U.S. 568, 571-73 (1942)

169) 395 U.S. 444 (1969)

170) 432 U.S. 43 (1977)

스코키라는 소도시 지역정부가 신나치주의자들이 나치문양이 있는 국가사회주의정당 제복을 입고 생존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행진하고자 한 것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이 폭력선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역정부의 조치는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R.A.V. v. City of St. Paul*¹⁷¹⁾에서도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허용되는 내용규제는 음란물, 명예훼손, 상대방의 폭력을 유발하는 도발적 언어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젠더를 근거로 화, 공포,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징물의 제한은 내용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합헌적인 제한 대상인 ‘도발적 언어’로 보기에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보았다.

*Virginia v. Black*¹⁷²⁾은 위협 의도가 있는 십자가 소각 처벌이 수정헌법 제1조의 새로운 예외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심사대상이 된 버지니아 주의 십자가 소각 금지법은 십자가 소각 자체가 잠정적으로 위협 의도를 전제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하지만 위협의 의도가 있는 십자가 소각의 처벌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는데, 물리적 폭력이 아닌 공포 조장 및 모욕을 통해서도 위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폭력선동이나 도발적 언어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방에게 위협이 되는 십자가 소각이라는 특정 표현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는 표현인 증오선동에 대해 규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2012년 연방지방법원¹⁷³⁾은 무슬림에 대한 증오선동 포스터 광고를 버스나 지하철에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워싱턴 시 교통당국이 미국의 극단적 반무슬림 단체인 American Freedom Defense Initiative (Stop Islamization of America:

171) 505 U.S. 377 (1992). 흑인 가족이 사는 집의 마당에서 십자가 소각 행위를 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인종, 피부색, 종교 또는 젠더에 근거해 다른 사람에게 화, 공포, 분노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 상징물의 전시를 금지하는 St. Paul 시의 조례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172) 528 U.S. 343 (2003)

173) *Am. Freedom Def. Initiative v. Wash. Metro. Area Transit Auth.*, No. 12-1564, 2012 U.S. Dist. (D.D.C. Oct. 12, 2012)

SIOA)가 “문명인과 야만인 간의 어떤 전쟁이든, 문명인을 지지하라. 이스라엘을 지지하라. 지하드를 물리쳐라.”라는 광고 포스터를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 부착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나온 판결로서, 법원은 일부 대중교통 이용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심지어 격앙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메시지를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 금지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AFDI는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다른 대도시에서도 대중교통시설에 반무슬림 광고를 부착하는 활동을 하며, 시의 교통당국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소를 제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뉴욕 맨하탄의 남부지방법원에서도 스카프를 두른 남자의 얼굴과 함께 “유대인을 죽이는 것은 우리를 알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숭배의식”의 문구를 넣고, “이것이 그들의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전쟁은?”이라는 내용을 담은 AFDI의 포스터에 대해 뉴욕시 교통당국이 버스와 지하철 광고판 게시 금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위헌 판결이 2015년 4월 내려졌다.¹⁷⁴⁾

2. 독일

독일은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일반평등대우법’에서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조항은 특정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보다 명시적으로,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성적지향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개인에 대한 모욕,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와 이들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별도의 형법 조항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즉, 독일은 다양한 유형의 혐오표현 중 차별적 괴롭힘, 차별지시, 집단모욕, 집단명예훼손, 일정한 민족·인종·종교·국적을 이유로 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행위, 증오선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174) Michael E. Miller, “Killing Jews is Worship’ posters will soon appear on NYC subways and buses”, *The Washington Post*, April 22, 2015. AFDI의 포스터에 대한 뉴욕시 교통당국의 게시금지 결정과 관련한 건은 2016년 11월 현재 뉴욕 연방항소법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 차별적 괴롭힘과 차별 지시

독일연방의회가 2006년 의결한 「평등대우 원칙의 실현을 위한 유럽지침의 이행을 위한 법률」(이하 “일반평등대우법”)은 유럽연합의 평등대우에 관한 4개 지침¹⁷⁵⁾이 포함하고 있는 차별금지 유형을 전부 수용하고 있는데, 이 중 혐오표현과 관련 있는 것으로는 괴롭힘, 성적괴롭힘, 차별지시가 있다. ‘일반평등대우법’ 제3조 제3항은 ‘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동방식이, 관련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명예훼손적, 모욕적 특성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본다. 일반평등대우법 제3조 제4항은 성적괴롭힘을 별도의 차별유형으로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고용 및 직업부문과 관련하여, 위협적, 적대적, 굴욕적, 명예훼손적, 모욕적 특성의 환경을 조성하는 원치 않는 일정한 성적인 행위가, 관련된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야기하는 경우로서, 성적인 내용의 발언, 음란표현물의 원치 않는 제시와 눈에 떨 수 있는 비치가 포함된다. 또한 ‘인종, 출신민족, 성별, 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차별하도록 하는 지시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일반평등대우법 제3조 제5항).

(2) 민족·인종·종교·국적·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인간존엄성 침해

독일 형법의 모욕 및 명예훼손죄(제185조, 제187조)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집단구성원 ‘모두’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표적이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집

175) 「인종 및 출신민족과 관련된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2000/43/EC),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 관련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2000/78/EC),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2/73/EC), 「재화 및 용역의 이용 및 공급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2004/113/EC).

단모욕죄, 집단명예훼손죄도 인정한다. 하지만 보다 명시적으로 소수자집단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제재하는 조항이 별도로 있다. 형법 제130조 제1항 제2호는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인구집단(segments of the population), 이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 훼손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행위를 한 자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130조 제2항은 이같이 인간존엄을 공격하는 문서를 배포, 공연히 게시, 전시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 공급하거나(제1호) 라디오, 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포하는(제2호)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독일 형법 해설서에 따르면, 제13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특정 인구집단은 공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인구 집단들과 비교해 식별가능한 사람들의 집단으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 혹은 같은 정치·사회·직업·이념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집단 등을 포함한다.¹⁷⁶⁾

한편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이 그 피해자(들)의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때에 한해, 제13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에 의해 규제된다는 것이 독일 법원의 해석이다. 따라서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인격의 핵심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예를 들어 ‘난민신청인들은 독일인들에게 에이즈를 퍼뜨리고, 청소년 마약 중독 문제를 일으키고 일반적으로 기생적인 삶을 살고 은혜를 모른다’는 비방은 난민신청인의 인격과 인간존엄을 명백히 침해하므로 제130조 제1항 위반이 인정되었던 것이다.¹⁷⁷⁾

(3) 민족·인종·종교·국적·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¹⁷⁸⁾

176) Detlev Sternberg-Lieben, in: Schönke/Schröder (Hrsg.),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29. Auflage, Verlag, C.H.Beck, 2014. § 130 Rn. 3f. (이 문헌의 번역은 Paul Lauster의 도움을 받았음.) 하지만 교회 등 제도화된 기구 혹은 다수 독일인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

177) BayrOLG(Decision of the Bavarian Higher Regional Court), *NJW* 1994, 952.

178) 유럽 각국의 인종주의적 증오선동 규제에 관하여는 European Commission,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n Combating Certain Form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7 January 2014 참조

형법의 제130조 제1항은 일정한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출신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 특정 인구집단(segments of the population)이나 또는 이러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하여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며, 제2항은 그러한 선동을 담은 문서를 배포, 공연히 게시, 전시 혹은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 공급하거나(제1호) 라디오, 미디어, 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유포하는(제2호)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¹⁷⁹⁾

(4) 제노사이드 범죄의 부인 혹은 정당화¹⁸⁰⁾

형법 제130조 제3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사회주의(나치) 체제에 의해 행해진 제노사이드 범죄를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공공 평화를 교란하는 방식으로 승인, 부인하거나 그 해악을 축소 해석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30조 제4항은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국가사회주의의 자의적 무력 지배를 승인, 찬양 또는 정당화함으로써 희생자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공공 평화를 교란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조항의 취지는 제노사이드 및 반인도범죄 행위가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이 그 피해 집단에 대한 증오와 폭력 선동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¹⁸¹⁾

3. 캐나다

캐나다는 ① 괴롭힘, ②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출판 및 게시, ③ 차별금지 사유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 인간 존엄

179)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4(9), 2015, 57쪽 참조.

180) 홀로코스트 부인과 관련된 형법 제130조 3-4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윤,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35(2), 2015, 233-236쪽; 이재승,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11(1), 2008, 234-237쪽 참조.

181) BVerfGE 90, 241: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홀로코스트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실시하였다.

성을 침해하는 표현에 대해 연방 및 주 차원의 인권법상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으며, ④ 증오선동 및 고의적 증오 고무와 제노사이드 옹호 고무를 형법상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 대표적인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었던 연방 차원의 캐나다 인권법 제13조는 2013년 6월 보수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의회에서 C-304 법안¹⁸²⁾에 의해 폐지되었다. 제13조는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제3조 제1항)를 이유로 전화나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증오 또는 경멸에 노출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여,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 바 있다.¹⁸³⁾

(1) 괴롭힘

캐나다 연방 인권법¹⁸⁴⁾ 제14조는 a)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재화, 서비스, 시설, 숙소의 제공, b) 상업용 부지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제공, c) 고용 관련 사안에서,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제3조 제1항)를 이유로 어떤 개인을 괴롭히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인권위원회가 발간한 안내서는 차별금지 사유에 기반해, ① 언어적으로 불쾌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②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③ 상대방의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성적지향 등에 대해 원치 않는 발언 또는 농담을 하는 행위 등의 언어적 괴롭힘의 예를 신체적 괴롭힘의 예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¹⁸⁵⁾

182) 캐나다 인권법 제13조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보수당 의원 Brian Storseth가 발의한 법안이다.

183) 인권법이 제정된 1977년에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동 응답 전화 메시지를 통한 혐오표현 전파를 규제하기 위해 제13조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전달되는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 폐지된 제13조의 원문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section-13-20021231.html>, 최종검색일: 2016.11.21.

184)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정식명칭: R.S.C., 1985, c. H-6 An Act to extend the laws in Canada that proscribe discrimination.

185)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Your Guide to Understanding the Canada*

(2) 차별 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출판 및 게시

캐나다 연방인권법 제12조(a)¹⁸⁶⁾는 차별행위 또는 그와 같은 차별행위를 할 의도를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재현물 (representation)을 출판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여기에서 표현 또는 암시의 대상이 되는 차별행위는 인권법 제5조-11조, 14조에 규정된 바,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를 이유로, 재화·서비스·시설·숙소의 이용, 고용기회 및 업무관계, 임금 등의 영역에서의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 등이다. 캐나다 의회 연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법 제12조는 새로운 종류의 차별행위를 추가한다기보다 이미 규정된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의 출판 혹은 게시를 금지하는 것이다.¹⁸⁷⁾

주 차원의 인권법들¹⁸⁸⁾에도 차별 혹은 차별의도를 나타내는 재현물의 출판, 발간 혹은 게시를 차별행위의 일환으로서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스케츄완(Saskatchewan) 주 인권법¹⁸⁹⁾ 제14조 제1항(a)는 종교, 신앙, 혼인상태, 가족상태,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피부색, 혈통, 국적, 출생지, 인종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인종, 공적부조의 수급 여부, 성별 정체성(제2조 제1항)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n Human Rights Act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your-guide-understanding-canadian-human-rights-act-page1>, 최종검색일: 2016.11.12.)

186) 12 (Publication of discriminatory notices, etc.)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to publish or display before the public or to cause to be published or displayed before the public any notice, sign, symbol, emblem or other representation that (a) expresses or implies discrimination or an intention to discriminate, [...]

187) Julian Walker, *Canadian Anti-hate Laws and Freedom of Expression* (Background Paper), Library of Parliament, 2010 (Revised 2013), 15쪽.

188) 캐나다는 연방 인권법 이외에, 각 주별로 별도의 인권법(차별금지법)이 있다. 앨버타, 브리티시, 콜럼비아, 마니토바, 뉴 브런스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북서부 영토, 노바 스코티아, 누나부트,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퀘벡, 사스케츄완, 유콘 등.

189) The Saskatchewan Human Rights Code. 정식명칭: Chapter S-24.1, An Act respecting the Saskatchewan Code of Human Rights and its Administration (August 7, 1979)

향유를 박탈, 약화 또는 제약할 경향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상당한, 공지, 표지, 상징, 기호, 기사, 진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자신이 소유, 통제, 배포, 혹은 판매하는 특정 부지 또는 건물, 신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기타의 방송수단, 각종 인쇄방법 및 출판, 또는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 발간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인권법¹⁹⁰⁾ 제7조 제1항(a)도 개인이나 집단의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지, 종교, 혼인상태, 가족상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표현, 연령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차별의도를 나타내는 진술, 출판물, 공지, 표지, 상징, 기호 또는 기타 재현물을 출판, 발간, 게시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온타리오 주 인권법¹⁹¹⁾ 제13조 제1항도 차별의도를 나타내는 공지, 표지, 상징, 기호 또는 기타 재현물을 출판 또는 공개 게시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행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앨버타 주 인권법 제3조 제1항(a) 역시 인종, 종교, 피부색, 젠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연령, 혈통, 출신지, 혼인상태, 소득원, 가족상태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차별 의도를 나타내는 진술, 출판물, 공지, 표지, 상징, 기호 또는 기타 재현물을 출판, 발간, 공개 게시하는 것, 혹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는 제13조 제1항 위반의 예로, 주택 임대인이 주택문제에 대한 주민회의에서 ‘이민자들에게 집을 임대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버튼을 배포한 사례를 든다.¹⁹²⁾

앨버타 주 인권법¹⁹³⁾ 제3조 제1항(a)도 유사한 규정을 담고 있다. 앨버타 인권위원회(Human Rights Panel)의 전신인 앨버타 조사위원회(Alberta Board of Inquiry)는 농장 앞에 “KKK 백인 파워”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나치 문양이 있는 깃발을 게양한 행위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¹⁹⁴⁾

190) Human Rights Code [Revised Statutes of British Columbia 1996], Chapter 210.

191) Human Rights Code [Revised Statutes of Ontario, 1990], Chapter H.19.

192)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Announced intention to discriminate’, (<http://www.ohrc.on.ca/en/part-ii-interpretation-and-application/announced-intention-discriminate>, 최종검색일: 2016.11.20.)

193) Alberta Human Rights Act [Revised Statutes of Alberta 2000], Chapter A-25.5.

퀘벡 주 인권법¹⁹⁵⁾ 제11조 역시 차별을 수반하는 공지, 상징 또는 표지를 배포, 출판, 공개 게시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하대금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상 차별 혹은 차별의도를 나타내는 출판 혹은 게시를 금지하는 규정들을 예시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열거되지 않는 주 인권법들에서도 유사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3) 차별금지 사유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

캐나다 사스캐츠완 주 인권법 제14조 제1항(b)는 제2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종교, 신앙, 혼인상태, 가족상태,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피부색, 혈통, 국적, 출생지, 인종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인종, 공적부조의 수급 여부, 성별정체성)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공지, 표지, 상징, 기호, 기사, 진술, 또는 기타 재현물을 자신이 소유, 통제, 배포, 혹은 판매하는 특정 부지 또는 건물, 신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기타 방송매체, 각종 인쇄방법 및 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해, 발간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차별행위의 일환으로서, 인권위원장은 당사자 간 문제에 대한 합의를 조정하거나(제29조 제5항), 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위법행위 중지 및 위법행위로 인한 인간 존엄의 손상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 법원의 명령(제31조 3-4항)을 구할 수 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인권법 제7조 제1항(b)도 개인이나 집단의 인종, 피부색, 혈통, 출신지, 종교, 혼인상태, 가족상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또는 표현, 연령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증오 또는 경멸에 노출시킬 개연성이 있는 진술, 출판물, 공지, 표지, 상징, 기호 또는 기타 재현물을 출판, 발간, 게시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 인권위원회는 이 조항은 단순히 불쾌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차별 및 기타 해악적 효과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혐오, 반감, 거부를 일으킬 정도의 표현을 담은 인쇄물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요건에 해당할 만한 출판물의 예로, 어떤 집단을

194) *Kane v. Church of Jesus Christ Christian-Aryan Nations* (1992), 18 C.H.R.R. D/1268, Alberta Board of Inquiry.

195) Charter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Chapter C-12.

아동학대, 아동성애, ‘아동을 제물로 삼는 일탈적 범죄자’ 등으로 매도하는 표현, 어떤 집단을 ‘심각한 위협’,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품고 있는 자들, 서구 문명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하고 있는 자들, 혹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범죄자, 폭력배’ 등으로 낙인찍는 등 사회 문제를 이들 구성원의 책임인양 비방하는 표현, ‘생존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존재’, ‘유전적으로 열등한 자’, ‘야수’, ‘인간 이하의 쓰레기’ 등으로 어떤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동물 또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묘사하는 표현 등을 들고 있다.¹⁹⁶⁾

앨버타 주 인권법 제3조 제1항(b) 역시 인종, 종교, 피부색, 젠더,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연령, 혈통, 출신지, 혼인상태, 소득원, 가족상태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을 증오 또는 경멸을 받게 할 개연성이 있는 진술, 출판물, 공지, 표지, 상징, 기호 또는 기타 재현물을 출판, 발간, 공개 게시하는 것, 혹은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권법에서는 발화자의 처벌이 아니라 차별 예방에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차별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 손해배상을 주된 구제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혐오표현을 판단하는 데 있어 ‘해당 표현의 발화자가 증오나 차별행위를 선동하고자 하는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무관’하며, ‘핵심은 차별을 감소, 철폐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해당 표현이 청자에게 미칠 개연성 있는 효과를 판단’한다.¹⁹⁷⁾ 브리티시 콜럼비아 인권법원은 해당 표현의 해악은 맥락을 고려해 판단되어야 한다며, 표적집단의 취약성, 기존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정도, 표현의 내용과 톤, 출판물의 사회적, 역사적 배경, 출판물에 대한 신뢰도, 출판물이 대중에게 보여지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정황적 요소들로 들었다.¹⁹⁸⁾

(4) 증오선동 및 고무

196) ‘What publications are discrimination’, BC Human Rights Tribunal (<http://www.bchrt.bc.ca/human-rights-duties/publications.htm#1>, 최종검색일: 2016.11.20.)

197) *Saskatchewan (H.R.C.) v. Whatcott*, [2013] 1 R.C.S. 증오선동 규제를 포함하는 사스캐츠완 주 인권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심사.

198) ‘What publications are discrimination’, BC Human Rights Tribunal (<http://www.bchrt.bc.ca/human-rights-duties/publications.htm#1>, 최종검색일: 2016.11.20.)

캐나다 형법은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구별되는 집단(제318조 제4항)에 대하여, ① 공개적으로 진술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고 그러한 선동이 평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제319조 제1항 ‘public incitement of hatred’)와 ② 사적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 진술을 전달해 증오를 고의적으로 고무하는 행위(제319조 제2항)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약식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¹⁹⁹⁾

증오선동을 금지하는 규정도 별도로 있다. 캐나다 인권법 제12조(b)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선동하거나 그러하도록 계획된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표현물을 공개적으로 출판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한다.²⁰⁰⁾

주 차원에서도 온타리오 주 인권법 제13조 제1항은 차별행위를 선동하는 공지, 표지, 상징, 기호 또는 기타 재현물을 출판 또는 공개 전시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행위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5) 제노사이드 옹호 및 고무

캐나다는 특정 역사적 사실 언급 없이 제노사이드 범죄를 옹호, 고무, 정당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 제318조는 제노사이드를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연령,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식별가능한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199) Canadian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캐나다 형법 제318-319조;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60쪽; *R. v. Keegstra*, [1990] 3 S.C.R. (Dickson, C.J.) “소수자집단에 대한 고의적 증오의 고무를 처벌하는 캐나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를 다룬 이 사건에서 캐나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의 도입 배경, 목적, 증오선동의 해악성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있어 미국 대법원 법리의 적용 여부,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항 등 국제인권규범, 비례성 원칙 부합 여부 등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심사하였고, 다수 의견으로 헌법(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합치 결정”

200) 12.(Publication of discriminatory notices, etc.) It is a discriminatory practice to publish or display before the public or to cause to be published or displayed before the public any notice, sign, symbol, emblem or other representation that (a) [...] (b) incites or is calculated to incite others to discriminate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그 집단의 생존 조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제노사이드를 옹호 또는 고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²⁰¹⁾ 한편, 이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승인을 기소의 요건으로 하였다.

4. 일본

일본은 2015년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 2016년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채택하여, 출신 민족 및 국적 등에 기반한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오사카시의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와 일본 의회가 채택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의 내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해당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혹은 폭력을 조장 선동하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해당집단에 속한 개인을 모욕, 비방, 중상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이 그 규제대상이다. 이는 현재 일본에서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양상,²⁰²⁾ 즉,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이 많은 공개 장소에서 행해지되, 재일조선인/한국인과 그 장소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듣게 되는 불특정 다수 모두가 그 혐오표현의 청자가 되는 그러한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 헤이트스피치 억제법

2016년 5월 일본 의회(참의원, 중의원)는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을 채택하였다. 이 법률은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해 ‘차별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신체·명예·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알리거나’, 이들을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일본 외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언동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언동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기하였고, 상담체제의 정비,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실시 등을 기본 시책의

201) Criminal Code (R.S.C., 1985, c. C-46); 제318조(Advocating genocide).

202) 일본 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해서는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1장 참조.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²⁰³⁾

일본 오사카시는 2016년 1월 「헤이트스피치의 대처에 관한 조례」를 채택하였다.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이 조례는 ① 인종 또는 민족에 관한 특정 속성을 가지는 개인 또는 집단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② 이들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③ 이들에 대한 증오 혹은 차별의식 또는 폭력을 부추기는 것 중 하나를 목적으로 추구하며, 표현의 내용 및 형식에 있어 ① 상당한 정도로 모멸하거나 비방중상하는 것, ②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③ 불특정 다수가 표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행해지는 것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혐오표현을 정의하였다. 또한 표현활동은 ① 표현 그 자체뿐 아니라, ② 표현의 내용을 기록한 인쇄물, 디스크 및 그 외의 물건의 판매, 배포, 반포 또는 상영, ③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그 외 표현물의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오사카시의 동 조례는 학자,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헤이트스피치 사안에 대해 조사, 심의하여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고, 헤이트스피치 억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표현을 행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였다.

(3) 혐오표현 관련 판례

1) 재특회의 조선제일초급학교의 '가두선전 금지 등 청구사건'

우익단체,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이하 "재특회")는 2009-2010년 세 차례에 걸쳐 교토 제1조선 초급학교 앞에서 조선학교와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일본에서 내쫓아라', '때려 부수자', '비열, 흉악하다', '바퀴벌레, 구더기, 한반도로 돌아가라' 등 혐오표현을 동반한 시위를 하였다. 이에 대해 2010년 6월 28일 학교법인 조선교토학원은 교토지방법원에 재특

203) 류지성,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 일본 오사카시의 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법제』 672, 2016, 26-50쪽, 36-45쪽.

회의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교토지방법원은 2013년 10월 7일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특회 측에 학교 주변 반경 200m 이내 가두선전금지과 1,225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교토지방법원은 피고인 재특회가 시위 중 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발언은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철폐협약상의 ‘인종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하였고 인종차별을 동기로 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무형 손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보아, 무형 손해의 금전 평가에서도 고액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²⁰⁴⁾ 재특회 측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고, 오사카 고등법원은 2014년 7월 8일 재특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재특회에 학교 반경 200m 내에서 시위를 중단하고 1,200만 엔(약 1억 1,932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고등법원의 모리히로시(森宏司) 재판장은 이날 재판에서 “재일조선인을 증오, 멸시하는 중대한 발언은 차별의식을 세상에 주장하는 의도로, 공익 목적은 없다”고 판시했다.²⁰⁵⁾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014년 12월 10일 재특회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을 확정했다.²⁰⁶⁾

2) 재특회의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과 전 서기장에 대한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특회는 도쿠시마현 교직원조합이 조선학교에 기부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가 당시 서기장이었던 여성에게 ‘조선의 개’, ‘매국노’ 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이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1심인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2015년 3월 조합 업무 방해와 전 서기장에 대한 위자료 등 재특회에 총231만 엔의 배상을 명령했다. 2심 다카마쓰 고등법원은 2016년 4월 ‘재특회가 재일조선인 지원자를 위축시키려 했다. 이는 인종차별적 발상에 근거한 행위로,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며 배상액을 436만 엔으로 늘렸다. 2016년 11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특회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²⁰⁷⁾

204)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2014, 108-115쪽.

205) “日,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차별... 일본 재특회 배상 명령”, 『CBS노컷뉴스』, 2014.7.8. (<http://www.nocutnews.co.kr/news/4055316>, 최종검색일: 2016.11.12.)

206) “일본 대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 상고 기각”, 『연합뉴스』, 2014.12.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0/0200000000AKR20141210159900073.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11.12.)

3) 재특회의 재일 조선인 이신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특회와 재특회의 전임 대표 사쿠라이 마코토는 2013년 재일 조선인 이신혜에 대해 온라인과 길거리에서 반복적인 언어적 공격을 통해 모욕하고 비방하였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2016년 9월 27일 이러한 언어적 공격은 악의적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민족 차별을 조장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재특회와 사쿠라이 마코토 전 대표에게 이신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77만 엔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²⁰⁸⁾

5. 영국

영국에서는 평등법의 괴롭힘 조항을 통해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과 관련한 언어적 괴롭힘을 차별행위로서 규제하며, 증오선동은 공공질서법을 통해 처벌한다.

(1) 차별적 괴롭힘

영국의 평등법²⁰⁹⁾은 보호되는 인적 속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멸시적이거나 굴욕적이거나 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있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괴롭힘(harassment)으로 규정한다.(제26조) 여기서 보호되는 인적

207) “일본 법원, 혐한 단체에 48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 『경향신문』, 2016.1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1749001&code=970203, 최종검색일: 2016.11.12.); “日 대법원, 재특회 상고 기각, 배상확정 ...폭언 당한 여성 ‘승소’”, 『교도통신』, 2016.11.1.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11/148337.html, 최종검색일: 2016.11.12.)

208) “Zaitokukai ordered to pay damages for defaming Korean resident of Japan”, *The Japan Times*, 2016.9.27. (http://www.japantimes.co.jp/news/2016/09/27/national/crime-legal/zaitokukai-ordered-pay-damages-defaming-korean-resident-japan/#.WGKZn_mLSUk, 최종검색일: 2016.11.21.)

209) Equality Act 2010. 영국의 평등법상 괴롭힘(harassment)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심재진, “영국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제”, 『노동법논총』 25, 2012, 45-78, 58-64쪽 참조.

속성은 연령, 장애, 성전환, 인종, 종교 또는 신앙, 성별, 성적지향이다. 평등법 해설은 면대면, 편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거나, 특정 사람을 놀리고 약 올리고 못살게 구는 등의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다.

(2) 증오선동

영국의 공공질서법²¹⁰⁾ 제3부는 피부색, 인종, 국적, 출신 국가나 민족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오·고무의 고의성이 있거나 모든 정황상 증오가 고취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① 위협적, 폭력적 또는 모욕적 언어나 행동을 사용하거나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 ② 위협적, 욕설적 또는 모욕적인 문서를 출판 또는 배포하는 행위, ③ 위협적, 폭력적, 또는 모욕적 언어나 행동이 포함된 연극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위, ④ 그러한 시각 이미지나 소리의 기록을 배포, 상영 또는 재생하는 행위, 방송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단, 행위자가 위협적, 폭력적, 모욕적인 속성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공공질서법은 「2006년 인종 및 종교 관련 증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에 따라 종교적 사유에 관한 증오선동죄(제3A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2008년 제정된 「형사정의와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74조에 따라 성적지향 관련 증오선동죄가 추가되었다. 종교 및 성적지향 관련 증오선동죄에 관한 제3A부는 인종적 증오선동과 달리 위협적 표현 행위만을 금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해 종교 혹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의 해석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제29J조는 특정 종교나 기타 신념 체계와 그것을 따르는 이들의 가치관이나 관습에 대한 토론, 비판, 반감·싫어함·조롱·모욕의 표현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님을, 제29JA조는 성적 행위나 관습에 대한 토론이나 비판, 그러한 행위나 관습을 삼가거나 수정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지향과 관련해 위협적이거나 증오선동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10) Public Order Act 1986.

III. 중간결론

외국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들을 유형에 따라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 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위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규제의 공통적인 국제인권법적 근거는 차별금지법과 법의 평등한 보호, 그리고 인간 존엄의 보호이다. 국제인권법의 가장 토대가 되는 규범인 차별금지는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교육, 고용, 재화 및 용역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그러한 속성과 관련하여 인간 존엄을 공격받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역시 국가에 요구한다. 이에 자유권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장애인권리위원회 등 유엔인권조약기구들은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혐오표현이 보고되는 경우 법적 규제 및 교육 등의 대책 강구를 그 국가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적 규제의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제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장 적절한 규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접근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과 관련해 국제인권법과 외국의 입법례 검토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한편, 각 규제 유형별로 표현을 전달하는 언어와 매체수단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은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포함되며, 혐오표현은 언어적 형태의 괴롭힘에 속한다. 차별금지법에서 괴롭힘 금지는 가해자 처벌보다는 피해의 중지, 배상 등 피해자 개인 혹은 집단의 피해로부터의 회복, 재발의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괴롭힘이 차별의 일환으로서 처음 포섭되게 된 맥락은 괴롭힘이 업무 혹은 학업의 수행을 저해함으로써 차별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괴롭힘의 범위를 일정한 공간 혹은 영역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괴롭힘이 발생하는 맥락과 양상, 그리고 괴롭힘 방지를 위한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차별·혐오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출판 및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 역시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이미 규정된 차별행위를 암시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물의 출판 및 게시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범주의 차별행위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치 문양을 통한 유대인 및 소수자 차별 암시, ‘백인 전용’ 등의 표지 등이 그와 같은 표현물의 예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외국의 입법 사례 중에서는 캐나다의 연방 및 각 주별 인권법에서 관련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물의 출판 및 게시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지, 혹은 차별의 의도나 효과를 나타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인지, 각각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에 속하는 개인을 공개적으로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규정은 국제인권법의 기본 가치이자 원칙인 인간존엄과 차별금지, 법의 평등한 보호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독일은 형법에, 캐나다는 각 주의 인권법(차별금지법)에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공통적인 것은 단지 불쾌한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상당한 표현들을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즉, 독일은 경멸, 악의적 중상 혹은 명예훼손적인 표현으로서, 표적이 된 피해자(들)의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캐나다는 증오나 경멸을 당하게 할 개연성이 있는 표현을 금지한다. 하지만 규제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독일은 형법을 통한 발화자의 처벌과 이를 통한 사회적 교육효과를 기대한다면, 캐나다의 경우 인권법(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 손해배상을 주된 구제수단으로 한다.

넷째, 표적 집단이나 이에 속하는 개인들에 대해 증오를 고취, 선동하는 행위의 금지는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4조(a) 등에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캐나다, 일본 등은 증오선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럽국가들과 캐나다 등은 형법으로 증오선동을 규제하고 있고, 일본은 형사적 처벌을 수반하지 않는 혐오표현 금지의 공적 선언 및 교육, 홍보 등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단순히 표현의 형식만을 보았을 때는 공개적으로 멸시, 모욕, 위협하는 표현과 증오선동이 구분되지 않을 수 있고, 양자 모두 표적집단 혹은 개인의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멸시,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적집단 혹은 개인이 경험하는 피해에 초점을 둔다면, 증오선동 규제

는 비표적집단인 사람들 사이에서 표적집단 및 개인에 대한 증오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증오선동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형사범죄화하고 있기 때문에, 증오나 차별행위를 선동하고자 하는 고의성 혹은 그러한 효과에 대한 인지 유무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4장 혐오표현의 실태

I.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대상

혐오표현의 실태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만 15~59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혐오표현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되는 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²¹¹⁾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설문조사와 같이 인구비례 할당을 할 경우, 표적집단 중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각 표적집단별로 200명의 응답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그 외의 여성(이하 “기타여성”)과 주요 표적 집단 외의 집단으로서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 아닌 남성(이하 “기타남성”)의 총 5개 집단으로 구분된다.²¹²⁾ 수집된 응답 중 신뢰성이 낮은 응답을 제외하고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1,014건의 응답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211) 이하에서 ‘주요 표적집단’이라 하면 이상의 4개 집단을 의미하기로 한다.

212) 이하에서 ‘기타남성’은 성적 소수자가 아닌 비장애 선주민 남성, ‘기타여성’은 성적 소수자가 아닌 비장애 선주민 여성을 말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기타남성’으로 분류된 응답자들도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주로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집단으로 4개 집단을 선정하고 그 외의 남성 집단을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성적 소수자는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정체화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비장애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았다. 이주민 외의 성적 소수자, 장애인, 기타여성, 기타남성은 모두 선주민이다.

(2) 조사방법

이주민을 제외한 집단은 온라인 설문 조사 방법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온라인 조사는 SNS, 홈페이지 등에 설문조사 웹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면 응답자가 직접 링크에 접속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을 완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조사에 비하여 응답자의 익명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 비용 절감에 유리하고, 전화설문에 비하여서는 좀 더 많은 문항으로 설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응답자의 편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집단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디시인사이드, 클리앙, 오늘의유머, 보배드림 등 오픈형, 폐쇄형 커뮤니티의 각 게시판, 게임, 여행, 취미, 생활, 지역모임 등을 주제로 하는 네이버 및 다음 카페, 장애인 모임, 고등학생 모임, 한국 거주 외국인 모임, 한국어학당 모임, 유학생 모임 등의 페이스북 그룹, 트위터, 장애인, 청소년, 성적 소수자인권 지원 단체, 언론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이용자 또는 회원들의 설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주민 집단은 온라인을 통한 응답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설문과 대면 설문을 병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을 위하여 이주민 공동체, 이주민 인권 지원 단체, 각 대학교의 유학생회 등에 홈페이지나 단체 메일, SNS 등을 통한 홍보를 요청하였다. 대면 설문은 경기 지역의 이주민 인권 지원 단체 1곳,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외국인력지원센터 2곳, 서울 소재 대학교 1곳 등을 방문하여 실시하고 서울, 경남 지역 이주민 인권 지원 단체 2곳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면대면 설문은 설문지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2인이 직접 응답자를 면접하였다.

데이터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집단은 인구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할당을 실시하였다. 다만 50대의 응답이 적어 각 집단별로 50대 연령층이 과소표집되었다. 장애인, 이주민 집단은 전체 응답자 수가 적어서 할당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집단이 과대표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응답자에게는 편의점 상품권을 답례로 제공하였다. 온라인 조사에서의 중복 응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기에서 1번만 응답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13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이다. 수집된 응답은 통계처리를 거쳐 SPSS 18.0으로 분석하였으며,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 Fisher의 정확한 검정,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3) 조사내용

혐오표현 및 증오범죄 등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문 초안을 만들고 자문회의 및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성적 소수자, 이주민, 기타여성, 기타남성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응답을 수거하였고 예비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수집된 의견을 설문지 수정에 반영하였다. 전체 응답자에 대한 공통 문항은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가해 경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이다. 혐오표현 경험으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 여부 및 빈도,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이 어디인지 또는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혐오표현의 대상과 내용,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혐오표현의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혐오표현 가해경험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가해 경험과 가해 이유를 질문하였다. 이에 더하여 표적집단에 대해서는 혐오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지식을 알아보았다.

2. 조사결과

(1) 응답자의 특성

분석 대상 설문은 총 1,014건²¹³⁾이다. 각 집단별 연령대, 지역, 성, 기타 인구학적 특성은 이하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²¹⁴⁾ 기타남성 및 기타여성은 50대를 제외하고는 2015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비례에 따른 연령별, 지역별 할당을 하였다.

213) 성적 소수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는 중복 집계되기 때문에 분석 대상 응답을 단순 합산한 값은 1,057건이 된다.

214) 각 분포표에서 빈도수의 합계가 n값과 다른 경우는 결측치가 있는 경우이다.

<표 3> 응답자의 특성: 기타남성

(n=228,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대	15-18	22	9.6	혼인 상태	미혼,비혼	140	61.4
	19-29	62	27.2		기혼,동거	82	36.0
	30-39	62	27.2		이혼,사별	6	2.6
	40-49	70	30.7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3	5.7
	50-59	12	5.3		100만원-200만원 미만	17	7.5
지역	수도권	115	50.4		200만원-300만원 미만	49	21.5
	비수도권	113	49.6		300만원-400만원 미만	41	18.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	1.8		400만원-500만원 미만	30	13.2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10.1	500만원-600만원 미만	21	9.2	
	대학 졸업 이하 ²¹⁵⁾	17	7.5	600만원 이상	57	25.0	
	대학교 졸업 이하	110	48.2	직업	공무원	18	7.9
	대학원 재학 이상	74	32.5		사무관리직	34	14.9
	기타	0	0.0		전문직	45	19.7
종교	불교	22	9.6		자영/서비스직	18	7.9
	개신교	33	14.5		기술/단순노무직	10	4.4
	천주교	32	14.0		농수산업	1	0.4
	이슬람교	1	0.4		군인	1	0.4
	힌두교	0	0.0		주부	0	0.0
	없음	139	61.0		학생	83	36.4
	기타	1	0.4		무직	15	6.6
				기타	3	1.3	

215) '대학'은 4년제 미만, '대학교'는 4년제 이상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표 4> 응답자의 특성: 기타여성

(n=208,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연령대	15-18	18	8.7	혼인 상태	미혼,비혼	114	54.8
	19-29	51	24.5		기혼,동거	84	40.4
	30-39	55	26.4		이혼,사별	10	4.8
	40-49	63	30.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6	2.9
	50-59	21	10.1		100만원-200만원 미만	28	13.6
지역	수도권	107	51.4		200만원-300만원 미만	36	17.5
	비수도권	101	48.6		300만원-400만원 미만	36	17.5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	1.4		400만원-500만원 미만	24	11.7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9.1	500만원-600만원 미만	28	13.6	
	대학 졸업 이하	19	9.1	600만원 이상	48	23.3	
	대학교 졸업 이하	108	51.9	직업	공무원	14	6.7
	대학원 재학 이상	58	27.9		사무관리직	31	14.9
	기타	1	0.5		전문직	35	16.8
종교	불교	21	10.1		자영/서비스직	20	9.6
	개신교	43	20.7		기술/단순노무직	2	1.0
	천주교	31	14.9		농수산업	0	0.0
	이슬람교	0	0.0		군인	0	0.0
	힌두교	0	0.0		주부	31	14.9
	없음	112	53.8		학생	59	28.4
	기타	1	0.5		무직	16	7.7
				기타	0	0.0	

우리나라의 인구통계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고 기타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여부 또는 성적 지향을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의 인구 분포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의 조사 결과를 통하여 인구 추정치를 산출한 후 성별, 연령별로 응답자의 수를 할당하였다. 2012년 미국 갤럽에서 수행한 LGBT 인구조사²¹⁶⁾에 따르면, 성적 소수자라고 응답한 비율

216) Gary J. Gates and Frank Newport, "Special Report: 3.4% of U.S. Adults Identifying as LGBT," Gallup, 2012.

은 <표 5>에서와 같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30대 미만에서 스스로를 성적 소수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3.3%, 여성의 3.6%가 성적 소수자라고 답하였다. 트랜스젠더의 비율 또한 연구마다 차이가 있는데, Gates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미국의 트랜스젠더 비율을 전체 인구의 0.3%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²¹⁷⁾

이상의 비율을 연령대별 주민등록인구에 적용하여 성적 소수자 인구를 추정한 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산출하였다. 50대는 응답자 수가 적어, 50대 응답자는 인구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이외의 기타 성별의 비율을 알기는 어렵다. 설문에서 수집된 기타 성별의 응답자 수가 많지 않으므로 성별을 기타로 표기한 응답은 모두 분석에 포함하고,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남성, 여성의 비율에서 기타 성별 응답자만큼의 비율을 감하였다. 분석 대상 성적 소수자 응답자의 특성은 <표 6>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표 5> 성적 소수자 인구 추정

연령대		15-18	19-29	30-39	40-49
주민등록인구(A)(명)		2,588,415	7,334,280	7,677,907	8,783,314
성적 소수자 추정 비율(B)(%)		6.4	6.4	3.2	3.2
성적 소수자 추정 인구(A×B)	명	165,659	469,394	245,693	281,066
	%	14.3	40.4	21.1	24.2

fy as LGBT”, 2012.10.18. (<http://www.gallup.com/poll/158066/special-report-adults-identify-lgbt.aspx>, 최종검색일: 2016.11.16.)

217) 이에 대해서는 Gary J. Gates,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he Williams Institute*, April 2011, 6쪽 (<https://escholarship.org/uc/item/09h684x2>, 최종검색일: 2016.11.16.) 참조.

<표 6> 응답자의 특성: 성적 소수자

(n=295,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115	39.0	장애 여부	있음	43	14.6
	여성	126	42.7		없음	252	85.4
	기타	30	10.2	혼인 상태	미혼,비혼	245	83.1
	트랜스젠더	24	8.1		기혼,동거	42	14.2
			이혼,사별		8	2.7	
연령대	15-18	40	13.6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2	7.5
	19-29	113	38.3		100만원-200만원 미만	65	22.2
	30-39	59	20.0		200만원-300만원 미만	58	19.8
	40-49	68	23.1		300만원-400만원 미만	48	16.4
	50-59	15	5.1		400만원-500만원 미만	27	9.2
지역	수도권	171	58.0		500만원-600만원 미만	25	8.5
	비수도권	124	42.0		600만원 이상	48	16.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0	3.4	직업	공무원	19	6.4
	고등학교 졸업 이하	52	17.6		사무관리직	35	11.9
	대학 졸업 이하	24	8.1		전문직	45	15.3
	대학교 졸업 이하	152	51.5		자영/서비스직	27	9.2
	대학원 재학 이상	56	19.0		기술/단순노무직	7	2.4
	기타	1	0.3		농수산업	0	0.0
종교	불교	25	8.5		군인	2	0.7
	개신교	26	8.8		주부	6	2.0
	천주교	45	15.3		학생	118	40.0
	이슬람교	0	0.0		무직	30	10.2
	힌두교	0	0.0		기타	6	2.0
	없음	196	66.4				
	기타	3	1.0				

장애인 응답자는 모두 200명이다. 연령별로는 20대가 많고 30대 이상이 적은 편이다. 성과 지역은 장애인 인구분포에 비하여 여성, 수도권 거주자가 과대표집되어 있다. 장애종류는 정신적 장애의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표 7> 응답자의 특성: 장애인

(n=200,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61	30.5	장애 종류	신체적	138	69.0
	여성	122	61.0		정신적	44	22.0
	기타	10	5.0		둘다	18	9.0
	트랜스젠더	7	3.5	혼인 상태	미혼,비혼	146	73.0
연령대	15-18	12	6.0		기혼,동거	48	24.0
	19-29	95	47.5		이혼,사별	6	3.0
	30-39	37	18.5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32	16.1
	40-49	43	21.5		100만원-200만원 미만	34	17.1
	50-59	13	6.5		200만원-300만원 미만	34	17.1
지역	수도권	135	67.5		300만원-400만원 미만	28	14.1
	비수도권	65	32.5		400만원-500만원 미만	24	12.1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1.0		500만원-600만원 미만	15	7.5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13.1	600만원 이상	32	16.1	
	대학 졸업 이하	24	12.1	직업	공무원	10	5.0
	대학교 졸업 이하	120	60.3		사무관리직	20	10.0
	대학원 재학 이상	26	13.1		전문직	38	19.0
	기타	1	.5		자영/서비스직	11	5.5
종교	불교	7	3.5		기술/단순노무직	1	0.5
	개신교	39	19.5		농수산업	0	0.0
	천주교	25	12.5		군인	2	1.0
	이슬람교	0	0.0		주부	7	3.5
	힌두교	0	0.0	학생	74	37.0	
	없음	126	63.0	무직	30	15.0	
	기타	3	1.5	기타	7	3.5	

이주민 응답자는 총 126명이다.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 분포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 연령별로는 등록 외국인 분포에 비하여 20대가 많고 50대가 적은 편이다. 이주민 조사는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하였고 대면 조사의 대부분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루어져,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응답자가 29.6%이고,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5년 이상 거주자가 좀 더 많다. 출신국가는 응답자의 88.1%가 아시아 지역이고 단일 국가로는 베트남 출신 응답자가 가장 많다. 그 외에 북미, 유럽, 아프리카 지역 출신 응답자가 11.9%를 차지한다.

<표 8> 응답자의 특성: 이주민

(n=126, 단위: 명, %)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52	41.3	월평균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22	18.3
	여성	70	55.6		100만원-200만원 미만	47	39.2
	기타	3	2.4		200만원-300만원 미만	28	23.3
	트랜스젠더	1	0.8		300만원-400만원 미만	10	8.3
연령대	15-18	2	1.6	국적	400만원-500만원 미만	3	2.5
	19-29	66	53.2		500만원-600만원 미만	3	2.5
	30-39	37	29.8		600만원 이상	7	5.8
	40-49	17	13.7		한국국적 취득	37	29.6
	50-59	2	1.6		한국국적 미취득	88	70.4
지역	수도권	103	81.7	한국 거주 기간	1년 미만	10	7.9
	비수도권	23	18.3		1년-3년 미만	26	20.6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9	7.2		3년-5년 미만	24	19.0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	37.6		5년-10년 미만	35	27.8
	대학 졸업 이하	28	22.4		10년 이상	30	23.8
	대학교 졸업 이하	27	21.6	한국에서 출생	1	0.8	
	대학원 재학 이상	14	11.2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종교	불교	45	35.7	출신 국가	아시아	베트남	29	23.0
	개신교	14	11.1			중국	19	15.1
	천주교	4	3.2			캄보디아	17	13.5
	이슬람교	11	8.7			네팔	15	11.9
	힌두교	11	8.7			우즈베키스탄	7	5.6
	없음	39	31.0			필리핀	3	2.4
	기타	2	1.6			일본	3	2.4
직업	공무원	1	0.8			미얀마	3	2.4
	사무관리직	13	10.3			말레이시아	3	2.4
	전문직	15	11.9			몽골	3	2.4
	자영/서비스직	5	4.0			타이완	2	1.6
	기술/단순노무직	36	28.6			스리랑카	2	1.6
	농수산업	5	4.0			파키스탄	2	1.6
	군인	0	0.0			타이	1	0.8
	주부	23	18.3		인도네시아	1	0.8	
	학생	22	17.5		방글라데시	1	0.8	
	무직	2	1.6		북미	미국	7	5.6
	기타	4	3.2			캐나다	1	0.8
장애 여부	있음	3	2.4		유럽	독일	2	1.6
	없음	123	97.5			러시아	1	0.8
혼인 상태	미혼,비혼	64	50.8	영국		1	0.8	
	기혼,동거	60	47.6	프랑스		1	0.8	
	이혼,사별	1	0.8	불가리아		1	0.8	
	기타	1	0.8	아프리카	짐바브웨	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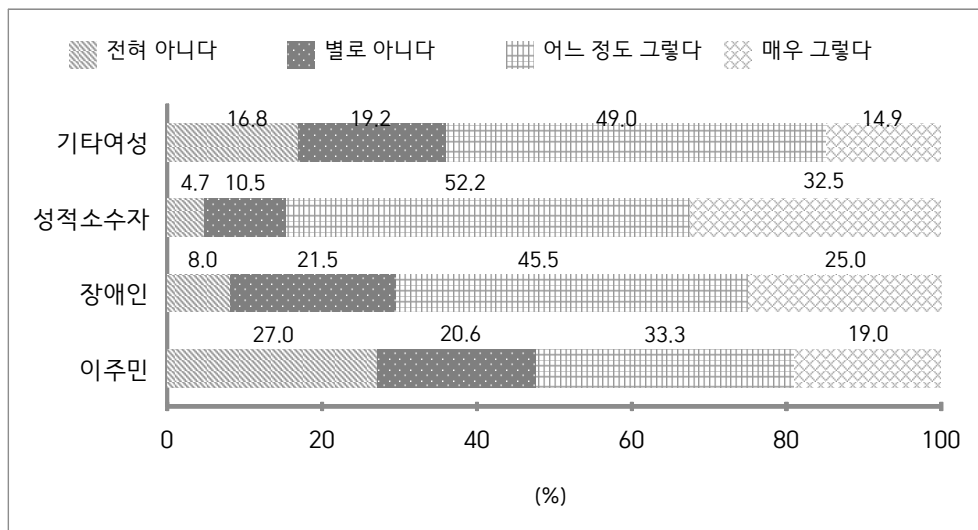
(2) 혐오에 대한 두려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주요 표적집단 응답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혐오의 표적이 되는 것의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다.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집단에게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또는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비난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증오범죄 피해의 두려움, 비난이나 차별 우려로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숨긴 경험을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대체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취지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비난 받을 두려움보다도 범죄 피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숨긴 경험은 좀 더 적었으나 성적 소수자 및 장애인 집단은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숨긴 경험도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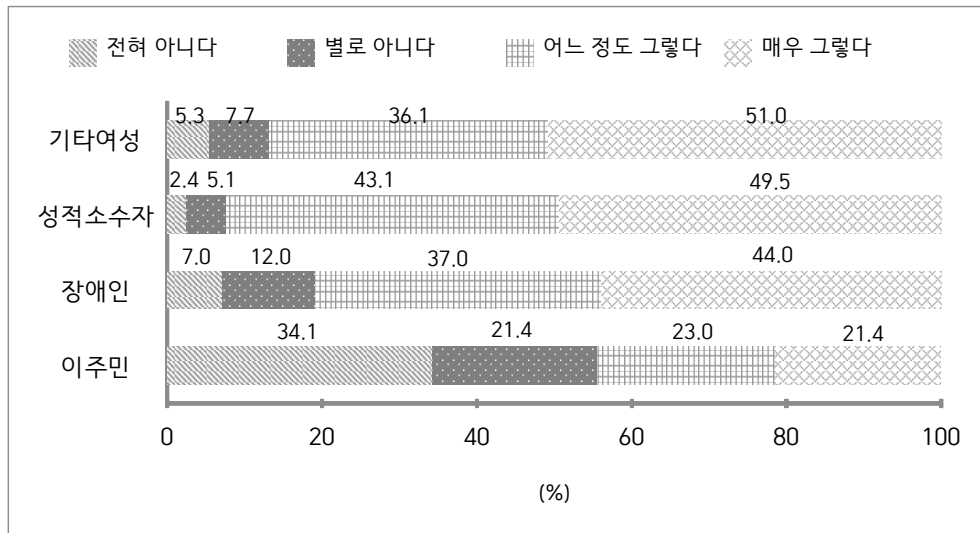
문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신이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움을 느낀다’는 항목에서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은 성적 소수자의 84.7%, 장애인의 70.5%, 기타여성의 63.9%, 이주민의 52.3%로, 모든 집단에서 비난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특히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성적 소수자라는 데 대한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3>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1): 비난의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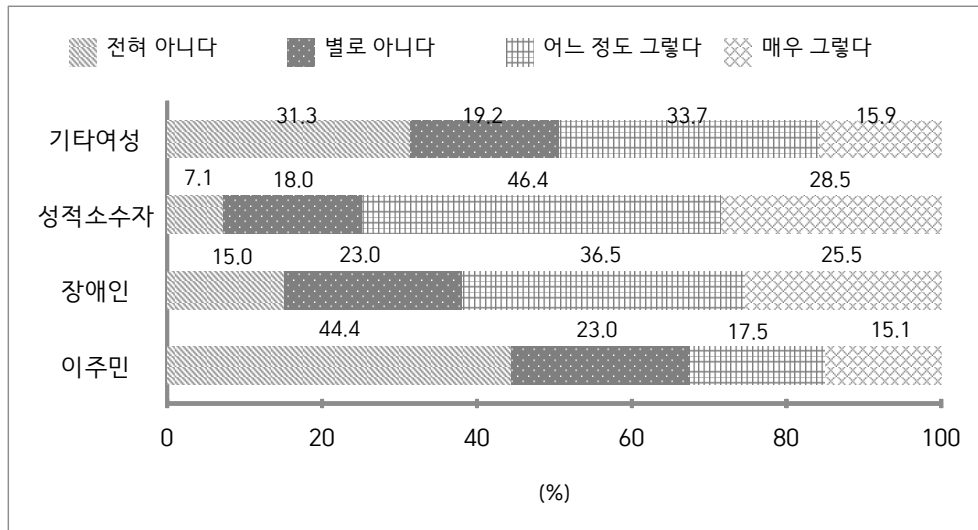
이주민 집단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비난의 두려움보다 증오범죄 피해의 우려가 오히려 더 높았다.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하여 평소 누군가에게 욕을 듣거나 위협이나 폭행을 당하는 등 범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성적 소수자의 92.6%, 기타여성의 87.1%, 장애인의 81.0%가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정체성으로 인한 범죄 피해의 우려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타여성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이주민 집단의 두려움 정도는 다른 집단보다 낮지만, 이주민의 44.4%가 ‘어느 정

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주민 집단 역시 범죄 피해 우려의 정도가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4>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2): 범죄 피해의 두려움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혐오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방어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정체성 때문에 비난이나 차별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온라인에서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하여보면, 성적 소수자 74.9%, 장애인 62.0%로 절반 이상 이었고, 기타여성은 49.6%, 이주민의 32.6%가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즉 성적 소수자와 장애인 집단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기타여성 집단에서도 절반 정도가 그와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은 약 3분의 1 정도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주민의 경우 온라인 이용행태의 특성상 이주민 커뮤니티나 지인 집단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더 많을 것임을 감안하면, 한국인이 많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긴 경험이 적지 않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림 5>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3): 정체성을 숨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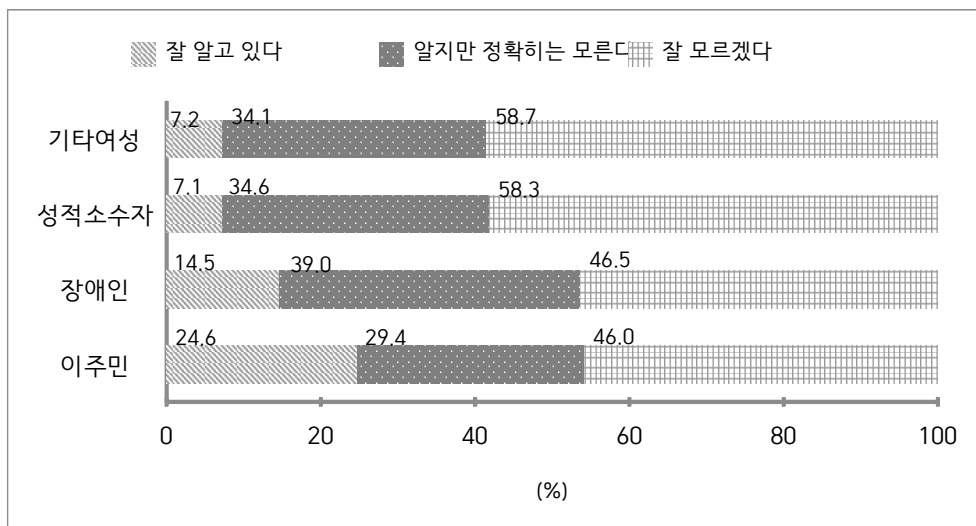
(3)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지식

우리사회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최근이어서 혐오표현의 정의나 법적 평가,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혐오표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혐오표현 대응 지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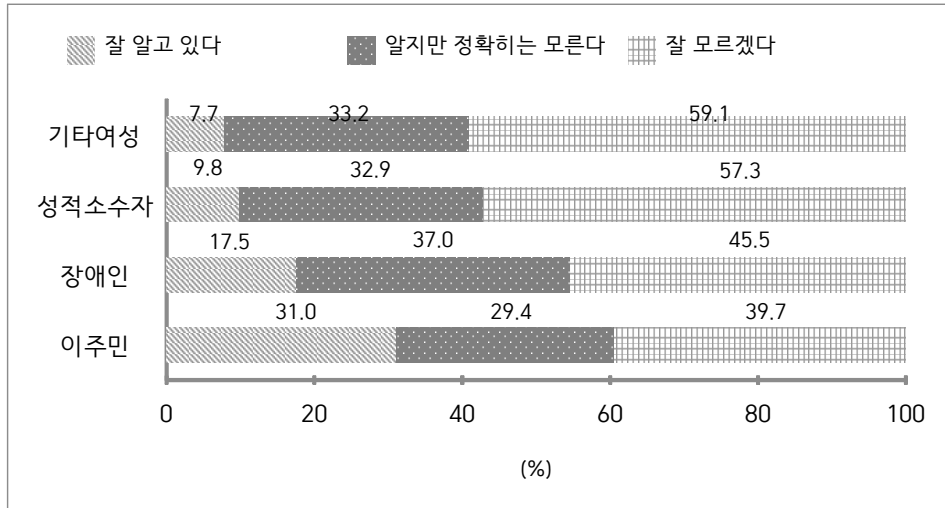
그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과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지식 정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모른다' 또는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기타여성과 성적소수자 집단에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에 미치지 못하였고, 장애인 집단의 경우에도 15% 내외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하여, 대체로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의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24.6%,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31.0%로 다른 집단

보다는 높았으나, 대응 지식에 대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집단 간의 대응 지식 차이를 도출해낼 수는 없다. 이주민 집단에서는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이 혐오표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다른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응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주민은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하였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피해일 경우 대응하거나 대응할 방안을 찾는 것을 미리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림 6>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여부



<그림 7>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여부

(4) 혐오표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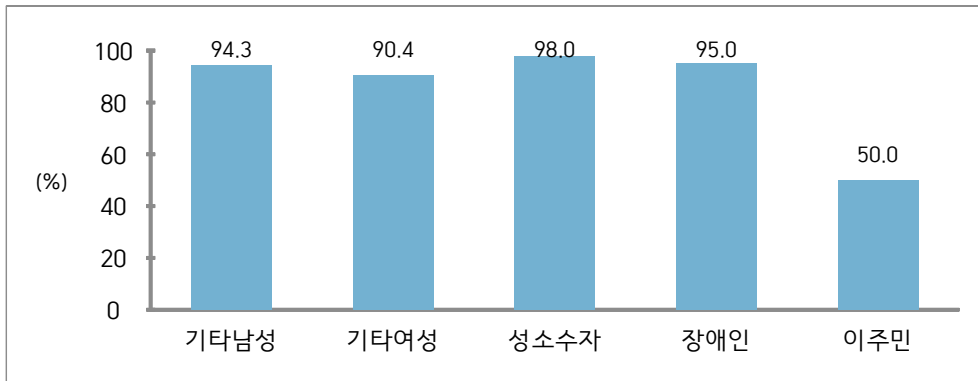
1) 온라인 혐오표현

① 혐오표현 경험 여부

온라인²¹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을 살펴보았다. 먼저 혐오표현의 정의를 제시하고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질문하였다. 혐오표현의 정의는 혐오표현이 ①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② 혐오가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이유로 한다는 점, ③ 비난, 멸시, 위협하는 표현, 차별이나 폭력을 당연하게 느끼도록 하는 표현,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사회적 소수자의 예시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소수 종교 신도를 들었다. 그리고 혐오표현의 사례로서, 한국인을 오랫동안 차별한 역사를 갖고 있는 어떤 나라를 가정하고 그 나라에서 한국인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비난하거나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혐오표현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18) 이하에서 '온라인'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에 연결하는 경우로서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채팅, 게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포함한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을 제외한 집단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림 8>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이주민 집단은 절반의 응답자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절반이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적은 수치가 아니다. 더불어 이주민의 경험은 온라인 이용 시간의 차이, 온라인 이용 특성, 한국어로 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집단의 온라인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3.2~4.4시간인 데 비하여 이주민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4시간으로 가장 낮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나 소속된 커뮤니티, 관심 분야 등에 따라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에 접근할 가능성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이주민의 경험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주민 응답 중에서 변수들을 통제하고 보았을 때 집단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한국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이주민 응답자 중에서는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이 높게 나타나($p=0.006$), 한국 거주 10년 이상인 이주민 중 80.0%가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이 있었다. 직업별로는 무직(0.0%), 기술/단순노무직(27.8%)의 혐오표현 경험이 적은 반면 사무관리직(69.2%), 전문직(80.0%)에서는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 등 집단별 편차가 컸다($p=0.007$). 소득에 따라서도 월평균가구소득 300만 원 미만인 집단보다 300만 원 이상인 집단에서 대체로 혐오표현 경험률이 높았다($p=0.029$).

<표 9> 이주민의 한국 거주 기간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n=126)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한국에서 출생
%	40.0	34.6	37.5	45.7	80.0	100.0

<표 10> 이주민의 직업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n=126)

직업	공무원	사무관 리직	전문직	자영/서 비스직	기술/단순 노무직	농수산 업	주부	학생	무직	기타
%	0.0	69.2	80.0	40.0	27.8	40.0	47.8	63.6	0.0	75.0

<표 11> 이주민의 월평균가구소득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n=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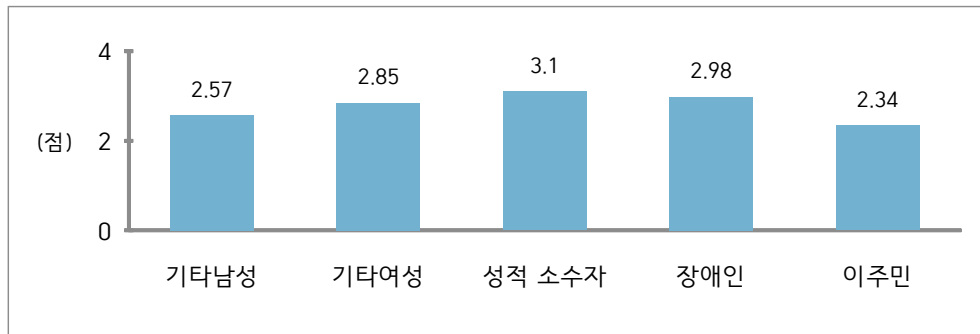
소득	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600만 원 미만	600만원 이상
%	27.3	44.7	53.6	80.0	66.7	66.7	85.7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이주민 온라인 이용자 중에서도 이용하는 한국어 사이트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집단, 한국어에 좀 더 능숙한 집단에서는 혐오표현 경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주민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혐오표현 경험이 적은 것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주민의 온라인 이용 경험과 한국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② 혐오표현 경험 빈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들이 얼마나 자주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드물게 경험’, ‘가끔 경험’, ‘자주 경험’, ‘항상 경험’의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집단별 평균값은 다음 그림과 같다. ‘드물게’가 1점, ‘항상’이 4점이다. 이주민을 제외하면, 기타남성 집단보다 표적집단에서 혐오표현 경험 빈도가 더 높았다.(p=0.000) 빈도가 가장 낮은 이주민 집단의 수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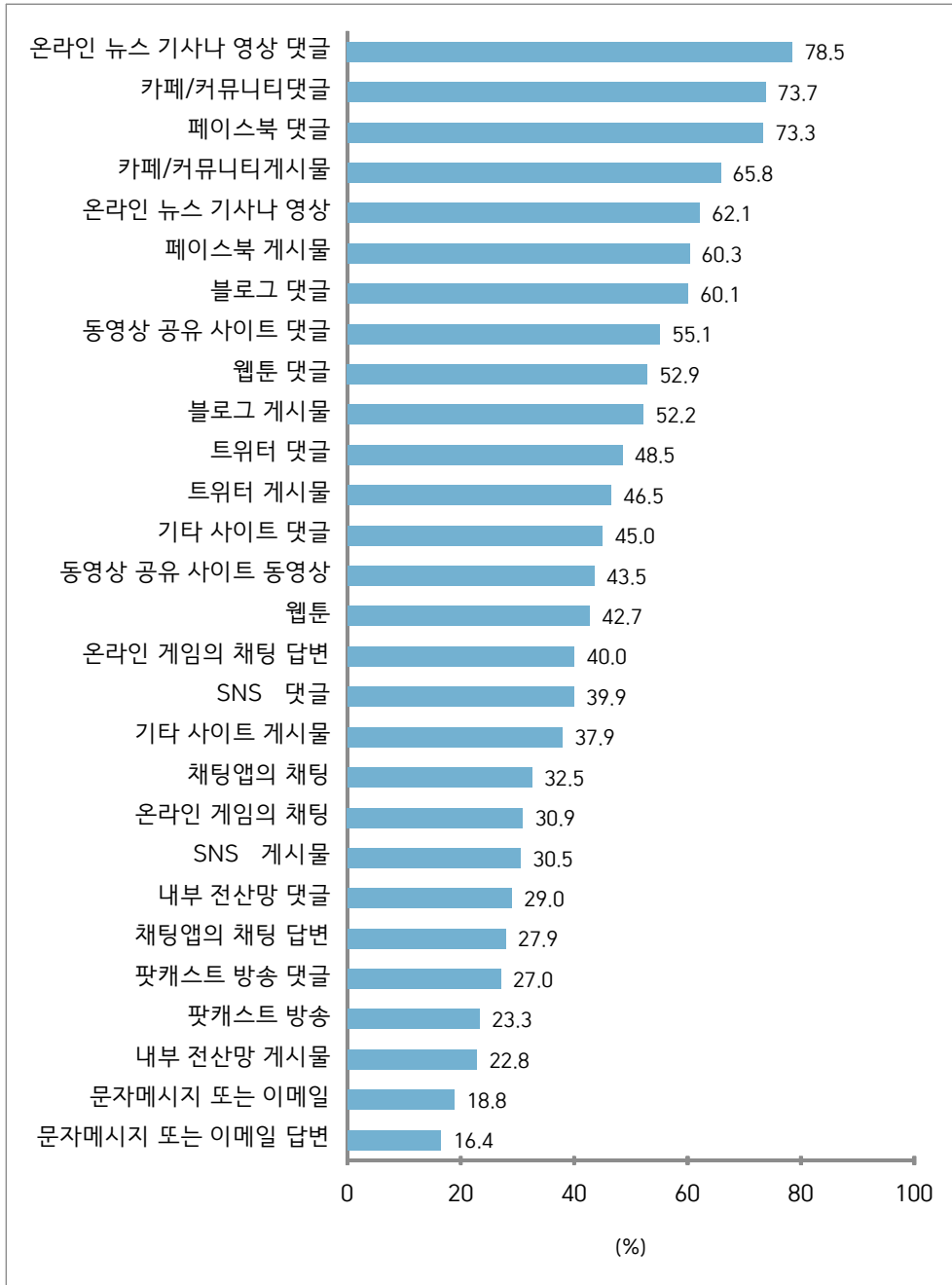
2.34로 '가끔'보다 더 많이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 소수자는 '자주'보다 다소 많이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3.10).



<그림 9>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 빈도

③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혐오표현 경험자들이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았다. 채팅 앱과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에서 본래의 게시물보다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시된 14가지 유형 중에서는 신문, 방송, 포털 등의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본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의 댓글 73.7%, 페이스북의 댓글 73.3% 순이었다. 혐오표현 경험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은 온라인 뉴스 기사나 영상 사이트,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 페이스북, 개인이나 단체의 블로그, 유튜브나 네이버캐스트 등 동영상 공유 사이트, 웹툰 등으로, 혐오표현이 일부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곳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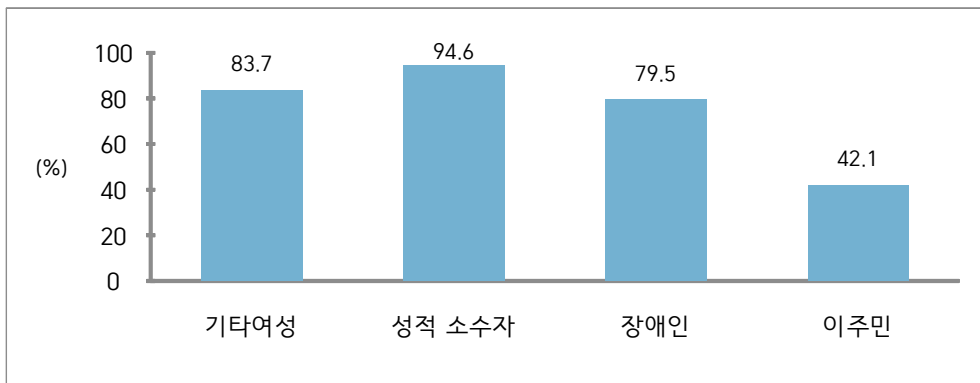


<그림 10>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④ 혐오표현의 대상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에게 혐오표현 대상이 누구였는지 질문했다. 우리 사회의 주된 혐오표현 표적집단을 포함하고 외국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병에 걸린 사람, 이주민, 흑인·동남아·서남아 사람, 무슬림, 무슬림이 아닌 소수 종교 신도, 가난한 사람, 노숙인, 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11가지 선택지를 제공하여 중복 선택하도록 하고, 그 외의 혐오표현 대상은 기타로 직접 서술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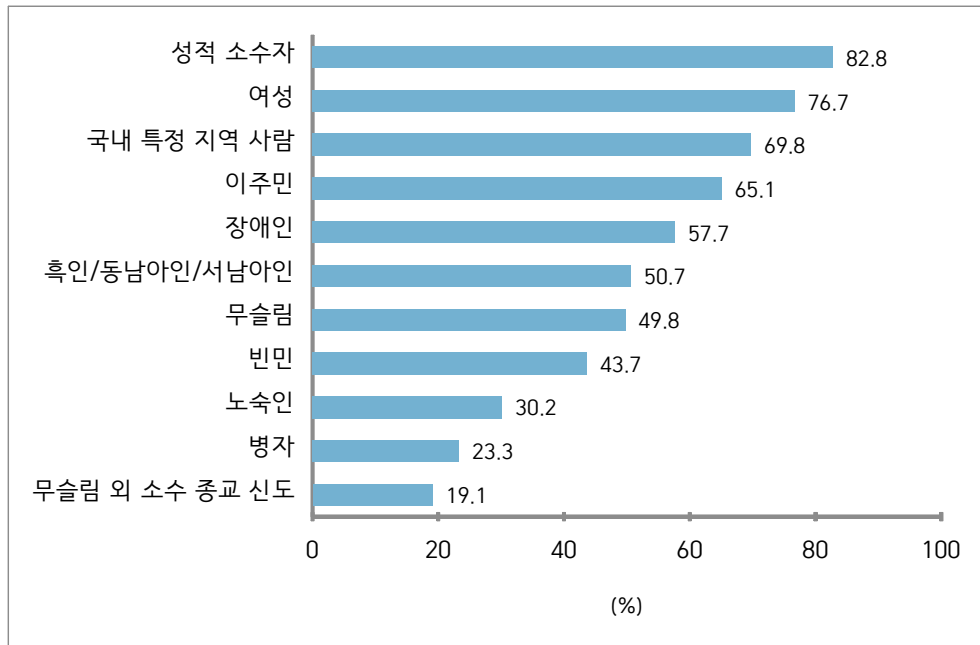
먼저 표적집단의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11은 각 표적집단의 전체 응답자 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이다. 성적 소수자 전체 응답자의 94.6%, 기타여성의 83.7%, 장애인의 79.5%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온라인에서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적집단의 혐오표현 노출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주민은 전체 응답자의 42.1%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온라인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온라인 이용 시간 및 이용 사이트의 범위, 한국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면 이주민의 혐오표현 경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1>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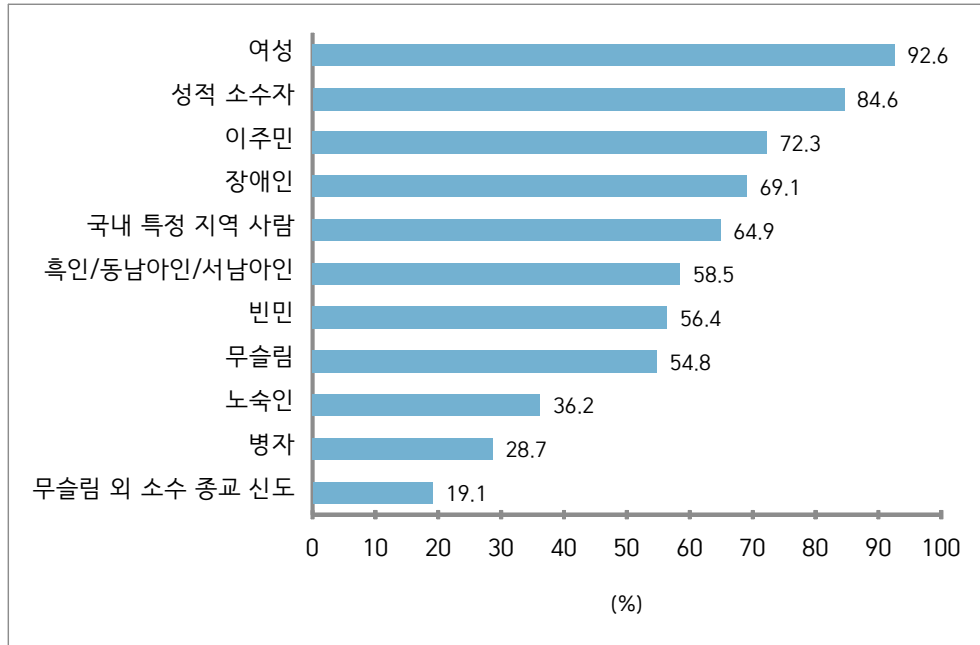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을 비롯하여 모든 혐오표현 경험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집단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기타남성 집단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가장 많았고(82.8%) 그 다음이 여성(76.7%), 국내 특정 지역 사람(69.8%), 이주민(65.1%), 장애인

(57.7%)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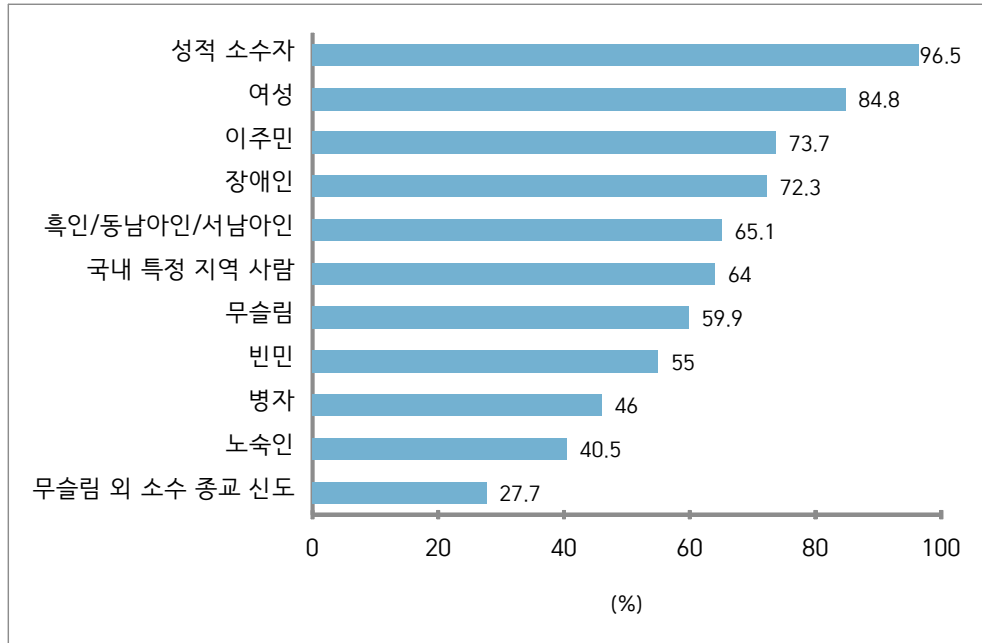
<그림 12>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남성 (중복응답)

표적집단에서는 혐오표현 경험자의 대부분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기타여성 집단에서는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92.6%로 가장 높았으며, 성적 소수자(84.6%), 이주민(72.3%), 장애인(69.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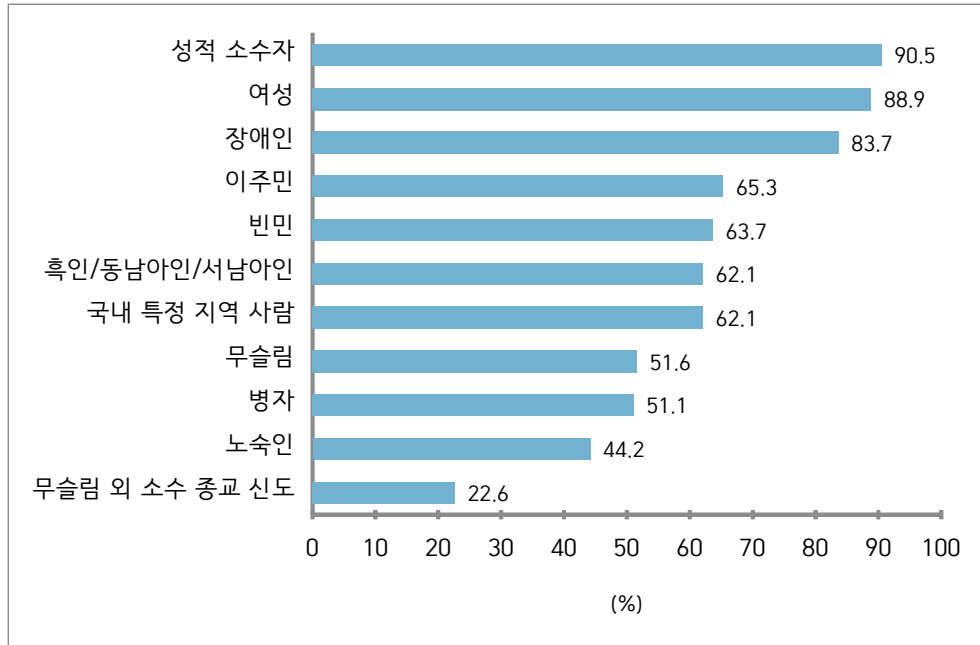
<그림 13>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여성 (중복응답)

성적 소수자는 96.5%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이 있는 성적 소수자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혐오표현을 접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84.8%가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73.7%가 이주민에 대한, 72.3%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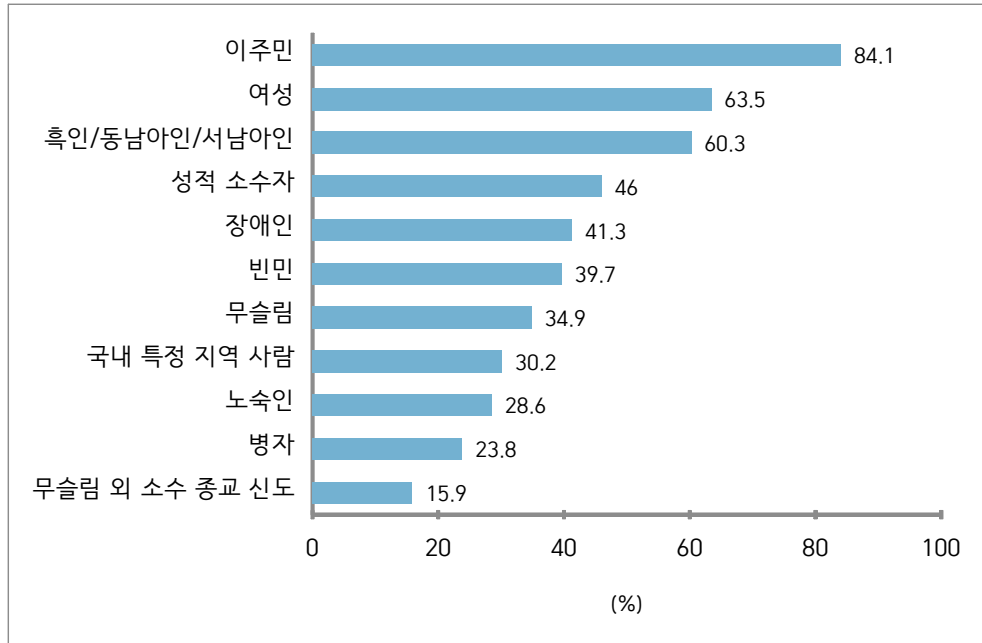
<그림 14>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성적 소수자 (중복응답)

장애인 집단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9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88.9%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은 83.7%로 세 번째 순위였지만 경험 비율은 높았다.



<그림 15>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장애인 (중복응답)

이주민은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 중 84.1%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높은 경험률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여성 (63.5%),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60.3%)에 대한 혐오표현을 듣거나 본 적이 있었다.



<그림 16> 온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이주민 (중복응답)

제시된 선택지 외의 혐오표현 대상으로는 아동, 청소년, 연소자, 노인 등 나이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본 적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남성이었다. 그 외에도 외모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낮은 학력이나 학벌을 가진 사람,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기독교인, 외국인·새터민·난민, 특정한 취미를 가진 사람, 특정 직업 종사자, 성노동자·성산업종사자 등이 각 5건 이상씩 언급되었다. 이러한 응답들은 매우 다양한 이유로 혐오표현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어도 단지 특정한 집단에 대하여 증오를 표현하기만 하면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인식이 존재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모든 집단의 경험을 종합하여보면, 이 연구에서 주요 표적집단으로 설정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전라도 등 특정 지역 출신의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 등 피부색에 따른 혐오표현, 빈민, 무슬림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의 절반 이상에서 나타났다.

⑤ 혐오표현의 내용

온라인에서 목격한 혐오표현의 내용을 최대 3개까지 서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의 예시가 가장 많이 수집되었고, 그 다음으로 성적 소수자, 장애인·병자, 이주민·인종·무슬림, 특정 지역 출신²¹⁹⁾, 빈민·노숙인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하에서는 주요 표적집단인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대표적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하여본다.

온라인에서 목격한 혐오표현의 사례 응답으로서,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다른 아닌 집단 그 자체를 호명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널리 행해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단어 자체에 욕설이나 비난의 표현이 섞이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소수자 집단을 있는 그대로 지칭하기만 하거나, 또는 해당 집단을 가볍게 희화화하여 부르는 표현만으로 그 집단에 대한 비하와 멸시가 성립될 수 있다. ‘병을 가진 몸’이라는 뜻의 “병신(病身)”이 그 자체로는 비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오랫동안 대표적인 욕설로 이용되었던 것처럼,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칭하는 표현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혐오의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남성에게 “여자 같다”, “기집애 같다”,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이나?”, “장애인 같아”, “애자”, “등신”, 이성애자에게 “너 레즈냐?”, “게이인 줄”, 동남아 출신이 아닌 사람에게 “동남아 같이 생겼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상대방의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호명함으로써 비하와 멸시를 나타내기도 한다. 비난의 의미를 담아 여성에게 “아줌마!”, “여자 주제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비하의 의미를 담아 “야,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단어의 본래 의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혐오가, 표현이 사용되는 맥락을 통하여 단어 속에 배치되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온라인 혐오표현으로서 가장 많은 응답은 “김치녀/년”이었다. 이는 “개념녀”, “스시녀”와 대비되면서 한국 여성 전체를 비난하는 혐오표현인데, 한 연구에 따르면, 외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혐오표현이 갖는 특성으로, 여성 중 특정한 집단을 공격하는 형태보다 한국 여성을 통칭하여 비하, 공격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음이 지적된 바

219)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혐오표현은 대부분 전라도 출신에 대한 표현이었다.

있다.²²⁰⁾ ‘김치녀’, ‘개념녀’뿐 아니라 그 외에도 자주 사용되는 ‘○○녀’, ‘○○년’과 같은 표현들은 좀 더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공공의 비난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한 여성을 약칭하면서 어미에 ‘녀’, ‘년’을 붙여, 비난 대상자를 다른 속성보다도 여성이라는 속성으로 환원함으로써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 결과 여성이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인상을 주어 여성 전체에 대한 비난을 야기하는 순환구조를 갖게 된다. 여성을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이와 같은 표현과 달리 여성 중 특정한 집단을 비난하는 표현으로는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안²²¹⁾ 등 성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 대표적이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외모, 나이, 능력, 섹슈얼리티 등에 대한 비난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외모에 대한 표현은 외모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 외모 관리에 열중하는 데 대한 비난, 비난 대상인 특정 여성 집단의 외모를 비하함으로써 해당 집단에 대한 비난의 효과를 야기하는 표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지 ‘못생긴’, ‘뚱뚱한’ 외모를 비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외모를 관리하는 행위도 비난 대상이 된다. 외모에 대한 찬사는 여성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여성에게 외모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을 제시하는 표현, 여성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비난의 대상으로 격하시키는 표현들과 연관되어, 여성에 대한 혐오를 이미 내포할 수 있다. 외모에 대한 비난은 나이와도 관련성을 갖는다. 여성은 특정한 연령대까지만 ‘가치가 있고’ 그 이후에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의미의 혐오표현들은 재생산 기능과 성적 매력을 중심으로 여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은 또한 여성의 능력과 관련하여 행해진다.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남성과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서 회사에서 여자를 “받으면 안되”며, 운전도 못 하면서 차를 끌고 다니는, 남편의 수입으로 무위도식하는 “김여사”이고, “집에서 밥이나 해야” 하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남성과 같은 능력을 가지거나 가지려 해서도 ‘안 되는’ 집단으로 폄하된다. 여성이 ‘무능력하다’는 비난과 ‘유능해서 남을 피곤하게 한다’는 비난의 표현은 공존한다. 이렇게 여성을 무능력하고 능력이 있어서도 안 되는 존재로 재현하는 표현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부장주의적 성역할 분리를 자연스러운 것이라

220)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2015, 292쪽.

221) 메갈리안 사이트를 이용하는 여성을 비난하는 표현은 페미니스트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 전이된다.

고 주장하고 정당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여성을 여성 섹슈얼리티와 연관지어 멸시하는 혐오표현들이 온라인에서는 더 많이 나타났다. 여성을 여성 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로 칭하여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만 제한하여 보려는 태도를 극대화시킨다. 이러한 표현은 응용력이 뛰어나서, 여성을 비하하고자 하는 모든 표현에 “보”를 합성함으로써 비하의 의미를 강조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는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창녀”, “걸레”와 같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비난하는 표현들이 그 사례가 된다.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표현의 수위는 높다. 혐오표현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여성의 외모에 대한 비하, 여성의 자기주장에 대한 혐오와 결합하면서 폭력의 정당성이 강화되며, 폭력의 원인을 최종적으로 여성에게 돌린다. 여성을 성기로 환원시키는 표현들과 같이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 성기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강간의 묘사와 여성 성기에 대한 폭력의 묘사,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을 희화화하는 표현과 정당화하는 혐오표현들은,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소수자의 존재성을 부정하고 비정상화하며 “변태”, “호모” 등 섹슈얼리티를 부각시켜 성적 소수자를 성관계에 집착하는 ‘문란한’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비하하는 표현이 두드러졌다. 동성애자의 성관계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표현을 동성애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함으로써 성적 소수자에 대한 멸시를 표현한다. 성적 소수자는 기피와 거부의 대상으로서, ‘더럽고’, ‘역겹고’, ‘징그러운’, ‘짐승’으로 비유된다. 성적 소수자는 특히 일부 기독교의 비난이 집중되는데, 일부 기독교에서 성적 소수자는 ‘사탄’으로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지옥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야 하는’ 집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혐오표현은 성적 소수자가 ‘사라져야 하고’ ‘숨겨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병’의 일종으로서, 성적 소수자는 ‘친륜을 거스르는’ ‘잘못 태어난 존재’이며, ‘이성애적 성관계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스스로 동성애자인 줄 안다’는 등 아직 치료가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적 소수자의 성관계는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어서 ‘국가를 붕괴시키고’, 에이즈를 비롯한 ‘병을 퍼뜨리며’, ‘미성년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대한 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고 숨어있

을 것을 요구하는 데서부터 격리, 살해, 성폭력의 선동에 이르기까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선동하는 표현이 다양한 층위에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들은 장애를 ‘없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와 장애인을 비난한다. 장애는 “징그럽”고 “냄새가 날 것 같”고, “눈에 띄지 않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장애를 없어져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장애인들에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태도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진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에 대하여 “노력을 통해 정신병을 극복하라”, “다 핑계고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표현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 개인의 노력 부족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장애의 책임을 개인에게 귀속시킨다. 장애를 장애인 개인이 가진 속성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일부의 장애를 전체로 확대하려는 태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신체적 장애인이 당연히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서 신체적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해도 괜찮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숨어 있어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은 “민폐를 끼치는” 존재이고,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 있는 장애인은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로서 비난의 대상이 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버스를 타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비난은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시민’의 범주에서 몰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세금을 축내기만 하는 불필요한’ 집단이고 도리어 ‘비장애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정신병자는 무섭고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권리를 제한해야” 하고, “격리시켜야” 하고, “함께 살 수 없는”, 더 나아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된다.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²²²⁾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의 혼혈 자녀, 무슬림, 흑인 등에 대한 혐오 사례가 주로 나타났다. 이주민은 외견상으로 피부색, 외모 등으로 인하여 구별되고 비하된다. 이주민을 피부색으로만 부름으로써 비하의 의도를 드러내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의 의미를 담은 조어(造語)로 해당 국가 출신 이주민 또는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

222) 혐오표현 대상 집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이주민,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 무슬림을 구분하였지만, 이들 집단은 혐오표현의 내용에서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는 함께 분석하였다.

한 혐오를 표현한다. 이주민은 ‘더럽고’ ‘시끄럽고’ ‘냄새가 나서’ 기피하고 싶은 집단이며, ‘미개하고’ ‘무식하고’ ‘게으르’면서도 ‘돈을 밝히는’ 집단으로 멀리 받는다. 저개발국에서 이주한 이주노동자는 “남의 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한국에 경제적인 손해를 미치는 집단이며, 무슬림은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집단이고, 결혼이주여성은 ‘아이 낳으려 팔려온 불쌍한’ 사람들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돈에 ‘몸을 판 여성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은 이주민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인의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해서’ 통제하여야 하고 쫓아내야 하고 추방해야 한다는 차별의 선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⑥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아보았다. ‘별 생각이 없었다’, ‘재미있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의 4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응답자들은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에 가장 많이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다. <표 1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에 대하여 이주민 집단을 제외한 표적집단의 평균값은 집단별로 3.86~3.88 수준으로, 보통(2.5)보다 훨씬 높았다. 기타남성 집단의 평균값(3.72)은 표적집단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 혐오표현에 대하여 ‘별 생각이 없었다’(<표 12>)거나 ‘재미있었다’(<표 13>),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표 14>)는 데에는 동조하지 않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표 12>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1): 별 생각이 없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5.8	30.7	12.6	0.9	1.59	x ² =34.404 p=0.001
기타여성	76.1	19.7	4.3	0.0	1.28	
성적소수자	69.9	22.1	6.2	1.7	1.40	
장애인	72.1	19.5	7.4	1.1	1.37	
이주민	62.3	21.3	16.4	0.0	1.54	

<표 13>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2): 재미있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78.6	16.3	5.1	0.0	1.27	$\chi^2=46.647$ $p=0.000$
기타여성	96.3	3.7	0.0	0.0	1.04	
성적소수자	93.1	4.2	2.8	0.0	1.10	
장애인	90.5	7.4	2.1	0.0	1.12	
이주민	80.3	14.8	4.9	0.0	1.25	

<표 14>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3):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66.5	20.5	13.0	0.0	1.47	$\chi^2=59.155$ $p=0.000$
기타여성	79.3	14.4	5.9	0.5	1.28	
성적소수자	87.5	7.3	4.5	0.7	1.18	
장애인	79.5	13.7	6.3	0.5	1.28	
이주민	53.2	25.8	19.4	1.6	1.69	

<표 15>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4):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0.5	2.8	21.4	75.3	3.72	$\chi^2=70.559$ $p=0.000$
기타여성	0.0	0.5	11.2	88.3	3.88	
성적소수자	1.0	0.3	8.0	90.7	3.88	
장애인	0.0	2.6	8.4	88.9	3.86	
이주민	3.2	8.1	29.0	59.7	3.45	

기타남성 집단을 표적집단과 비교하여보면, 전반적으로 표적집단보다 혐오표현에 대하여 문제를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집단은 수치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문항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문

제가 있다고 느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서는 다른 표적집단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⑦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을 때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6>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혐오표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한 사례가 많았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을 타인에게 전달하였을 때에는 혐오표현에 동의하여 그렇게 한 경우보다 반대하여 전달한 사례가 훨씬 많았고, 혐오표현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을 올린 경우보다 반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올린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더 많은 사례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집단 외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별다른 대응 없이 무시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92.1~97.9%) 이주민 집단에서도 64.5%는 무시하였던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례는 10.0% 이하였다. 그에 비하여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는 적지 않았다. 집단별로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의 절반 내외가 관리자에게 신고한 경험이 있었다. 신고 경험은 기타여성보다 기타남성 집단이 다소 많았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례는 집단별로 편차가 있어서,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자 중 성적 소수자의 61.2%, 장애인의 57.9%, 기타여성의 43.1%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다. 기타남성 중에서는 24.7%만이 혐오표현 반대 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적집단보다 참여 경험이 훨씬 적었다.

<표 16>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통계값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8.8	5.9	10.0	7.4	9.8	$\chi^2=3.078$ $p=0.545$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57.2	76.6	72.0	78.4	64.5	$\chi^2=28.618$ $p=0.000$
동의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4.2	2.1	5.5	4.7	16.4	$\chi^2=20.080$ $p=0.000$
무시하였다	92.6	97.9	93.8	92.1	64.5	$\chi^2=74.229$ $p=0.000$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48.4	56.9	66.8	74.7	48.4	$\chi^2=39.014$ $p=0.000$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	47.4	44.7	54.3	57.9	19.7	$\chi^2=31.859$ $p=0.000$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4.2	1.6	4.8	10.0	4.9	$\chi^2=14.636$ $p=0.006$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게 되었다	24.7	43.1	61.2	57.9	8.2	$\chi^2=113.124$ $p=0.000$

⑧ 혐오표현의 영향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 이용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았다. 각 제시문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혐오표현 경험 이후에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렵게 된 경험'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표 1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기타여성의 68.7%, 장애인의 64.7%, 성적 소수자의 63.4%가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17>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1):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27.0	29.3	32.1	11.6	2.28	$x^2=51.142$ $p=0.000$
기타여성	9.0	22.3	51.1	17.6	2.77	
성적소수자	15.2	21.5	50.9	12.5	2.61	
장애인	13.7	21.6	45.8	18.9	2.70	
이주민	27.4	30.6	32.3	9.7	2.24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게 된 경험에 대해서는 기타여성의 59.6%, 장애인의 56.3%, 성적 소수자의 55.4%, 이주민의 52.5%가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표 18>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2):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19.5	31.2	37.7	11.6	2.41	$x^2=26.552$ $p=0.009$
기타여성	6.4	34.0	46.3	13.3	2.66	
성적소수자	9.3	35.3	42.9	12.5	2.58	
장애인	13.2	30.5	44.2	12.1	2.55	
이주민	23.0	24.6	37.7	14.8	2.44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집단의 56.3%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그러한 경험이 더 많았고, 성적 소수자의 43.3%, 이주민의 42.6%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19>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3):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5.3	28.4	14.4	1.9	1.63	x ² =126.757 p=0.000
기타여성	36.2	33.5	26.6	3.7	1.98	
성적소수자	21.5	35.3	30.8	12.5	2.34	
장애인	16.3	27.4	38.9	17.4	2.57	
이주민	32.8	24.6	32.8	9.8	2.20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58.4%, 성적 소수자의 57.8%, 기타여성의 51.0%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표 20>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4):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2.1	33.0	14.4	0.5	1.63	x ² =151.199 p=0.000
기타여성	20.7	28.2	40.4	10.6	2.41	
성적소수자	16.3	26.0	44.3	13.5	2.55	
장애인	16.3	25.3	41.6	16.8	2.59	
이주민	19.4	33.9	29.0	17.7	2.45	

혐오표현 경험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떨어진 경험은 장애인에게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이 있는 장애인 응답자의 54.2%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성적 소수자는 46.0%로, 자존감이 떨어진 경험을 한 응답자가 절반을 다소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남성 집단은 14.0%만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자존감 하락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표 21>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5): 자존감이 떨어졌다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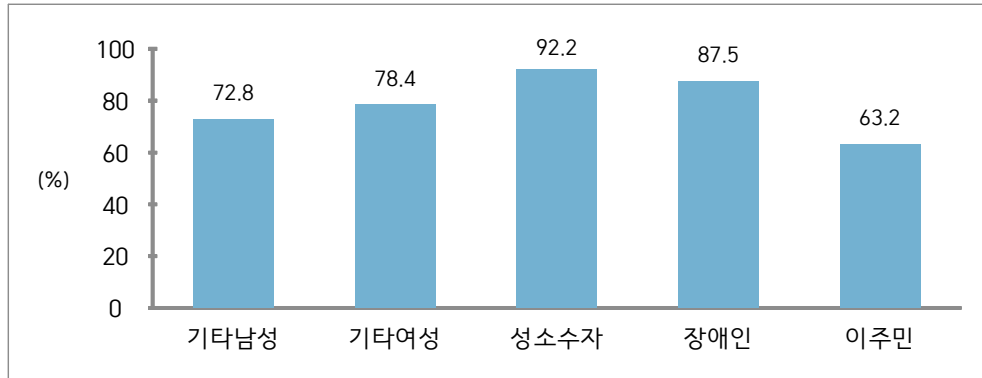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1.2	34.9	12.1	1.9	1.65	x ² =99.778 p=0.000
기타여성	28.7	36.2	27.7	7.4	2.14	
성적소수자	24.2	29.8	36.0	10.0	2.32	
장애인	19.5	26.3	41.6	12.6	2.47	
이주민	25.8	27.4	38.7	8.1	2.29	

모든 항목에서 표적집단보다 기타남성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았으며, 특히 자존감 상실이나 정신적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은 기타남성 집단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영향의 정도가 훨씬 낮았다. 종합하면, 표적집단으로서 혐오표현 경험자들이 온라인에서 활동 공간이 좁아지고 표현에 제약 받게 되며, 스트레스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자존감 하락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오프라인 혐오표현

① 혐오표현 경험 여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목격한 비율은 집단별로 63.2~92.2%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소수자 집단은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92.2%)가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장애인(87.5%)과 기타여성(78.4%) 집단의 혐오표현 경험도 높았다. 이주민을 제외하면, 표적집단에 비하여 기타남성 집단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이 가장 적었다(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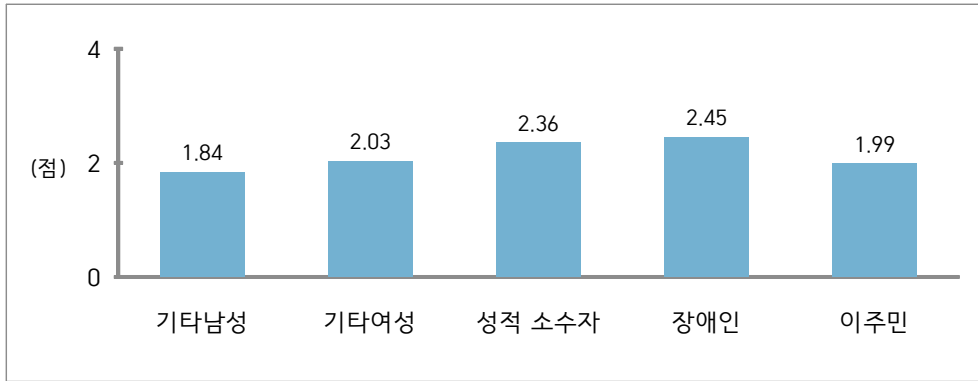


<그림 17>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이주민 집단은 다른 집단과 달리 온라인(50.0%)보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이주민 집단이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은 63.2%로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그런데 본 설문에서 '거주지 주변에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편인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선주민은 26.9%가 그런 편이라고 답한 반면 이주민은 77.2%가 그런 편이라고 답한 데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주민은 이주민 밀집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민이 많이 일하는 직장에서 일하고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주로 인간관계를 맺는 등 한국인과의 접촉면이 넓지 않고 한국어 이해 능력에 따라 혐오표현을 경험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측면을 감안하여보면 이주민의 혐오표현 경험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② 혐오표현 경험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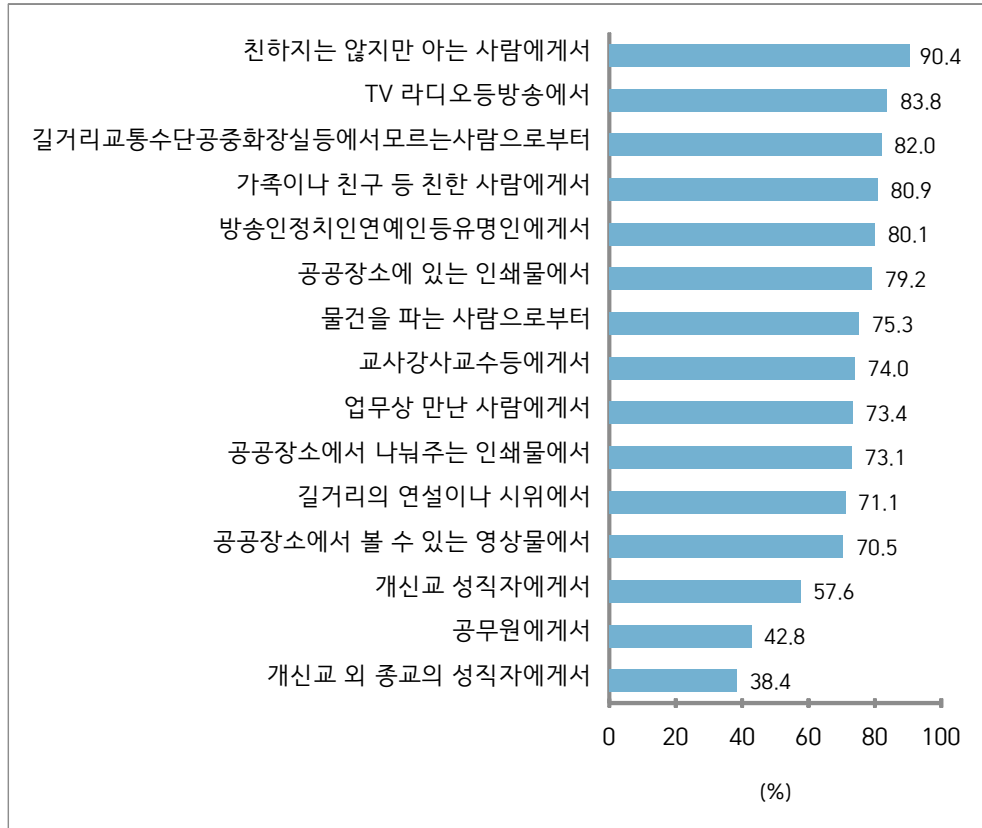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들의 경험 빈도를 알아보았다. '드물게 경험'(1점)부터 '항상 경험'(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기타남성 집단은 1.84, 표적집단은 1.99~2.45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p=0.000$)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과 종합하여보면, 기타남성 집단은 혐오표현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혐오표현을 경험하더라도 빈도가 다른 집단보다 낮은 편인 반면, 표적집단은 경험도 많고 경험 빈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8>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빈도

③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는 혐오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였는지 알아보았다. 아는 사람에게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가장 많아서, 혐오표현 경험자의 대부분(90.4%)이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에게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80% 이상 경험률이 나타난 상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TV, 라디오 등 방송’(83.8%), ‘길거리나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82.0%),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80.9%), ‘방송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80.1%) 순으로 나타나, 방송을 통하여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많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도 매우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포스터, 대자보, 현수막 등 공공장소에 볼 수 있는 인쇄물’(79.2%), ‘시장, 마트, 가게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75.3%), ‘공공장소에서 나눠주는 인쇄물’(73.1%), ‘길거리의 연설이나 시위’(71.1%),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영상물’(70.5%) 등을 통하여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도 많았다. 또한 ‘교사, 강사, 교수 등’ 교육자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가 74.0%로 높아 수업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도 42.8%로 적지 않았다. ‘직장 동료나 고용주 등 업무상 만난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는 73.4% 수준이었는데, 이 응답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경우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표적집단이 직장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19>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에서는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타남성 집단에서는 아는 사람이나 방송, 유명인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많았던 반면에, 표적집단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장애인의 91.4%가 길거리,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84.6%가 시장, 마트, 가게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주민들 역시 길거리,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가 64.9%로, 이주민의 혐오표현 경험 중 3번째로 많았다. 물건 판매원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는 61.0%로 4번째에 해당한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혐오표현 경험률이 높다는 것은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이주민 집단은 업무상 만난 사람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71.4%),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로 제한하여보면 이는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중 81.8%가 업무상 만난 사람에게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업장에서의 혐오표현이 이주민의 혐오표현 경험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표 22> 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전체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에게서	75.9	80.4	91.5	88.0	44.2	80.9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에게서	89.8	91.4	96.3	93.1	65.4	90.4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69.3	77.9	77.2	84.6	61.0	75.3
길거리,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75.9	82.2	86.8	91.4	64.9	82.0
교사, 강사, 교수 등에게서	69.3	71.8	84.6	84.0	40.3	74.0
업무상 만난 사람에게서 ²²³⁾	68.1 (75.0)	71.8 (83.8)	76.5 (86.3)	78.3 (88.0)	71.4 (81.8)	73.4 (81.6)
개신교 성직자에게서	57.2	46.0	71.0	65.1	24.7	57.6
개신교 외 종교의 성직자에게서	35.5	28.2	47.8	44.6	26.0	38.4
공무원에게서	38.0	36.8	45.6	55.4	39.0	42.8
방송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서	77.1	84.7	89.7	86.9	31.2	80.1
TV, 라디오 등 방송에서	79.5	86.5	90.4	93.1	50.6	83.8
길거리의 연설이나 시위에서	71.1	66.3	84.2	75.4	32.5	71.1
공공장소에 있는 인쇄물에서	74.1	83.4	88.6	84.6	42.9	79.2
공공장소에서 나눠주는 인쇄물에서	66.3	77.3	82.0	77.7	44.2	73.1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에서	57.2	79.8	79.4	77.7	38.5	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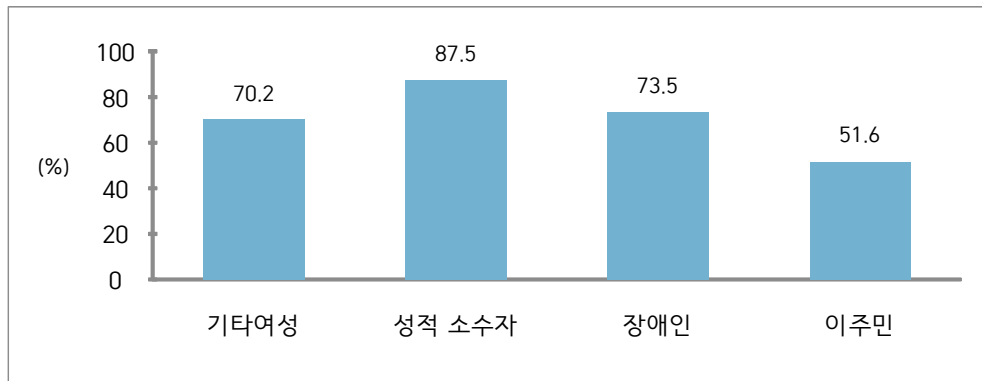
④ 혐오표현의 대상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을 살펴보았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의 대상 집단과 마찬가지로 11가지 선택지를 제공하여 중복 선택하도록 하고 그 외의 대상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먼저 주요 표적집단의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성적 소수자 응답자 전체의 87.5%, 장애인 응답자의 73.5%, 기타여성 응답자의 70.2%, 이주민 응답자의 51.6%가 오프라인에서

223) 괄호 안은 현재 경제활동중인 사람으로 모수를 제한하여 계산한 값이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표적 집단의 혐오표현 피해 경험이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만연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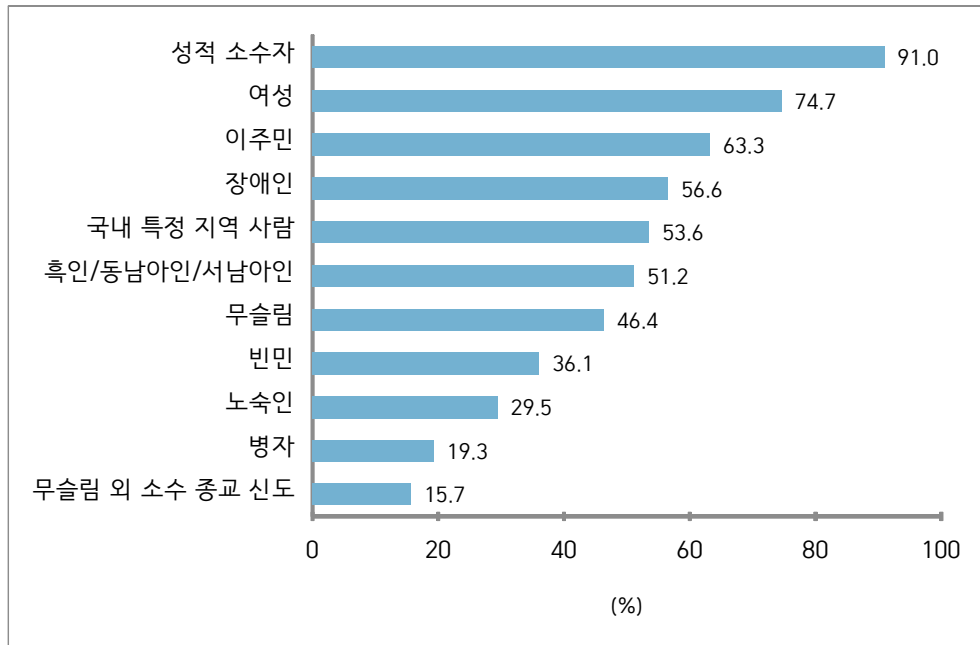


<그림 20> 표적집단별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집단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피해 경험률이 더 낮았던 반면 이주민의 오프라인 피해 경험률은 온라인 피해 경험률(42.1%)보다 약 10% 가량 더 높게 나타나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주민에게는 주로 글로써 행해지는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비하여 주로 말로써 행해지고 눈빛이나 태도가 수반되는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타여성은 13.5%, 성적 소수자는 7.1%, 장애인은 6.0% 온라인에 비하여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률이 더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민의 오프라인 피해 경험률은 온라인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일반적으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의 대면 관계에서의 혐오표현이 다소 적게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이는 선주민 집단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차이에서도 나타나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혐오표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게 적대적인 환경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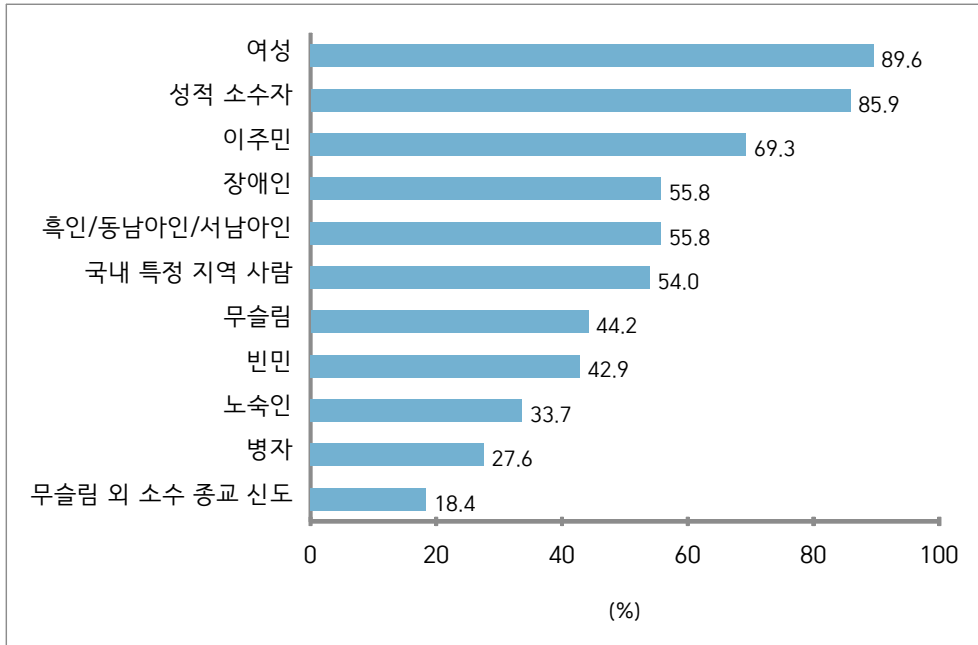
다음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오프라인의 모든 혐오표현 경험을 집단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기타남성 집단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대부분의 응답자(91.0%)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

다. 그 다음으로 여성(74.7%), 이주민(63.3%)에 대한 혐오표현을 접한 사례가 많았으며, 그 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경험한 혐오표현은 장애인(56.6%), 국내 특정 지역 사람(53.6%),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51.2%)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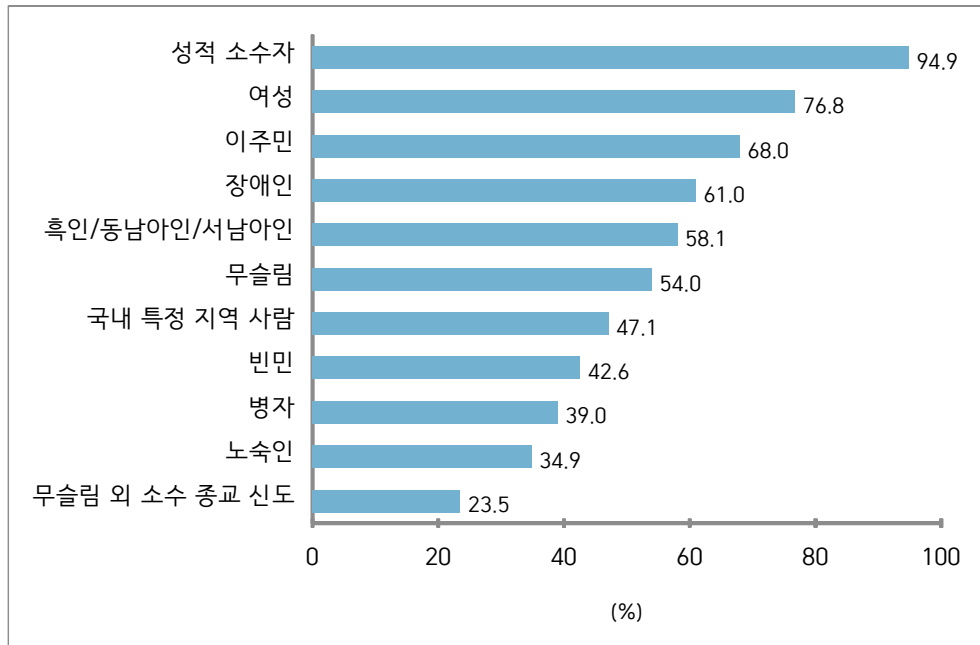
<그림 21>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남성 (중복응답)

기타여성 집단은 여성(89.6%)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가장 많았고, 성적 소수자(85.9%)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주민(69.3%), 장애인(55.8%) 및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55.8%), 국내 특정 지역 사람(54.0%)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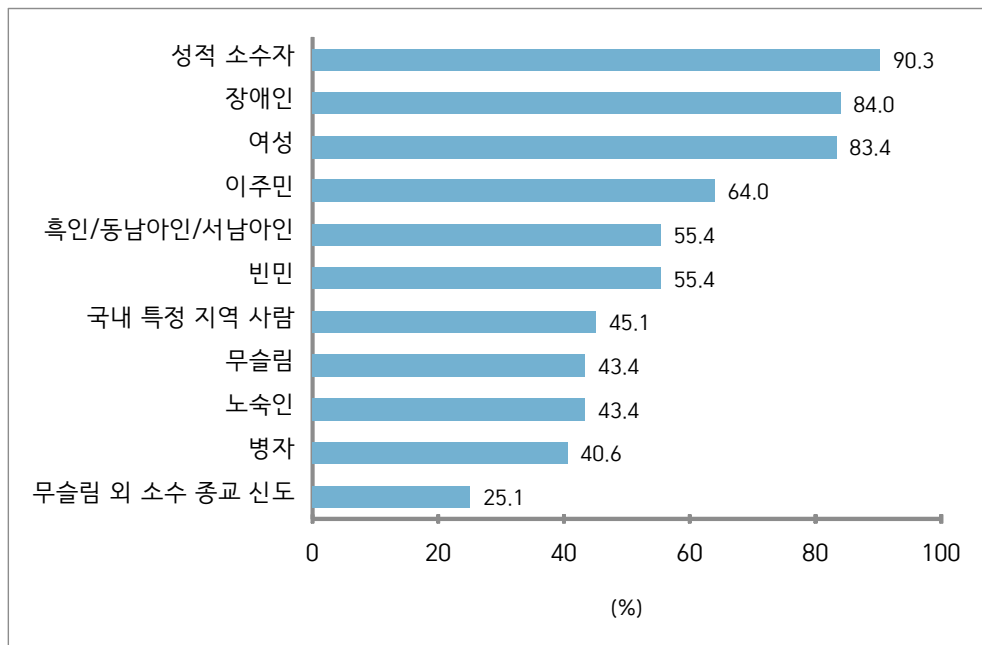
<그림 22>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기타여성 (중복응답)

성적 소수자 집단은 대부분(94.9%)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있었고, 여성(76.8%), 이주민(68.0%), 장애인 (61.0%),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58.1%) 무슬림(54.0%)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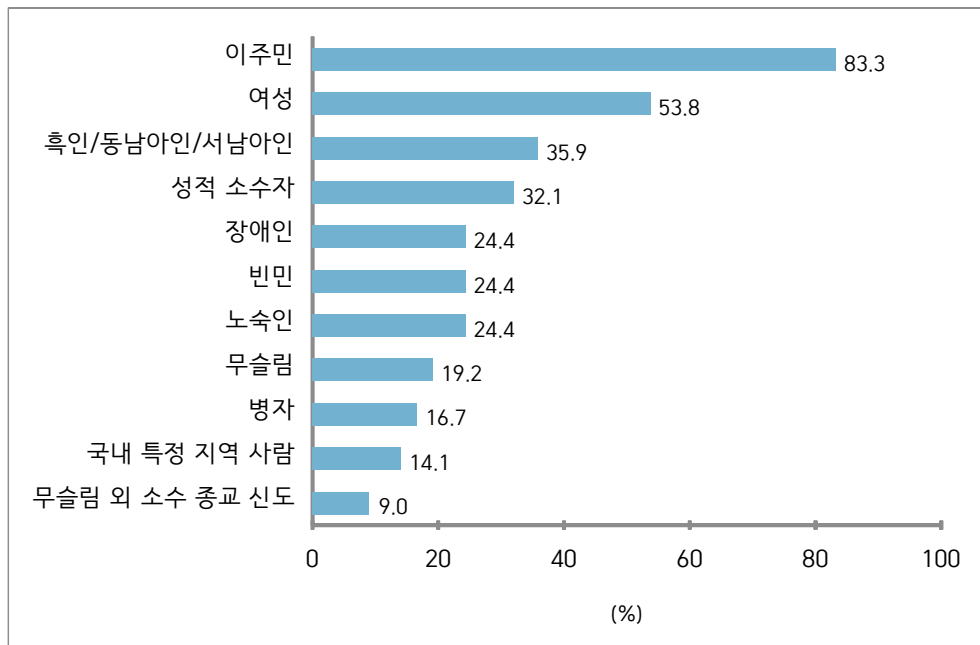
<그림 23>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성적 소수자 (중복응답)

장애인 집단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이 90.3%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84.0%).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은 83.4%로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이주민(64.0%),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55.4%), 빈민(55.4%)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



<그림 24>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장애인 (중복응답)

이주민 집단은 83.3%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53.8%),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35.9%), 성적 소수자(32.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오프라인 혐오표현 표적집단: 이주민 (중복응답)

그 외의 오프라인 혐오표현 대상으로는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노인 등 나이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가장 많았다. 온라인 혐오표현에서는 기타 응답으로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았던 데 비하여 오프라인 혐오표현에서는 ‘뚱뚱한 사람’,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 ‘성형한 사람’ 등 외모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저학력자, 지방대 출신 등 학력이나 학벌로 인한 혐오표현, 정치적 이념이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표현, 선택지로 제시된 무슬림이나 소수 종교 외의 특정 종교 신자나 자신과 다른 종교의 신자 등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등이 더 많이 언급되었다.

⑤ 혐오표현의 내용

오프라인에서 목격한 혐오표현의 내용을 최대 3개까지 서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온라인 혐오표현과 마찬가지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성적 소수자, 이주민·인종·무슬림, 장애인·병자, 특정 지역 출신, 빈민·노숙인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하에서는 주요 표적집단인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표현은, 집단을 있는 그대로 호명하거나 가볍게 희화화함으로써 비하와 멸시를 드러내는 표현들이다. 온라인 혐오표현에서 설명한 바와 유사하게, 비장애인에게 “장애냐?”, “애자”, “병신” 등 장애를 욕설로 사용하는 표현, 이성애자에 대하여 “게이 같네”, “레즈 아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여성에 대하여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 “아줌마”, “여자가”, “여자 주제에”, “여자 치고 대단하다”, 다문화가족을 비하적으로 말하기 위해 “다문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된 단어의 정의에는 비록 혐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표현이 사용된 맥락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표현의 사례로서 응답에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표적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들은 오프라인에서도 연장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성들을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오프라인 혐오표현에서도 나타났으며, 페미니스트나 메갈리안 등 성차별, 여성혐오에 대항하는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응답도 온라인과 유사하였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과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에서의 여성혐오표현도 외모, 나이, 능력, 섹슈얼리티에 대한 비난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여성의 외모에 대한 혐오표현으로는 ‘못생긴’, “뚱뚱한” 외모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직접적 비난, 몸매나 화장 등 외모 관리를 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비난, 비난하고자 하는 특정 여성 집단의 외모를 비하함으로써 해당 집단에 대한 비난 효과를 야기하는 표현, 여성이 외모를 관리하는 행위를 부각시켜 여성을 ‘외모에만 신경 쓰는 생각 없는 존재’로 폄하하는 표현, 여성의 외모가 여성에게 갖는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가치를 폄하하는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에게 나이는 남성의 나이와는 달리 ‘가치 있게’ 여겨지는 연령대가 극히 좁은 것으로 표현된다. ‘상품 가치 있는’ 연령대의 여성은 성적 대상화되는 반면 그 외의 여성은 ‘값이 떨어지는’

“폐품”으로 폄하된다. 오프라인에서의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 응답은 온라인 혐오표현보다 직장에서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 중 많은 내용이 응답자들이 직장에서 직접 경험한 혐오표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성은 ‘책임감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등 여성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여성은 동료로서 부적합하다’는 표현들은 그 자체로서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가 있다. 여성의 ‘무능력’에 대한 주장은 여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직접 성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이어졌다. 또한 반대로 여성은 유능해서는 안 되고 ‘나서도 안 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여성 비하의 표현도 동시에 나타났다. 여성의 ‘무능력’은,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돈을 밝히고’,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강화시킨다. 여성을 성기로 환원하여 여성 비하 신조어들을 계속 생성해내는 온라인에 비하여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여성 섹슈얼리티와 연관 짓는 멸시의 표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재생산 기능으로만 축소시키는 표현, 직장에서 성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표현,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문란한 존재로 비하하는 표현 등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을 재생산 기능으로 축소함으로써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한 사례에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서²²⁴⁾ 학교 내에서 교육자에 의한 혐오표현을 규제할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오프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는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자는 등 성차별을 주장하는 표현, 여성에 대한 폭력 욕구를 표현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표현, 성폭력을 예고하거나 성폭력이 나쁜 여성에 대한 당연한 징벌인 것처럼 정당화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표현 등이 나타나, 여성 집단에 대한 비난과 멸시가 단순한 비난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 차별 및 여성 폭력의 정당화 논리로 이어진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은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정상화하고, 일종의 정신적 질병으로 취급하며 성적 소수자를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더러운’, ‘역겨운’, ‘성적으로 문란한’ 존재로 비하한다. 성적 소수자는 ‘성적으로 타락’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의 성적 타락을 야기하며 세계의 “종말을 가져오고”, 에이즈 같은 질병을 유발하고 옮기는 ‘보균자’ 같은 집단이며, ‘고쳐야 하는’ 환자로 표현되었다. 동성애를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하는 질병’으로 보아, 학교에서 성적 소

224) “여자의 기능은 애 낳는 거밖에 없다던 선생님”

수자의 소위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던 사례²²⁵⁾도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으로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멸시의 표현, 우리나라에서 성적 소수자를 추방하라거나 ‘다 죽여버리겠다’는 극단적인 표현, 여성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성별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해보이지만, 이는 성적 소수자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전제 위에서만 가능한 표현으로서 역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혐오표현에 해당되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전생의 업보”와 같은 표현에서 나타나듯 장애는 일종의 ‘형벌’로 이해되고, 비장애인은 ‘장애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평가된다. 장애는 터부시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하여 “재수 없다”고 말을 할 ‘권력’을 갖는다. 장애는 치료를 통하여 ‘극복’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애를 가진 개인의 책임이므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시각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이 영화관 등 공공장소에 출입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걸리적거린다’, ‘성가시다’는 비난을 받고, 신체적 폭력까지 당할 만한 일²²⁶⁾이 된다. 장애는 ‘추한 것’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이라도 해서 예쁘게 보여야’ 하는 특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복지를 요구하는 장애인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집단이고, 장애인은 신뢰할 만한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한다. 장애는 중국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며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은, 장애인의 재생산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 장애인은 “모두 죽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비난과 폭력의 선동에 어렵지 않게 도달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과 유사하게, 피부색을 빚댄 폄하의 표현, “못 사는 나라에서 와서” ‘더럽고’,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배려심이 없고’, ‘미개인이고’, ‘촌스럽다’는 등 이주민을 일반적으로 비난하는 표현들이 나타났다. 비난의 혐오표현은 이주민을 한국

225) “고등학교에서 성소수자를 비난하기 위해 ‘전(前)성소수자’를 초대하여 ‘문란하게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며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위협을 함”

226) “스쿠터를 가로막고 우산으로 찌르면서 왜 돌아다니냐고 했다”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대우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하철 빈자리에 앉아 있다가 ‘한국인이 앉아야 하는 자리이니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은 사례, 관공서에서 공무원이 이주민에게 하대를 하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하였던 사례도 나타났다. 오프라인에서도 이주노동자는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대의 대상이 되고,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 팔려온 불쌍한 여성’이며,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머리가 나쁜’ 집단으로 비하된다. 오프라인 혐오표현에서는 이주민을 위협한 존재,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보는 혐오표현이 온라인보다도 좀 더 많은 편이었다. 혐오표현은 이주민이 위협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주아동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주민을 위협한 집단으로 규정짓는 것은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힘을 실게 되어, 이주민, 특히 무슬림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배척해야 한다’는 등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혐오표현의 응답이 많았다.

⑥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는 데 동의하였다.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 이주민을 제외한 주요 표적집단의 평균은 각 3.83~3.85 수준으로 ‘매우 그렇다’에 가까웠다. 기타남성 집단의 평균값은 3.73으로 표적집단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치였으나 보통(2.5)보다는 훨씬 높았다. 이주민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기는 하나, 3.30점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보다 더 높았다.

<표 23>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1):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0.0	4.2	18.7	77.1	3.73	x ² =72.534 p=0.000
기타여성	1.2	1.2	9.2	88.3	3.85	
성적소수자	1.5	0.7	11.0	86.8	3.83	
장애인	0.6	1.7	10.9	86.9	3.84	
이주민	7.9	9.2	27.6	55.3	3.30	

그에 비하여 ‘별 생각이 없었다’(<표 24>), ‘재미있었다’(<표 25>),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표 26>)는 응답에 동의하는 의견은 대체로 적었다.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기타남성 집단이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 표적집단에 비하여 혐오표현을 문제라고 느끼는 사례는 더 적었고, 별 생각이 없거나 재미있다고 느끼거나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 사례는 더 많아, 주요 표적집단 외의 집단으로서 기타남성 집단이 혐오표현을 다소 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4>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2): 별 생각이 없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66.3	22.9	7.8	3.0	1.48	$x^2=35.211$ $p=0.000$
기타여성	76.1	19.6	3.7	0.6	1.29	
성적소수자	72.4	22.8	3.3	1.5	1.34	
장애인	77.7	16.6	5.1	0.6	1.29	
이주민	53.9	26.3	13.2	6.6	1.72	

<표 25>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3): 재미있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84.3	13.3	1.8	0.6	1.19	$x^2=25.348$ $p=0.013$
기타여성	96.9	3.1	0.0	0.0	1.03	
성적소수자	91.5	7.0	1.1	0.4	1.10	
장애인	93.1	5.1	1.7	0.0	1.09	
이주민	85.3	9.3	4.0	1.3	1.21	

<표 26>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느낌(4):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78.3	14.5	7.2	0.0	1.29	x ² =74.138 p=0.000
기타여성	85.9	11.0	2.5	0.6	1.18	
성적소수자	90.4	7.4	1.8	0.4	1.12	
장애인	86.9	10.3	2.9	0.0	1.16	
이주민	57.3	21.3	17.3	4.0	1.68	

⑦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혐오표현에 대해 문제를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동의하는 표현을 하거나 동의하는 취지로 타인에게 그 혐오표현을 전한 사례는 드물었고, 혐오표현을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그 표현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알린 사례가 훨씬 더 많았다. 혐오표현에 대한 집단별 대응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혐오표현에 동의하는 취지로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전달한 경우는 집단별로 5% 내외에 그친 반면, 반대하는 취지로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는 62.7~84.6% 수준으로 높았다.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간 경우도 많아서, 기타여성의 91.4%, 기타남성의 90.4%는 무시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한 사례는 비교적 드물었으나, 장애인 집단은 14.9%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다른 집단보다 신고 경험이 훨씬 많은 편이었다. 장애인 집단의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정의하고 규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독립된 차별금지법이 있고 동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금지하고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좀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²²⁷⁾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게 된 사례는 장애인, 성적 소수자 집단은 혐오표현 경험자의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고, 기타여성은 38.7%가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고 답

227)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상담 사례 중에서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상담 건수가 가장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2015, 23쪽.

하였다.

<표 27>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통계값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5.4	4.3	6.6	5.1	5.3	$\chi^2=1.153$ p=0.886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65.7	83.4	75.0	84.6	62.7	$\chi^2=28.860$ p=0.000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6.6	7.4	9.2	8.0	9.3	$\chi^2=1.193$ p=0.879
무시하였다	90.4	91.4	89.0	88.0	65.8	$\chi^2=36.702$ p=0.000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64.5	79.8	78.3	79.4	58.7	$\chi^2=25.310$ p=0.000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3.6	2.5	6.3	14.9	9.3	$\chi^2=25.382$ p=0.000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게 되었다	28.3	38.7	55.9	57.7	8.0	$\chi^2=87.008$ p=0.000

기타남성 집단이 표적집단에 비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를 덜 느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기타남성 집단보다 표적집단이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대응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 집단의 경우 혐오표현에 동의하는 취지보다 반대하는 취지의 대응이 더 많다는 점에서는 다른 집단과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⑧ 혐오표현의 영향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후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게 되거나, 표현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정신적 피해가 나타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각 제시문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이하의 표와 같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영향과 비교해보면,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각 제시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그렇

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을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응답자들은 혐오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혐오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 혐오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는 노력에 있어서는 성적 소수자가 87.9%, 기타여성이 87.7%, 장애인이 82.3%, 기타남성이 80.1%, 이주민이 54.6%로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혐오표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기타남성 집단에서도 80% 이상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응답하여,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 기피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1):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3.6	16.3	56.6	23.5	3.00	$\chi^2=79.603$ $p=0.000$
기타여성	2.5	9.8	55.2	32.5	3.18	
성적소수자	3.7	8.5	56.6	31.3	3.15	
장애인	4.6	13.1	54.3	28.0	3.06	
이주민	24.0	21.3	25.3	29.3	2.60	

혐오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한 경우는 성적 소수자 86.1%, 기타남성 83.1%, 기타여성 80.9%, 장애인 80.0%, 이주민 62.6% 순으로, 표적집단과 기타남성 집단 모두 높은 경험을 보였다. 이는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피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표 29>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2): 그런 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4.8	12.0	56.6	26.5	3.05	$\chi^2=36.997$ $p=0.000$
기타여성	5.5	13.5	56.4	24.5	3.00	
성적소수자	4.8	9.2	56.3	29.8	3.11	
장애인	4.0	16.0	55.4	24.6	3.01	
이주민	18.7	18.7	33.3	29.3	2.73	

오프라인 혐오표현 경험 이후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기타여성의 66.8%, 성적 소수자의 65.8%, 장애인의 58.3%에서 나타났고, 이주민은 46.7%로 절반에 다소 못 미쳤다. 기타남성 집단은 35.5%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답하여, 표적집단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0>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3):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30.1	34.3	29.5	6.0	2.11	$\chi^2=62.784$ $p=0.000$
기타여성	14.1	19.0	52.1	14.7	2.67	
성적소수자	12.9	21.3	47.4	18.4	2.71	
장애인	16.6	25.1	42.3	16.0	2.58	
이주민	20.0	33.3	24.0	22.7	2.49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는 응답은 성적 소수자(61.1%), 장애인(60.6%), 기타여성(57.1%) 순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주민은 42.1%가 혐오표현 경험 이후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4):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1.2	34.9	12.7	1.2	1.64	$\chi^2=146.454$ $p=0.000$
기타여성	18.4	24.5	45.4	11.7	2.50	
성적소수자	14.3	24.6	41.2	19.9	2.67	
장애인	15.4	24.0	38.9	21.7	2.67	
이주민	25.0	32.9	22.4	19.7	2.37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문항은 장애인(58.8%), 이주민(56.0%) 집단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 성적 소수자는 49.3%로 거의 절반 정도의 응답자에게 그러한 경험이 나타났다.

<표 32>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4.2	25.9	17.5	2.4	1.68	$\chi^2=103.472$ $p=0.000$
기타여성	32.5	28.8	31.3	7.4	2.13	
성적소수자	22.4	28.3	32.0	17.3	2.44	
장애인	17.1	24.0	37.1	21.7	2.63	
이주민	17.3	26.7	30.7	25.3	2.64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자존감을 상실한 경험에서는 이주민의 경험(50.7%)이 가장 높았다. 이주민과 장애인 집단(50.3%)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자존감 상실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성적 소수자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47.0%)이 나타났다.

<표 33> 오프라인 혐오표현의 영향(6): 자존감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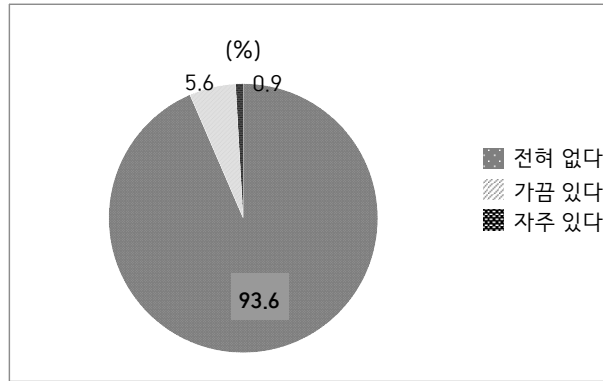
(단위: %, 점)

집단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점)	통계값
기타남성	59.6	25.9	12.0	2.4	1.57	x ² =108.810 p=0.000
기타여성	28.2	35.0	30.7	6.1	2.15	
성적소수자	22.1	30.9	36.0	11.0	2.36	
장애인	22.9	26.9	32.6	17.7	2.45	
이주민	24.0	25.3	32.0	18.7	2.45	

오프라인 혐오표현에서 기타남성 집단과 표적집단을 비교하여보면,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은 기타남성 집단은 혐오표현을 경험하더라도 자존감 상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표적집단보다 더 드물었다. 그러나 기타남성 집단에서도 혐오표현을 한 사람이나 혐오표현이 발생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 노력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기타남성 집단은 주요 혐오표현이 자신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상황을 꺼려할 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오프라인에서도 혐오표현 경험자들은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관계와 일상생활의 반경이 축소되며, 특히 혐오표현의 주요 표적집단은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표현에 제약을 받게 되고 일상생활에서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어려움,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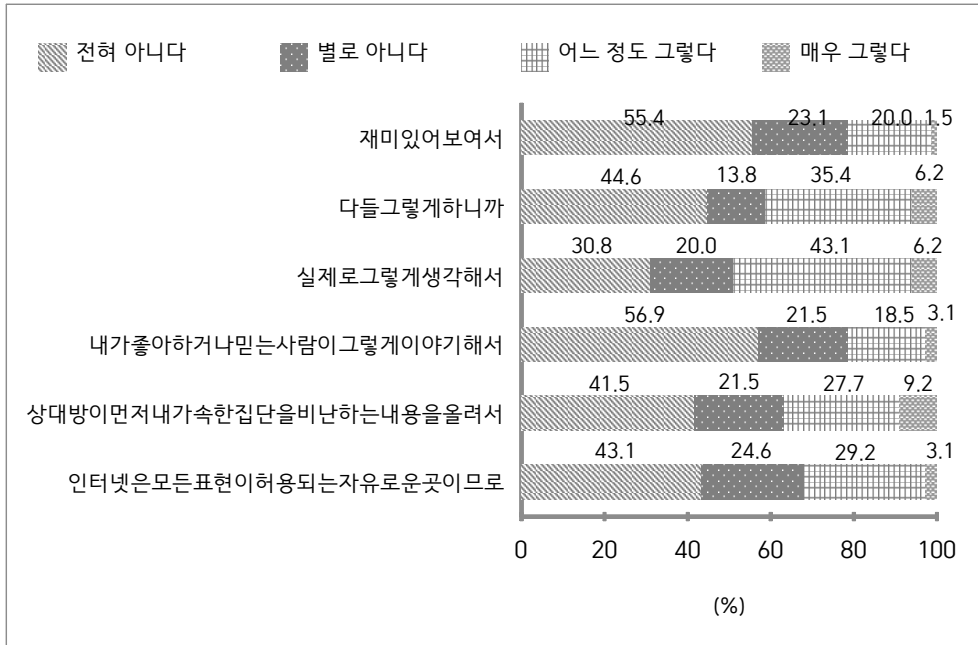
(5) 혐오표현 가해 경험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은 매우 높은 데 비하여, 혐오표현 가해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비난, 멸시, 위협하는 내용을 올린 적이 있다는 응답은 불과 6.5%에 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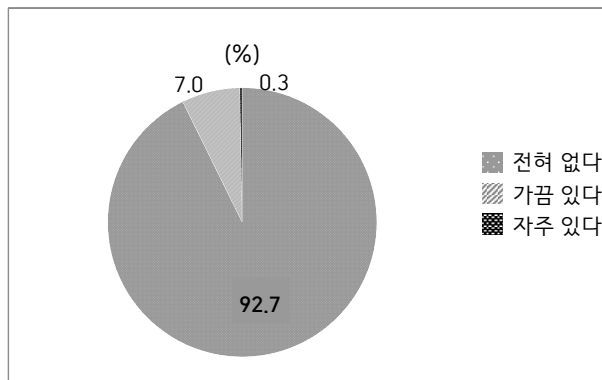
<그림 26>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혐오표현을 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6가지 제시문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제시문의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어느 정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문항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로, 절반에 가까운 49.3%가 실제로 혐오표현의 내용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한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들 그렇게 하니깐’(41.6%), ‘상대방이 먼저 내가 속한 집단을 비난하는 내용을 올려서’(36.9%), ‘인터넷은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곳이므로’(32.3%) 순으로, 이미 혐오표현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혐오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의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한 방법으로 혐오표현을 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 온라인 혐오표현 가해 이유

오프라인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비난, 멸시, 위협하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글을 공개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3% 수준에 그쳐,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가끔' 혐오표현을 할 뿐이라고 답하였다.



<그림 28> 오프라인 혐오표현 가해 경험

위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혐오표현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응답자들이 혐오표현을 경험하였던, 가족, 친구, 교사, 직장 상사와 동료 등의 수많은 ‘아는 사람들’, 길거리나 가게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혐오표현을 하는 사람이 극소수이고,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을 가능성, 앞선 문항에서 혐오표현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본 설문 특성상 가해 경험에 대해서는 거짓 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혐오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은 정당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가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온라인 혐오표현을 하였던 이유 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였다거나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곳이어서, 상대방이 먼저 비난해서 응답자도 상대방을 비난, 멸시, 위협하는 표현을 하였다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을 보았을 때, 스스로 혐오표현을 하면서도 그것이 혐오표현인지, 혹은 문제가 되는 혐오표현인지를 인식하지는 못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사회적 소수자를 비난하는 표현이 ‘부당한 혐오표현’이라는 것은 모르더라도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가해 경험 수치도 훨씬 높게 나타났어야 한다. 하지만 아예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의 불균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도 없고 혐오표현을 스스로 한 적도 없다고 답하였던 한 응답자는 ‘성소수자들은 음지에 있었으면 한다’, ‘청소년에게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이 글은 필수 응답을 요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칸을 비워두어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유 의견란에 남겨진 글이었다. 이 응답자는 성적 소수자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견해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혐오표현이 아닌 정당한 의견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응답자의 사례에서와 같이 스스로의 혐오표현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의 불균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6)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여야 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

의견을 수집하였다. 혐오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 위협하는 표현’과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하거나, 그들에게 차별이나 폭력을 가하자고 하는 표현’을 구분하여 ‘단순한 비난’과 ‘차별·폭력 선동’을 개념적으로 나누어 규제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표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1) 온라인 혐오표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의견은 <표 34>, <표 35>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비난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선호가 많았던 응답은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면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강퇴시키는 등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순이었으며,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에 동의한 의견은 다른 규제 방안과 비교하면 가장 적었지만 동의 의견이 61.0~81.0%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온라인 혐오표현(비난) 규제 의견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p
제한 없이 허용	6.6	3.8	2.0	1.5	11.3	0.000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79.4	87.5	91.2	89.0	70.5	0.000
사이트 이용 제한	71.1	81.3	84.4	81.5	63.1	0.000
차별시정기구의 규제	81.6	91.3	94.6	93.5	77.0	0.000
형사처벌	63.2	75.5	79.0	81.0	61.0	0.000

차별·폭력 선동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 비난 표현보다 규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3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적었고,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응답자

의 대부분이 '차별시정기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신고와 게시물 삭제, 사이트 이용 제한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성적 소수자 및 장애인의 90.5%, 기타여성의 84.6%, 기타남성의 73.7%, 이주민의 73.2%가 동의한다고 답하여, 사회적 소수자에게 차별, 폭력을 선동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형사처벌까지도 필요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온라인 혐오표현(차별·폭력 선동) 규제 의견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p
제한 없이 허용	3.1	1.9	1.0	0.5	8.2	0.000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 관리자가 게시물 삭제	86.0	91.8	94.6	92.0	67.8	0.000
사이트 이용 제한	82.0	88.0	90.5	89.0	71.9	0.000
차별시정기구의 규제	84.6	93.3	95.9	96.5	78.7	0.000
형사처벌	73.7	84.6	90.5	90.5	73.2	0.000

2) 오프라인 혐오표현

오프라인에서의 비난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규제 의견보다 다소 적은 편이었다. 제시된 3가지 규제 방안 중 '차별시정기구가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82.0~94.5%로 가장 높았고, '직장 내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에서도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79.5~92.5%가 동의하였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68.0~82.5%가 동의 의견을 표하였다.

<표 36> 오프라인 혐오표현(비난) 규제 의견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p
제한 없이 허용	6.6	2.9	2.0	2.5	8.2	0.006
사업장 내 징계	87.3	91.3	92.5	92.5	79.5	0.001
차별시정기구의 규제	84.2	94.2	94.2	94.5	82.0	0.000
형사처벌	68.0	77.4	78.6	82.5	69.9	0.003

차별·폭력 선동 표현의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비난 표현에 대한 의견보다 더 적었다. 특히 ‘차별시정기구가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집단의 95% 이상이 동의 의사를 표하였고, 이들 집단은 ‘사업장 내에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도 88.0~94.2%가 동의하였다. 기타남성 집단은 이주민을 제외한 표적집단과 비교하여 불 때 규제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이 좀 더 많았고, 사업장 내 징계, 차별시정기구의 규제, 형사처벌에 동의하는 의견도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훨씬 많았다. 이주민 역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 각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 오프라인 혐오표현(차별·폭력 선동) 규제 의견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p
제한 없이 허용	3.5	1.4	1.7	0.5	10.7	0.000
사업장 내 징계	88.2	94.2	93.6	93.5	78.7	0.000
차별시정기구의 규제	86.8	95.7	95.3	95.5	83.5	0.000
형사처벌	77.6	88.0	90.8	91.5	73.6	0.000

3)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영향에 대한 태도

온라인 혐오표현과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의견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떤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 폭력을 행사하자’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표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8>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 집단 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집단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비슷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기타남성 집단은 온라인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과 오프라인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비슷한 수준이었고,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집단은 오프라인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보다 온라인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이주민 집단은 오프라인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 온라인이 더 심각하다는 의견보다 좀 더 많아서,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이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보다 더 높았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8>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혐오표현 영향의 심각성 태도

(단위: %)

집단	기타 남성	기타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통계값
오프라인이 더 심각	28.5	13.5	19.7	19.5	34.2	x ² =27.400 p=0.001
온라인이 더 심각	28.1	32.7	29.5	33.0	27.4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비슷	43.4	53.8	50.8	47.5	38.5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표현이 갖는 영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비슷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표현의 정도에 따라서는 비난 표현보다는 차별·폭력 선동 표현에 대하여 규제에 찬성 입장이 다소 많은 편이었지만 비난 표현에 대해서도 혐오표현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7)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근간이 되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소수자를 비난하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질문하였다. 혐오표현 피해 경험과는 달리, 사회적 소수자가 ‘비난받을 만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각 집단에 대하여 ‘비난받을 만하다’는 의견은 1.6~6.9%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비난이 가장 낮았고, 성적 소수자에 대한 비난이 가장 높았다. 다만 이 결과를, 사회적 소수자를 비난하는 의견에 응답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서술식 응답을 분석하여 보면, 응답자의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을 기준으로 응답한 사례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결혼이주여성인 응답자가 ‘다문화가족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 비난의 이유로서 ‘국제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비난한다’는 서술식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답변은, 응답자 본인

이 '다문화가족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에 가까울 것이다. 따라서 이하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비난에 동의하는 정도를 확인하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비난의 이유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39>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비난의 정당성

(단위: %)

비난 대상 비난 이유 여부	여성	성적 소수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전혀 아니다	78.8	79.8	88.8	93.2	78.2	87.8
별로 아니다	15.1	13.3	8.0	5.2	15.3	8.7
어느 정도 그렇다	5.3	5.1	2.8	1.4	5.8	3.1
매우 그렇다	0.8	1.8	0.4	0.2	0.7	0.4

여성, 성적 소수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았다.<표 40> 여성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 경우 그 이유로는 '이기적이어서'(54.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30.6%) '능력이 없어서'는 14.5%였고 '위험한 사람들이어서'는 9.7%로 가장 낮았다. 기타(41.9%) 이유로는 '여성우월주의적인 페미니즘,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잘난 줄 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외모에 집착한다, 예의가 없다' 등이 있었다.

성적 소수자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응답 중에서는 기타 의견(52.2%)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특혜를 받고 있어서'(26.9%), '이기적이어서'(25.4%), '위험한 사람들이어서'(25.4%), '능력이 없어서'(6.0%) 순이었다. 기타 이유로는 '성적 문란함, 자연스럽지 않음, 도덕적 사회 규범을 해침, 청소년에 악영향, 성병을 퍼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킴, 집단의 폐쇄성, 함께 하려 하지 않음,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감을 인정하지 않음,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려 함, 기독교를 역차별하고자 함, 인구 감소에 기여, 정상 가정의 붕괴를 이끔, 동방예의지국의 이미지 훼손, 범행, 위장결혼, 이성애자와 위장결혼 후 바람을 뒀' 등의 이유가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인은 ‘위험한 사람들이어서’가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특혜를 받고 있어서’가 33.3%, ‘이기적이어서’가 30.3%, 기타 의견이 27.3%, ‘능력이 없어서’ 24.2% 순이었다. 기타 이유로는 ‘장애를 방패삼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다, 정신적 장애로 인한 범죄 증가, 그들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체계적 관리를 못하는 국가기관 탓’ 등이 있었다.

신체적 장애인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50.0%로 가장 많았고, ‘이기적이어서’(37.5%), ‘특혜를 받고 있어서’(31.3%), 기타(31.3%), ‘위험한 사람들이어서’(18.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유로는 ‘일부 신체적 장애인들의 정치적 행동’이 제기되었다.

이주노동자는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기타(40.6%), ‘이기적이어서’(25.0%), ‘특혜를 받고 있어서’(18.8%), ‘능력이 없어서’(12.5%) 순이었다. 기타 이유의 대부분은 불법체류에 대한 비난과 범죄 위험이었고, ‘한국문화에 통합되려 하지 않는다, 국가 성장을 방해한다’는 이유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이 57.1%로 가장 많았고,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40.0%로 높은 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기적이어서’ 22.9%, ‘능력이 없어서’ 20.0%, ‘위험한 사람들이어서’ 17.1% 순이었다. 기타 이유로는 결혼이주민보다도 매매혼 방식으로 결혼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비난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국제결혼을 악용한다, 불법체류, 한국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적다’ 등이 있었다.

<표 40> 사회적 소수자 집단별 비난 이유 (중복응답)

(단위: %)

비난 대상 비난 이유	여성	성적 소수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적 장애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무능력	14.5	6.0	24.2	50.0	12.5	20.0
특혜	30.6	26.9	33.3	31.3	18.8	40.0
이기적	54.8	25.4	30.3	37.5	25.0	22.9
위험	9.7	25.4	36.4	18.8	48.4	17.1
기타	41.9	52.2	27.3	31.3	40.6	57.1

3. 소결

이상에서 설문조사 분석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기타여성, 기타남성의 5개 집단별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실태와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표적집단 응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비난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우려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주요 표적집단의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난이나 차별을 우려하여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은 경험도 적지 않았다. 주요 표적집단 중에서는 비난이나 범죄 피해의 두려움의 정도가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인 혐오표현을 보았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지식의 정도는 낮은 편이어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적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주요 표적집단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입더라도 대응이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둘째, 온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타남성,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응답자의 90% 이상이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주요 표적집단의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적 소수자 94.6%, 기타여성 83.7%, 장애인 79.5%로 나타났다. 4점 척도로 집계한 혐오표현 경험 빈도 평균 또한 성적 소수자 3.1, 장애인 2.98, 기타여성 2.85로 ‘자주 경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 집단의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가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 집단은 한국어로 된 온라인 이용 시간이 선주민보다 적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의 범위가 선주민과 다르며 한국어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으므로 선주민 집단과 동일선상에서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민의 온라인 혐오표현 목격 경험은 50.0%로 절반 수준이었는데,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경험률이 매우 높아지며 특히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80.0%로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이주민으로서의 정체

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주민의 온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42.1%로, 이주민 집단 또한 적지 않은 비율로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 경험 빈도는 2.34로 ‘가끔 경험’에 가까웠다.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은 게시물보다 댓글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혐오표현 경험자의 50% 이상이 혐오표현을 목격한 공간으로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카페나 커뮤니티, 페이스북, 블로그, 동영상 공유 사이트, 웹툰 순이어서, 혐오표현이 일부 공간에 밀집되어 제한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공간에서 널리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하여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외에 혐오표현 경험자의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을 목격한 집단은 전라도 등 특정 지역 출신자,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 빈민, 무슬림 등으로, 성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장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피부색, 사회적 신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온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하였을 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혐오표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서도 혐오표현에 동의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글을 올린 경험이 더 많았다. 하지만 언제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고, 무시하고 넘어갔던 경험이 가장 많았다. 혐오표현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험은 적은 편이었던 반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한 경험은 대략 절반 정도의 응답자에게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대응과 같이, 비교적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 때에는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혐오표현이 발생하였을 때 혐오표현에 대해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혐오표현 경험은 주로 표적집단의 온라인 이용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인한 영향 중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이후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다른 경험보다 더 많은 편이었다. 특히 기타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 그와 같은 경험이 많았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경험도 기타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주민 집단에서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장애인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그와 같은 경험이 더 많았고 성적 소수자 및 이주민 집단에서도 40% 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혐오표현을 목격한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된 경험은 장애인, 성적 소수자 집단에서 높았고, 기타여성 집단도 절반 이상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 경험으로 인한 자존감의 하락은 장애인 집단에서 가장 높아서, 절반 이상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였다. 성적 소수자는 절반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온라인 혐오표현 경험은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집단 등 표적 집단의 온라인 활동 반경을 좁히고 온라인 이용에서 표현을 위축시키고,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에서의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존감 하락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의 표적집단과 기타남성 집단을 비교하면, 기타남성 집단은 혐오표현 목격 경험에서는 장애인 집단과 비슷하고 기타여성 집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혐오표현 경험 빈도는 성적 소수자, 장애인, 기타여성에 비하여 다소 낮았다. 기타남성 집단은 혐오표현 목격 경험에 있어서는 표적집단과 비슷한 반면에, 혐오표현이 자신의 정체성과 무관하기 때문에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문제를 느끼는 정도가 다소 낮고,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의 대응 경험은 더 적었으며, 혐오표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한 경험은 온라인보다는 낮았지만 대체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적 소수자는 92.2%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고, 장애인의 87.5%, 기타여성의 78.4%, 기타남성의 72.8%가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목격하였다. 한국인과의 접촉면이 넓지 않은 이주민 집단에서도 63.2%가 혐오표현 목격 경험이 있었고, 이주민은 다른 집단과 달리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이 온라인보다 높았다. 주요 표적집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혐오표현을 경험한,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은 성적 소수자 87.5%, 장애인 73.5%, 기타여성 70.2%로 나타나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혐오표현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민은 다른 집단과 반대로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률 보다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경험

를(51.6%)이 9.5% 더 높게 나타나, 이주민들이 오프라인에서 더 적대적인 환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혐오표현 경험 빈도는 장애인 2.45, 성적 소수자 2.36, 기타여성 2.03, 이주민 1.99, 기타남성 1.84 순으로 모든 집단에서 '가끔 경험'에 가까웠다.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은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90.4%)이나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80.9%)에게서 경험한 경우가 많았지만, 방송(83.8%)이나 유명인(80.1%)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하거나, '길거리, 교통수단, 공공화장실 등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82.0%)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한 사례도 매우 많았다. 그 외에도 물건 판매원, 공공장소에 게시되어 있거나 나눠주는 인쇄물, 공공장소의 영상물, 길거리의 연설이나 시위로부터 혐오표현을 경험하거나 교육자,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 공무원 등으로부터 혐오표현을 접한 사례도 적지 않아, 학교 등 교육기관, 공공기관, 사업장 등에서 혐오표현에 대응할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또한 여성, 성적 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집단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흑인·동남아인·서남아인, 특정 지역 출신자, 빈민, 무슬림 등에 대한 혐오표현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된 것으로 나타나,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성별,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출신 국가, 장애, 피부색, 출신 지역, 사회적 신분,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들 역시 혐오표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수치는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평가와 거의 비슷했다. 그에 따라 혐오표현에 동의하는 취지보다는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타인에게 혐오표현을 전달하거나 혐오표현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과 비교하여 보면,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소 적고 반대한다는 표현도 더 많이 하였으나,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온라인보다는 더 많은 편이었다. 주요 표적집단은 오프라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온라인에서보다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험이 조금 더 많았지만 기타남성은 반대로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 경험이 다소 많았다.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일 때 더 많았는데, 이는 대응의 용이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 경험은 온라인에서의 경험보다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주민 집단에서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

다.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응답자들은 혐오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하거나 혐오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거나,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거나,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례도 많았고, 자존감 하락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넷째, 혐오표현 피해 경험에 비하여 가해 경험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상대방의 비난에 대하여 대항하려는 의도이거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 등이 나타났다. 앞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혐오표현을 목격하거나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했던 것에 비하면 가해 경험은 매우 적는데, 그 이유는 혐오표현을 하면서도 자신의 표현은 혐오표현이 아닌 정당한 비판이라고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혐오표현의 규제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한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체로 단순한 비난 표현보다 차별·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에 대하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편이었고, 온라인의 표현과 오프라인의 표현에 대해서는 태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기구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아이디 정지 등 사이트 이용 제한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많아서, 차별·폭력 선동 표현에 대해서는 성적 소수자 및 장애인 집단의 90% 이상이 형사처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역시 차별시정기구의 규제 필요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혐오표현을 징계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형사처벌은 다른 의견보다는 동의 입장이 다소 적었지만 그럼에도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입장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혐오표현 규제 요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II. 면접조사 분석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과 내용

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서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고자 했다. 설문 응답만으로는 혐오표현의 발생 맥락과 환경을 세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피해 당사자가 겪는 심리적 손상과 사회적 영향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①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 ②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③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④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⑤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등이었다. 면접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⁸⁾

<표 41> 면접조사 질문목록

주요 질문	질문사항
①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	직접 겪거나 주변에서 목격 사례
	발생환경, 빈도
	유형
②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정서신체인지 영역의 피해
③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및 사회적 고립과 배제
	낙인·차별과의 관련성
④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대처경험의 유무
	대처방식, 대처유형
	주변(가족친구동료)의 대응
	사회적(정서적정보작평가적) 지지기반의 유무
	공적기관의 시정이나 구제 유무
⑤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규제나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피해자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
	대항표현 경험

228) 질문지는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참조.

‘①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 항목에서는 본인이 직접 경험한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사례를 묻고, 그 발생환경 및 빈도에 대해 청취했다.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 이외에도 소수자집단 내부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적이 있는지, 그 유형은 어떠한지를 질문했다. 이는 자신이 동질감을 느끼는 소수자집단 내부에서 혐오표현의 사례를 전해 듣는 것도 혐오표현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항목에서는 혐오표현이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다. 우선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질문 시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²²⁹⁾를 참고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조사대상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했다.

‘③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항목에서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달라지거나 사회적 권리가 축소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이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고,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생활(가정·직장·소수자집단 커뮤니티)이나 사회권(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사회활동이나 공론장에 대한 참여와 같은 시민권의 제한·위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폈다.

‘④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항목에서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대응 여부, 대응하거나 대응하지 않았던(혹은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 대응한 결과, 사회적(정서적·정보적·평가적) 지지 기반의 유무, 혐오표현에 대한 시정 요구와 구제 요청과 같은 사회적 대처 등을 물었다.

‘⑤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항목에서는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방법, 규제 외 공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법, 대항표현에 대한 경험 등을 물었다.

229)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을 측정할 표준화된 방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는 데에는 한국심리학회 심리검사심의위원회가 개발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진단될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척도를 참고했다. 비판적 인종이론(Critical Race Theory)의 입장에서 혐오표현에 대해 연구해온 일련의 학자들은 혐오표현에 따른 심리적 징후가 공포와 두려움, 불안, 악몽, 위협과 폄하의 기억에 관한 침습(원치 않는 사고)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과 유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75쪽, 90쪽.

(2)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면접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 소수자 단체의 회원 또는 회원의 소개로 알게 된 당사자 가운데 혐오표현 피해 경험의 대표성을 드러내줄 수 있는 이들로 선정했다. 성인 18명과 청소년 2명 등 총 20명이다. 면접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42> 면접조사 대상자 정체성 및 분포

모집단 주요 정체성	조사대상 수
여성	2명
이주민	3명 (결혼이주여성 1명, 이주민 남성 2명)
성소수자	6명 (게이 1명, 범성애자 1명, 트랜스젠더 2명, 청소년 2명)
장애인	8명 (지체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2명, 정신장애인 1명, 발달장애인 3명)
남성 이성애자	1명 (대학 내 성소수자 지지활동으로 혐오표현을 경험)

먼저 성인을 살펴보면, 여성·성소수자·이주민·장애인 등 18명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집단별로는 여성 2명, 성소수자 6명(게이 1명, 범성애자²³⁰⁾ 1명, 트랜스젠더 2명, 청소년 2명), 장애인 8명(지체장애인 2명, 청각장애인 2명, 정신장애인 1명, 발달장애인 3명), 이주민 3명(결혼이주여성 1명, 이주민 남성 2명)이다.

나머지 1명은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대학 내 성소수자 지지 활동에 동참하면서 공적 형태의 혐오표현을 경험한 특수한 사례이다. 혐오표현은 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주류사회나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수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짐작되며, 이를 좀 더 명확히 알아보고자 소수자 정체성을 띠지 않은 남성 1명을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우선 피해경험의 폭과 양태를 고려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첫째, 일상생활(오프라인)에서 자기 자신을 명백히 겨냥

230) 범성애자(pansexual)는 상대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에 구애받지 않는 성소수자로서, 성별이분법적인 시각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적 지향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개념상, 바이섹슈얼을 포함한다.

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둘째,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에서 소수자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적도 있는 이들로 구성했다. 개별적인 형태의 혐오표현과 소수자 전체를 향해 발화된 혐오표현을 모두 경험한 이들이 본 조사에 의미 있는 정보 제공자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경험에 대한 인지,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참여 욕구 등도 대상자 선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일상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에 시달리고 이를 스스로 내면화하기도 하는 소수자는 혐오표현을 겪더라도 자신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축소해 받아들이거나, 아예 부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심하게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는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격을 지키기 위해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다”라거나 “나한테 한 말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피해를 무화시키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면접조사는 제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피해 경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했다.

한편 성인 조사대상자 중 여성 모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는 2명이지만, 조사대상자 전체에서 여성은 모두 12명이다. 여성이자 성소수자, 여성이자 이주민, 여성이자 장애인인 참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반드시 분절적이지는 않으며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전체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고려했다. 또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과 관련해서 목격 사례를 더 수집하는 식으로 하여 여성 모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 수가 적은 것을 보충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띤 만 16~18세 청소년 두 명을 추가했다.²³¹⁾ 이는 최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혐오표현의 표적집단 가운데서도 성소수자 집단이 겪는 피해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 선정 가운데 장애인은 다른 소수자에 비해 조사대상자 수가 많은 편인데, 이는 집단면접을 실시하게 되면서 참여자가 늘어난 것이다. 면접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231) 해외의 선행연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혐오표현 피해에 있어서 공포와 무력감, 분노, 억울함, 충격과 같은 심리적 고통이 성인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본 조사는 혐오표현 피해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인의 심리적 영향을 따로 비교조사하지는 않았다.

<표 43> 면접조사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수자 유형(성별포함)	나이	직업	학력	출신국	종교
A 여성	26	사무직	대학휴학	한국	무교
B 여성	35	사무직	대졸	한국	무교
C 게이	23	서비스업	고교중퇴	한국	무교
D 범성애자, 여성	24	학생	대학재학	한국	기독교
E 트랜스젠더(MTF)	28	학생, 강사	대학원재학	한국	무교
F 트랜스젠더(MTF)	33	일용직	대졸	한국	천주교
G 이주민, 여성	34	휴직	고졸	동남아	기독교
H 이주민	35	영업	대졸	동남아	무교
I 이주민	43	지역업	고졸	동남아	이슬람교
J 장애인 여성 (청각장애, 지체장애)	38	사무직	고졸	한국	무교
K 장애인 여성(청각장애)	55	지역업	초졸	한국	천주교
L 장애인(정신장애)	53	직업훈련생	대졸	한국	기독교
M 장애인 여성(지체장애)	41	사무직	대졸	한국	천주교
N 장애인 여성(지체장애)	30	작가	대졸	한국	무교
O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25	직업훈련생	고졸	한국	무교
P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20	직업훈련생	고졸	한국	무교
Q 장애인 (발달장애)	20	직업훈련생	고졸	한국	무교
R 청소년 성소수자	19	학생	고교재학	한국	무교
S 청소년 성소수자	18	학생	고교재학	한국	무교
T 남성, 이성애자	24	학생	대학휴학	한국	기독교

A 여성은 청각장애인인 어머니가 과거 가정폭력을 입은 바 있으며 가정안팎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 B 여성은 모르는 남성에게서 갑자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 시작하여 스토킹으로 발전된 혐오표현 피해를 겪었다.

C 게이는 고교시절 원치 않게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폭로되는 아웃팅을 겪으면서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다. D 범성애자는 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에서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대학 당국이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을 불허하고 학내 성소수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혐오표현 피해를 겪고 있었다. E, F 트랜스젠더는 MTF 트랜스젠더²³²⁾로서

면접조사 당시 호르몬요법 등의 의료적 조치를 받으며 성 전환(gender transition) 중에 있었다. 특히, F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들어간 직장에서 화장실 사용문제와 관련하여 혐오표현 피해를 겪은 바 있다.

G, H, I 이주민은 한국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이들이다. G는 가정·직장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함께 혐오표현을 겪고 있었다. H는 한국인 여성과 이주민 남성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에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 후 살해협박과 함께 혐오표현을 겪었다. I는 초등학생이던 자녀가 다문화 자녀라는 것을 이유로 학교동급생들에게 괴롭힘과 폭행을 당한 바 있다.

J는 구화와 수화가 모두 가능한 청각장애인이자 지체장애인이며, K는 구화와 약간의 수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이다. L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현재 재활 중에 있는 정신장애인이며, M과 N은 지체장애인 여성이다. O, P, Q 발달장애인은 모두 직업훈련과정 중에 있다. P, Q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마쳤으며, P는 고교 3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한 바 있다. J, K, L, M, N, O, P, Q는 모두 자신이 가진 장애를 이유로 혐오표현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R, S 청소년 성소수자는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했다. T는 이성애자 남성으로 본 조사대상자 가운데 유일하게 다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벌이다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혐오표현과 함께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계속한다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요구를 받았다.

(3) 조사방법과 진행

조사방법은 1:1 대면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의 방식을 병행했다.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었으며, 총 조사 횟수는 1회였다. 초점집단면접은 발달장애인 그룹, 청소년 성소수자 그룹에서 실시했으며 질문과 답을 명확히 주고받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하는 전문가 1명을 보조로 배석했다.

모든 면접조사는 녹음한 뒤 녹취록을 작성했으며, 대면 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은 전화통화나 이메일로 보강조사를 했다. 면접조사에 앞서 조사대상자

232) Male-to-Female Transgender, 출생 시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을 뜻한다.

에게 미리 작성한 질문지를 배부했다. 발달장애인 그룹 면접조사 때에는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면서 쉽게 풀어쓴 별도의 질문지를 준비했다. 각 소수자집단이 경험하는 혐오표현 피해는 집단별로 세부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나 혐오표현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모든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한 질문지를 배포했다.

면접조사 시에는 가장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는 혐오표현을 질문하며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을 묻고 조사대상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심리적·사회적 영향과 대처방식, 사회적 방안 등에 대해 순서를 섞어가며 개방형 질문으로 물었다. 한편 면접 시 조사대상자를 위한 설명문을 안내하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시간차를 두고 면접 종료 후 녹취록을 보여줄 때 동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여 동의의 지속성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

2. 조사결과

질문목록의 순서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의 혐오표현 피해실태 중 공통적 특징을 정리했다.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에서는 본 연구 2장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의 유형을 나누어 사례를 살폈다. 일상생활과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혐오표현의 피해 사례를 살폈는데 소수자집단별로 겪는 특수한 혐오표현보다는 소수자집단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에 초점을 맞췄다. ‘(2)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에서는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조사대상자들이 어떠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지에 대해 부정적 심리반응과 스트레스성 심리반응으로 나눠 기술했다. ‘(3)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에서는 조사대상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기술했다. 조사대상자들이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후 일이나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거나 사회공론장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소수자집단에 미치는 효과로 살폈다.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소수자집단 전체에 대한 낙인·편견이 강화되고 사회적 배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서술했다.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혐오표현을 들은 후 대처 유무와, 대처가 가능했다면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폈다. 또 혐오표현이 폭력·차별로 이어진 사례 가운데 공공의 대처가 어떠했는지를 살폈다. ‘(5)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에서는 혐오표현에 사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와 관련하여 혐오표현 피해경험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의견을 정리했다.

<표 44> 조사대상자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의 공통적 특징

조사내용	조사결과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	1) 차별적 괴롭힘 ①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진 혐오표현 경험 ② 폭력·차별로 이어진 혐오표현 경험
	2) 차별표시
	3)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① 노골적인 적대, 차별의 표시 ② 온정주의적인 차별의 표시 ③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 ④ 대상화(성적 대상화,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 취급)
	4) 증오선동
(2)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1) 부정적 심리 반응 ① 두려움 ② 슬픔 ③ 지속적인 긴장감 ④ 자존감 손상 ⑤ 소외감, 무력감
	2) 스트레스성 심리 반응 ① 자살충동 ②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3)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1)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① 일상생활(학업, 일) 유지의 어려움 ② 고립과 단절
	2)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 ① 낙인·편견의 강화 ②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 ③ 성적대상화의 심화와 프라이버시 침해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1) 소수자로서의 어려움
	2) 공공기관의 대응
(5)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으로 인한 폭력 피해나 차별 발생 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개선 조치 실시와 피해자 안전 확보, 차별금지법 제정, 지역사회·학교·직장·세대별 인권교육 실시 등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

혐오표현은 비일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쉬우나, 조사대상자들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혐오표현을 경험한 공간은 가정, 직장, 학교, 대중교통과 같은 평범한 장소였고, 장을 보거나 거리를 걷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편견이 만연하고 일상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환경에서, 혐오표현이 ‘자연스럽게’ 경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에 따라 혐오표현을 정리하면서 혐오표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본 연구 2장(II.3.(2))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의 유형은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증오선동’이다.

‘차별적 괴롭힘’ 유형은 혐오표현이 성희롱·성추행 또는 폭력·차별과 함께 이뤄지거나 짧은 간격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모든 조사대상자가 경험하였다. ‘차별적 괴롭힘’ 유형은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진 혐오표현’, ‘폭력·차별로 이어진 혐오표현’으로 세부유형을 나누어 살폈다.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혐오표현의 유형인 ‘차별표시’는 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들어 공격하는 혐오표현의 양상은 특정한 소수자 개인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으로도 쓰이고 있었다.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에서는 본 면접조사에서 수집한 사례를 ‘노골적인 적대, 차별의 표시’, ‘온정주의적인 차별의 표시’,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 ‘대상화(성적 대상화,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 취급)’로 세부 유형을 나눴다. ‘노골적인 적대, 차별의 표시’는 이주민, 성소수자에게,

‘온정주의적 차별의 표시’은 장애인, 여성에게,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은 의견상 정체성이 드러나는 장애인, 성소수자(트랜스젠더)에게 주로 일어나고 있었다. 대상화로 성적 대상,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으로만 취급을 당하는 혐오표현은 이번 조사대상자인 소수자집단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내용이 공적인 공간에서 유통되어 결국 차별이 생기거나 퍼져나가는 것을 뜻한다. ‘증오선동’ 유형은 특히 이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해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차별적 괴롭힘

① 성희롱 성추행으로 이어진 혐오표현 경험

면접조사대상인 모든 소수자집단이 공통적으로 겪었다고 보고한 ‘차별적 괴롭힘’ 유형의 대표적인 혐오표현은 성희롱(성적 괴롭힘)이었다. 이때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언어적 성희롱으로 주로 발생했으며 신체적인 성추행, 협박, 폭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

G 이주민 여성의 경우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기사로부터 바로 자신의 출신국가를 확인당한 후 “남편이 밤에 잘 해주냐”는 성희롱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G는 두려움을 느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여간해서는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나 전철만 타게 됐다.

택시를 타면 운전기사들이 바로 알아요. 제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지만 말하면 바로 외국인인 줄 알죠. 한 번은 택시 타고 가는데, “어디 가주세요”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 알았다” 고 하고 “어디에서 왔냐?” 그러고서는 (말 멈춤) “밤에 남편이랑 잘하고 있냐, 잠자리 잘하고 있냐” 심지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렇구나”하고 느끼는 거죠.

-사례 G 이주민 여성

또 G는 목격 사례로 이주민 여성 친구의 사례를 이야기했다. G의 친구는 전철역 출구에서 서 있다가 낯선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이주민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관련되어 성희롱을 당했다.

친구(이주민 여성)가 약속이 있어서 전철역 출구에서 혼자 기다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왔어? 외국인 맞지?”하고서는 “너 여기 와서 힘들게 돈 벌잖아. 나랑 같이 가면 매달 30만 원 용돈으로 줄게. 네가 나한테 와서 아내로 있든지 내 여자로 있든지 하면 된다”고 했대요. 그 사람은 가볍게 말할 수도 있지만, 친구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거는 수치예요.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한국남자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사례 G 이주민 여성의 목격 사례

이러한 성적 괴롭힘의 연사는 비단 이주민 여성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주민 H도 이주민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이주민은 남자든 여자든 성희롱이 빈번하다”며 그 실태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국인들이) “어디서 왔느냐, 종교는 뭐냐”고 묻고는, “아내가 몇 명이나” 이런 말을 불쑥 던지고 “밤생활은 어떠하냐”고 계속 묻기도 하죠. 이런 말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주민은 남자든 여자든 성희롱 당하는 건 한두 번이 아니예요. 자연스럽게 성희롱을 당해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싼 임금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 있으면 충격과 고통을 쉽게 받아요. 그렇지만 이주민 남성은 이런 거 다 털어놓고 이야기는 못 하죠. 남자니까, 센 척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주민 남성은) 이십대 초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한국에 오니까 혼자서 울고 견디는 거죠.

-사례 H 이주민

F 트랜스젠더는 아침 출근길에 지나던 차에 탄 낯선 남성으로부터 트랜스젠더라면 자기 차로 와서 성행위를 하자고 하는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 F는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고 출근길을 서둘렀지만, 자신을 성희롱한 남성에게서 물리적인 위협을 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신이 느낀 위협의 수위에 대해 F는 “제가 트랜지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체적으로 바로 알아보려할 것 같은 수준이었다”고 두려움을 토로했다.

아침에 출근을 하던 길에 인도를 걷고 있는데, 옆에 가던 차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제가 답을 하니깐 제 목소리를 듣더니 “혹시 트랜스젠더냐? 얼굴이 예쁘다”면서 연락처를 달래요. 제가 왜냐고 물으니깐 다짜고짜 “목소리가 딱

티가 나지 않느냐. 지금 차 안으로 와서 같이 그걸 하자”고 하는 거죠.

-사례 F 트랜스젠더

E 트랜스젠더는 정체성과 관련하여 의료전문인으로부터 당한 성희롱 피해를 목격 사례로 전했다. E는 트랜스젠더인 지인이 군대 신체검사장에서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을 때 의료전문인에게 “트랜스젠더냐”고 질문을 받은 후 “가슴을 보여달라”는 성희롱을 겪었다고 목격사례를 보고했다.

군대 신체검사장에서 “호르몬 투여 중”이라고 밝히면 보통 호르몬 투여 증빙 서류하고 CT 결과 그 정도만 보는데요. 가슴을 대놓고 보여 달라고 한 의사가 있었어요. 산부인과의 아니면 비뇨기과의였는데요. 다른 대체수단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런 말을 한 거죠.

-사례 E 트랜스젠더 (MTF)의 목격 사례

B 여성은 혐오표현 피해가 스토킹으로 발전하여 경찰수사가 들어간 사례이다. B 여성은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개월 동안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엄지를 들어 올리는 형태의 이모티콘을 받았다. 누구한테 같은 이모티콘이 오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B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어리둥절해하며 아무런 답도 달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바꾼 후 이모티콘을 받았던 카카오톡 창에서 “안경 벗은 게 섹시해 보인다”, “오늘은 어깨를 노출해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받게 됐다. 이후 B가 카카오톡 창의 프로필 사진을 바꿀 때마다 B의 외모에 대해 품평하는 식으로 성희롱이 이어졌다.²³³⁾ B는 “너를 본 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위협을 느껴 더 이상 건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늘 정해진 시간에 카톡으로 ‘따봉’ 이모티콘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다 외모에 관련된 평가를

233) B처럼 여성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 시작하는 성희롱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성희롱의 유형이다. 2015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유형은 본인의 피해유형 및 타인의 성희롱 피해 인지경험 모두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나영 외,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55쪽.

당하고 나서는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나랑 차 한 잔만 하자”고 보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카톡이 왔어요. 12월 31일 밤 딱 12시인데.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다. 네가 집에서 잠옷을 입은 상태로 안경을 끼고 부스스한 얼굴로 나오는 게 마음에 든다. 차 한 잔 하고 싶다는데 왜 이걸 자꾸 거절하지?”라고.

-사례 B 여성

신고 후 B는 가해자를 잡게 됐는데 그 때 경찰은 B에게 전화를 걸어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며 전화를 바꿔줬다. 그런데 가해자 남성은 사과 대신 “왜 경찰서에 신고를 했냐. 니가 뭔데, 내가 한 건 차 한 잔 하자는 거밖에 없었지 않냐”고 했다. B는 가해자 남성의 언행이 “여성은 언제나 남성이 원하면 데이트에 응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철저히 성차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B 여성이 겪은 스토킹 피해는 일종의 성차별적 혐오표현 피해로 볼 수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성희롱이나 스토킹을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²³⁴⁾ 한 B 여성이 목격했다고 전한 사례에서도 온라인 스토킹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²³⁵⁾

234)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성평등 전략(2014~2017년) 이스탄불 회의에서 성희롱과 스토킹이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유형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유럽평의회가 작성한 보고서, 성차별적 혐오표현과 싸우기(Council of Europe, “Seminar: Combating Sexist Hate Speech”, 2016)는 “SNS,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가장 흔한 온라인 혐오표현의 피해 유형이며 젊은 여성이 종종 대상이 되지만, ‘덜 해로운’ 혐오표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온라인에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겪는 대상은 온라인 활동이 활발한 젊은 세대의 여성뿐만 아니라 페미니스트 운동가,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 여성의 권리와 관련되어 활동을 하는 페미니스트 그룹”이라는 점을 밝히며 온라인에서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이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 (보고서 출처: <http://blog.nohatespeec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16/02/Combat-Sexist-Hate-Speech-Seminar-report-online-version.pdf>, 6쪽, 15쪽)

235) 조사대상자 B 여성의 목격 사례는 온라인상에서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성차별적 괴롭힘의 표현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한국에서도 여성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이 강간

여성 인권에 관한 뉴스나 여성주의 관련 정보를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자주 쓰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사이버 스토킹을 겪었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무래도 동일인물인 듯한 사람이 댓글로 여성에 대한 욕부터 시작해서 성희롱 표현은 물론이고 친구를 찾아내서 성폭행 하겠다는 식으로 꾸준히 다는 거죠.

-사례 B 여성의 목격 사례

정체성과 관련되어 성희롱으로 이어지는 혐오표현은 여성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도 겪고 있었다. C 게이는 고교시절 본인의 성적 지향이 원치 않는 아웃팅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로 다른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모르는 사람에게 욕설과 함께 “더러운 걸레년”이라고 성차별적 혐오표현을 들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C는 학교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자신(C)의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을 보여주는 식의 성희롱을 경험했다. 이와 함께 C는 반 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공을 세계 차서 자신(C)을 맞추는 식의 학교폭력도 경험했다.²³⁶⁾

별일이 다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욕도 하고. 학교에서는 워낙 당한 게 많은데……. 언어적인 것 말고도 좀 많았죠. 애들이 제 앞에서 갑자기 옷을 벗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체육시간 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제 앞에 와서 옷을 갈아입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체육시간이 제일 싫었어요. 옷 갈아입는 것도 그렇고, 축구공을 일부러 저한테 차기도 하니까.

-사례 C 게이

위협을 포함한 성적 폭력에 대한 암시 혹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수아 외,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52쪽.

236)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4)에 따르면, 만 13~18세 227명의 성소수자 청소년 가운데 다른 학생으로부터 혐오표현을 들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0%, 성소수자임이 의심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원인이 되어 다른 학생으로부터의 모욕, 개인적으로 무시 또는 비난, 신체적 폭력을 받은 경험은 각기 47.5%, 21.0%, 4.5%로 보고된 바 있다.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28-29쪽.

학창시절 평소 학생들에게서 “장애인새끼”라고 노골적인 혐오표현을 들던 P 발달장애인 여성은 자신에게 혐오표현을 일삼던 무리 가운데 하나였던 남학생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

체육시간이라서 화장실에 가서 체육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혼자 갈아입고 있는데. 저를 매번 놀리던 남학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가 옷 갈아입는 것, 제 팬티를 뻘히 쳐다봤어요. 진짜 부끄러웠어요.

-사례 P 발달장애인 여성

지체장애인 여성 M은 “희망을 가져라”라고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온정주의적 혐오표현과 함께 성추행을 겪었다. 청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 J는 온정주의적 혐오표현과 조롱이 섞인 혐오표현에서 시작한 성희롱을 경험했다.

지하철에서 술 취한 남성이 제게 말을 걸더니 “희망을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어디서 내리시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내린다” 하더니 내리면서 제 볼에 뽀뽀를 하고 내리는 거예요. 이건 성폭력인데. 너무 놀랐어요.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저한테 “몰래 연애하다가 부모한테 맞아서 목발 짚게 됐지?”라고 깔깔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연애 해봤냐”고 하더니 “결혼은 했냐?”, “섹스는 해봤냐”. 처음 봤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사례 J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직장에서 야근을 하고 러시아워가 지나 좀 한적해진 시간에 퇴근을 하다가 전철을 같이 탄 중장년 남성으로부터 혐오표현 피해를 겪었다. 중장년 남성은 불쑥 N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잡아끌면서 “나 내리는 역에서 나랑 같이 내리자”고 했다. 중장년 남성이 딱히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을 말한 것도 아니었지만, N은 이 표현을 언어적 성희롱이자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도 인식했다. 자신을 별안간 잡아끌며 마음대로

데리고 가려는 강압적인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N은 “왜 이러세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급하게 전철칸 내에서 이동을 했다. N은 도망갈 수 없고, 곧 추행을 당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일이 많아서 야근하다가 전철로 집에 오는데요. 할아버지 아니면 아저씨일 텐데 어떤 남성이 갑자기 제 휠체어를 잡아끌면서 “나 내리는 역에서 나랑 같이 내리자”는 거예요. 전철이 가는 도중에. 저는 “왜 이러세요”라는 말밖에 못하죠. 아무도 그 남성의 행동을 말려주지는 않고. 제가 그 남성을 피하고 싶어도, 휠체어는 전철에서 차량 이동이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차량 안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만 하는 거죠. 다행이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와요. 언제 어떻게든 저를 만질 것 같다는 느낌, 나는 저항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죠. 장애여성이라서.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이렇듯 종종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지는 혐오표현은 교통수단, 길거리, 학교 등 일상생활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는 각자의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는 혐오표현 가운데 실제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고 있었다. 이번 조사대상자였던 모든 소수자집단에서 일상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과 동시에 성희롱·성추행 경험을 겪은 점을 보면,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때 일어나는 차별적 괴롭힘이자, 소수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② 폭력·차별로 이어진 혐오표현 경험

조사대상자들은 혐오표현이 곧 폭력(폭행, 학교폭력, 가정폭력, 즉각적인 폭력 행사나 살해협박의 암시)이나 차별(임금갈취 등)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했다. 위의 ①에서 든 성소수자 C의 사례처럼 혐오표현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 사례는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이주민, 장애인에게서도 나타났는데, 초·중등학교 때의 경험일수록 혐오표현과 함께 일어나는 왕따나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

한국에서 거주한 지가 20년째이고 귀화했으며 자녀를 셋 두고 있는 이주민 I는 몇 년 전 당시 4학년이던 11살 첫째 아이가 학교 교실에서 반 아이

들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다. I의 자녀가 속한 반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 결근하던 날 자습을 하다가 급우 가운데 ‘가장 재수 없는 애’가 누구인지 뽑는 투표를 했고, 이주민 I의 자녀는 여기에 뽑혀 집단폭행을 당했다.

제가 가장 상처를 받은 것은 애들 관련한 문제 때문인데요. 큰 아이 OO(I의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맞던 날, 담임선생님이 그날 출근을 안 했고 학교에서는 대체 선생님도 안 보내줬고 그런 상황에서 애들만 있게 됐는데. 애들끼리 투표를 한 거예요. 가장 재수 없는 애가 누구냐는 거랑, OO(I의 자녀) 때릴래 안 때릴래. 이걸로 투표했는데, 때리자는 표가 더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14명에서 같이 OO를 때렸어요. OO가 병원에 있다고 와이프한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는데 정말로 마음이……. 화가 났죠.

-사례 I 이주민

이주민 I는 자녀가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가게 되면서 비로소 자녀가 1~2년 넘게 지속적으로 학교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것을 알게 됐다. I는 “자녀가 투표로 뽑혀 맞기까지 많은 혐오표현을 들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폭행을 당한 후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된 자녀가 함구하여 “정확히 무슨 말을 들으며 괴롭힘을 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더 있었는데, 그 아이들도 자신의 자녀처럼 이주민의 자녀라는 이유로 한국인 아이들에게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해 이주민 자녀의 부모들과 상담한 적이 있다고 목격 사례를 전했다.

그룹인터뷰를 실시한 발달장애인들은 모두 학교에 다닐 때 비장애인 학생들에게서 발달장애인이란 이유로 혐오표현과 함께 무시, 왕따, 폭행을 겪었다고 했다. 이런 폭력을 당할 때 ‘장애인새끼’와 같은 말을 듣기도 했지만 아예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얻어맞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는 막 치마를 들어 올리고 “아이스캐끼” 그러면서 “장애인새끼야”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는 빗자루로도 맞아보고 대걸레로도 맞아보구요.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에 갔는데 애들이 저만 혼자 방에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너 여기서 혼자 자, 우리는 다 같이 라면 끓여먹고 잘게”하고. 수학여행 가는 버스에서도 과자, 음료수 같은 건 나눠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너는 찌그러져 자”, “진상이야”하면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사례 발달장애인 여성 P

“장애인새끼야”와 같은 그런 말을 저도 듣기도 했을 텐데, 저는 아예 기억이 안 나요. 트라우마 같아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고 당한 기억만 나는데요. 중학교 때 대놓고 아예 무시를 당했어요. 말을 걸어도 애들이 대꾸를 안 해요. 한 마디도.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 않아요. 만약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가져왔어?”하면 답을 안 해줘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가는 길에 애들이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좋아서 따라갔더니 갑자기 때리는 거예요. 다섯 명이서 같이 때렸어요.

-사례 발달장애인 여성 O

저도 말을 걸어도 답을 안 해줘요. 저는 투명인간이죠……. 여러 명이 막 이유 없이 때리고 욕하고 비속어 쓰고. 제가 맞은 것만 기억나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농구를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인데, 반 아이 한 명이 뒤에서 컴퍼스로 제 어깨를 찔렀어요. 그래서 뼈가 부러졌어요.

-사례 발달장애인 Q

위에서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공간에서의 피해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당한 혐오표현 피해를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이는 온종일 부대끼며 지내야 하는 공동생활 속에서 줄곧 무시와 왕따를 당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집단폭행이나 상해가 심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성 A는 성장과정에서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장애에 대한 혐오표현,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가정폭력을 당했다.²³⁷⁾ A의 어머니는 삼십대 후반에 청각을 상실했는데, 어렸을 적 겨울에 아팠을 때 집밖으로 쫓겨났다가 얻은 열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청각을 잃게 된 것이다. A의 어머니가 어린 나이에 아픈데도 집밖으로 내쫓긴 이유는

237) A의 어머니가 겪은 가정폭력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사회의 차별과 고립이 피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에서 “위원회는 시설 안팎에서 벌어지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막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권고를 채택한 바 있다.

“딸이 많으니, 딸은 죽어도 괜찮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렇게 A의 어머니가 청각장애를 갖게 된 배경에 원가정의 성차별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A는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전까지 A의 어머니는 자신이 장애가 있다는 사실도 딸 A와 가족, 주변에 숨기거나 부인했다.

아버지가 항상 술을 드시면 어머니를 많이 폭행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귀머거리야, 이 병신아” 하셨죠.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죠. 거의 매일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걸 봤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는 것을 장애라고 인식하시기보다는 굉장히 열등하게 봤고요. 어머니는 사실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지적으로 열등하다, 바보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례 A 여성

혐오표현의 피해 사례를 보면 혐오표현은 단순히 언어폭력에 그치지 않고 학교폭력, 가정폭력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 혐오표현은 폭력의 가해자들이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종종 실제 차별행위로 쉽게 이어지는데, 이 때 차별행위의 가해자도 자신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혐오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이주민 G의 경우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G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중간관리자로부터 월급을 갈취당한 경험이 있는데, 갈취의 근거로 중간관리자한테서 “네가 외국인이라 한국말이 서툴러 일을 못하니까 다른 근무자들(한국인 동료들)에게 음료수를 사 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말이 서투르니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 혹은 사과를 하라는, 다소 황당한 혐오표현을 통해 월급 갈취 상황이 정당화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G가 빼앗긴 임금 일부는 동료들의 음료수를 사는 데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중간관리자의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중간관리자는 G가 첫 월급날을 며칠 남겨놓지 않았을 때, G가 회사에서 고용 당시 약속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고용계약 변경에 관한 회사측 방침을 통보하면서, 위와 같은 혐오표현과 함께 자신(중간관리자)에게 임금 일부를 달라고 했다. 두 번째 월급을 받기 전 G는 한국인 동료들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서, 다행히 더는 중간관리자에게 임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 일이 더 고된 야간 근로에 배정됐다. 당시 G는 하루에 12시간을 일했

고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는 상태였다.

식당에서 일을 할 때 저하고 한국인 아줌마 다섯 명이 근무했어요. 그분들께서 이렇게 해라하고 저를 도와주는 거죠. 저도 배우고. 월급을 나올 때 남자직원인 관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통장에 월급이 들어갈 텐데 월급에서 현금 5만 원을 빼서 자기한테 주라고. 저는 한국사람이 아니니까 말을 못하고 일을 잘 못하고 이 아줌마들 너무 수고 하니깐 음료수 사야 한다고. 어이가 없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저는 외국인인데.

-사례 G이주민 여성

이주민 I는 경찰로부터 편파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다. 자영업자로서 I는 한국인 남성과 동업으로 자영업을 하다가 갈등을 겪어 동업자로부터 사기·횡령으로 고발됐다 무혐의처리 된 적이 있었다. 동업자와 갈등을 겪던 시기에 동업자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동네 파출소 경찰을 함께 일하는 사무실로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I와 동업자가 일대일로 다투고 있는데도 그 경찰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동업자와 I는 싸움이 격화되면서 서로 욕을 하게 됐는데, 이 경찰은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중에 이 날 벌어진 말다툼에서 I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면 동업자가 I를 모욕죄로 고소하자 현장에 있던 경찰은 자신이 직접 I의 욕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I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그때 동업자랑 싸우게 됐는데, 동업자가 저더러 “도둑놈 새끼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똑같이 받아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와 있던 경찰이 제 말(욕)을 바로 적더라고요. 동업자가 나중에 저를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어요. 그 경찰이 제가 욕을 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제가 그 경찰한테 동업자도 나한테 똑같이 욕을 했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나한테는 “당신한테는 진술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 자체가 차별을 당하는 것, 혐오표현이라고 느끼게 되죠.

-사례 이주민 I

경찰이 딱히 자신을 두고 특정한 혐오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I는 경찰이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그저 지켜만 보고 있다거나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이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행위의 표현이라고 봤다. I는 경찰의

편파적인 진술과 “당신한테는 진술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했다.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나온 말을 혐오표현으로 인식한 것이다.

한편, 즉시 폭력을 행사하겠다고거나 심지어 살해협박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폭력을 암시하는 혐오표현은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가 모두 들은 적이 있다고 피해 경험을 이야기했다. 성소수자 C는 목격사례로 자신의 지인인 바이섹슈얼 남성이 일터에서 동료들이 성소수자를 두고 “때려 죽인다”는 표현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보고했다.

친구가 겪은 일인데 쿼퍼레이드가 열렸을 즈음인데 직장에서 동료들이 뉴스를 보고 성소수자가 화제에 오른 거예요. 그때 동료들이 “만약 내 옆에 ‘저런 것들’이 있으면 다 때려 죽이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사례 C 게이의 목격 사례

이주민 H는 몇 년 전 한국인 여성과 이주민 남성의 로맨스를 다룬 영화에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했는데 영화가 개봉하자 온라인 댓글에서 H가 영화에 출연한 것과 영화 줄거리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H는 핸드폰으로 살해협박 전화를 받았다.

영화가 나오고 한 6개월간 협박전화를 받게 됐는데요. 하루에 두 번 오기도 하고 세 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엄청 많은 말을 들었어요. “조심해라”, “너희 나라로 돌아가”, “조용히 살아”, “죽이겠다”…….

-사례 H 이주민

지체장애인 여성 M은 출퇴근길에 전철역 출구 경사로를 이용하려다가 자신의 휠체어 앞을 막아선 비장애인 남성에게 반말, 욕, 폭언과 함께 위협을 당했다. 남성은 전철역 출구 앞에서 물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었다. M은 자신이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비켜달라고 몇 차례나 공손히 말했다. 그러나 정중히 요청하면 할수록 이 남성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렸다. M은 결국 경사로가 없는 우회로로 돌아가야 했다.

제가 경사로에서 조금만 비켜달라고 하자마자 “야, 저리 비켜 돌아가”라고 반

말에 위압적으로 말하는 거죠. 순간 저는 너무 불쾌감이 들고 굉장히 무시당한, 아주 얄잡아 보인 느낌이고. 보통 행인이더라도 이렇게 나올까, 제가 체구가 작고 장애여성이니까 만만하게 보이니 싶고. 그래도 어쨌든 이 남성도 길거리에서 장사하면서 행인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 정중하게 “제가 경사로를 이용해야 해서요. 한 발짝만 물러서 주시면 제가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00년, 0년” 하고 욕하면서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고 폭언에 더 난리가 난거죠. 손도 이렇게, 때리겠다는 시늉을 하고. 계속 더 이야기 했다가는 진짜 폭력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M은 자신을 헐박하던 남성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흥분하던 남성의 모습을 보고서 “마치 남성이 ‘아니 장애인이 나를 무시하냐’라고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길거리에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대처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M은 장애가 있어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골절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을 입으면 회복이 비장애인보다 더디고 힘들다.

반말, 욕, 폭언 등이 바로 혐오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혐오표현이 폭력, 헐박,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 사례 가운데 반말, 욕, 폭언 등이 결부된 경우가 빈번했다. 지체장애인 여성 M의 사례에서 반말, 욕, 폭언, 위협하는 듯한 제스처가 잇따랐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O, P, Q, 성소수자 C는 욕설을 들은 후 학교폭력을 당했다.

또 이주민 H와 I, 지체장애인 여성 N은 길거리나 교통수단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자신에게 무조건 반말로 말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것은 종종 혐오표현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2) 차별표시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공개 출판하거나 게시하는 ‘차별표시’ 유형은 주로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번 면접조사에서 드러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차별표시’ 유형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비하, 멸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이 소수자 특정 개인을 향해서도 쓰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1)에서 영화에 출연하고서 살해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이주민 H

는 전화로 위협을 받기 전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차별표시’ 유형의 악성댓글을 받았다. 댓글을 받은 온라인공간은 영화정보를 올려놓은 검색엔진 사이트였다. H는 악성댓글을 쓴 이들이 당시 온라인에서 활발히 인종차별적 정보를 퍼뜨리며 이주민 반대 기치를 내걸고 활동하던 소위 반이주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입자들일 거라고 추측했다. 처음에 H에 대한 차별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은 H가 출연한 영화의 개봉 임박을 알리는 뉴스에 대한 온라인 댓글 형식으로 H를 두고 “테러리스트”, “파퀴(파키스탄인에 대한 차별어)”, “방글이(방글라데시인에 대한 차별어)”, “불체자(미등록이주민) 아웃”과 같은 글이 우후죽순으로 달리기 시작하던 양상이었다. 그러다가 영화 스틸 컷이 나오며 H의 얼굴이 나오자 그 위에 ‘범죄자’라고 써서 합성한 사진이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영화가 개봉하고서 처음에 온라인에서 악성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제가 출연한 주인공 캐릭터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인데, “이슬람 교도는 테러리스트다” 등과 같은 내용도 있고, 또 “왜 하필 시꺼먼 외국인,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우리 한국 여자랑 사귀냐” 이런 내용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스틸 사진은 공개를 하잖아요. 그 컷에 나오는 제 사진 위에 ‘범죄자’라고 써서 합성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녔죠. 동영상도 만들어졌다던데 안 봤어요. 한동안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사례 이주민 H

1)의 스토킹 사건 피해자였던 B 여성은 실명으로 온라인 매체에 자신의 피해경험에 대해 뉴스 기사형식으로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글에 달린 ‘차별표시’ 유형의 댓글을 봤다. B는 자신을 이목을 끌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기고를 폄하하는 댓글, 가해자를 찾아가 복수를 하라며 폭력을 조장하는 듯한 댓글, B가 여성으로서 몸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식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이 줄지어 나오는 것을 봤다.

저는 기고글에서 피해자로서 느끼는 제 심정과 사람들이 널리 갖고 있는 성차별주의적인 통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썼죠. 그러니까 바로 “관심종자네”, “여자는 ○○(성기)를 잘 간수해야 한다”, “기고글을 쓴 목적이 복수인 것 같은데, 차라리 가해자를 찾아가 직접 진짜 복수를 하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달렸죠. 저는 인식을 바꾸려했을 뿐인데.

-사례 B 여성

지체장애인 여성 M은 발달장애인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건 지역주민들에 관한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글을 들어, ‘차별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을 겪었다.

댓글을 보니까 “네가 장애인하고 살아봤냐,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내 자식이 왜 장애인과 같이 살아야 하나, 찝찝하다”, “문제가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라고 장애인을 ‘같이 살 수 없는 존재, 위험한 존재’라고 분명히 써놓았더라고요.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죠. 온라인은 파급력도 더 크고 그냥 맞는 말인 것처럼 쓰여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상당히 문제죠.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S는 차별표시 유형의 온라인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의 집단적 정체성에 대해 “더럽다”거나 “똥꼬충”이라고 비하하는 혐오표현을 겪었다. 또 최근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을 보고했다. 성소수자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을 하면 댓글이 달리는데, 성소수자집단 전체에 대해 기존에 온라인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혐오표현이 커밍아웃을 한 특정 당사자 개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유튜브에 커밍아웃 하고 활동하는 성소수자가 많은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커밍아웃 영상에 동성애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고 댓글을 달 줄 몰랐어요. 저는 힘을 받으려고 또 지지하려고 영상을 보는 건데, 그런 걸 보면 되게 당황스럽죠. 성소수자 관련 뉴스 같은 데에 달리는 댓글은 성소수자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데, 유튜브에서는 커밍아웃한 사람한테 뉴스 댓글 같은 혐오표현을 똑같이 하거든요. 대놓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셈이죠.

-사례 S 청소년 성소수자

케이 C는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차별표시 유형 혐오표현을 겪게 된 것이 아웃팅이 일어났던 고등학교 때였다. 최근에는 퀴어퍼레이드 때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벌인 후 일베 커뮤니티에 자신이 퍼포먼스를 벌이는 사진이 무

단으로 올라간 것을 알게 됐다. C는 자신의 사진이 올라온 글에 대량의 댓글이 달렸는데 성소수자 전체에 대해 전형적으로 쓰이는 혐오표현으로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제 블로그 주소가 유출되면서 같은 학교 학생들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악의적인 댓글을 많이 남겼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댓글이 있었는데 일단은 흔히들 말하는 “역겹다”거나 그런 건데요. 악플 테러를 당하는 연예인이나 그런 줄 알았지, 저한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최근에는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 사이트에 제 퍼포먼스 사진이 올라갔는데요. 진짜 악플이, 거의 500명이 단 댓글이 있더라고요. “더럽다”, “역겹다”, “섹스는 어떻게 하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정말 거기서 거기죠.

-사례 C 게이

이렇듯 소수자집단 전체를 향해 발화된 차별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은 온라인에서 소수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위해서도 쓰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보다도 일상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혐오표현을 더욱 중시하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에서 소수자가 겪은 온라인의 혐오표현 피해, ‘차별표시’ 유형의 혐오표현 실태는 한정적으로 드러났다.²³⁸⁾

238)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온라인의 혐오표현 실태가 심각하지 않다든가 혹은 자신의 생활에 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니다. 조사대상자들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의 발생 및 심각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들은 자신 또는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온라인 혐오표현을 접한 이후에 심리적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된 나머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아예 보지 않게 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온라인은 매체 특성상 불특정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메시지가 장시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익명성을 담보로 소수자 개인과 소수자집단에게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강도 높은 혐오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조사대상자들에게 심리적·사회적인 면에서 명백히 피해를 주고 있었다.

3)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① 노골적인 차별, 적대의 표시

소수자집단에게 노골적인 차별이나 적대를 표시하는 혐오표현의 유형 사례를 보면, 소수자를 직접 마주하고 공연히 모욕, 비하, 멸시, 경멸하여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골적인 차별, 적대의 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은 소수자집단이 혐오표현의 가해자와 대등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소수자가 다수자와 달리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전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범성애자 D는 퀴어문화축제 행사에 참가했다가 행사 대열에 뛰어들어 소리를 지르며 인분을 뿌린 이를 봤다. 인분을 던진 이가 한 소리는 혐오표현이었는데 D는 무슨 말인지 채 가늠할 겨를도 없었다.

배설물을 제 눈앞에서 딱 던지는 걸 바로 옆에서 봤어요. 저는 운 좋게 안 맞았는데, 옆사람들이 그것을 맞았죠. (던진 사람이) 무슨 말을 고래고래 지르긴 했는데, 일단 내가 (인분을) 안 맞는 게 중요하니까요. 우선 냄새가 심각하게 나서 불쾌한 게 가장 컸고, 그리고 이걸 던졌다는 게, ‘똥’이라는 게, ‘너희가 똥이나 다름 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느낌을 받았죠. 맞은 사람들은 서로 닦아주면서 막 울었죠.

-사례 D 범성애자

지체장애인 여성 N은 노골적인 차별, 적대를 표시하는 혐오표현에 대해 “집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반말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전철역 환승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사례를 말했다. N은 비장애인 남자친구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불과 몇 분 사이에 한 중년 여성으로부터 심한 적대의 말을 들었다.

일 년 전쯤 전철역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환승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백발의 중년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서는 옆의 남자친구를 쳐다보면서 “어떤 관계야?”고 묻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인데요”라고 하니까, 지금도 생각나요. 낮빛이 확 바뀌더니 “어? 부모님 가슴에 못 박히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라고. 그때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는데 그 여성의 눈빛이 살기 비슷하게 느껴져요. 저에겐.

그리고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야지”라고 해요. 이제 저도 남자친구도 너무 놀라서 말문이 순간 막혀 버린 거예요. 남자친구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허허하고 웃으니깐. “웃어?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라고 화를 내고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셨어요.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이주민 여성 G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려 할 때 가족 내부에서 “가난한 나라 말을 왜 쓰냐. 자녀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의 모국이 ‘가난한 나라’이니 말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다.²³⁹⁾

애의 친할머니들이랑 시집에서는 “왜 아이가 너네 나라 말을 배우냐. 한국사람 됐는데” 해요. 친구들(이주민 여성)도 모어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시집에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말만 하라는 이유는, “너네 나라는 가난한 나라인데 굳이 왜 그 말을 배우냐? 그리고 너도 지금 한국사람인데, 애가 왜 다른 나라 말을 배우냐”는 거죠.

-사례 G 이주민 여성

트랜스젠더 F는 직장에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입사했는데, 남녀로 분리된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자화장실에 가도 여자화장실에 가도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자, 입사한 지 1년째 되던 해에 직장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 자신이 여자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장은 트랜스젠더 F의 요구에 대해 “(F가) 적어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었지만, 직장 차원에서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고 직장 동료들

239) 이주민 자녀의 부모출신국 언어사용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기된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해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27,12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비율은 40.7%에 달해 2012년(25.0%)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난 부모나 가족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 나라의 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항목을 보면 동남아시아 출신 부모를 둔 자녀가 해당 부모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지 않는다가 약 45%에 이르고 있다. 정해숙 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2015 참조.

끼리 F의 화장실 이용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이게 했다. 결국 F는 동료들이 자신의 화장실 사용문제로 논의를 벌일 때, 마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혐오표현을 들었다. 동료들은 F가 논의 자리에 동참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적인 트랜스젠더로 알려진 연예인 ○○○씨를 들어 F를 비난했다.

동료들이 토론을 하면서 “○○○(트랜스젠더 연예인)가 남자지, 여자냐?” 하더라고요. 또 “그래봤자 (F는) 여자목욕탕에 갈 수 없지 않느냐”고 하고. 저는 화장실 사용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데, 난데없이 목욕탕 이야기가 나오니 난감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는데 환장하는 심정이죠.

-사례 F 트랜스젠더

F는 온라인에서도 노골적인 적대를 표시하는 혐오표현을 경험하고 있었다. F는 모바일 앱으로 친목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다가 모바일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는데, 친목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F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 즉 F의 정체성을 인정하면 회원들이 세상을 등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친목 커뮤니티에서 제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밝히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탈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정신병자’라거나 ‘정신 차리고 남자로 살아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탈퇴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저를 두고 친목 커뮤니티 회원 사람들이 카톡방에서 토론을 벌이는데, 제가 있는 카톡방에서 한 회원이 “인정하면 안 된다,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등질 것이다”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카톡 대화를 하면서 친해져서 저도 같이 오프 모임에서 만나려고 하니까 저더러 “치마를 입고 나오지 말라”, “만나면 우리 앞에서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사례 F 트랜스젠더

② 온정주의적 차별의 표시

온정주의적 차별을 표시하는 혐오표현의 유형이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일방적인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나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혐오표현을 말한다.²⁴⁰⁾ 온정주의적 차별의 표시 유형은 사회적

으로 덜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소수자 당사자들에게는 혐오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소수자의 평등, 대등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온정주의적 표현에 대해 소수자가 딱히 맞받아 치거나 저지하기가 어렵다며 대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여성 J는 전철에서 목발을 갖고 앉아 있는데 한 승객이 목발을 불쑥 옆으로 치우면서 드러낸 온정주의적 차별 표시의 혐오표현을 겪었다. 지체장애인 여성 M은 전철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M이 “신기하다”면서 “(몸을) 만져도 되냐?”고 말하며 호기심을 보이는 온정주의적 혐오표현을 겪었다. J와 M은 “상대방이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더 곤란하고 더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전철을 타고 앉아 가면서 목발을 안고 있는데 한 승객이 와서 “아휴, 힘들겠다”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목발을 뺏아서 목발을 옆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장애 여성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나름대로 선의를 보이는 거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접근방식이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것도 많거든요. “목발을 치워버리면 그걸 가지러 가기가 힘들다”고 제가 말하니까, “도우려했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죠.

-사례 J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

사진을 찍으면서 다가오는 경우가 있죠. 몰래 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대놓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분명히 내 앞을 지나간 사람인데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기도 하고. 언젠가 사진을 대놓고 찰칵하면서 찍는 사람이 있어서 왜 찍느냐고 저지하니까 “낮게 해주려고 한다. 기도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놓고 보면서 기도해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열차를 기다리는데 한 여성이 “저어, 죄송한데 잠깐만 만져 봐도 돼요?”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그냥 만져보고 싶어서요”라고 하고.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240) 소수자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태도 역시 편견과 차별의 일부라고 폭넓게 이해한다.

혐오표현과 함께 스토킹으로 폭력 상황에 노출된 여성 B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주변 지인들이 “네 사생활이 다 파헤쳐질 수 있다”며 걱정과 함께 “우리도 불러갈 수 있다. 모두가 피곤해질 일”이라고 불만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경과 자신을 지원해주던 여성으로부터 온정주의적 차별표시의 혐오표현을 들었다.²⁴¹⁾

한 여경이 제게 말하기를 “얼굴이 착하게 생겼고 표현이 말투가 조곤조곤해서 남자들이 순종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저를 지원해준 여성이 몇 명 있었는데 “이렇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피해여성은 드물다, 우리도 좀 저 사람(B를 가리킴) 참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이런 말들이 저한테는 큰 상처더라구요.

-사례 B 여성

③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

이번 조사대상자 중 트랜스젠더와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주민과 같이 의견으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 공통되게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을 혐오표현 피해경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조사대상자들은 ‘시선’이 매우 힘들다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지만 무례할 정도로 뻘뻘 쳐다본다든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혹은 이런 시선이 있었던 직후에 혐오표현을 듣거나,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식으로 소수자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방식으로 혐오표현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했다.

시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험은 소수자의 실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소수자는 타인이 혐오를 담아서 보내는 시선이 자신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시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꾸 유추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다.²⁴²⁾

241) 이는 사회적으로 온정적 차별주의와 같은 은밀한 형태의 차별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차별주의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여성을 평가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친다. 서윤정·박지선,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2013, 50쪽, 52쪽.

242)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과 같은 비언어적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에게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며, 어떤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명백히 드러난 선행연구

화장실 사용문제로 직장 내에서 힘들어하던 트랜스젠더 F는 직장동료들과 아침에 인사하는 정도 외에는 거의 한 마디도 못하고 지낼 정도로 직장 내 왕따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동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경멸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비정상”이라고 간주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눈빛으로 마치 제게 레이저를 쏘는 느낌이에요. 동료들이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던 것이겠지만. 트랜스젠더란 존재가 낯선 건 그렇다 치고, 이미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느낌이 들죠. 출근하면 아침인사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 말을 걸지 않아요.

-사례 F 트랜스젠더

청각장애인 여성 K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친구 지체장애인과 함께 전철을 탔을 때 쏟아지는 혐오의 시선을 혐오표현의 경험사례로 꼽았다. K는 친구에게 향하는 배제의 시선을 느끼고, 소리 내어 항의했다고 했다.

전동휠체어가 좀 크잖아요. 장애인 모임에서 알게 된 지체장애인과 함께 좀 혼잡한 시간대에 전철을 탈 일이 있었어요. 전철에 같이 타니까 모든 시선을 한꺼번에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아마 짜증이 났겠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 “왜요?”라고 크게 말했어요.

-사례 K 청각장애인 여성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전동휠체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확연히 혐오의 시선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신(N)이 ‘바쁜 사회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람이나 눈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선이 힘들다”고 했다. N은 슈퍼, 미장원, 병원 일상생활의 공간속에서 자신을 향한 적

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자아발달과정에 있어서 타자와의 상호작용, 타자와의 시선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져 온 바 있으며, 장애학 연구에서도 타인(비장애인)의 시선이 장애인에게 어떤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되어온 바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운동가이자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시몬느 소스는 “모든 장애인들이 시선 때문에 받은 상처를 이야기한다. 자신을 탐색하듯 살피거나 외면하는 시선은 견디기 힘들다. 너무 빨리 쳐다보는 시선은 저질스러운 호기심일, 눈길을 주지 않는 행동은 거부를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Simone Sausse, 『시선의 폭력: 편견사회에서 장애인권 바로보기』, 김현아 옮김, 한울림, 2016, 55쪽.

대적인 시선을 두루 느끼고, 힘들어하고 있었다.

조그만 슈퍼에 가면 물품들이 쌓여 있으니 휠체어가 빠져나가기 힘들데, 그런 좁은 데 가면 금방 주인의 눈빛에서 부담감이 느껴지죠. 휠체어가 지나 갈 수 있도록 치워줘야 하니까. 마트뿐만 아니라 미장원에서도 그렇고, 병원에 갈 때도 그렇고 다 눈치를 주죠. 가령 비가 오는 날이면 전동휠체어에서 물기가 떨어지니까. 유럽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관광보다 좋았던 것은 좁은 곳을 가든 붐비는 곳을 가든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거치적거리게 왜 여기 있느냐’라는 식의 적대감을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매일 같이 겪는데 말이죠.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발달장애인 P는 발달장애인 친구들과 전철을 탔을 때 낯선 승객이 자신의 무리를 향해 “어, 장애자다! 저기 장애자 간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열차 안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하는 것을 겪은 적이 있다. 발달장애인 O는 친척들이 명절 때 모임 때면 비장애인인 동생에게는 안부를 묻곤 했지만 자신은 인사를 해도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고 힐끔 쳐다만 보는 식이었다고 했다.

친척들이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예를 들어 “어서와” 라고 답할 수 있잖아요. 동생 인사는 받아주지만 저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왕래는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미 아빠도 돌아가셨고, 엄마, 아빠가 없으니 돌변하죠. 신경을 안 써요. 무시를 하고 도움도 안 주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했는데…….(조사자: 언제가 힘들었는데요?) 식비가 떨어져서요……. 그래도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니까 굶지는 않아요.

-사례 O 발달장애인 여성

지체장애인 여성 M은 공공기관에서 뇌병변장애인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활동보조인이나 가족과 함께 동행하면 정작 장애인 본인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식으로 배제하는 혐오표현의 피해에 대해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 직원은 장애인 당사자와 의사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보호자로 여겨지는 비장애인하고만 소통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경험

한다고 했다.

제가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만나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기관 직원이 이제 언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창구에 가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장애인과 동행한 활동보조인이라던가 가족한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경우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간 비장애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려고 해도, 물어보려고 아예 노력 자체를 안 하거든요.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M은 이러한 배제의 시선이 종종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나 권리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J는 배제의 시선과 함께 발생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으로 “보호자가 와라”라는 말을 들었다. 장애인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처음부터 거절 또는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시선과 말이 혐오표현이라고 본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가면, 예를 들어 필답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왜 혼자 왔냐, 보호자 데려와라” 아니면 “보호자가 와라”라고 하죠.

-사례 J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를 보면 소수자는 사회 속에서 마치 없는 존재, 있는 것만으로 부담을 주는 존재,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와도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다. 굳이 특정한 말을 하지 않는 비언어적 혐오표현이라 하더라도 경멸의 시선을 보내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시선을 통해 소수자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 즉 사회적 배제의 메시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대상화(성적 대상화,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 취급)

대상화란 한 사람을 한낱 도구,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면접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소수자로서의 자신을 성적 대상,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대상화’ 유형의 혐오표현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1) ① 성희롱·성추행으로 이어진 혐오표현'의 피해 사례로 제시한 여성 B는 자신이 겪은 스토킹 사건과 평소에 겪던 성적 대상화의 혐오표현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평소에 외모에 관한 말을 많이 들어 왔었어요. “너는 얼굴은 예쁜데 몸매가 별로다”와 같은.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 말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죠. 사회 전반적으로 여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굉장히 내재되어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사건의 가해자 같은 경우도 “나는 단지 차 한 잔 하고 싶다는 건데, 네가 뭔데 그걸 거절하고 신고하느냐”면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성적으로 원하면 차 한 잔하고 하고 싶다고 하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저한테 확실히 말로 했죠.

-사례 B 여성

2) 차별표시에서 썼던 것처럼, 여성 B는 자신의 피해 경험을 알린 온라인 기고글에서 “여자는 ○○(성기)를 잘 간수해야 한다”, “기고글을 쓴 목적이 복수인 것 같은데, 차라리 가해자를 찾아가 직접 진짜 복수를 하라”와 같은 댓글을 봤다. 이런 댓글은 여성의 존재를 신체로만 취급하고, 침묵시키려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적 대상화의 혐오표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43)

지체장애인 여성 N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전철에서 겪은 혐오표현 피해 사례에서는 장애인이 어떻게 물건이자 도구로 취급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주머니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할머니께 “이거, 잡아요”하면서 제 휠체어를 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손잡이도 있고, 자기 손을 내밀어도 되는데. 휠체어는 제 이동수단이자 내 몸의 일부인데.

243) 마사 누스바움은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성적 대상화의 혐오표현의 핵심적인 특성이 ‘신체로의 축소(대상을 신체나 신체의 일부로만 취급하는 것)’, ‘외모로의 축소(대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감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취급하는 것)’, ‘침묵시키기(대상을 말할 능력이 없는 침묵하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라고 제시한 바 있다. Martha C. Nussbaum, “대상화와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Levmore and Nussbaum (역음), 『불편한 인터넷』, 121-122쪽.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전철을 탈 때 장애인 탑승칸에 타려고 하지만 비장애인 탑승칸에 탈 때도 있다. 원래 모든 전철 차량에 장애인 탑승칸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 탑승칸이 있다고 표시된 플랫폼 자리에서 타더라도 정작 차고지에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 장애인 탑승칸이 없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탑승칸에 타지 않으면 N은 어김없이 “이런 것”이라며 사람이 아닌 물건 취급을 당하는 식으로 혐오표현을 들었다.

전철에 휠체어가 탑승하는 장애인 탑승칸이 있어요. 저도 급할 때는 일반 탑승칸에 타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로 딱 휠체어를 붙이거든요. 공간을 확보하려고. 바짝 붙여 놓는데도, 제가 항상 듣는 이야기는 “아우 이런 것을 왜 여기에 대놓고”, “저쪽에 좀 대놓지”라고 가.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S는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성적지향을 커밍아웃했는데, 정신과 의사는 S에게 성소수자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식으로 대상화된 혐오표현을 했다.

제가 중학교 때 우울증 치료 때문에 정신과를 다녔는데, 정신과 의사가 자꾸 커밍아웃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커밍아웃을 했더니 “착각할 수 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얼마든지 결혼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덧붙였어요.

-사례 S 청소년 성소수자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신과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은커녕 성소수자가 비정상적임을 은유한 말을 들었을 때, S가 느꼈을 충격이 얼마나 클지는 그리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²⁴⁴⁾

244) 1973년 미국정신의학회(APA)는 정신질환 진단 통계편람(DSM)에서 동성애의 질환 항목을 삭제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지향을 섹슈얼리티의 형태로 인정한다. 2016년 3월 한국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활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L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한 레즈비언의 경험을 알게 되고나서, 성소수자가 느꼈을 고통에 공감했다고 했다. L이 비정상적 사람으로 취급받는 고통을 훤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정신보건법 폐지 집회에 나갔을 때, 성적취향으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서 강제 입원을 당한 한 레즈비언의 경험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 각 정신병원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치료라는 명목 하에 고통 받았던 순간들, 그 수치스러웠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할 때, 안타깝고 제가 공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에 갔다가 나오면 낙인이 생기거든요. “또라이”, “정신병자”, “정신이상자”……. 그런 낙인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사례 L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 L은 뚜렷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사건이 모두 정신질환자의 범죄로 ‘묻지마 범죄’라고 불리면서 정신장애인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는 식으로 ‘대상화’의 혐오표현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L은 언론도, 경찰도, 법무부도 정신장애인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말했다.²⁴⁵⁾

세계정신의학협회(WPA)도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성전환 관련 의료조치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등 정체성과 관련된 문진이 이뤄지는 영역에서 의료인 및 직원의 무지, 편견, 혐오에 기반한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5쪽 참조.

245) 강남역 살인사건 등과 같은 사건 후 언론에서는 정신질환과 범죄행위의 연관성을 대거 보도한 바 있다. 또 경찰은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사건이 정신장애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앞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 및 행정입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에서도 조현병 질환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가 끝난 후 최대 3년 보호관찰을 추가로 하는 ‘치료감호법 일부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언론에서는 특정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신장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계속되어 왔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분석한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언론에서 특정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의 문제 행동을 정신적 문제로 기술하는 기사가 많아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서진환 외,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104쪽.

정신장애인 범죄율이 비장애인의 10분의 1밖에 안 돼도, 범죄만 나면 전부 조현병, 정신병자가 저지른 짓이란 식으로 보도가 되잖아요. 올해 강남역 살인 사건만 해도 정신장애인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몰아갔지만, 여성단체들도 반발하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언론도 경찰도 법무무도 정신장애인이 문제라고만 하잖아요. 왜 자꾸 약자끼리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닌지 싶죠. 저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례 L 정신장애인

마치 범죄자인양 취급을 당하는 혐오표현의 피해는 정신장애인 외에도 트랜스젠더, 이주민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 E는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트랜스젠더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기 쉽다는 주장을 대거 접하면서, 트랜스젠더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다고 했다.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남녀공용화장실을 없애자, 여성의 불안감이 더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서 많이 나왔는데요.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트랜스젠더랑 엮어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봤죠. 가령 트랜스젠더가 들어갈 수 있는 공용화장실에서는 범죄자가 물카를 찍기 쉬워진단든지. 물론 그런 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유의미하게 범죄율이 증가했느냐 그런 게 문제일 텐데요.

-사례 E 트랜스젠더

이주민 I는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이면 몇 번씩 국정원, 경찰청 보안수사대, 외사과 소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I는 물론, 지역 일대를 돌면서 “테러리스트를 조사하고 있다,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I는 마치 자신이 테러리스트 취급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었다.

IS의 테러 때문에 무슨 팀을 만들었고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생업 중인) 저한테 와서 테러가 있을지 없을지 물어보면, 제가 뭘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매일 와서 감시하고……. 이슬람사원에 가도 여러 군데서 몇 팀씩 나와 있어요. 자꾸 한국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리도 혼란스럽죠. 평소에도 외국인노동자라고 무시당하고, 요즘에는 할랄식품 반

대한다며 먹는 음식 갖고도 뭐라고 하는데. 거기에 더해 이제 테러범으로 취급당하고……. 한국사회가 왜 이렇게 이슬람교도들이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테러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꼭 좀 정부가,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례 I 이주민

4) 증오선동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는 이주민과 성소수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었는데, 조사대상자 가운데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공적인 형태의 혐오표현(정당의 선거공약, 학교 당국의 게시물, 집회 등)이 나온 후 얼마 안 돼 자신이 직접 공공장소나 학교와 같은 공적공간에서 혐오표현 피해를 겪었다고 보고했다.

이주민 H는 출퇴근길을 오가며 올해 선거 때 길거리에서 한 정당²⁴⁶⁾의 “이슬람 확산은 한국안보에 치명타!”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을 봤다고 이야기하며, 선거 즈음 자신이 교통수단에서 겪은 혐오표현을 말했다.

그런 정당이 나오면, (이주민인) 저는 달라진 공기를 피부로 느끼게 되죠. 선거 즈음, 퇴근길에 좌석버스를 타서 앉으려고 빈자리를 살피니까 어떤 여성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은 아저씨가 대뜸 제 옆에 앉은 여성한테 영어로 “Be careful, Be careful(조심해라)”고 하는 거예요.

- 사례 H 이주민

미션스쿨에 다니던 청소년 성소수자 S는 자신이 학교에서 겪은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S가 다니던 미션스쿨에서는 학교 게시판에 성경구절을 들며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내용을 담은 학교 당국의 게시물이 게재되었는데 이런 게시물이 붙으면서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하는 일이니 옳다”고 말했다고 했다. 학교에서 혐오표현을 공식화한 후, S는 학교의 조치를 신뢰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혐오표현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학생들이 아웃팅을 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246) 2016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기독교자유당, 기독교당은 선거 공약으로 이른바 반이슬람, 반동성애를 내걸었다.

학교에서 ‘동성애는 하는 게 아니다’, 성경구절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게시물을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익명으로 그 게시물이 차별이라고 반박하는 대자보를 써서 붙였는데, 학교에서 CCTV로 익명의 게시물을 쓴 사람을 찾겠다고 해서 엄청난 이슈가 됐죠. 이런 일들에 대해 일단 “학교가 하는 거니까 학교가 말하는 게 옳다”고 말하면서 학생들 가운데 “누가 썼는지 찾아내야 한다”거나 “우리 학교에 그런 대자보 쓰는 사람이 있는 게 싫다”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원래 동성애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없던 애들인데 수면위로 떠오르는 거죠. 매일 매일. 학생들 사이에서 누가 게이, 누가 레즈비언인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나오고, 저더러 성소수자 아니냐며 캐내려는 애도 있고요.

-사례 S 청소년 성소수자

D는 대학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의 강연이 여러 차례 열리고 난 뒤, 강연을 들은 학생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차별적인 강연이 열리던 때, 여기에 항의하려고 성소수자나 성소수자 지지자들이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학교에 온 성소수자나 성소수자 지지자들을 향해 학생들이 “더럽다” 부터 시작해서 성경구절을 인용해서 “돌로 쳐 죽이고 싶다”와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사례 D 범성애자

이 시기, D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는 카톡창에서 성소수자들을 비하하는 혐오표현이 난무하게 된 것도 봤다고 보고했다. 성소수자 차별 강연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한 날, 학생들이 이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들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톡창에 돌면서 학생들의 혐오표현이 증폭된 것이었다.

그 날 학생들이 학교에 온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지지자들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 가운데 몇 명이 성소수자 차별 강연에 대한 저항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드래그 퀸(Drag Queen, 이성의 복장을 하고 벌이는 퍼포먼스)을 했거든요. 학생들이 드래그 퀸하신 분, 성소수자 지지자들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후 사진들

이 학생들이 만든 단톡방(학교 단체 카톡방)에 마구 돌았죠. “아, 생긴 것도 싫다”면서 외모를 욕하는 식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정말 많은 말들이 카톡창을 돌았어요.

-사례 D 범성애자

청소년 성소수자 R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집회에 참가한 친구 어머니 사례를 보고했다. 이 집회는 소위 ‘탈동성애’를 주제로 하여, 과거 동성애의 ‘문란한 실상’을 경험한 동성애자였지만 이제는 동성애를 ‘치료’했다는 인물이 간증자로 등장하여 간증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는데, 이 집회에서는 ‘동성애는 문란하니 벗어나자’는 차별적인 내용을 다룬 인쇄물도 배포됐다. R은 친구의 어머니가 집회에서 돌아와서 친구에게 인쇄물을 건네며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제 친구 어머니님이 한 교회에서 하는 간증 집회에 다녀왔는데, 간증 내용이 자기가 예전에는 동성애자였지만 동성애자들이 문란하니까 동성애에서 벗어났다는 내용이었대요. 또 집회에서 배포한 책자를 집에 들고 오셨는데. 책자는 ‘동성애자들이 문란하다’는 간증 내용이 쓰인 만화를 인쇄물로 찍은 건데. 그것을 제 친구한테 보여 주시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시고.

-사례 R 청소년 성소수자의 목격 사례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하는 이성애자 남성 T는 대학 측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난 뒤, 학생들 사이에서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이 퍼졌다고 말했다. T의 사례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그 전에 “동성애자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를 해줘야 한다”며 일종의 온정주의적 혐오표현을 하던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 벌인 반동성애 집회 후, “동성애자들은 물리치료를 해야 한다, 때려줘야 한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적대를 표시하는 혐오표현으로 혐오표현의 양상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학교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성소수자의 성행위는 죄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식이었거든요. 실제 이런 말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고요. 가령 퀘어퍼레이드 때 반대한다면서 퍼레이드 카에 뛰어드는 식으로 행동하는 난입 시위라

든가, 똥물 투척이라든가, 북을 친다든가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천박하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던 분위기였죠. 그렇게 나서는 경우, 그게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알았던 거죠. 그러던 게 변했어요. 전에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줘야 된다고 했던 학생들이 바뀌었죠.

-사례 T 남성 이성애자 (성소수자지지 활동)

T는 실제로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열린 후,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성소수자들에 대해 마치 물리적인 폭력 행사를 할 것처럼 암시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있는데요. 그 집회에 참가하고 돌아가던 학생들이 “트랜스젠더는 물리치료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까지 폭력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물리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때려줘야 한다고요.

-사례 T 남성 이성애자 (성소수자 지지 활동)

(2) 혐오표현의 심리적인 영향

누구든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이나 비난, 혐오적 언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속상함, 억울함, 수치심, 당황스러움, 분노를 느낄 것이다. 이러한 감정은 혐오표현을 들은 직후에만 들 수도 있고, 며칠간 계속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한 영향을 곧 떨치고 회복할 힘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언사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누적될 경우, 게다가 그러한 언사가 자신의 고유한 소수자 정체성 즉 성별, 인종, 성적지향, 장애 등을 겨냥하는 것일 경우, 더군다나 폭력적 상황이 수반되는 경우, 또 발화자가 공적인 지위에 있거나 공공의 장소에서 발화되는 식으로 공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형태의 언사인 경우에는 심리적 영향이 다르다. 심리적 손상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심화된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

조사대상자들은 실제로 혐오표현으로 인해 모두 크고 작은 심리적 영향을 받았음을 이야기했다. 조사대상자들이 주요하게 보고한, 혐오표현을 들은 이후의 감정과 심리상태는 다음과 같다.

<표 45> 조사대상자들의 혐오표현을 들은 이후의 감정과 심리상태

부정적 심리반응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좌절감, 절망, 막막함, 답답함, 억울함, 분노, 실망, 혼란스러움, 억압받는 느낌, 자책
신체화된 증상	피곤, 무감각, 원형탈모증
스트레스성 심리반응	자살충동,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중 조사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한 부정적 심리반응은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이다. 그밖에도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좌절감, 절망, 막막함, 답답함, 억울함, 분노, 실망, 혼란스러움, 억압받는 느낌, 자책이 나타났는데, 부정적 심리반응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겹치는 복합적인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신체화된 증상으로 피곤하고 무감각하다거나 원형탈모증 증세가 나타난 조사대상자도 있었다.

스트레스성 심리반응은 자살충동,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이런 반응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혐오표현이 공적인 승인의 형태를 띠고 대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조사대상자, 또 혐오표현 피해와 더불어, 신변과 관련되어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거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조사대상자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 부정적 심리반응

① 두려움

혐오표현 피해로 인해 조사대상자들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 이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이후에 무엇보다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수자는 실제 피해를 직접 겪거나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케이 C는 혐오표현의 피해에 따른 심리적 영향으로 두려움과 무감각을 이야기했다. 2015년 대구 퀴어퍼레이드 사건 때 오물이 투척된 이후 자신의 주변 성소수자들도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을 맞지 않는 이상은 이제 별 감흥이 없을 것 같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느낌이죠. 작년 대구 쿼퍼레이드 때 저는 못 갔는데, 누가 오물 투척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로 주변에서 다들 좀 겁을 많이 먹고 있고 '나도 언제 당할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프라이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일 거예요.

-사례 C 게이

성차별적 혐오표현 피해로 시작해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은 여성 B는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난 후에도 그간 살던 집에서 이사할 만큼 두려움을 느꼈다.

범인이 “너를 만나러 갈 것이다”, “너희 집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전화를 하는데, 범인은 안 잡히고. 또 경찰은 제가 허위 정보로 신고한 것 아니냐 의심하고. 범인은 잡혔지만, 범인이 잡히고 나서도 혼자 사는 게 두려워지더라고요. 그 후에 그간 독립해서 생활하던 걸 그만두고 부모님이랑 살게 됐죠.

-사례 B 여성

범인이 체포되기 전에 이미 B는 모든 친목모임을 그만둔 상태였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도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B도 그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범인이 체포된 후에 안심하게 됐으니 이사를 굳이 안 해도 됐지만 B는 두려움을 느꼈다. B는 나중에 여성살인사건이 생기고 주변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서,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게 됐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뿌리 깊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올해 여성이 나를 무시해서, 또는 여성을 혐오해서 살인했다고 범행 후 범인이 범행동기를 말한 사건이 강남역 살인사건 말고도 더 있었잖아요. 수락산, 사패산 살인사건인데요. 그 때 산행하다가 50, 60대 여성 두 분이 돌아가시고서, 제 주변에서 “산에 안 간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한 번씩 답답하면 산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무서워서 가벼운 동네 산행조차 안 하게 된

다”는 여성들이 많아졌죠.

-사례 B 여성

교통수단에서 장애를 이유로 성희롱을 겪은 바 있는 장애여성 J는 자신이 느낀 두려움, 혐오표현이나 차별이 여전하고 바뀌지 않는 사회에 대한 답답한 심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식점에 가도 제가 목발을 짚은 것을 보면 자리가 텅텅 비었는데도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이 요즘 줄었다 싶었더니. 얼마 전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친구가 유명한 SPA브랜드 ○○매장에 갔다가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면서 입장을 거부당한 일도 있었거든요. 뉴스로도 나왔는데. 그런 일에도, 제가 장애인이라서 겪은 성희롱을 생각하다보면, 침울해져서 밖에 아예 안 나가기도 했죠. 버스나 지하철, 택시를 타야 하니까. 비장애인 남성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고, 사회가 앞으로 바뀌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례 J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S는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혐오표현이나 성적 비하를 담은 혐오표현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 사회에서 욕을 많이 먹어야 하는 존재인가’라고 되문게 됐다. S는 자신이 느낀 두려움과 불안을 토로했는데, S는 학교에서 차별적인 게시물이 게시된 후 실제로 아웃팅 위협을 받은 바 있다.

“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가 커요. 그리고 ‘똥꼬총’이니 해서 성적으로 비하하고, 성희롱하고. 누구든 성희롱은 하면 안 되잖아요. 성적지향이나 정체성만으로 그렇게 공격하는 게 너무 불쾌하죠. 그런 혐오표현을 보면서 저는 ‘성소수자인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 어찌지?’,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았을 때,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 어찌지?’ 하고 불안감이 커졌어요.

-사례 S 청소년 성소수자

② 슬픔

성희롱과 임금갈취라는 차별로 이어진 혐오표현 피해를 당한 이주민 여성 G는 자신이 겪은 혐오표현 경험 전반에 대해 “속상하다”고 그 슬픔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녀가 당하고 있는 차별 피해를 걱정했다.

G의 자녀는 8살로 학교에 갔다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방과 후 집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갈 동안 G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단지에 사는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을 운행했는데 어느 날 지역아동센터에서 “힘들다”면서 G의 자녀를 태우기를 중지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지 내 한국인 아이들은 모두 태워갔는데, G의 자녀만 차량에 태워주지 않았다. 당시 직장에 다니던 G는 지역아동센터에 “내가 직장에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호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결국 G의 자녀는 지역아동센터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다. G의 자녀는 G에게 “엄마, 왜 나만 혼자 버스를 타요?”하고 몇 차례나 물었지만, G는 근처에 달리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자녀가 무슨 일을 더 당할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제가 애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만 버스타고 오라고 했어.”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가서 싸우거나 “왜 우리 애만 차에 안 태워주느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요? (쓰쓸한 표정과 함께 헛웃음) 저는 그렇게 당하니까 많이 속상하고, 요즘은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한국에 13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한국시민권 갖고 있는데도 그래도 ‘아직 난 외국인이구나’ 하고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앞으로 한국에서 쪽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베트남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도 들죠.

-사례 G 이주민 여성

면접조사를 하던 날 G는 직장을 그만둔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며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을 겪고 있었다. 자녀를 둔 이주민의 경우, 자녀의 차별 피해나 피해에 대한 우려를 매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²⁴⁷⁾ G는 자신에 대한 혐오표현 피해와 함께 자녀에 대

247) 일본의 인종적 소수자(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표현 피해실태 연구에서는 자녀

한 차별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 탈모증을 겪고 있었다.

혐오표현 피해와 함께 왕따와 학교폭력을 당한 발달장애인 O와 P는 자신이 느낀 슬픔, 억울함, 답답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O는 혐오표현을 들을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난다고 하면서 비애를 말했는데, 생전에 O의 어머니는 O가 학교에서 발달장애인이란 것을 이유로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면, O를 위해 학교와 경찰서를 오가며 힘써줬던 버팀목이었다. P는 비장애인과 함께 다니는 고교를 끝까지 다 마치려 했으나 왕따를 견디다 못해 고교 3학년 때 결국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

저는 이제 (혐오표현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요.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정신적으로 안 좋으니까. 제가 들은 말을 거의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기억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자꾸 까먹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가만히 있었고, 멍하니 있을 때도 있어요. 가슴이 갑자기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안 좋는데……. 엄마 생각이 자주 나요.

-사례 O 발달장애인 여성

저는 왕따 당해서, 학교 다닐 때 조용히 지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랬어요.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가까이 가면 꼬집고 따귀 때려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나만 혼났어요. 반성문까지 썼어요……. 누구는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저보고 “장애인 새끼”라 하고 저보고 “못생겼다”고 하구요. (울먹이며) 저더러 “장애인새끼”래요! 그게 듣기 좋아요? 저는 슬프고 억울해요.

-사례 P 발달장애인 여성

③ 지속적인 긴장감

일상적으로 벌이지고 만연한 혐오표현으로 인하여 소수자는 항상 긴장된 가운데 생활하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소수자는 일상에서 혐오표현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

의 혐오표현 피해나 피해에 대한 우려를 통하여 인종적 소수자 당사자의 심리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이 실증된 바 있다. 金明秀, “ヘイトスピーチ問題の構成過程”, 『支援』 6, 2016, 94-110쪽.

길거리 같은 곳에서 순식간에 혐오표현피해를 입을 경우는 자신이 어찌 대처할 새도 없으므로, 다음번에 또 비슷한 일을 겪지는 않을지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귀화한 이주민 H는 전철에서 술 취한 남성에게 별안간 “니네 나라로 가”라고 퍼붓자 자신이 긴장하게 됐던 일화를 전하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혐오표현을 들을 때 H는 “대꾸를 하다가 뭔가 실수할까봐, 어떻게 대답할지, 어떤 자세가 나한테 맞을지, 가만있어야 할지, 방어를 해야 할지 아니면 친절하게 대해야 할지 자신의 대응방식을 계속 찾아야 하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철서 술 취한 아저씨가 타더니 저한테 “니네 나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내 나라인데요”라고 답하고 ‘내가 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나’, ‘더 이야기를 해야 하나’, ‘전철서 내려야 하나’, ‘다른 칸으로 이동할까’ 하고 고민하는 거죠. 다행히 제 앞에 앉은 아저씨가 말려줬죠. 이런 일은 정말 많아요. 기억 속에서 다 지우고 싶죠. 어떨 때는 진짜 한국에서 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계속 긴장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건 싫다. 누구도 이주민으로, 이런 식으로 대우받으며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사례 H 이주민

지속적인 긴장감은 사회가 소수자인 자신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기도 했다. 출퇴근길에 지하철을 길게 타고, 환승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낯선 행인들로부터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은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지하철을 탈 때마다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무슨 소리를 들을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하고서 편안하게 지하철을 탈 수가 없는 것이다.

N은 비장애인 남자친구와 같이 가다가 지하철 환승 엘리베이터에서 중년 여성으로부터 별안간 “똑같은 사람(장애인) 만나라”고, 노골적인 차별과 적대의 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을 겪고 수치심과 자책감을 느꼈다. 이런 심적 고통과 함께 N은 평상시 느끼는 긴장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저는 지금까지 너무 가슴이 응어리가 있는 게, 차라리 거기서 내가 그 아줌마 가는 길, 앞길을 막고 “당신이나 잘 사세요”하고 이야기를 왜 못했을까. 왜 나

는 바들바들 떨면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었을까. 집에 도착하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좀 피곤한 날엔 집밖으로 안 나가요. 너무너무 긴장되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치고, 두렵고, 화도 나고, 긴장되고, 위축되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아무도 안쳐다 보는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지만 밖에 나가면 일단 그게 안 돼요. 구석으로, 어딘가로 숨고 싶어요.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④ 자존감 손상

자존감(자아존중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이며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가치가 있다고 보는 믿음,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몇 명은 혐오표현 피해를 겪으면서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자존감 손상이라는 유의미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

청각장애인 K는 초등학교 때 국어책을 소리 내어 읽다가 본인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됐다. 이후 K는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중학교부터 진학하지 못했는데, 틈틈이 구화와 수화를 배우려 노력하면서, 학력이 그다지 요구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일을 배웠다. K는 혼자만 하는 일을 하면서 직업적인 성공을 경험했는데, 일의 성과물로 자신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비장애인들이 자신의 학력을 뻗히 알면서 자기(K)에게 되풀이하여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고 묻는 식으로 혐오표현을 듣고 있었다. K는 스스로를 ‘못’이라고 비유하면서 “벽 속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리로, 자리를 잡았다”고 사회적인 성공을 자긍심 있게 이야기하면서도, 소외감과 함께 느낀 자존감 손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에 나와 보니까 나는 다가서려 해도 다들 도망가고, 저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경쟁업체 비장애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이면 자꾸 어느 대학 나왔느냐고 묻고.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못이 된 느낌이에요. 못 있죠? 벽에 나와 있는 못인데, 망치로 못을 쿵쿵 치잖아요? 튀에 나온 못이 눈에 거슬리는데, 그 못을 내가 손가락질 받듯 망치로 두들기고. 쿵쿵 쳐지는 못이 된 느낌, 보잘 것 없는……. 그러면 이

제 보잘 것 없는 이 몫이 벽 속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자리가 생기죠.

-사례 K 청각장애인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S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인 비하표현을 보면서 자신을 부정하고 깎아내리게 되었고, “스스로를 긍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저는 그런 혐오표현을 하도 많이 접하니까 정체화(성소수자가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를 하기 전에, 거의 동성애혐오자처럼 살았거든요. 혐오표현은 안 했지만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으려했죠.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그런 혐오표현이 맞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욕을 했고.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것도 많이 들었으니까 정체화를 하고나서도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사례 S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성소수자 S처럼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을 특정하게 겨냥한 혐오표현이 아닌, 자신이 속한 소수자집단 전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에서도 자존감 손상이라는 유의미한 심리적인 해악을 경험하고 있었다. 비록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해도 자신이 갖고 있는 소수자 정체성을 겨냥한 것이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²⁴⁸⁾ 소수자 각 개인은 혐오표현의 피해를 자신이 처한 일상의 차별 상황과 함께 겪고 있기에, 소수자는 자신(개인)을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말도 민감하게 인식할 수밖에 없다.

⑤ 소외감, 무력감

조사대상자들이 받은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동안, 혐오표현에는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유의미한 특징이 있음을 알

248)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에 대해 연구한 사회심리학자 크레이그 헨더슨은 혐오표현의 피해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피해는 소수자 자신이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소수자집단을 향한 혐오의 피해로부터 느끼는 두려움과 분노, 절망이라고 지적했다. Kellina M. Craig-Henderson, “The Psychological Harms of Hate: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in Paul Igerski, Barbara Perry (ed.), *Hate Crime: The Consequences of Hate Crime*, Praeger Publishers, 2009 참조.

수 있었다. 그것은 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1)혐오표현의 발생 환경과 유형에서 살핀 것처럼, 혐오표현이 일어나는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 소수자는 ‘다수자보다 아래에 있어 대등하지 않으며(혹은 그 속성으로 무능하거나 열등하며), 정상적이지 않으며, 다수에게 해가 되므로’ ‘없는 셈 치는’ 또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취급받았다.

그래서 공격적인 혐오표현을 들은 소수자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배제를 당한다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고서 소외감,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 이런 메시지가 반복적이거나 공격적으로 승인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경우, 소외감이나 무력감은 더 컸다.

다음과 같은 지체장애인 여성 M의 말은 혐오표현 피해 가운데 소수자가 느끼는 소외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생각하게 해준다. M은 혐오표현으로부터, 장애인인 자신이 동시대에 같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 공존할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느끼는 소외감을 이야기했다.

사실 제가 느끼는 거는 ‘난 분명히 이 지구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계인인가’ 하는 생각이죠. 혐오와 혐오의 시선 가운데, ‘너(M)는 나랑 다른 사람,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저기 어디 별나라 사람, 동시대에 공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이런 게 소수자에 대해 이 사회가 행사하는 상당한 수준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여성 A는 장애,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으면서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A의 어머니(청각장애인)가 어떻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지 그 심리적 고통을 알기 쉽게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항상 부정하셨거든요. “난 멀쩡하다”면서 모든 걸 숨기셨어요. 그러다 제가 자라고 이십대 들어서 어머니랑 소주 한 잔을 같이 했거든요. 어머니가 푸념을 하시면서 “네 아버지가 평생 나한테 귀머거리라고 그랬잖아. 하지만 이게 내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조금 터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친구가 없어요.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인생을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사례 A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R은 2016년 4월 선거 때 학교를 오가며 거리에서 ‘동성애 합법화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라고 쓰인 한 정당의 홍보물을 보면서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R이 토로한 심리적 고통을 들여다보면, 공적인 형태로 나타난 혐오표현이 소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 해악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

제가 학교를 가고 오는 길에 그런 홍보물이 붙어 있는데, ○○교회 주변에도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게 정말 많아서 학교 오갈 때 마다 그걸 보면. 아……. (말 잠시 멈춤) 화가 나면서, 무력하다고 해야 하나. 되게 무력감을 느꼈어요. 일단 제가 치울 수는 없으니까. 무력감이 꽤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는 주변에 커밍아웃을 꽤 많이 한 편인데도, 소외감이 느껴지고.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무의식중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사례 R 청소년 성소수자

2) 스트레스성 심리 반응

① 자살충동

혐오표현으로 인해 강한 수치심과 함께 자살충동을 토로한 이는 올해 강남역 여성살인사건 이후 혐오표현에 집중적으로 노출된 소수자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정신장애인 L이었다. L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겨냥한 혐오표현으로는 큰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보지는 않았음에도, 언론과 공공기관 대책 등에서 자신이 속한 ‘정신장애인’이란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 급증하면서 “숨고 싶다, 자살하고 싶을 정도”라며 심리적인 고통이 크다고 이야기했다.

(조사자: 정신장애인이 범죄자라는 식의 보도가 굉장히 불쾌하시나요?) 아뇨. 불쾌한 정도가 아니고…….(말 멈춤) 억울하고, 내가 그 범죄자가 된 기분이 들고요…. 숨고 싶고 음……. 또 죽고 싶어요. 이렇게 범죄……. 정신장애인의 범죄가 이토록 많은 세상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누구한테 인정받겠나. 차라리 죽고 말지. 정신병원 안도 감옥이고 바깥세상도 감옥이죠. 옛날에 간첩 관리

하듯이 정신장애인을 관리하는 식이 되어버린 거죠.

-사례 L 정신장애인

L은 정신장애인을 범죄자인 듯 다루는 언론의 보도, 경찰, 법무부의 대책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이며, 제도적 차별로부터 비롯되는 낙인을 준다고 인식했다. L은 혐오표현으로 인해 큰 심리적 상처를 입은 것을 “자살하고 싶다”고 표현한 것이다. L이 보고한 심리적 영향에서 중요한 점은, 혐오표현이 공공영역에서 다수를 향해, 구체적인 표적 없이 발화된 경우라 해도 그것이 공적으로 승인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일어날 때 소수자 개인은 자신에 대한 혐오로 받아들이고 자살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대등한 관계에 놓인 개인일 경우 조사대상자들 가운데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일정하게 받으면서도 발화자의 부족한 인격이나 인성, 무지를 탓하는 정도로 대처한 사례도 있었으나, 사례 L에서 드러나듯 공적영역의 혐오표현일 경우에는 사회 전체로부터 자신이 부정당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가지게 되므로 심각한 심리적 해악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Q는 중학교 때 장애를 이유로 ‘투명인간’ 취급의 혐오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심각한 학교폭력에 처했을 경우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Q가 혐오표현의 심리적 피해로 자살충동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차별적 괴롭힘에 노출된 나이 어린 소수자는 안전하지 못하고 폭력이 일어나는 일상에서 매우 취약한 심리상태에 놓이게 됨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자살하고 싶었어요……. (말 멈춤) 갑자기 컴퍼스로 어깨를 찔렸을 때 제가 어깨뼈가 부러졌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수술도 했어요. 저를 컴퍼스로 찌른 학생은 전학을 갔어요. 억울했어요……. 거의 날마다 친구들은 때렸는데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고…….

-사례 Q 발달장애인

②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번 조사대상자들에게서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와 같은 큰 심리적 타격은 신변과 관련되어 실제로 안전이 심각히 위협을 받았거나 조사대상자들 가운데서 나타났다.

앞서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에서 이주민 I의 자녀(초등학생)가 이주민 자녀에 대한 혐오표현과 함께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반 아이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후 우울증을 겪은 사례를 서술한 바 있다. 사건 직후 I의 자녀는 부모나 동생들에게조차 한 마디도 말도 건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조사대상자 중에는 신체화된 증상을 겪고 있거나 겪은 이들도 있었다. 이주민 여성 G(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 여성 A(우울증), 여성 B(공황발작)였다. 조사당시, 이주민 여성 G는 탈모증을, 여성 B는 공황발작을 앓고 치료받는 중이었다. 여성 A는 청각장애인 어머니가 혐오표현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를 겪는 것을 보며 어려서부터 이십대 초반까지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가 치료를 받고 몇 년 전 우울증에서 회복했다.

B는 주변에서 신고를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과감히 신고했는데 경찰수사에서 2차피해를 받았다.²⁴⁹⁾ B는 혐오표현으로 시작해 스토킹을 저지르던 범인한테서 “이제 내가 사는 집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려고 갔다가, 보호 조치가 실시되지 못하고 온정주의적 혐오표현만 듣고서(앞서 (1) 3)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에서 서술), 경찰서를 나서던 참에 공황발작을 일으키게 됐다.

범인한테서 “네 집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서로 달려갔던 밤,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담대하게 굴라”, “얼굴이 착하게 생겼고 표현이 말투가 조곤조곤해서 남자들이 순종적인 받아드릴 수 있는 여자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 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공황발작이 오더라구(...) 경찰서를 혼자 나서다가 저는 멍하니 있었는데, 숨이 가빠지며 ‘막 죽을 거 같다’, ‘내가 아무데도 못 갈 거 같다, 나는 여기에서 쓰러질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공권력이잖아요. 경찰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례 B 여성

249) 여성 B는 경찰이 수사하던 기간 동안 “왜 저항하지 않았는지” 묻는 식이었다며 2차피해를 말했다. 가령 경찰은 B에게 “왜 카톡을 받고, 전화를 받았느냐” “카톡이나 전화를 받은 것은 동의한 거 아니냐”고도 물어 봤다.

가정폭력이라는 심각한 폭력상황에서 혐오표현을 경험했던 여성 A는 우울증에서 회복한 후에도 성장과정에서 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기억을 떠올려도 자신이 마치 제3자처럼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한 증상,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A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 악몽에 시달리는데, 악몽을 꾸면 유독 혐오표현과 같은 언어폭력을 되풀이하여 듣고 있으며 꿈에서조차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된다고 했다.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 사실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나요. 진공상태 같죠……. 아직도 굉장히 악몽을 많이 꾸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소리를 막 지르면서 깨요. 꿈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반복해서 하셨던 어머니한테 했던 말 ‘창녀 같은 년’, 그런 욕설이 나와요, 이제 그게 계속 반복해서 꿈에 나오는 걸 봐서는 ‘언어폭력이라는 게 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A 여성

(3)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을 소수자에게 미친 영향과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으로 각각 나눠 살펴보았다. 혐오표현이 소수자에게 미친 영향으로는 실생활(일과 학습의 지속)에 미친 영향과, 사회적 공론장에의 참여 등 사회적 권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으로는 주로 소수자에 대한 낙인·편견의 강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를 살펴보았으며, 소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성적 대상화의 외연이 넓어지는 등 성적 대상화의 심화 현상을 확인했다.

특히 사회적 영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소수자가 혐오표현 피해로 인해 교육권과 노동권과 같은 사회적 권리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수자는 혐오표현을 겪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마치 사회에서 ‘없는 사람’, ‘없어야 할 사람’ 또는 ‘숨어야 할 사람’, ‘해가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면서, 학업이나 일을 유지해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중단한 사례가 꽤 많았다. 조사대상자 총 20명 가운데 10명, 절반이 학업이나 일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전학하는 등 혐오표현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았다.

또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자신의 의사표현이 폄하되고 모욕당하면서 결국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는 양상을 보이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 상태임이 드러났다.

1)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① 일상생활(학업, 일) 유지의 어려움

고교시절 아웃팅과 혐오표현 피해로 인해 고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게 된 게이 C는 자신이 혐오표현의 피해를 받았을 때 “그때 한 번 죽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음과 같이 자신이 고교를 자퇴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학교를 나왔어요. 고3때 자퇴를 했거든요. 학업 스트레스도 심했고 물론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교를 자퇴한 것이긴 한데, 친구들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죠. 이제 한쪽이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나머지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몸 사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제 정체성 때문에 저를 숨기고 다니고 싶지는 않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할 줄 아는 게 공부 밖에 없었어요. 공부에 목숨 거는 모범생. 그때 한 번, 이미 한 번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례 C 게이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걸려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지하철에서 거의 매일 빈번하게 혐오표현을 들어온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업했다. N은 “출퇴근 시간도 길고 몸이 힘들어서 정리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혐오표현의 피해를 들은 영향이 있다”면서 자신이 왜 수입이나 안정적인 면에서 직장생활에 비해 더 조건이 좋지 않은 프리랜서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했다.

지금 수입이나 그런 게 더 좋지 않지만, 훨씬 나아요. 더 많은 수입, 안정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 어찌 보면 아니 결국 그간 전철에서 들어왔던 그런 혐오표현 때문인데. ‘내가 비록 궁핍하고 빈곤해지더라도 그냥 그런 소리 안 듣고 그런 속상한 마음 안 느끼는 게 낫겠어’ 하는 생각을 했죠.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여성 B는 스토킹으로 이어진 혐오표현 피해 당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사직 직후에는 대학원 입학 준비하고 있었으나 스토킹 가해자의 협박이 계속되면서 시험에 집중할 수 없었다. B는 결국 시험에 실패했다. B가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립되어 사람들과 단절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B는 친목모임조차 나갈 수가 없었다.

3개월 정도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카톡이랑 전화가 자주 왔어요. 그래서 시험도 망치고. 아예 지금 진로가 사라진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과 터전과 꿈을 다 잃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다시 일어나기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례 B 여성

직장 내에서 자신의 남녀화장실 이용문제에 관해 해결을 요구하며 혐오표현을 들었던 트랜스젠더 F는 직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원들의 논의만 몇 차례 열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혐오표현이 되풀이되자, 결국 회사를 사직하게 됐다. F는 사측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지 불과 7개월 만에 회사를 사직하게 된 것이다.

사장님도 제게 “다수를 이기려 들지 말고 일해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만둘 때 사장님이 “너만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어줄 생각이었다”고 했지만 조그만 회사 건물에 저만 쓰는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제가 저만의 화장실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요……. 매번 화장실에 다녀올 때마다 직원들이 수군수군 대고. 다들 저를 정신병자처럼 바라보고……. 연봉협상을 할 때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어요.

-사례 F 트랜스젠더 (MTF)

이주민 여성 G도 직장 관리자로부터 이주민인 것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으며 임금을 갈취당하고 이후로도 폭언이 계속되자 직장을 사직한 바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이주민의 자녀임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과 함께 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일을 겪은 이주민 I는 사건 후 자녀들과 부인을 이민 보냈다. I는 자신의 자녀가 폭행을 당할 당시 같은 초등학교에 동남아 출신 부모를 둔 자녀들도 역시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런 가족은 모

두 자신의 출신국으로 떠났다고 이야기했다.

발달장애인 O는 직업훈련장을 이직했는데, 직업훈련장 안팎의 사람들이 O가 직업훈련장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자 “사고친다, 사고쳤다”고 자꾸 이야기하여 결국 직업훈련장을 바꿨다고 했다. O는 “다른 사람(비장애인)이 연애를 하면 어느 누구도 사고친다, 사고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기분이 몹시 나빠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직업훈련장을 바꾸게 되면 직업훈련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래도 O는 직업훈련장을 바꿨다.

발달장애인 P는 고교시절 혐오표현과 함께 집단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끝에 비장애인 학생들과 다니던 고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고교 3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특수학교를 졸업했다.

미션스쿨 고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게시물이 붙어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 성소수자 S는 미션스쿨에서 일반 고교로 전학했다.

이밖에도 일과 학업을 중단한 사례는 아니지만, 혐오표현의 피해로 인해 조사대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다. 범성애자 D는 다니는 대학에서 ‘동성애 반대’를 주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면서 다니는 대학을 그만두고서 다른 대학으로 재입학을 고려한 바 있다. 또 가정에서 장애와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들었던 여성 A는 고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가출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을 자주 휴학했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비단 소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수자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활발히 하던 이성애자 남성인 T는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멈추라고 강요를 당하자, 끝내 대학 휴학에 이르게 됐다.

다음은 일과 학업 면에서, 이번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을 정리한 표다(조사대상자 총 20명 가운데 10명).

<표 46>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소수자 유형(성별포함)	일과 학업 면에서의 영향
B 여성	이사, 직장 사직, 대학원 시험 실패
C 게이	고교 중퇴
F 트랜스젠더(MTF)	직장 사직
G 이주민, 여성	직장 사직
I 이주민	자녀가 학교 자퇴 후, (자녀와 부인의) 이민
N 장애인 여성(지체장애)	직장 사직
O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직업훈련장 이직
P 장애인 여성(발달장애)	고교 전학
S 청소년 성소수자	고교 전학
T 남성, 이성애자 (성소수자 지지활동)	대학 휴학

② 고립과 단절

이번 조사에서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가 사회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배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소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소수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폄하되고 모욕당하는 가운데 의사표현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표현의 자유나 공론장에서 참여할 권리를 제한받고 있었다.

또 소수자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어도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 또는 가족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혐오표현이 특정한 소수자 한 명만이 아니라 소수자집단 전체에 동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점은 결과적으로 소수자가 혐오표현을 당하고 나서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공론을 함께 형성해가는 데에 어려움이 매우 크리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먼저 지체장애인 여성 N와 여성 B의 사례를 보면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가 발언할 권리 그 자체를 박탈당했음을 알 수 있었다. N이 피해를 겪은 온라인의 혐오표현 댓글의 양상을 보면,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이 소수

자의 발언권을 제재하는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현할 권리를 제한받는 소수자는 그만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다.

N은 몇 년 전쯤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지체장애인인 자신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가족과 떨어져 자립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나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사화한 온라인 뉴스의 댓글로, N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시한 댓글을 봤고 이로 인해 온라인 뉴스의 모든 댓글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됐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저 살아가는 모습을 용기를 내서 보여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많은 이들이 본 것 같더라고요. 뉴스도 나고. 뉴스 기사에 댓글이 올라와서 봤는데 댓글을 보니 “난쟁이가 욕심도 많다”…….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댓글을 보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싫어요. 지쳤어요.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혐오표현으로부터 시작해 스토킹 피해를 입은 B도 용기를 내어 실명으로 온라인에 자신이 겪은 혐오표현 피해 경험을 공개하며 기고글을 실었는데, 혐오표현을 적은 댓글을 봤다. B는 “앞으로 내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남한테 제 내면을 드러내는 걸 싫어해서, 제가 남한테 보여주는 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밖에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그걸로 제가 피해를 덜 입었거나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린다는 게 슬프더라고요. 피해자 여성 답지 못하게 순종적이거나 친절하지 않다고 하는 거요. 또 기고글에 달린 댓글을 보고 저는 ‘앞으로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앞으로 직장에 다시 다니게 되면 피해사실을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를 분명히 내 몸 단속을 못한 여성, 복수에 칼 가는 여성이라고 볼 텐데 싶죠.

-사례 B 여성

혐오표현은 소수자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혐오표현 발생 시,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경험의 고통을 나누고 충분히 위로하며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은 그만큼

힘이 들었다. 이와 같은 점은 이주민의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주민 H는 “혐오표현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주민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다. 서로 마음이 불편하니까”라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겪는 커뮤니티 내부의 어려움을 말했다.

제가 지역 활동에서 책임자로 일할 때 어느 날 관계자인 한국사람이 와서 반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주민에 대해서는 ‘돈 벌러 왔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나이도 어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반말을 하고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그때 이주민인 친구가 옆에 있었어요. 그 친구가 보다 못해 나서서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지 마”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울기 시작했어요. “너 나 왜 말려. 내가 앞에서 니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구경만 하다니 내가 수치스럽다. 나 말리지 마”라고 하면서요. “너를 위해 내가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 면서 친구가 울었어요.

-사례 이주민 H

이주민 여성 G는 한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와서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어머니한테도 자신이 겪은 혐오표현의 피해나 자녀에게 일어나는 차별 경험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면접조사 당시 G의 어머니는 한국 체류 비자기한이 만료되어 다시 비자를 받기 위해 출국한 상태였다. G는 탈모증을 앓는 것도 어머니한테 털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제가 당하는 거는 엄마한테 직접 얘기할 수 없어요. 얘기하면 엄마가 마음 아파하니까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당하는 거를 저한테 이야기하면 들어주기만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조심해야 해요. 엄마한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해주죠. 만약 제가 엄마한테 제가 겪은 것을 다 이야기하면 엄마는 아마 비자를 다시 받기 위해 잠시 베트남 돌아가는 것도 안 갈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겠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은 것도 이야기 안 했어요. 엄마는 전혀 몰라요.

-사례 G 이주민 여성

2)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① 낙인 편견의 강화

앞서 ‘(1)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에서 살핀 것처럼,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에서는 공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혐오표현의 발생으로 혐오표현이 사회에 증폭되는 양상과 함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이 조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 전체에 혐오표현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때 이번 조사에서 중요한 실태는, 혐오표현이 일상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소위 ‘정상성’에 대한 틀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상적이거나 무능력하거나 위협한 사람’처럼 여겨지며 고통을 겪는 소수자가 견디다 못해, 혹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항의한다 해도, 혐오표현은 되풀이되어 일어나면서, 소수자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면 소수자들은 표현의 자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더욱 제한 받게 된다.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로 보자면 결국 다수자들은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접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트랜스젠더 F와 E의 사례를 보면 성별이분법적인 사고가 중심을 이루고 그것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되풀이되면서 트랜스젠더는 심적 고통을 느끼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있을 때, 낙인과 편견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드러난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기까지) 그 과정이 어땠는지, 경험이 어땠는지 올면서 얘기한다고 해도 또다시 “정신 차리고 남자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한마디면 되는 거죠.

-사례 F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MTF)에게 가장 되풀이되면서 많이 하는 대표적인 혐오표현이 “군대는 갔다 왔냐” 가 있죠. 250) 온라인에서 트랜스젠더를 다룬 뉴스면 거의 모

250) 혐오표현의 악의적 댓글과는 달리, 실제 트랜스젠더(MTF)는 상당수가 군복무를 마쳤거나 하고 있다.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198쪽. 트랜스젠더로 행세하여 병역을 기피하였다며 병역면제를 받은 트랜스젠더

든 댓글에 쓰여 있죠.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아직 안 갔다하면 “군대도 안 갔다온 게 어디서 남자 여자를 논하냐”, 군대에 갔다 오고 나면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이런 걸 보면 결국 군대 이야기는 트랜스젠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숨기라는 압박을 받게 되죠.

-사례 E 트랜스젠더

여성 A는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소수자의 처한 상황에 대해 둔감하게 되고, 심지어 소수자 스스로도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 낙인이 심화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성 A가 전한 청각장애인인 A의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사회적 차별 속에서 어떻게 A의 어머니가 스스로에 대한 차별을 내면화하는지,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혐오표현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A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사회전체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 둔감해진다”고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저는 혐오표현이 무서운 게, 그런 말들에 대해 사회 전체가 둔감하게 만드는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혐오표현들을 많이 들으며 그게 일상이 될 때는 심지어 소수자조차도 둔감해지는 것 같아요. 저의 어머니(청각장애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스스로 ‘바보다,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맞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요. ‘나는 여기서 벗어나면 아무 것도 못해. 난 바보니까. 나는 맞는 게 당연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사례 A 여성

차별에 관한 사회역학 연구, 차별이나 편견 인지 등에 관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소수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편견이나 낙인을 내면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²⁵¹⁾ 그만큼 소수자에 대한 편

(MTF)가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014년 12월 대법원은 피고인이 트랜스젠더가 아니라는 병무청과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51) 대표적인 연구로는 편견이 자의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미국의 흑인

견이나 고정관념이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개개인에게도 파괴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여성 B는 범인을 잡아 사건을 해결하고 나중에 주위에 사건이 알렸을 때, 주변의 동성친구들, 심지어 어머니에게조차도 “무서운 여자”, “독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자 가운데 여성 B를 포함하여 일부는 소수자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이들조차도, 소수자에게 혐오표현을 하게 되어 결국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이야기했다.

혐오표현이 소수자 전체를 향해 동시에 발화되는 만큼,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의 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혐오표현은 소수자 내부에도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

이런 폐해는 게이 C와 트랜스젠더 E가 전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게이 C는 퀴어퍼레이드 행사 때 상반신을 노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에서 “못생겼다”, “잘 생겼으면 벗고 해도 상관없는데, 니가 못생겨서 비난하는 것”이라고 외모에 관한 비하와 함께 “그렇지 않아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하는 (성소수자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빌미를 준다”는 비난을 들었다. 트랜스젠더 E는 트랜스젠더로 비교적 늦은 나이에 정체화했는데, 정체화한 후 트랜스젠더 내부 커뮤니티에 정보를 구할 때 나이가 들어서 정체화하려한다는 이유로 “가짜 트랜스젠더”라는 소

심리학자인 클라크 부부의 연구를 들 수 있겠는데, 유색인종과 백인 간의 격리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는 흑인 아동이 검은 피부를 열등한 것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피부색을 거부하는 자기 부정을 나타냈다는 연구결과이다. 사회심리학 분야에서는 ‘클라크 부부 인형 실험(The Clark Doll Experiment, 1939)’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편견과 차별이 인간의 자의식을 갉아먹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은영·구자혁·최윤영, 『차별과 연대』, 나경, 2014, 73-75쪽. 또한 특정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 가지는 비우호적 편견 및 차별과 건강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역학자 낸시 크리거는 “피지배집단의 구성원, 특히 사회적, 물질적 박탈을 보다 많이 경험한 이들은 지배문화의 부정적 관점을 내면화하고 그들의 종속상태나 이와 관련된 부당한 대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차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ancy Krieger, “차별과 건강”, Lisa F. Berkman and Ichiro Kawachi 엮음, 『사회 역학』, 신영전 외 옮김, 한울, 2010, 95쪽. 한편 심리학자 존 조스트는 차별 받는 집단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가해진 자기 파괴적 고정관념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게는 당혹스러운 역할을 수행하고 차별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한 바 있다. Anthony G. Greenwald and Mahzarin R. Banaji, 『마인드버그: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내 안의 숨겨진 편향들』, 박인균 옮김, 추수밭, 2014, 182쪽.

리를 들었다. E는 ‘가짜 트랜스젠더’, ‘진짜 트랜스젠더’를 구분하려드는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 일부의 논리가 사회의 차별과 혐오에서 온 것이라고 파악했다.

저는 그때 소수자 내부에도 혐오가 존재하는구나하고 느꼈어요. 게이들은 항상 신사적인 모습만 보여야 하고, 고학력이어야 하고.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 싶죠. 튀면 안 되고 사람들 속에 묻혀 살고.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차별이 뿌리가 너무 깊어서.

-사례 C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 정보를 구하며 상담할 때 나이가 좀 들어서 정체화를 했다고 하니까 한 트랜스젠더 분이 저더러 “가짜 트랜스젠더”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트랜스젠더로 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트랜스젠더는 완전히 선천적이고 어렸을 때부터 자각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가 있잖아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를 그나마 긍정적으로 봐줄 때 통하는 논리가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된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사례 E 트랜스젠더

한편, 마치 소수자가 다수자보다 과잉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오해하는 식으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나 권력관계를 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부쩍 늘면서²⁵²⁾ 이와 더불어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조장되는 가운데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성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며, 결국 다수자 역시 소수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빼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의 차별적인 세미나가 여러 차례 열렸다. 대학 학생들은 원래 세미나 수강에 대해 무관심했

252) 이런 현상은 온라인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글을 읽고 공감하는 청년층에게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청년층 사이에서 온라인 여성혐오 현상을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표현을 읽고 공감하는 청년층이 우리나라에서 혜택 받는 집단으로 ‘20~30대 여성’을 꼽는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음이 드러났다. 안상수·김인순·이정현·윤보라,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165쪽, 166쪽.

는데, 학교에서 세미나를 수강하면 학점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자, 학생들은 세미나를 듣고 오게 됐다. 이런 공적인 형태의 차별이 일어나자, D는 학생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그 변화를 말했다. 그것은 “성소수자가 힘이 세다”는 인식이었다.

학점을 인정해준다고 해서 세미나에 다녀온 학생들 같은 경우, 생각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죠. “아 맞아. 그래. 동성애자로 인해 에이즈 감염이 더 늘고, 그러면 세금 더 많이 나가”, 아니면 “아 더러워”하고. 마치 세뇌 당한 듯이 보였어요. 또 “성소수자가 무슨 성소수자냐 힘이 그렇게 센데. 퀴어문화축제도 하는데”라는 말도 같이 하더라고요.

-사례 D 범성애자

②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

혐오표현의 또 다른 사회적 영향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들 가운데 소수자가 일과 학업과 같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공론장 참여에 있어서 이미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1)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에서 이미 서술한 바 있다. 위계에 따라 소수자를 대등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고, ‘정상성’을 기준으로 자꾸 구별하여 위계서열의 아래에 놓으려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는 사회적 배제를 거듭 경험하고 있었다.

지체장애인 여성 M, N, 트랜스젠더 E는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으로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점을 지적했다.

혐오표현이 계속되면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소수자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걸러내고, 이렇게 다름을 확인하고 (소수자를) 아래에 두려는 게 습관처럼 익숙해지는 거죠.

-사례 M 지체장애인 여성

장애인은 ‘열등하고 무능한 존재, 주체적이지 못한 사람, 보호자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결국 이런 편견에서 차별이 나오고 혐오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뭉쳐서 혐오표현이라고 생각되죠.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 하고 부모한테 밝히면 부모는 뭘 찾아보겠어요?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정보나 신문 기사를 찾아보겠죠. 그러면 신문기사에 트랜스젠더는 성매매를 하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 또는 군대를 안 가려고 해서 꾸미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쓰인 기사만 보면, 부모는 자식에게 “트랜스젠더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고 지지해준다고 해도, 부모도 자식과 같이 차별받고 고립되겠죠. 전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례 E 트랜스젠더

한편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으로 사회적 배제가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벌이는 이성애자 남성 T였다. T는 어느 날 학교도서관에서 밤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대학에 다닌다고 밝힌 한 학생이 불쑥 부르더니, “우리 대학을 나가라”는 소리를 했다.

그 학생이 저한테 “당신도 그런 쪽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냐(성소수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학생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 아니더라도, 평소에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학교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나가라. 그 거에 대해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게 불만이면 학교를 그만둬라, 나가라”는 거죠.

-사례 T 이성애자 남성 (성소수자 지지 활동)

T가 다니는 대학은 언론에 “우리 대학에는 성소수자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T는 자신의 대학에서 이렇게 소수자를 배제하는 태도로 나오는 것,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혐오표현이라고 했다.

제가 다니는 대학에 퍼져있는 혐오표현 가운데 널리 퍼진 말은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로 나오는 그런 발언이죠. 이를테면 동성애자는 성에 중독됐다는 식으로. 그런데 심층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대표적인 혐오표현이 “우리 대학에 성소수자는 없다”예요. 성소수자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데. 이런 말이 학교 당국에서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죠. 왜냐하면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 주변에 없다고 해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게 얼마나 무지한가, 또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인가……. 성소수자 친구들과 관계가 굉장히 소중한데요. 친구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사례 T 이성애자 남성 (성소수자 지지 활동)

T는 대학 당국이 성소수자 친구들에게 상처 주는 혐오표현이나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계속했지만, 대학 당국에서 여러 차례 활동을 멈추라고 강요를 당하여 결국 휴학으로 원치 않게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 T의 사례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은 소수자에 대한 배제는 물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다수자의 배제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성적대상화의 심화와 프라이버시 침해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혐오표현의 피해로 시작하여 성희롱·성추행, 폭력·차별을 겪었다고 앞서 (1)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에서 서술한 바 있다. 그 가운데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이어진 혐오표현 피해를 겪은 소수자는 성적으로 극도로 대상화된 폭력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소수자의 주변에서도 성적 대상화가 일어나, 대상화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교시절 아웃팅과 함께 혐오표현 피해를 입은 게이 C는 친한 친구와 멀어지게 된 경험을 이야기했다.

심지어 이제 저랑 계속 같이 다녔던 친구도 혐오표현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저랑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만으로 욕을 듣거나 아니면 성적인 농담을 들어야 했는데요. 가볍게는 “너도 게이냐”부터 시작해서 “둘이 했냐”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본인한테는 좀 괴로웠을 텐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일부러 멀리 하려 했어요. 그 친구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례 C 게이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활동을 하는 이성애자 남성 T도 학교에서 “너도 게이냐”는 질문을 수차례 들었다. 한국인 여성과의 로맨스를 주제로 한 영화에 출연해 살해협박을 받았던 이주민 H은 아내(한국인 여성)가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의 댓글을 통해 “걸레”라고 비난을 받는 등의 성차별적인 혐오 표현을 여러 번 겪었다.

한편 소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질문들은 특히 외형으로 정체성이 드러나는 소수자에게 일어났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빈번히 혐오표현으로 이어졌다. 지체장애인 여성 N과 이주민 H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불쑥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 만들러 가?” 하는 거예요. “출근하는데요”라고 답하니깐. “남자친구는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대답을 해야 하나’ 싶다가 “네 있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사람?”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한국사람 누구한테서나 여러 가지 질문을 받죠. “이슬람교도냐”, “하루에 기도는 몇 번 하느냐”, 심지어 “아내가 몇 명이나”도 있죠. 물론 무조건 부정적인 것도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호기심이 있어서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항상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물음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요. 반대로 이주민은 한국사람한테 그렇게 못하죠. 물어보면 “입 닥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런 질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례 H 이주민

H는 이주민이 일상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관심에서 비롯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주민은 그런 질문을 똑같이 한국인에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종의 온정주의적 혐오표현이, 혐오표현 발화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으로 눈에 띄는 점은, 소수자에 대해 ‘정상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소수자는 물론 소수자 주변에 있는 다수자들까지 프라이버시 침해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범성애자 D는 대학당국에서 성소수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려고 SNS를 감시하는데, SNS에 코스프레²⁵³)를 하는 사진을 올린 학생들까지 대학에서 불러가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학교에서 SNS 사찰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코스프레를 하다가 성소수자냐고 의심받고 학교에 불러갔죠. 또 학교가 이런 점이 마음이 안 든다고 쓰면 성소수자로 의심을 받죠.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성소수자)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죠.

-사례 D 범성애자

D가 보고한 다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트랜스젠더 E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면서 E는 어느 누구든 도마 위에 올라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원에서 학부모들이 제게 자꾸 머리를 자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긴 편도 아닌데, “보기 답답하고 남자라면 잘라야 되지 않느냐”, “선생님 머리 긴 거, 보는 내가 답답”면서 제게 엄한 남자선생님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죠. 정말 고정관념이 강한데요. 얼마 전 동료 선생님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선생님으로서 격이 떨어진다, 차라리 걸어 다녀라” 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사례 E 트랜스젠더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소수자는 혐오표현이나 혐오표현이 비롯된 차별 상황의 시정 또는 개선을 위해 대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대체로 혐오표

253) 코스튬 플레이(costume play)의 준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주인공의 의상을 만들거나 빌려 입고 노는 일종의 대중문화.

현을 겪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편이라 할 수 있는데도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는 혐오표현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처에 나섰을 때 도리어 혐오표현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도, 온라인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조사대상자들이 혐오표현의 피해에 대해 참는 경우도 있었다. 가족이나 자신의 커뮤니티를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인내하는 것이다. 한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대처하려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1) 소수자로서의 어려움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에서는 소수자가 혐오표현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2) 공공기관의 대응에서는 공적기관에서 소수자의 혐오표현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폈다.

1) 소수자로서의 어려움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친구들과 지하철을 탔는데 한 할아버지로부터 사생활을 자꾸 질문하는 온정주의적 혐오표현을 겪게 됐다. 마침 N의 곁에는 동행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N은 평소와 달리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N의 항의에 대해 할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이내 “얼굴은 예쁘데, 세상 참 힘들게 산다”고 반박하면서 혐오표현을 얼른 쏟아내고 가버렸다.

제가 딱 한번 받아친 적이 있거든요.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는 얼마나”, “충전하면 얼마나 가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싶어서 답을 해드렸는데, 이제 “집은 어디냐”, “누구랑 같이 사냐” 그런 사적인 질문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동행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당하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그 할아버지께 한 번 물어봤죠. “아니 왜 그런 게 궁금하세요?” 하고. 그랬더니 “아니, 뭐 그냥”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질문을 들어요” 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 몰랐네, 미안하네” 하시고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세상 참 힘들게 산다”하고 가버리시는 거죠.

-사례 N 지체장애인 여성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에 대해서도 소수자 개인 혼자서 대처하

기는 매우 어려웠다. 청소년 성소수자 R은 최근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전환치료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댓글로 차별적인 내용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을 쓰며 대응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할수록, 차별적인 댓글이 이어졌다. R이 대응할 때마다 자신이 느낀 무력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온라인 상에 왜곡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잘못된 정보가 하나하나 보일 때마다 반박을 해요. 포털사이트 뉴스에 댓글로 달린 혐오표현을 보고 반박하는 말을 달면 바로 제 댓글을 향해 댓글이 달리죠. “네, 다음 게이~”라고. 그러니까 댓글에 반박 댓글을 단 사람은 모두 게이라고 비하하는 말인데요. 누구든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말을 쓰면 댓글이 “네, 다음 게이”하고 댓글이 바로 달려요. 저는 대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아……. 괜찮아질까? 나 때문에 뭐 바뀌는 것이 있을까?’ 싶죠. 온라인의 혐오표현은 저를 점점 피해하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갇아먹는다는 것 같다고 할까요? 힘이 빠져요…….

-사례 R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의 자녀인 것을 이유로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이주민 I는 자녀의 폭행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 뉴스가 되었는데, 뉴스에 달린 댓글을 보고 ‘한국에서 더 이상 자녀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했다.

인터넷에 뉴스 댓글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안타깝다”는 댓글도 있었지만, “잘됐다, 쫓아내라”라고 하는 댓글도 많이 있었거든요. 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한국사회는 아직 멀었다.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안 받으려면 50년, 아니 100년은 걸리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사례 이주민 I

또 소수자는 스스로 위축되어서라기보다 가족이나 친구가 자신의 혐오표현 피해경험을 듣고 슬퍼할까봐, 혹은 가족이나 친구, 소수자 커뮤니티가 자신의 혐오표현 피해 시정을 위해 나섰다거나 혹시 좋지 못한 평판이나 해를

당할까 봐, 또는 주변에 부담을 안기게 될까봐 혐오표현을 참고 대처하지 않았다. 즉 소수자 주변을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이 소수자가 혐오표현을 감내하고, 대처에 침묵한 주요인이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신의 아이만 운행차량에 태워주지 않고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G는 자신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는 이주민 커뮤니티에 알리면 항의해주고 같이 싸워주겠지만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몸이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몸만 안 다치면 되는데. 제 아이한테는 더 나쁘게 대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많아요. 이주민 커뮤니티도 있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아마 가서 같이 싸워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 안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저보다 더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월급 떼인 사람도 있고.

-사례 G 이주민 여성

2) 공공기관의 대응

자녀가 반 학생들한테 혐오표현과 함께 집단폭행을 당한 이주민 I는 사건 후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의 교장을 만나게 됐다. 학교장은 “감당 못한다”면서 I의 자녀를 전학시키라고 했다. 관할교육청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I의 자녀는 혐오표현과 함께 학교폭력을 당한 후 병원 치료도 했고 심한 우울증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지경이 됐는데, 학교측의 이런 공정하지 못한 대응을 보면서 I는 더 이상 자녀를 한국에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어 아이와 아내를 이민 보내고 말았다.

가해학생 부모들도 사과를 안 했죠. 학교에서는 ○○(I의 자녀)를 전학시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담임선생님이 출근 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우리도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이런 일 또 생기면, 우리는 ○○를 감당 못한다, ○○를 전학시켜라”라고 했어요. 민원을 넣어 교육청에서도 오긴 했는데, 그냥 사과하고 끝났죠. 저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학교는 아무 것도 안 했고. 학교는 그저 전학이라고만 하니까. ○○가 학교에 다시 다니면 불이익 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또 밑에 둘째, 셋째 아이도 그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걱정도 됐죠.

-사례 이주민 I

이주민 H는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 정당의 공보물²⁵⁴⁾에 쓰인 혐오표현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했다. 공보물에 쓰인 문구가 “이슬람이 테러집단이고, 동성애자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라서 H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혐오표현이라 생각해서 항의전화를 한 것이다. H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을 보고 “괜히 전화했다, 힘이 빠졌다”고 했다.

저는 직접 항의한 적 있었거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했어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신고하려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사는 곳을 묻더니 그런 문제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전화를 했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먼저 담당자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바로 “외국인이세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인이다. 귀화했다. 그런데 왜 내가 외국인인지 묻느냐”고 했죠. 그러자 그 분이 “한 정당의 선거의 전략, 공약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반인종적, 반종교적, 반인권적인 내용, 문구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라고 되물었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런 공약이 나오다니 참 할 말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도 했어요. 참 황당했어요. 이런 문구를 선관위는 문제적으로 느끼진 못하는 거 같아요.

-사례 H 이주민

청소년 성소수자 R은 고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인 동영상을 보여주는 수업을 들었다. R의 고교 교사는 수업시간 50분 내내 이런 수업을 했는데, R은 관할교육청에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R이 민원을 제기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할교육청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한 답이 왔는데 “학교 교사의 인권편향적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254) 기독교자유당의 비례대표 선거공보물에는 앞면에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교법을 꼭! 막아내겠습니다’, 뒷면에 ‘할랄단지 조성계획 중인 익산시에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면 대한민국은 테러 위험국으로 전락’,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성폭행 급증 및 안전보장 불가’ 등의 내용이 기재됐다.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여러 달이 지나 교사는 사과를 하며 해명을 하게 됐는데, 해명의 내용은 사과를 반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저는 민원도 제기하고, 교직원평가 때도 익명으로 항의하는 내용을 쓰기도 했죠. 그렇게 하니깐 선생님께서 수업 때 해명을 하시는데, “동성애 지지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에게는 미안하다. 그런데 실은 내 친척 애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을 했는데, 성전환수술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했다더라. 부모가 그런 일을 겪는 걸 보고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런 건 불효라고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똑 같았어요.

-사례 R 청소년 성소수자

이상, 이번 조사대상자들이 혐오표현에 항의하며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를 살펴봤다. 조사대상자들은 공공기관에서 혐오표현의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거나 혐오표현을 시정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공정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거나, 혐오표현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혹은 각별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이나 관리에는 미흡한 대응을 보였다.

(5)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으로, 혐오표현으로 인한 폭력 피해나 차별 발생 시 공공기관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진상조사 및 차별 시정,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들었다. 명백한 폭력이나 차별행위의 가해자는 처벌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온라인의 혐오표현과 반인권적인 집회의 금지나 처벌에 대해서도 여러 명이 의견을 냈다. 온라인이나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차별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을 주도하거나, 반복해서 발화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공적인 위치에서 혐오표현을 발화한 주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구성원 누구나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시행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사회구성원이 알아서 자정할 것이라고 믿고 손 놓고 있어서는, 차별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와 해악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라 보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소수자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데, 조사대상자인 지체장애인 M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법이 생김으로써 기존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분명히 문제라고 보는 변화가 일어났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혐오표현에 관해 무관심하게 그저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의 사회의식도, 동시에 소수자의 의식, 그러니까 소수자들이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포기해버리는 부분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이주민 H는 인종차별금지법이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제가 한국인 아내랑 결혼할 때 아내 가족이나 주변에서 엄청 반대를 많이 했었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고. 당시는 한국사회가 이주민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피가 섞인다고 우려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정말 잘 지내거든요. 서로 노력해서 아주 좋은 사이가 됐어요. 가족 내에서 저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죠.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노력한다면 관계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 이를테면 반인종적인 표현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이런 것은 개인만 노력해서는 해결하기 힘들다고 봐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하죠. 법이 있어야 해요. 한국은 인종차별금지법도 없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도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겠죠.

-사례 H 이주민

또 여러 명의 조사대상자들은 차별금지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자들은 차별금지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사회·학교·직장·세대별로 세심하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이야기했다. 이런 의견은 혐오표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혐오표현에 대해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방관자의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 사회적 차원에서 철저한 인권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발달장애인 여성 O는 “발달장애인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신의 고교시절 사례를 들며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겨우 그런 말들(혐오표현), 왕따, 괴롭힘 이런 게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제 편을 들어주는 일반 친구들(비장애인)이 서너 명 생겼거든요. 그 전에는 엄마가 생전에 학교에 쫓아와서 화도 내주고 그랬지만 사실 소용없었어요. 계속 그랬으면 진짜 전학 가야되거든요. 학교에서 나랑 말도 해주고, 누가 뭐라고 하면 따져주는 친구들이 생겨서 편해졌어요. 지금도 그 친구들이 (O가 나가는 작업훈련장) 근처에서 일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학교에서 교육을 조금만 해도, 조금만 시켜 봐도 좋겠어요.

-사례 O 발달장애인 여성

트랜스젠더 E는 혐오표현의 사회적 대응과 관련해 국가가 나설 영역이 “비단 차별금지법의 제정이나 차별금지교육 실시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차별 시정이나 철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령 'WPATH SOC(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 건강관리실무표준)'라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세계적 의료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이걸 한국의 성소수자 단체에서 번역해서 홍보하고 있는데요. 물론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 나서서 홍보하고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도덕성이기도 하잖아요. 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요.

-사례 E 트랜스젠더

이밖에 기존에 있는 법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들을 검토하고 폐지하여 차별을 철폐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테면 군형법 제92조 제6항(군대내 동성애 처벌 조항)의 폐지 등이다. 아울러 다양성을 존중하고 경쟁사회 풍토를 개선하는 등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문화 조성, 소수자 자존감 회복 심리프로그램 실시, 언론의 인권보도지침 강화, 학교에서 소수자 차별 문제를 전담으로 상담하는 상담교사의 상시 배치

등의 의견도 폭넓게 제시됐다.

대항표현과 관련된 사회적 대응으로는, 소수자 자력화(empowerment)의 차원에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가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 의견을 이야기한 지체장애인 여성 N은 “장애인 당사자로서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겪어야 했던 상황들 가운데 줄곧 막연히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로소 깨닫게 됐다. 차별이 뭔지 구분할 수 있게 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능력이 생기게 됐다”고 밝혔다. 소수자 스스로가 사회 속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차별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됐고 이로써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뜻이다.

3. 중간결론

이상에서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총 20명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소수자가 겪고 있는 혐오표현의 발생환경과 유형, 혐오표현으로 인한 심리적·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1) 혐오표현 피해 실태 주요 조사결과

먼저,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폭력·차별로 이어지는 등, 혐오표현의 심각한 피해실태가 드러났다. 특히 소수자의 정체성과 관련된 성적 괴롭힘은 모든 소수자집단에서 나타났는데, 주로 언어적 성희롱의 형태였지만 성추행, 협박, 폭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일어났다. 이번 조사대상자인 모든 소수자집단이 일상에서 정체성과 관련된 혐오표현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 등의 경험을 겪은 것을 보면 혐오표현은 소수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할 때 일어나는 차별적 괴롭힘이라는 점, 소수자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매우 염려되는 수준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혐오표현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에서는,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동시에 혹은 혐오표현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수자는 폭행이나 가정폭력 또는 학교폭력을 당했으며, 즉각적인 폭력 행사나 폭력의 암시, 살해협박을 당하기도 했다. 혐오표현이 차별로 이어진 사례에서는 혐오표현이 임금갈취, 편

과수사와 같은 차별로 이어졌으며, 혐오표현은 차별행위의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반말이나 욕, 폭언은 혐오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혐오표현이 폭력이나 협박,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심각한 피해 사례, 즉 ‘차별적 괴롭힘’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 사례 가운데 자주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에서, 소수자에게 혐오표현이 발생할 때 소수자가 단순히 혐오표현에만 노출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소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 폭력 상황이나 차별행위의 피해로 악화할 우려가 있음을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둘째, 혐오표현이 일상과 온라인에서 만연하다는 점이 낱알이 드러났다. 만연한 혐오표현의 발생환경 속에서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소수자 개개인에 대한 ‘차별적 괴롭힘’과 함께, 소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 소수자 개인을 향해 쓰인 ‘차별표시’ 유형의 혐오표현, 소수자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을 두루 겪고 있었다. 차별행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공개하는 혐오표현의 유형인 ‘차별표시’는 주로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들어 특정 소수자 개인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소수자집단의 정체성을 비하, 멸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내용이 소수자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직접 마주하고 공연히 모욕, 비하, 멸시, 경멸하여 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인 ‘노골적인 적대, 차별의 표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일방적인 적대감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호나 호의를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데서 드러나는 혐오표현인 ‘온정주의적인 차별의 표시’가 대표적이다. ‘노골적인 차별, 적대의 표시’ 유형의 혐오표현은 이주민과 성소수자에게 뚜렷이 나타났으며, ‘소수자가 혐오표현의 가해자와 대등한 사람이 아니다’ 혹은 ‘소수자가 다수자와 달리, 대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견 사회적으로 덜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온정주의적 차별의 표시’ 유형은, 결과적으로 소수자의 평등, 대등한 권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요구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으며, 주로 장애인과 여성에게 나타났다.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에는 특이하게도 비언어적 혐오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경멸 또는 배제의 시선’이 있음이 드러났는데, 이는 굳이 특정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경멸하는 시선을 보내거나 아예 처

다보지도 않는 시선을 통해 소수자에게 소수자가 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작용했다. 이 유형의 혐오표현은 트랜스젠더와 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주민과 같이 외견으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이 확연히 드러난 경우 자주 나타났다. 또 하나의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유형의 혐오표현으로는 ‘대상화(성적대상,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 취급)’ 유형이 있다. 이는 소수자가 한낱 성적 대상, 물건, 비정상인, 범죄자, 위험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나타났다.

셋째, 소수자에 대한 증오나 적의의 감정을 부추기거나 고무하는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가 확인됐다.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 피해는 주로 이주민과 성소수자에게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이주민과 성소수자는 정당의 선거공약, 종교재단이 설립한 학교의 수업, 강연, 학교 당국의 게시물, 그리고 종교 집회 등에서 발화된 혐오표현으로 인해 일종의 공적으로 승인받은 형태로 피해를 겪고 있었다. 특히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의 경우, 혐오표현이 피해를 받은 소수자집단 곁에 있는 다수자에게 혐오표현이 급속도로, 대량으로 확산되면서 소수자에 대한 극도의 경계나 위협, 폭력의 조장이 사회 전체로 증폭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심각한 혐오표현의 피해 실태로 인하여 결국 소수자는 심리적 해악뿐만 아니라 일이나 학업의 중단, 사회공론장 참여에 대한 제한 등과 함께, 낙인·편견의 강화, 사회적 배제를 강도 높게 경험하고 있다.

(2) 소수자가 입은 혐오표현의 영향

소수자가 입은 혐오표현의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자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지대한 심리적 영향을 받았는데 공통적인 심리적 해악은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 이후,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여기게 된 인식에서 비롯된 감정 상태라 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긴장감은 혐오표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만연하므로 소수자가 항상 긴장된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소수자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이며 사회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살 가치가 있다고 보는 믿음이 위협받는 자존감 손상은, 소수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소수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입은 소수자에게도 나타났다. 또 소외감과 무력감은, 혐오

표현이 일어나는 차별적인 상황 속에서 소수자는 '다수자보다 아래에 있어 대등하지 않으며(혹은 그 속성으로 무능하거나 열등하며), 정상적이지 않으며, 다수에게 해가 되므로' '없는 셈 치는' 또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취급받는 가운데 사회로부터 배제를 당한다는 메시지를 직접 받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상태였다.

심각한 수준의 심리적 해악이라 할 수 있는 스트레스성 심리반응은 자살 충동, 우울증, 공황발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다. 이런 심리반응은 소수자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혐오표현이 대량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간 상황, 혐오표현 피해와 더불어 신변과 관련되어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거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상황, 공적으로 승인된 형태로 혐오표현이 발생한 상황에 있는 소수자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혐오표현의 발화자가 개인일 경우 조사대상자들 가운데에서는 부정적인 심리적 영향을 일정하게 받으면서도 그 사람(발화자)의 부족한 인격이나 인성, 무지를 탓하는 정도로 대처한 사례도 있었으나, 혐오표현이 공적 형태인 형태일 경우, 소수자는 사회 전체로부터 자신이 부정 당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어 심리적 타격을 받았다.

둘째, 혐오표현의 피해의 심각성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 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자 총 20명 가운데 10명, 무려 절반이 혐오표현의 피해 이후 일이나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를 전학하는 등 교육권과 노동권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또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는 사회적 고립과 단절의 상황에 놓이면서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구성원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소수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폄하되고 모욕당하는 가운데 의사 표현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았다. 더욱이 소수자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겪은 후 소수자 커뮤니티 내부나 가족에게 피해를 털어놓고 함께 논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혐오표현이 특정한 소수자 한 명만이 아니라 소수자집단 전체, 소수자 주변에 동시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수자가 혐오표현을 입고 나서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이나 차별에 대항하기 위한 공론을 함께 형성해가는 데에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

혐오표현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첫째,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면서 결국 사회 전체에서 다수자가 다양한 소수자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한 관점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비정상적이거나 무능력하거나 위험한 사람’처럼 여겨지며 혐오표현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수자가 건디다 못해, 혹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항의한다 해도, 혐오표현은 되풀이되어 일어나면서, 소수자를 제어하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보면 소수자들은 표현의 자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권리를 더욱 제한받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회 전체에 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강화되면서 다수자와 소수자가 대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권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드러났다. 또 마치 소수자집단이 다수자집단보다 과잉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사회적 자원의 배분이나 권력관계를 역으로 틀리게 인식하는 경향도 볼 수 있었다. 이런 사례를 살펴면서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조장되는 가운데 다수자가 소수자에게 다가갈 권리, 다양성에 대해 접근할 권리를 빼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물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다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가운데, ‘소수자가 이 사회에는 없다’, 또는 ‘없어도 된다’는 식의 시각, 소수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소수자로서 존재와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위계에 따라 소수자를 대등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고, ‘정상성’을 기준으로 구별하여 소수자를 위계서열의 아래에 놓으려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소수자는 사회적 배제에 놓였다.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회 전체에서 재생산되고 있었다.

이번 면접조사에서 유일하게 다수자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조사대상자(이성애자 남성)가 대학에서 성소수자 지지 활동을 벌이다가 대학 당국의 제지를 받고 휴학이라는 형태로 끝내 학교생활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보면 혐오표현의 해악이 소수자에 대한 배제에 그치지 않고,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다수자의 배제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매

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됐기 때문인데, 혐오표현의 폐해가 사회 전체로 확장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셋째, 소수자에 대해 끊임없이 '정상성'을 요구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혐오표현으로 인해 소수자는 물론 소수자 주변에 있는 다수자(친구, 가족, 동료)까지 성적 대상화된 혐오표현에 노출되거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4)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이하에서는 소수자와 공공기관의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대처, 혐오표현의 사회적 대응방안으로 소수자가 제시한 의견을 살핀다.

먼저 소수자는 혐오표현의 대처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혐오표현에 항의하는 의사를 표현하거나 대응에 나섰을 때, 도리어 혐오표현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혐오표현에서도, 온라인의 혐오표현에서도 이런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또 혐오표현은 특정한 소수자 한 명만이 아니라 소수자집단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혐오표현 발생 시, 소수자가 소수자 내부에서 혐오표현의 피해 경험의 고통을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받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거나,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공공기관(학교, 교육청 등)의 대응을 살펴보면, 실질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규명하거나, 혐오표현 시정 조치 등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방안을 살펴보면,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혐오표현으로 인한 폭력 피해나 차별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시정·개선 조치 실시(폭력이나 차별행위의 가해자 처벌 포함)와 피해자 안전 확보를 들었다. 또 차별금지법 제정, 차별금지교육, 지역사회·학교·직장·세대별 인권교육의 실시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해악을 염두에 둔다면, 혐오표현의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는 실제 '차별적 괴롭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우선으로 소수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차별행위의 시정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시행과 차별금지교육의 실시도 긴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유의할 점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

을 소수자로서 인지하고(소수자로서 차별 인지도가 높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정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 주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보를 구하거나 자기 편에 서 줄 수 있는 지인 및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자기 경험을 외부로 알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 이들조차 적지 않은 심리적 손상, 교육권과 노동권의 침해, 공론장 참여의 제한 등 사회적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었다. 이는 수많은 소수자들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더욱 크고 깊은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III. 온라인 혐오표현 분석

이미 4장의 'I. 설문조사 분석'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나눠서 각각 실태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1. 온라인 혐오표현 현황과 개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은 현실공간 못지않게 중요한 삶의 무대이다. 국가별 인터넷 이용율을 보면, 주요 국가들(36개국)이 이미 80%을 넘겼으며, 한국은 89.9%에 달한다.²⁵⁵⁾ 문제는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 요구 건수가 2011년 4건에서 2016년 7월 기준 1352건으로 300배 이상 증가했다.²⁵⁶⁾ 해외에서도 온라인 혐오표현은 혐오표현 문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혐오표현에 대한 대표적인 캠페인인 유럽평의회 의 'No Hate Speech Movement'²⁵⁷⁾는 온라인 상의 혐오표현을 주 대상으로

255) KISA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국가별 인터넷이용률(ITU) (<http://isis.kisa.or.kr/statistics/?pageId=050300>, 최종검색일: 2016.11.12.) 참조.

256) "일베·디씨에 메갈까지...온라인 '차별·비하·혐오' 넘쳐난다", 『뉴스1』, 2016.9.6. (<http://news1.kr/articles/?2767641>, 최종검색일: 2016.11.12.)

삼고 있다. 미국에서 혐오표현을 감시하는 대표적인 단체인 남부빈민법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 SPLC)²⁵⁸나 반(反)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²⁵⁹에서도 인터넷 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주감시대상으로 삼고 있다.²⁶⁰

2. 온라인의 일반적 특성과 혐오표현

온라인 혐오표현이 오프라인 혐오표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특히 그 배경과 원인은 특별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온라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발현되는 모습과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 특성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에 남겨진 혐오표현은 오래 지속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로 하는 혐오표현은 휘발성이 있지만, 온라인에 남겨져 있는 혐오표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출판물에 의한 혐오표현에 비해서도 그 지속성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해악을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두 번째, 온라인 혐오표현은 빠르게 확산된다. 온라인 혐오표현은 쉽게 복제되어 확산되곤 한다. 말이나 출판물에 비해 전파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산되는 범위도 광범위하다. 혐오표현을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는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혐오표현을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 발화자는 온라인을 그 주무대로 삼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온라인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존재하여 다양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은 개별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게 설정되어 있다. SNS를 예로 들어보면,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에는 트위터가 유리하고, 비교적 동

257) <https://www.nohatespeechmovement.org/>

258) <https://www.splcenter.org/> 남부빈민법센터는 1971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단체이다.

259) <http://www.adl.org/> 반명예훼손연맹은 유대인 차별에 반대하고 유대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1931년 설립되었다.

260) 특히 반명예훼손연맹에서는 1985년부터 인터넷에서의 혐오(digital hate)문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질적인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 낫다. 1인 미디어로서 보다 공식적인 외양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성이 강한 매체로서는 블로그가 있다. 혐오표현 발화자는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혐오표현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번째, 익명성이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기 쉬워서 죄책감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혐오표현을 발화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초국가적 성격이다. 온라인에서 국가의 경계는 큰 의미가 없으며, 온라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는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²⁶¹⁾ 등과 같은 국제적인 기준 제정과 집행이 중요하게 대두되곤 한다.

여섯 번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나 IT 관련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공간은 국가가 직접 관할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민들 개개인이 아무런 매개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다. 온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IT 관련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인터넷 규제에 있어서도 국가별 규제보다는 서비스사업자나 IT관련 기업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일곱 번째, 온라인 혐오표현은 규제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국가-법 규제가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앞의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익명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인터넷의 성격상 국가 차원에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무력화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국제 기준의 제정, 국제 공조, 기업 차원의 자율규제, 시민사회의 모니터링 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3.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

(1) 집단/커뮤니티 활동

온라인 혐오표현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집단적인 커뮤니티 활동이다.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동질적인 사람들끼리 혐오를 정상적인 것으로

261)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Strasbourg, 28 January 2003.

로 생각하고, 더 극단적인 생각(집단 극화, group polarization)으로 이끌리는 경우가 많다.²⁶²⁾ 혐오를 확산시키거나 증오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을 ‘혐오집단’(hate group)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반이주자, 반성소수자, 반무슬림, 흑인분리주의, 신나치주의 등을 표방하는 총 892개의 혐오집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²⁶³⁾

한국의 경우에는 비교적 느슨하고 개방적이지만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일간베스트, 디씨인사이드, 수컷닷컴 등에서 혐오표현 게시물이 다수 발견된다. 이들 사이트에는 다양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특징을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일간베스트의 경우에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그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²⁶⁴⁾ 물론 이와 같은 한국의 사이트들은 미국의 혐오집단처럼 혐오표현이나 증오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혐오가 커뮤니티 활동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베에서는 주로, 여성, 호남, 민주화운동, 이주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어떤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다.

그 외에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커뮤니티들 중에 혐오표현 게시물이 자주 올라오는 커뮤니티들이 있다. 이들 커뮤니티는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는 폐쇄형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앞서 설명한 일간베스트 등의 개방형 커뮤니티와는 구분된다. 이들 커뮤니티는 회원들의 집단적 동질성이 비교적 높으며 좀 더 조직적이다. 실제로 반이주자, 반외국인노동자 등을 표방하는 소위 ‘반다문화 커뮤니티’들이 200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커뮤니티들이 활동

262) Cass R. Sunstein,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박지우, 송호창 역, 개정판, 후마니타스, 2015; Cass R. Sunstein,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정인 역, 프리뷰, 2011.

263) <https://www.splcenter.org/hate-map>

264)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2016; 김호, “인터넷 혐오표현의 실태”,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 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13(2), 2014; 윤보라, “일베와 여성 혐오: ‘일베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진보평론』, 57, 2013년 가을호 등 참조.

을 시작했다. 이들 커뮤니티 역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지 여부, 커뮤니티의 활동 목적이나 양태로 볼 때, 혐오집단이라고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게시물들을 비교적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기반으로 활동하며 회원수가 100명이 넘는 커뮤니티 중 반다문화 커뮤니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다문화정책반대>(cafe.daum.net/dacultureNO, 회원수 10,398, 2008.06.24.),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cafe.daum.net/amc21, 회원수 291, 개설일: 2012.09.03.), <다문화정책>(cafe.daum.net/antimulticulture, 회원수: 665, 개설일: 2011.01.13.),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cafe.daum.net/antifworker, 회원수: 971, 개설일: 2003.10.07.), <외국인노동자대책 범국민연대>(cafe.daum.net/pncsfw, 회원수: 413, 개설일: 2008.05.10.),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추방 시민연대>(cafe.naver.com/gohomenow, 회원수: 181, 개설일: 2006.3.9.) 등이 있으며,²⁶⁵ 반동성애 커뮤니티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는 <hidden truth (동성애 진실)>(cafe.daum.net/Hiddentruth, 회원수: 2,437, 개설일: 2010.11.08.), <탈동성애인권포럼>(cafe.daum.net/antigay, 회원수: 139, 개설일: 2008.01.09.), <정상을 위한 투쟁>(cafe.daum.net/ehdtjddocldb, 회원수: 107, 개설일: 2006.03.03.), <Coming Out Again(탈반시티)>(cafe.daum.net/consult, 회원수: 1,297, 개설일: 2000.05.27.), <동성애의 실체>(cafe.naver.com/nomorehiv, 회원수: 1,351, 개설일: 2007.11.8.) 등이 있다.

(2) 온라인 뉴스와 SNS

온라인 혐오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 또 다른 장소는 온라인 뉴스 기사와 SNS다. 본 보고서의 설문조사에서도 온라인 뉴스 기사와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 SNS에서 혐오표현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림 10 참조). 이들 공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혐오표현이 목격되는데, 특히 어떤 사건이 발발했을 때 집중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범죄, 할랄식품단지 조성, 다문화정책 추진 등이 이슈화될 때 반이주자 혐오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²⁶⁶ 차별금지법/조례 제

265) 반다문화 커뮤니티 중에서는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2010년 전후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활동이 뜸한 상태이다.

정, 퀴어축제, 동성혼소송 등의 이슈가 있을 때 반동성애 혐오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장애인 혐오표현과 여성 혐오표현의 경우 뉴스/SNS의 특성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인 범죄나, 장애인 관련 시설물 건설 등이 있을 때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나타나며,²⁶⁷⁾ 군가산점, 젊은 여성의 사치스러운 행태 등이 있을 때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역시 앞서 설명한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게시물이나 정보가 온라인 뉴스 댓글이나 SNS로 복제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3) 공공영역과 오프라인으로의 확대

온라인 혐오표현은 온라인에 머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오프라인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온라인 혐오집단이 오프라인에서 증오범죄를 감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주무대로 하는 혐오집단이 공식적 영역에 진출한다거나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변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베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5.18왜곡/호남혐오 또는 성소수자 혐오담론이 일부 종합편성 채널이나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경우²⁶⁸⁾가 있었는데, 이는 비공식

266) “나는 다문화화를 반대한다. 이주여성이 와서 가족들 초대하며 서민들의 일자리를 뺏고 임금을 동결 혹은 다운시킨다. 이래서 나는 다문화 싫다. 또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매매혼 정보에서 서류만 봐도 알겠다.”(ea**, 2015. 3. 4); 한희정,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 2016, 63쪽 참조. “한국내 서열 순위가 불체자>한국인거 같습니다. 이게 다 KKK단 같은 인종청소주의자들이 없어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 (2010.12.30.) 중 ‘붙임 2: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 내용’ 참조.

267) ‘발달장애인은 모두 죽어야 한다.’ ‘그런 자식을 낳은 엄마부터 죽어라’ ‘발달장애인은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라’ ‘부모가 대신 형을 살아라’ (2014년 발달장애인이 두 살 아이를 던져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도에서의 댓글); ‘주민들은 이해한다.’ ‘절대 커리어월드 설립 못하게 해라’ ‘발달장애인들은 산 속에 처박아라’ (2015년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커리어월드 설립에 대한 주민 반대 사건 보도에서의 댓글); 박김영희, “그림자를 벗고 드러난 혐오표현”,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참조.

268) “심의위, 5·18 북한군 개입설 TV조선·채널A 중징계”, 『미디어스』, 2013.6.1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58>, 최종검색일: 201

적인 영역에 머물던 온라인 혐오표현이 공공영역에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혐오담론에 영향을 받아,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다거나 (예: 충북에 대한 황산테러), 오프라인에서 위협을 가하는 (예: 세월호 천막 앞에서의 폭식투쟁) 사례들도 목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개방형 커뮤니티에서의 담론이 오프라인에서 실천된 극히 일부 사례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6.11.21.); “TV조선, '성소수자 혐오'를 메인뉴스에”, 『미디어스』, 2016.5.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50>, 최종검색일: 2016.11.21.); “채널A·TV조선,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 조장 보도”, 『오마이뉴스』, 2016.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903, 최종검색일: 2016.11.21.). 그 외에 성소수자의 방송출연이 저지된 사례로는 이종걸, “성소수자 혐오 실태와 사회적 의미”,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61-62쪽 참조.

5장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

I. 혐오표현의 규제 필요성과 규제대안 개요

2장에서 4장까지의 연구·조사 결과는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먼저 2장에 따르면 혐오표현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으며, 인권적, 헌법적 요청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3장에 따르면 혐오표현 규제는 국제인권법적 요청이며, 주요 국가들의 관련 법제를 보았을 때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장의 조사결과 역시 혐오표현의 해악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혐오표현 규제는 이론적인 차원, 국제기준과 주요국가의 사례, 한국의 혐오표현 피해 실태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때의 ‘규제’(regulation)는 단순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²⁶⁹⁾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규제라고 한다면, 혐오표현 규제는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치를 뜻한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형사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혐오표현 발화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민사규제, 행정규제 등이 혐오표현 규제에 속한다. 이러한 규제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법’에 근거하여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반면, 이른바 ‘형성적(formative) 규제’의 방식도 있다.²⁷⁰⁾ 이것은 혐오표현이 터잡고 있는 토대를 바꾸는 것으로서, 긍정적(positive) 촉진적(facilitative), 적극적(affirmative), 사전예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의 규제에는 ‘국가·법적 조치’와 ‘자율적 조치’가 있다. 국가·법적 조치에는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또는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 방송심의 등이 포함된다.²⁷¹⁾ 이러한 조치들은 중앙정부

269) 규제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는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 2008, 1-28쪽 참조.

270) 이하는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05-306쪽 참조.

271)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Report on Hate Speech

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기구가 담당하게 되는데, 특히 국가인권기구/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율적 조치에는 스포츠·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사기업·대학에서의 자율규제, 인권·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47> 혐오표현의 규제방법

금지하는 규제		형사규제, 민사규제, 행정규제
형성적 규제	국가법적 규제	국가적 차원의 홍보·캠페인 또는 영화·영상물 제작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 소수자(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 공공(교육)기관에서의 반차별정책 시행, 차별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공무원인권교육과 시민인권교육, 방송심의
	자율적 규제	스포츠·온라인 영역에서의 자율규제, 사기업·대학에서의 자율규제, 인권·시민단체의 반차별운동

이러한 규제방법들 중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거나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 또는 병행적으로 적절한 규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금치·차별 위주의 규제방법은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금치·차별 법규를 두더라도 결국은 다양한 형성적 규제를 통해 혐오표현이 발붙이기 어려운 토대를 만들어 내야 혐오표현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아래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차례로 진단하고, 법으로 금지하는 규제와 형성적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가능성

1.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1) 형사규제

혐오표현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범죄의 하나로 접근한다면, 형사

and Incitement to Hatred, 7 Sep 2012, 1/67/357, 56-74단락; Article 19,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21-24쪽 참조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들 수 있다.

혐오표현은 종종 표적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모욕표현으로 나타난다. 현행 형법은 공공연한 모욕표현에 대해 모욕죄²⁷²⁾를 인정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멸과 멸시로,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의사표시²⁷³⁾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진술보다는 욕설이나 경멸적 용어를 사용한 혐오표현이 모욕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욕설을 사용하였다면, 혐오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모욕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2009년 11월 버스 안에서 인도인에 대해 ‘더러운 새끼야! 너 냄새나는 자식, 어디에서 왔나? Fuck you’ 라는 발언을 한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된 국내사례의 경우 인종적 혐오표현에 대한 모욕죄 적용사례라고 할 것이다.²⁷⁴⁾

반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공공연한 혐오표현의 일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명예 훼손 행위를 제1항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²⁷⁵⁾ 명예훼손죄의 행위태양은 모욕죄와는 달리 사실주장에 의한 표현행위에만 해당된다. 이 때 진실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의 대상이 되며, 허위의 사실인 경우는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 비해 형량이 가중된다. 반면,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불가하다.²⁷⁶⁾ 의견은

272)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3)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3, 201쪽.

274) “‘인종차별적 발언’ 법원서 첫 모욕죄 인정”, 『연합뉴스』, 2009.1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2996128>, 최종검색일: 2016.8.25) 나아가 당시 신고 받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조사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내려졌다(국가인권위원회 2010.5.31. 결정 09진인3104).

275)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어서 제308조에는 사자의 명예훼손죄, 제309조에는 제307조에 대해 형을 가중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다.

인식적이고 가치적인 요소를 가진 주관적인 개념으로, 개개의 옳고 그름의 여부가 자유로운 토론으로 조정과 합의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적 토론장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혐오표현은 표적집단에 대한 전형화된 편견에 기반하여 이를 이유로 표적집단을 추방, 박해, 교정시켜야 한다는 의견의 주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때 앞서의 사실적시가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법원에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든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모두 명예훼손죄의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혐오표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제44조의7)의 하나에 적용될 여지가 있다. 동조 제1항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명예훼손정보(제2호)와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정보(제3호)가 그것이다. 불법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시정요구를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3조). 단, 동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표현의 발화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동법 제74조)

(2) 민사규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는 일부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민사적 명예훼손은 민법 제764조와 제750조에 따라 적어도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형법과는 달리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

276) 다만,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만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8.3.24. 선고 97도2956; 대법원 2000.7.28. 선고 99다6203)

아서 형사규제에 비해 그 대상행위가 비교적 넓게 이해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명예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이 법원에 의해 구체화된다. 첫째, 제3자에게 명예훼손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 어떠한 주장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²⁷⁷⁾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통상의 독자 또는 청취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예훼손적인 주장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둘째, 명예훼손적인 주장이 진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²⁷⁸⁾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셋째,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성은 민법 제764조의 민사상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²⁷⁹⁾ 넷째, 원고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섯째,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이 민법 제750조에 기초한 경우 실질적인 손해를 증명해야하고, 민법 제751조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여야 한다.²⁸⁰⁾

이외에도 후술하는 성희롱의 경우에 해당하는 혐오표현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²⁸¹⁾

(3) 행정규제

혐오표현의 일부는 현행법상 성희롱 및 괴롭힘에 포함되는 표현행위의 일

277) 외적 명예를 의미하며, 객관적인 위법성 판단이 불가능한 명예감정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명예감정이 침해받은 경우에도 명예훼손과는 구별하여 별도의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하는 견해로는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 제문제”, 『사법논집』 24, 1993, 400쪽.

278) 그렇지만 이 요건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구시대의 유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명예훼손이나 독일의 명예훼손도 허위사실의 주장에 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진실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279) “불법행위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는 사실을 제3자에게 표명하기만 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지 않더라도 성립한다.”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261)

280) 현대호.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한양법학』 24, 2008, 35-36쪽.

281) 대법원 1998.2.10. 선고 95다39533.

부에 수반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상 혐오표현의 경우, 불법정보 혹은 유해정보로 인정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일정한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다.

성별을 비롯하여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경우 부분적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재 성희롱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으며, 이 중 일정한 규제 및 구제조치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인권위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2조, 제39조 제1항).²⁸²⁾²⁸³⁾

「인권위법」은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동법 제2조)’로 포섭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 등의 권고(동법 제44조)를 통해 규제하는데, 손해배상, 인사 조치, 특별인권교육,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며,²⁸⁴⁾ 「남녀고용평등법」의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한다. 이 법들에 따르면, 성희롱은 고용관계상의 성희롱을 의미하며,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의미한다.²⁸⁵⁾ 특히 언어적 행위로서 대표적으로 음란한 농

282) 또한 사용자나 근로자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2조, 제39조 제1항 및 제2항).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2항, 제37조 제2항).

283) 이 외에도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 제86조 제1항), 「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호), 「노인복지법」(제39조의9 제2호, 제55조의3 제1호)상 각각 장애인, 아동, 노인에 대한 성희롱은 형사규제의 대상이다. 형량은 각기 다르다. 장애인(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순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또한 일부의 성희롱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성희롱의 형사규제에 대해서는 이수창,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44, 2014 참조.

284) 정인섭 외,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2005, 149쪽.

답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²⁸⁶⁾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직장 내에 표적집단 구성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한 혐오표현에 성적 수치심을 동시에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성희롱으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현행법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²⁸⁷⁾가 유일하다. 이 법에서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동법 제3조 제20호).²⁸⁸⁾ 즉,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차별행위로 권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를 이유로 한 형식적 혐오표현은 본조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에 한정하기는 하였

285) 차선자,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언동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2015.

286)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87)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88) 다만 다음과 같은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괴롭힘 및 그와 함께 열거된 개념이 부정확하다. 둘째, 이러한 괴롭힘 등의 행위가 차별인지가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에서는 6개의 차별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괴롭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토지공법연구』 53, 2011, 520쪽.

으나 현행법상 유일하게 혐오표현이 제도화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의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규제되고 있다. 즉,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 진정이 없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동법 제39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혹은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44조). 그러나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은 확정되고 (동법 제44조),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동법 제50조).

(4) 인터넷상의 규제

혐오표현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게시글 차단이나 삭제로 통해 규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제3자에 의해 해당 표현을 삭제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먼저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로서 해당 표현이 담긴 게시글의 차단 혹은 삭제가 가능하다. 즉,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목적으로 게시된 명예훼손 표현은 이를 통해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하여 삭제, 반박내용 게재가 가능하며(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정보로 판단한 경우(동법 제44조의3) 30일 이내로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가 가능하다. 해당 명예훼손 표현으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 소를 제기 하기 위해 해당 표현을 한 이용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설치되어 있다 (동법 제44조의6). 한편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불법정보로써 금지되어 있다 (동법 제44조의7). 해당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준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정보를 규정하는 제8조 제3호 바목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2016년 7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²⁸⁹⁾

2.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의 혐오표현은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상 규제가 적용될 여지는 많지 않다. 상당수의 혐오표현이 개인이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규제, 민사규제, 행정규제는 모두 개인이나 특정된 집단에 대한 권리 침해만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에서 개인과 집단에 대한 법익 침해가 어떻게 다뤄지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명예로서 집단에 대한 법익침해를 상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언상 집단을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개인 혹은 특정가능

289) 제10조의2(차별 금지)

- ①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 소수의 개인들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구성원이 명백히 구별될 수 있을 정도의 집합명칭으로 특정되고, 그 집단 구성원 중 예외를 인정하는 일반적인 평균판단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지적하는 표현이어야 한다.²⁹⁰⁾ 따라서 학자, 경찰관, 서울시민과 같은 막연한 표시로는 집단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으며, 학교 교사 66명 중 37명이 소속하고 있는 ‘3.19동지회 소송 교사들’(여자상고 교사 명예훼손사건) 혹은 ‘○○검찰청 검사들’(대전지검 비리보도사건)²⁹¹⁾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죄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 개인에 대한 모욕죄만이 규정되어 있는 이상, 집단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을 통해 개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집단을 지칭함으로써 그 안의 구성원 개인에게까지 다다르기 위해 비방이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크기’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여성 아나운서 모욕사건)²⁹²⁾이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발언자의 사회적 지위와 발언의 상대방 등 그 발언의 경위 그리고 집단의 성격과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 집단 또는 구성원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심 등’²⁹³⁾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국 혐오표현의 경우도 위와 같은 수위의 특정가능성, 즉 개인에의 침투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적시되지 않는 이상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시 XX공장의 외국인노동자들’, ‘성소수자인권운동을 하는 ○○단체 이사들’과 같이 특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

290) 이재상, 『형법각론』, 186쪽.

291)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도5407;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다63558.

292)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5631. 2010년 현직 국회의원이 대학생 토론대회 후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기를 희망하는 여학생에 대해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성신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고 한 발언에 대하여 공중과 방송아나운서로 구성된 연합회 회원인 여성 아나운서 154명에 대한 모욕죄 적용이 다루어진 사건이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무죄로 파기환송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24. 선고 2010가합14668)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세한 김봉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23(4), 2011; 변종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4(3), 2012; 한상규,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법학논총』 27(2), 2014 등 참조.

29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11.10. 선고 2011노529 (위의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1도15631의 1심 사건).

다.

이상과 같이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이유로 현행법상 적용이 되기 힘든 경우는 민사규제 및 행정규제로써 성희롱 및 괴롭힘에 포함되는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상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청구도 개인의 법익침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이 다른 차별행위나 폭력행위의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념상의 구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별대상이 되는 행위에 혐오표현이 포섭됨으로써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의 규제 가능성에만 한정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성희롱과 괴롭힘의 적용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및 표현행위의 범위에 한계가 있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즉, 여성 등 개인을 특정하여 직장에서 이루어진 혐오표현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괴롭힘의 경우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만이 규제되고 있으므로, 장애를 이유로 하여 개인을 향해 이루어진 혐오표현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다. 즉, 성희롱과 괴롭힘은 그 규제대상과 영역에 있어서 혐오표현의 일부만이 부수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며,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규제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현행법상의 한계를 법 개정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라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제한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집단 모욕죄 및 집단 명예훼손죄를 법제화하는 것이 헌법상 정당한 규제인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에 대한 인격권 침해로써 합헌적으로 규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합의를 통한 입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합헌성 심사에서도 정당성을 획득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독일의 판례를 참고할 만하다. 독일은 모욕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집단 모욕죄로 인정하는 법리를 통하여 혐오표현의 일종인 홀로코스트 부인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였다. 199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3제국에서 유대인박해를 부정하는 ‘아우슈비츠의 거짓’ 발언이 유대인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되는가가 문제된 사건²⁹⁴⁾을 다루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을 ‘그들이 나치스의 지배하에 배척된 숙명에 근거하여 비방되어져 버리는 집단’이라고 보고, 아우슈비츠의 거짓발언을 유

294) BVerfGE 90, 241.

대인에 대해 모욕이라고 인정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에서 평가는 그 사람 자신의 특성(Eigenschaft)이나 태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의 특성이나 활동, 혹은 그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공적 기관이 받는 평가에도 의존하고 있’으며, ‘그러한 한 집단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집단의 구성원에 대해서도 모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실시하였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현행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과 혐오표현 규제법의 보호법익이 현행의 법원 및 통설의 입장에서 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형법학계의 통설에 따르면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로, 공공연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다.²⁹⁵⁾ 그러나 일반적으로 욕설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것은 오히려 수신자가 아니라 발화자이며, 수신자는 그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기보다는 모욕감이 발생하였다고 느끼게 된다.²⁹⁶⁾ 따라서 판례도 실제 사안의 적용에서는 모욕의 대상이 받는 감정 즉 명예감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²⁹⁷⁾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파악하는 소수설도 존재한다.²⁹⁸⁾

그렇다면 전형적인 표적집단 지칭 욕설(epithets)의 형태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러한 욕설은 표적집단이 가지는 속성과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경멸하는 단어들이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명예감정으로 본다면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을 해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규범적 개념, 즉, 개인에게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관계에서도 인정되는 인격의 중요한

295) 대법원 1987.5.12. 선고 87도73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라고 실시하고 있다. 학설로는 이재상, 『형법각론』, 184쪽;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196쪽.

296) 박경신·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10(2), 2011, 225-226쪽; 이정원,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 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경남법학』 13, 1998, 94쪽.

297) 박경신·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450-452쪽; 김봉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116쪽.

298)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 법문사, 2012, 138쪽; 이영란,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190쪽;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 2004, 741쪽.

가치 내지 이러한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존중대우의 요구²⁹⁹⁾로 이해하는 경우에도 명예의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명예를 사실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예를 들어 흑인을 ‘깜둥이’로 부른 것은 명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³⁰⁰⁾ 한편, 통설과 같이 외적 명예로 본다면 표적집단 지칭 욕설은 최소한 동시대에서는 이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모욕표현에 포섭되어 명예 침해로 이해될 수 있다.³⁰¹⁾

그런데 이와 같이 이들 욕설을 외적 명예로 보는 경우의 문제는 표적집단을 모욕하는 형태의 지칭어들이 모욕표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자칫 그 표현에 부착된 사회적 경멸을 승인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① 깜둥이, 창녀, 호모와 ② 악당, 사기꾼, 위선자의 두 그룹의 표현은 모두 사회적으로 비방과 멸시 등 적대적 용어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①이 멸시적으로 이해되는 이유는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이 주류문화로서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방증으로, 표적집단에 대한 낙인찍기의 결과로서의 ‘사회적 평가’이다. 이와 같이 ①의 표현으로 인해 해당 표현의 대상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사회에서 해당표현의 본질은 지칭된 표적집단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깜둥이’라는 지칭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기 이전에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상황, 즉 흑인이라는 표적집단에 역사적·구조적 차별상의 낙인찍기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바로 해악성과 가벌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것이 명확히 수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모욕죄가 적

299) 김일수 교수는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주관적 명예를 배제한 내적명예와 외적명예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며, 이정원 교수는 순수한 규범적 명예개념으로 보는 소수설을 주장하고 있다. “명예에 관한 죄가 다수설과 같이 외적 명예만을 보호법익으로 파악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외적 명예가 형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능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평가만을 명예라고 할 때 내용없는 외관상의 평판이나 근거없는 세평만을 형법이 보호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격적 가치를 의미하는 내적명예는 다수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침해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한 측면으로서 공공연한 사실폭로나 모욕행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187쪽;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197쪽.

300) 명예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정원,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87-89쪽 참조.

301)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44쪽; 209쪽.

용되어야만 혐오표현의 가별성을 인지한 모욕죄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³⁰²⁾ 여기에서 외적 명예 보호로서의 모욕죄 적용의 한계가 발생한다.³⁰³⁾

3.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에 대한 분석 평가

한국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논란이 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3년도부터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입법이 시도된 바 있다. 형법상 혐오죄 도입법안, 차별행위로 괴롭힘을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안, 공직선거에서의 특정지역(사람)을 비하 발언을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심의 대상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심의대상으로 삼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것이다.³⁰⁴⁾

302) 이는 나아가 표적집단의 사회적 차별과 비하가 만연된 사회에서 표적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지칭어의 경우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제공한다. 판례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동성애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성립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077). 대법원은 명예훼손 표현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되며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실시하면서, '현재 우리사회에서...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등을 이유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 '동성애자'라는 지칭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현실을 승인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다. 한편,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범죄를 구성하는 한국은 별론으로 하고, 영미권 국가 등에서는 전자의 표현이 각각 흑인, 성매매여성, 동성애자에게 향해진 것이라면 진실입증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도 쟁점이 된다.

303)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44쪽, 209쪽.

304) 이외에도 증오범죄법과 반인륜범죄, 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역사부정을 처벌하는 법안들도 혐오표현 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3.11.29.),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3.5.27.),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6.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6.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3.6.3.),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등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4.8.14.)(그 전에는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원희룡

<표 48>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 발의된 법률안

법률안	내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대 의원 대표발의, 2013.6.20.)	제311조의2(혐오) 인종 및 출생지역 등을 이유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별금지법안 (김재연 의원 대표발의, 2012.11.6.) ³⁰⁵⁾	제2조 2.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3조(괴롭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가 있다. ② 누구든지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5.6.9.)	제110조의2(지역 등 비하 언동 금지) 누구든지 정당(정당의 구성원을 포함한다)·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후보자의 가족 또는 선거사무관계자의 선거, 그 밖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지역 사람을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3.6.18.)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의원 대표발의, 2005.8.12.]이 발의된 바 있음) 등이 발의되었고, 20대 국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 2016.6.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6.1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6.7.20.), 증오범죄통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6.12.12.) 등이 발의된 바 있다.

305) 다른 차별금지법안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2013.2.12.); 최원식 의원 대표발의 차별금지법안(2013.2.20.) 참조.

먼저 형법을 개정하여 ‘혐오(표현)죄’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혐오표현금지법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법률안이라고 할만하다. 이러한 식의 법률이 제정된다면, 개인이나 특정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만 적용되었던 기존 법규제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러 차별금지사유 중 인종과 출생지역에 따른 혐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는지 의문이며,³⁰⁶⁾ 구성요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범치국가적 형법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의심된다.

차별금지법상 ‘괴롭힘’ 규정을 두어 성희롱과 장애인 괴롭힘에 한정되었던 것을 모든 차별금지사유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괴롭힘을 ‘차별행위’의 하나로 보고 차별시정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혐오표현 중 차별적 괴롭힘 유형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만을 다룰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역(사람) 비하·모욕을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것은 한국사회의 고유한 지역차별 혐오표현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송법을 개정하여 방송심의에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방송에서의 차별적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두 법률은 선거나 방송과 같은 제한된 세부 영역에서의 혐오표현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들은 법률안으로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기존 법규제가 개인이나 특정된 집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극복하려는 혐오표현규제법안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06)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19개에 이르는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혐오표현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며, 그 범위를 좁힐 필요는 있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평등법상 차별금지사유는 8가지지만,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3개 사유에 근거한 혐오표현만 형사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범위를 좁히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와 대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어떠한 표현행위를 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표출하고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임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바당야 한다. 특히 표현내용에 대한 국가 규제는 그에 상응하는 공익이 인정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표현내용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한 합헌성 심사가 요구된다. 표현이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제한된다면 이는 개인이 표출하고자 하는 사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가 이에 개입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어야 하는 공적 토론장과 사회구성원들의 의견형성의 과정을 통제함으로써 국가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표현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이미 상당수 존재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형사규제의 대상이 되는 표현범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형사규제,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종 정치적 표현에 대한 형사규제,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국가의 규제 등은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들이 이어져왔다.³⁰⁷⁾

UN인권위원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³⁰⁸⁾, 소수의 국가들만이 형사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욕을 범죄화하고 있는 것 역시 표현의 자유의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⁰⁹⁾ 특히 명예훼손죄는 출판물에 의한 경우 및 인터넷에 의한 경우에는 형량을 가중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어 규제되는 범위가 넓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유포죄도 공인에 대한 비방 표현을 광범위하게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특히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들의 소송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³¹⁰⁾

307)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 등 참조.

308) HRC,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12 September 2011, CCPR/C/GC/34. para. 47.

309) 박경신, 『표현 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논형, 2013, 35쪽.

인터넷상 표현들의 경우 역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이를 차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하는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제도 역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되는 경향이 있으며³¹¹⁾, 공직자와 정부정책 등의 비판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다양한 표현이 공적 토론장에 자유롭게 발화되고 토론되기 위해서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한 신중할 것이 요청된다. 특히, 이미 내용을 기반으로 표현행위에 대해 상당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현행법제 안에서 혐오표현까지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행법제가 각종 표현내용에 대해 강도 높고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삼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더라도, 한편으로 규제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다른 한편 법적 규제 이외의 방법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새로운 입법으로 혐오표현을 금지·처벌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혐오표현이라는 표현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혐오표현은 일시적으로 몇몇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 구성원 전체를 표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혐오표현 억제라는 과제를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혐오표현의 발화자의 표현행위만을 규제해서는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제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특히 형사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³¹²⁾ 혐오표현 억제라는 목표에 오히려 반하는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규제가 혐오표현이 허용될 수 없다는 국가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310) 이승선, “언론법제와 규제: 표현의 자유 논의의 흐름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2014, 489쪽.

311) 이승선, “언론법제와 규제”, 489쪽.

312) 제2장 IV. 혐오표현 규제 찬반론 참고.

상징기능이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의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³¹³⁾ 형사규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제한 및 표현 전반의 위축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법적 규제, 그리고 교육이나 정부 정책 및 홍보 등의 비법적 규제를 통한 국가의 개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법적 규제 이외의 방법으로 일정한 국가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방안이 요청된다. 구조적 차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혐오표현은 개인적 침해, 사회적 해악, 사회 통합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혐오표현 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혐오표현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화자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 구성원이 대항언론을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가 구제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기반인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대응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혐오표현이 마치 제로섬의 ‘충돌의 장’이라기보다는 상호증진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이 만나는 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혐오표현의 규제 논의는 평등권, 차별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면서 각각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법, 정책, 관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혐오표현의 제한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을 확인하고 대항하는 작업도 중요하게 되며, 혐오표현의 억제를 위해서는 단편적 대응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통합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것은 시민사회의 대응능력(capabilities) 강화와도 연결된다. 소수자 자력화와 대항표현의 ‘대항’이 가능하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혐오표현에 대하여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혐오의 ‘근원’을 제거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2. 형성적 규제

앞서 언급한 법적 규제의 한계 때문에, 형성적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형성적 규제는 한편으로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 차별금지와 평등의 가치가 실현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귀결된다.

313)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11쪽

(1)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환경의 조성

혐오표현의 발화가 효과적으로 저지되려면, 역설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실현하는 환경의 조성은 국제인권법상의 국가의무이자 혐오표현을 드러내고 대항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데에 꼭 필요한 조건이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인권법상 권리들이 국내법체계에 완전히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가는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목표를 추구하고, 그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민주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히 소수자나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에 대해 불균등한 영향력을 끼치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특히, 국가나 국가상징물을 비판·조롱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공중도덕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는 법, 집회나 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 기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표현을 방해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³¹⁴⁾

(2) 평등과 반차별 권리의 보장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와 법은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는 모든 법·정책을 폐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³¹⁵⁾ 차별금지법 이행을 위해서는 차별시정기구(한국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별시정기구는 국가의 평등과 차별금지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서, 평등·반차별정책을 제안하거나 수립하고(정책기능), 교육·홍보 등을 통해 평등문화를 조성하며 (교육·홍보기능), 차별사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기능(구제기능)을 수행한다.

314)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 참조.

315) Article 19, ‘Hate Speech’ Explained: A Toolkit, 45쪽.

(3) 공공기관의 적극적 조치

1) 공공기관의 적극적 대응

공공기관은 혐오표현 사건을 포함한 불관용과 차별을 인식하고 대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혐오표현 문제에 관하여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표적집단 소수자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피해를 적절히 구제할 책임이 있다.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기관 차원의 즉각적인 개입은 문제가 가해자가 추가적으로 합류하는 등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표적집단이나 제3자를 고무하고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행동강령 등을 통해 차별과 혐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에서 혐오표현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어떤 입장을 갖고 지원하거나 문제를 처리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인이나 정무직 공무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혐오표현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표적 집단이나 제3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혐오표현 정책은 평등·반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수립·시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2) 공무원 교육

혐오표현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혐오표현 문제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문제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인권교육, 반차별교육 등과 연동해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성희롱예방교육, 성평등예방교육, 인권교육 등과 적절히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좁은 의미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혐오표현이 문제될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공공 교육과 홍보 캠페인

혐오표현 관련 교육은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도 실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시민을 대상으로 대중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초·중등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인권교육, 반차별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통합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인권·반차별적 관행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넓은 의미의 교육에 포함될 것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벌여 혐오표현에 관한 의식 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혐오표현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부정확한 사실이나 오해에 근거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유럽평의회는 ‘No Hate Speech Movement’ 캠페인³¹⁶⁾이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들과 체결한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 등이 그 좋은 사례일 것이다.

(4) 시민사회의 자율역량 강화

혐오표현이 발화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힘으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혐오표현이 발화되었을 경우 대항표현(counter-speech)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혐오표현 대응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표적집단 소수자의 자율 역량이 강화되어(자력화, empowerment) 스스로 혐오표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3자가 적극적으로 함께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³¹⁷⁾ 이러한 실천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단체(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316) <https://www.nohatespeechmovement.org/>

317) 일본에서 제일한국인 혐오에 맞선 대항운동(카운터운동)에 대해서는 이일하, 『카운터스』, 21세기북스, 2016;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참조. 일본에서 인종혐오시위대의 혐오표현에 맞서 항의시위 등을 벌이는 대항운동을 ‘카운터운동’(Counter Movement)이라고 부른다.

6장 혐오표현에 대한 기관별 대응정책

I. 국가인권위원회

1. 인권정책

(1) 정책 권고

혐오표현이 표적집단을 비롯한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러한 차별을 공고화시킨다는 점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는 혐오표현의 억제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향상 및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철폐를 목표로 정부 단위의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시행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는 컨트롤 타워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과정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하여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인권위법 제19조)함으로써 국가기관의 인권정책을 개선하며 이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에도 유효하다. 따라서 혐오표현과 관련한 법령·정책 등에 대한 의견표명 및 시정 권고를 활발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은 혐오표현 방지 및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인권위법 제25조).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등 사적 단체 대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을 권고하여 혐오표현을 억제하고 방지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의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에 혐오표현을 포함시키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2) 기관별 자문 및 대책 지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적·사적 영역의 주체들에 대하여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자문을 행할 수 있다. 특히 혐오표현의 확산을 억제하고 표적집단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개선하는 데 유효한 언론매체와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과 자문이 중요한 과제이다.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등의 심의기준과 보도준칙에 혐오표현 관련 가이드라인 포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광고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광고심의규정이나 내규를 제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언론매체를 통한 혐오표현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현장 및 직장에서의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 학교 및 직장 내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개발을 지원하고, 각 영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학교와 직장은 사람들의 주요한 삶의 공간으로서 혐오표현 발생시 직접적인 차별로 직결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 및 직장 내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제 조치가 마련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혐오표현에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교육자료에 혐오표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인권위법 제26조),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책은 각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거나 혐오표현 관련 대응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연구 및 정책 대응

혐오표현에 대한 정책 권고 및 대책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혐오표현 및 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통계 수집·분석을 정례화하고, 각

기관별 혐오표현 관련 실태 및 문제가 되는 법·관행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한편, 혐오표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혐오표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혐오표현의 실태조사는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공인 및 단체를 포함한 혐오표현의 발화의 현황³¹⁸⁾, 대상 표적집단 구성원의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피해의 현황,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일반 인식과 파급효과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실태조사에 있어서 표적집단 구성원의 익명성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표적집단 구성원의 확정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인지하는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의 기획과 진행에 당사자 관련 인권단체나 당사자가 포함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³¹⁹⁾³²⁰⁾

이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혐오표현의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인 표적집단 자력화(empowerment)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대항언론을 통해 혐오표현이 억제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대항언론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중요하다. 대항언론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적집단이 일상적으로 대항언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스스로의 자력화와 주위의 지지기반이 필요하다. 표적집단이 일상에서 대항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 전반적인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적절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 표적집단이 공적 토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시민사회에서 모일 수 있는 물리적 공간, 관련 단체에 대한 물질적·금전적 지원을 통한 추상적 공간의 확보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³²¹⁾

318) 이는 혐오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Southern Poverty Law Center 등에서 혐오단체의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다. (<https://www.splcenter.org/hate-map>, 최종검색일: 2016.11.12.)

319) 영국에서 1991년부터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국세조사에 있어서 소수집단에 대한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독립기관으로 소수집단의 당사자들이 위원 혹은 직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평등과 인권위원회'의 협력과 감시하에 이루어졌다.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191-192쪽 참조.

320)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32쪽.

321)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32쪽.

2. 인권침해 구제

개별적인 혐오표현의 사례에 대해 표적집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한 구제도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인권위법」은 혐오표현을 차별행위의 유형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혐오표현에 노출된 개인에 대한 구제는 쉽지 않다. 다만, 동법은 차별행위의 범주에 성희롱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동법 제 2조 3.라.), 성희롱과 혐오표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성희롱이 혐오표현과도 중첩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성별에 기한 직장 내의 혐오표현에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따른 장애차별의 조사와 구제 조치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무이므로, 동법 제32조에 따른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에 혐오표현이 동반된다면 부수적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동조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통하여 규제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이 조항에 기한 진정이 권고로 이어진 예는 극히 소수³²²⁾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동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괴롭힘의 행위 범주나 지침을 구체화하는 한편, 여기에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일부도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는 혐오표현 피해 발생 시 시정권고 및 조정 등 비사법적 구제의 제공, 구체적인 개별사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 행위 중지, 교육이수, 원상회복, 재발방지 후속조치 등 문제의 층위에 맞는 다양한 조치를 활용함으로써 다각적인 해결방안

322) 국가인권위원회, 『2013 인권통계』(국가인권위원회, 2014)의 2013년도의 장애차별 진정 처리 결과는 괴롭힘 조항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괴롭힘 등(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학대, 금전착취, 모욕·비하, 기타로 구분)은 285건이었다. 괴롭힘의 세부영역 중에서는 모욕·비하는 226건을 차지하여 괴롭힘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장애인차별의 모든 세부 영역별로 진정건수를 따진다면 정보접근·의사소통(268건), 시설물 접근(231건)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현재 괴롭힘 등으로 포괄되는 모욕이나 비하를 차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226건의 진정건수 중에서 오직 5건만 인용되었으며, 나머지는 각하(221건)되거나 기각(9건)되었다는 점이다. 박건, “모욕과 무시경험의 차별유형화에 대한 연구: 입법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4(3), 2014, 107쪽.

이 유효할 것이나, 현행법상으로는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에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다만, 위에 언급한 성희롱 및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기관에 정책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는 등과 같이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리는 것도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유효한 대응방법이다.

3. 인권교육·홍보·협력

(1) 인식제고 교육 및 캠페인

시민들에 의한 대항언론을 확대하기 위해서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대중 캠페인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홍보 포스터, 리플렛, 영화 제작, 버스광고 등을 활용한 공익광고 활성화,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제작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익 홍보 포스터 아이디어 모집, 청소년 및 시민 대상 백일장 개최 등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혐오표현 및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인권영화 상영과 연계하여 토크쇼나 감독과의 대화(GV) 등과 같은 행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한편, 혐오표현 피해사례를 정리하고 통계화하여 사회적으로 가시화시키고, 각 기관별 혐오표현 대책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방법도 유효한 홍보 방법이다. 이는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구체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의 혐오표현 대응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기관들에 대해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킬 수 있으며, 범사회적 대응의 움직임을 재확인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교육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교육, 초·중·고등학교 교육 및 대학 교육,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혐오표현 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방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별로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제작될 필요가 있으며 혐오표현의 사례와 대응방안을 구체

적으로 담은 혐오표현 예방 교육 표준 교안을 제작·보급하여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시민교육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민 교육 커리큘럼과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제작·보급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시민·인권단체와의 협력

표적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민단체는 혐오표현의 해악성 및 실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주체 중 하나이다. 따라서 혐오표현 대응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적집단들의 인권 증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현실에서 직접 마주하고 있는 혐오표현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단체들의 관점과 경험 및 실효성 있는 대응을 참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호간 협력을 위한 통로가 개방되어 있어야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언론사, 기업 등과의 협력

언론매체 및 기업은 시민들의 실생활 영역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 대응 정책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언론사,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권보도준칙(기자협회/인권위)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을 수정·보완한다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 등 자율규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4)의 마련을 지원하는 것, 인터넷 서비스사업자와의 자율규제 대책 협약 수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최근 2016년 5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글로벌 IT기업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³²³⁾을 발표하였다.³²⁴⁾

323) 행동강령 전문: http://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files/hate-speech_code_of_conduct_en.pdf.

324)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동 강령은 불법적 혐오표현을 검토하고 이를 삭제·차단을 위한 조치를 각사의 가이드라인에 명시할 것, 신속하고 유효한 조치를 위해 전담팀을 설치하여 해당 표현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안에 삭제·차단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불법적 혐오표현에 관한 이용자들의 교육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대항언론을 활성화를 위한 활동, 각국 정부 및 보안담당자와의 협력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2015년 12월 독일은 테러와 인종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와 협의를 마치고 24시간 이내 해당 혐오표현을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³²⁵⁾

(5) 심의기관과의 협력

방송·통신 등 언론매체에서의 혐오표현 확산방지 및 구제조치를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기존 심의기관과 공동으로 혐오표현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각 기관이 심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및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심의기준에 대한 개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매체별로 유해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각 심의기준을 비롯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기준에 혐오표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II. 입법부

1. 관련 입법 추진

(1) 형법

형사규제의 도입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다른 규제방식에 비해 가장 신중하고 최후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31 May 2016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최종검색일: 2016.11.12.).

325) Evelyn Aswad, "The Role of U.S. Technology Companies as Enforcers of Europe's New Internet Hate Speech Ban",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Online* 1, 2016

혐오표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가장 좁은 범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장 강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합헌적 제한의 범위 내에서 형사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인격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평화 등 사회적 법익의 보호가 요청되는 혐오표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되, 비례성에 부합하는 처벌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³²⁶⁾

그런 점에서 그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떠한 기준으로 한정할 것인가는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혐오표현이 폭력이나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³²⁷⁾ 기점, 즉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표현들이 실제의 차별이나 폭력으로 이루어질 합리적인 개연성이 입증되는 경우로서 해당 혐오표현의 심각성의 정도, 반복성, 청중의 광범위성, 매체의 파급력, 표적이 되는 대상의 차별·적·폭력에 대한 취약성, 선동되는 청중의 행동가능성 등을 고려³²⁸⁾하여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맥락(폭력·차별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화자(지위와 영향력 등)³²⁹⁾, 의도(고의성, 확장성), 내용(대상, 자극성, 예술·학술적·종교적 맥락, 공격 담론에 기여, 허위·사실 등), 표현의 범위와 크기(청중, 전파 수단, 반복성, 전파 범위), 해악발생 가능성(차별·폭력·적대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인지 여부, 청자의 성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³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혐오표현 중 가장 극단에 있는 폭력 및 제노사이드 선동표현과 같이 표적집단에 대한 인격권 침해뿐만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침해가능성도 존재하는 경우, 또는 발화자에 따라 그 권위와 전파력으로 인하여 혐오표현의 해악성이 극대화되는 경우로 형사처벌의 대상범위를 한정할 수 있을 것이다.³³¹⁾ 본 보고서의 혐오표현의 4가지 유형 중 ‘증오선동’에 해당하는 것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증오선동은 그 실질적

326)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72쪽.

327)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12쪽

328)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69쪽.

329) 예를 들어 사회적 영향력, 권위, 파급력이 큰 공인의 혐오표현을 들 수 있다. 특히 국민의 공복으로서 헌법적 지위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공직자의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형사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203-205쪽 참조.

330)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13쪽.

331) 이승현,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224-225쪽;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2015, 162쪽.

해악이 좀 더 분명하고, 사상의 자유시장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위험을 창출하기 때문에 형사범죄화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혐오표현의 해악으로부터 사회적 원상회복을 도모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사회봉사명령을 제재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³³²⁾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오선동 행위로 범제화할 것인지, 혹은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의 일종으로 범제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형법 제318조 ‘제노사이드 고취(advocating genocide)’ 제319조 제1항 ‘적대감 선동(Public incitement of hatred)’, 제319조 제2항 ‘적대감 촉진(Wilful promotion of hatred)’이라는 선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도 있는 반면, 프랑스 형법은 혐오표현을 경범죄로서 ‘비공연한 인종주의적 혹은 차별적 명예훼손 및 모욕’의 표현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혐오표현을 집단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형사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담고 있는 사상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유효하다. 즉, 한편으로는 소수자를 향해 국가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들을 안심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시민사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정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상징적 기능’으로 작용한다.³³³⁾

한편, 이와는 별론으로 형법상 증오범죄 조항 신설도 고려해볼 수 있다.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동기로 행해지는 범죄행위로,³³⁴⁾ 일반적으로 폭행, 살인 등 형사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면서 범행동기가 피해자가 특정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표적집단은 혐오표현뿐만 아니라 증오범죄에도 노출되어 있다. 증오범죄는 이미 해당 행위가 폭행죄나 살인죄 등 형사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이나, 이것이 표적집단을 향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그 가벌성을 가중하여 양형을 높이는 형법상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증오범죄법은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332)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212쪽.

333)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11쪽.

334) Phyllis B. Gerstenfeld, *Hate Crimes: Causes, Controls, and Controversies*, Thousand Oaks, Sage, 2004, 9쪽.

취지도 있지만, 증오범죄를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생존자(victim/survivor)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격려하고, 신고 건수와 기소 건수에 대해 공식적인 집계를 내고 문제가 된 편견(bias)의 유형에 따라 다시 분류함으로써, 한 사회의 차별실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증오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두 번의 법안이 제출된 바 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3.11.29.)는 증오범죄(혐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증오범죄통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6.12.12.)은 증오범죄에 대한 연구·개발 및 통계조사를 통해 증오범죄를 ‘가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차별금지법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자 궁극적인 효과는 표적집단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이다. 따라서 헌법상 평등권을 구체화하여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표적집단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를 위해 필요하고도 유효한 입법이다.

이 때 혐오표현과 관련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방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의 이행 요청과 개인의 구제조치가 가능하다. 이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궁극적인 표적집단 차별철폐를 위해 요청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선결조건이자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차별금지법 상에 혐오표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혐오표현을 포함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혐오표현을 규정할 것인지와 각각에 대한 규제 정도 혹은 구제조치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형법상 규제 범위와 연동하여 법제화해야 한다.

예컨대, 본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혐오표현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차별금지법과 형법의 규제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먼저 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는 혐오표현 유형은 무엇보다 ‘차별적 괴롭힘’이다. 한국에도 이미 성희롱과 장애인 괴롭힘이 금지되는 차별행위로 다뤄지고 있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를 다른 차별적 괴롭힘으로 확대하면 된다. 앞서 소개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이러한 취지의 괴롭힘 조항이 담겨 있다 (2장 II. 4. (1)). 이외에도 차별금지법으로 ‘차별표시’를 금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캐

나다 인권법처럼 차별표시를 차별행위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차별표시의 사회적 해악을 간과할 수 없지만, 형사 구성요건이 되기에는 모호성이 많은데, 차별금지법으로 규율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그리고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이나 ‘증오선동’의 경우에는 차별금지법보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한편, 차별금지법상 대응조치들은 차별시정기구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별시정기구는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되며, 별도의 직권조사나 시정권고·명령 또는 조정을 통하여 문제되는 상황을 유연하고 비권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권고조치를 하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행위 중지, 교육이수, 원상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문제의 층위에 맞는 다양한 조치들을 활용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반차별정책의 실시를 권고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는 등 차별구제 외에도 다양한 형성적 조치들이 부가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이 효과가 없을 경우 비로소 소송 지원 등 좀 더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차별구제는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친화적인 제도이자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며, 이 때 ‘처벌’에만 문제가 집중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³³⁵⁾

(3) 국가인권위원회법

‘차별적 괴롭힘’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현행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규율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현행 인권위법은 차별행위에 성희롱(제2조의3)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서도 혐오표현을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혹은 현행 성희롱이 괴롭힘의 일종으로서의 성적 괴롭힘이라고 이해한다면, 동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즉,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 성적지향, 연령, 장애 등에 근거한 괴롭힘으로 해당 규정의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³³⁶⁾ 다만, 괴롭힘은 보통 업무나 고용에 관련하여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차별행위에 적용되거나 소수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혐오표현의 일부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³³⁷⁾ 즉, 괴

335)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17쪽.

336) 이준일, 『차별 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178쪽, 185쪽.

337)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320쪽.

롭힘 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은 혐오표현의 유형 중 중 '차별적 괴롭힘' 유형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차별표시'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인권위법 개정으로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차별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제기된 것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괴롭힘이나 차별표시를 규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기타 법률

표현내용에 따른 현행법상 규제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자율규제 및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제도가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이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들이 혐오표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동법 제9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내용으로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해성에 대한 판단 주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결정한다. 또한 매체물에 따라 영화, 비디오,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등의 영상매체물, 전자오락매체물, 음반매체물, 공연매체물, 통신인터넷매체물, 방송매체물, 인쇄매체물, 광고매체물 등으로 나누어서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이 심의한다. 통신인터넷매체물에 해당하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제44조의 7)로서 청소년에 한정하지 않는, 온라인 매체의 내용에 따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후술한다.

2. 정책 및 교육

입법의 주체가 되는 국회의원들이 혐오표현을 인지하고 사회적 제재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것은 입법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자발적인 국회의원모임에 차별과 혐오 철폐를 위한 연구모임을 가지는 등 국회의원들의 자율적인 인식제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지원의 장이 되는 국회 내 정책토론회나 세미나·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회 내의 관심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지원을 담당하는 국회의 입법조사관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성을 이해하고, 행정지원 및 대국민 업무에 있어서 공무원의 감수성을 증진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과 그 사상을 확대·선동하기 위한 혐오단체 혹은 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위한 국회의 회의실 등의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회 내 장소를 대관할 수 있는 국회의원 및 국회 공무원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아가 국회규칙을 비롯하여 국회규정, 국회내규 및 지침 등의 내부법규에 일정한 제한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 혐오표현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고 확인하여 효과적인 제재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정부·지방자치단체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국가의 인권정책종합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정부에 권고하면, 관계부처가 자체 소관부분을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법무부가 취합·총괄하여 발표한다. 2007년 이후 매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도부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확정·수행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규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법규범의 국내적 실현을 이행하고자 한다. 특히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에 우려를 표명³³⁸⁾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포괄적 인프라인 법·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에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의 혐오표현 대응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혐오표현 방지 및 표적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철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교육, 고용, 재화·용역 서비스, 군대 및 국가기관 등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담당 부처의 구체적인 대응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 쟁점 및 추진과제·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표적집단에 대한 차별 철폐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혐오표현 관련 정책 수립

혐오표현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청된다. 이러한 개입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이 시민사회에서 자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국가가 떠맡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혐오표현 관련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혐오표현 표적집단 자력화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 혐오표현 대책 및 실태조사 연구 및 가시화,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마련, 관계 부처 모두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부 및 지자체 공간 대관 업무 시, 혐오단체 또는 혐오표현 선동·고취 등을 위한 행사 대관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혐오표현의 발화자의 선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표적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검토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혐오단체의 공격으

338)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our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3 December 2015, CCPR/C/KOR/CO/4, paras. 13-15.

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표적집단을 정책 대상으로 인지하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3. 혐오표현 관련 교육

국가 정책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에 대한 정기 교육은 공무원 사회 내부는 물론, 공무원의 대민활동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교육은 직무 수행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혐오표현의 예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구제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방향적인 강의뿐만 아니라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부처는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을 제공·실시하여 혐오표현 및 표적집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특히 교육부는 초·중·고에 혐오표현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과정에서 표적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표적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학생들과 직접 접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직무 연수 교육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표적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혐오표현에 대한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 간의 혐오표현에 대해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교안 개발도 필요하다. 한편으로 표적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차별 및 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적절한 구제 방안 및 심리적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지면, 상담교사의 직무 연수도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조례 제정을 통한 혐오표현 예방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시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중 일부에서는 도시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인권조례, 인권위원회, 인권전담부서등을 두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방지 및 인

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다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인권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조례에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 규제, 시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혐오표현 규제 조치에 대한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사법부

1. 법률 해석·적용에 있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증진

법원은 법률을 해석하여 개별 사건에 적용함으로써 사법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법 해석에 있어서 기존 법률을 적용할 때 혐오표현이 고려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법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양형 기준의 상향을 통해서 기존의 표현내용 규제대상인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형태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 표현과 혐오표현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가액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인종에 기한 혐오표현이 문제가 되었던 교토의 조선제일초급학교사건³³⁹⁾에서 법원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고, 인종차별적 행위에 따른 무형의 손해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³⁴⁰⁾

339) 京都地方裁判所 平成25年10月7日 平成22(ワ)2655. ‘북한의 스파이양성기관, 조선 학교를 일본에서 내 쫓아라’, ‘전쟁 중 남자가 없을 때 여자 강간하고 학살해서 뺏은 게 이 땅’, ‘약속이라는 것은 인간끼리 하는 겁니다. 인간과 조선인으로는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등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340) 일본이 가입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체결국의 법원에 대해 인종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조치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법원에 대해 직접 그 의무를 지게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민법의 해석상 인종차별행위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규정한 민법 제70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해 구체적인 손해발생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민법 제709조에 따

또한, 타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사법기관 공무원 및 법관의 직무연수에서도 혐오표현 문제를 인지시키고 관련 교육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국제법규범의 적극적인 수용 추진

자유권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은 혐오표현 금지조항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관련 조항에 대해 유보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국제인권규범을 국내법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대해 법관 연수 등을 통해 법관들에게 충분히 숙지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V. 공공·교육기관

1.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교육부 및 교육청은 학생인권증진기본계획 등에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인 표적집단 구성원은 혐오표현에 더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표적집단 외의 학생들에 대한 혐오표현 확산을 막기 위하여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유엔의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은 초·중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정책의 주요 책임은 국가수준의 초·중등교육의 책임을 지는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명기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해야 하는 교육부에 인권교육을 전담할 조직과 관계 법령 조차 없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³⁴¹⁾

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실시하고, 이때 구체적인 손해에는 인종차별행위에 의한 무형손해를 포함하며, '효과적인 구제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배상액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고 판시하였다.

341) 정해숙 외,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269-270쪽.

2. 법·제도 및 정책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련 법제도 및 정책에서 혐오표현 금지 명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에 표적집단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교과과정에 혐오표현을 조장·선동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혐오표현 및 표적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는 교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사 양성 교육 및 직무 연수 교육과정에서 정기적으로 혐오표현 관련 교육 실시,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 내 혐오표현 피해 방지·대응에 관한 교육 실시, 학교 내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라는 권력 관계 안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에 대해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시해야 할 뿐 아니라, 학생 간 및 교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학교 공동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우수 교육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혐오표현 피해 학생의 신고 및 상담 접근성과 비밀보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표적집단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지원 및 구제 방안

학교 내에서 표적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담소 서리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전문상담원 고용 혹은 기존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 상담교사 교육 및 매뉴얼을 배부하고, 표적집단 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표적집단 관련 인권단체 혹은 청소년인권단체와 연계하여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또한 학교 내 자체 지원기구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혐오표현에

노출된 표적집단 청소년들의 신고·상담 접근성 및 비밀보장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청소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담당 교직원 훈련 강화 및 외부전문기관과 상담·지원체제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언론의 구축은 교육 환경 및 청소년 사이에서도 유효한 해결방안 중 하나이다. 특히 또래 지지기반이 효과적이고 중요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표적집단 청소년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혐오표현 예방에 대한 논의를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 자체 행사 및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하여 표적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혐오표현 예방을 도모할 수 있다.

VI. 사기업

1. 직장의 자율적 조치³⁴²⁾

대부분의 생활공간이 되는 직장에서도 혐오표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업은 직장 내 혐오표현 예방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정기적인 사내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통하여 사내 혐오표현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들이 아니라, 직장 내 차별금지정책과 소수자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이 형식화될 우려도 있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또는 직장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양성평등교육 및 연간 사내 교육 체계에 혐오표현 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추가하여 정기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사내 교육을 통해 혐오표현 예방 및 표적집단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내 환경뿐만 아니라 고객, 협력 업체 등 업무상 접하게 되는 외부의 사람들이나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

342) 직장 내 조치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와 일맥상통한다. 박선영 외, 『기업 등 조직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참조.

의 이미지 개선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기업의 임원이 숙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 혹은 회사 내 동아리 활동 등의 기업 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모임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한 관심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회사 내규에는 혐오표현 피해 발생에 대한 규제 방안 역시 명시되어야 한다. 사내에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사내 규제기구 설치 및 담당자 배치 등이 필요하며, 혐오표현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피해자에 대한 규제 및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다른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담당자의 표적집단에 대한 감수성이 요청된다. 이는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위해 외래강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이해도와 인식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혐오표현 피해자에 대해서는 규제조치를 요청하였을 때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직장 내 지원 정책

사기업에서는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의 피해를 드러내고 규제 요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집단 구성원이 안전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지원,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표적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상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홍보함으로써 혐오표현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내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에 대한 혐오표현 발생 시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져서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소수자 할당제·복지 등의 지원정책을 활성화함으로써, 표적집단 구성원들이 사회·기업 내에서 자력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VII. 정보통신 심의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제44조의 7)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한다. 이 때 일정한 요건은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도박 등 사행행위,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관련 정보의 총 9가지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다.³⁴³⁾

또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역시 유통 금지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의해서 차단 및 삭제 등 임시

34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조치가 가능하다.

이들 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 중 특정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나 게시판 관리자가 해당 표현을 삭제 혹은 차단하여 온라인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유통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표현은 혐오표현의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이며,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혐오표현을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정보상 혐오표현의 일부는 음란 표현과 사이버스토킹에 포섭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표현들의 극히 일부만이 혐오표현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현행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규제에 포섭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명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며,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3항). 혐오표현 혹은 표적집단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 증진과 차별 및 공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정보통신망의 이용자 권리 증진을 위해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대항 언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은 가능하며, 또 요청된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3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등에 따른 방송심의와 통신심을 행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현에 대해서는 ‘불건전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시정요구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특히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규정된 제8조 제3호 바목에 규정된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편견 표현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다.³⁴⁴⁾ 문언상 동 기준은 특정 속성에 기한 ‘차별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혐오표현은 차별대상이 되는 표적집단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바목의 개념은 이 보다 넓은 의미의 차별적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한 차별적 표현을 넘어서 극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표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해 ‘유인원, 유사인류, 해로운 새끼’라는 표현³⁴⁵⁾,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 대해 ‘인간쓰레기’³⁴⁶⁾, 같은 표현은 장애인이나 소수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적대적인 방식으로 드러낸 것이다.³⁴⁷⁾ 이는 특정집단에 대한 모욕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개인만 특정된다면 모욕죄의 구성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바목에 대한 실제 시정요구는 문언상 ‘차별적 표현’보다도 혐의의 의미로 이루어지며, 바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속성을 이유로 이루어진,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문언상 규정과 실무가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위 및 포괄적인 심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현행법에 대하여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³⁴⁸⁾

344) 이 외에도 제8조의 다음 항목도 적용될 수 있다.

2.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다음 각목의 정보
 -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 등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3.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 다. 특정 종교,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 왜곡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라.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인 소외계층을 비하하는 내용

34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통신심의 사례집』, 2016, 94쪽.

3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통신심의 사례집』, 94쪽.

34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사례 및 통계는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발간예정) 참조.

348)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45(1), 2016, 249-254쪽 참조.

3.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심의기준에 ‘언론은 개개인의 인종, 종교, 성별,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의 제10조의2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였다(2016년 7월 14일).

이를 보다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조정, 중재 처리 기준에 혐오표현 관련 규정을 포함시키고 시정권고심의기준에 혐오표현에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4. 자율규제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규정 제21조는 게시물 제한 규정의 내용에 ‘회원사는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여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이를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으로 보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각 사이트 별 ‘불법적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포탈의 유해게시물 신고제도에 혐오표현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라면 이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혐오표현이 포섭되도록 개정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조치 제도 자체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5.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여러 사법관할에 걸쳐 운영되는 사적 공간을 운영하는 비국가적 행위자인 인터넷 중개자의 대응이 요구된다. 2011년 국제사회는 기업 역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였

다.³⁴⁹⁾

현재 '커뮤니티 기준'이나 '지침'처럼 일종의 이용약관에서 혐오표현이나 유사한 표현들에 대한 금지 조항들이 있으나, 사실은 제한하고 있는 표현의 유형이 다양하다. 규범의 불투명성, 콘텐츠 신고와 제거 방법, 그리고 콘텐츠 제거 결정 시 중개자들의 투명성과 책임 결여되어 있기도 하며, 혹은 콘텐츠 제거나 중개자에 의한 제재와 관련한 절차적인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 조치의 부재함이 문제로 지적된다.

349) 기업인권 논의에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John Gerard Ruggie, 『기업과 인권』, 이상수 옮김, 필맥, 2014 참조.

7장 결론

I. 연구 내용 요약

이 연구의 목표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조사하고,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의미와 규제 필요성을 제시했다. 혐오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혐오표현의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 개념에 대한 국내외 논의를 총망라하여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혐오표현을 유형화하는 시도를 했는데, 혐오표현의 개념을 광의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광의의 개념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혐오표현의 해악이나 규제에 대한 논의를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의 유형을 ① 차별적 괴롭힘 ② 차별표시 ③ 공공연한 멸시·모욕·위협 ④ 증오선동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혐오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대립에 관한 논의와 규제찬반론을 검토함으로써,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2장에서는 혐오표현의 규제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것으로 중간결론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5장과 6장에서 검토했다.

3장은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들을 검토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혐오표현 규제 사례들이 검토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기준과 외국 사례를 광범위하고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유엔과 유럽의 여러 국제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제시한 여러 가지 기준도 함께 검토했으며, 각국별 사례는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영국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기준이나 입법뿐만 아니라 주요 결정례, 판결 등도 최대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대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4장은 혐오표현의 실태조사를 다뤘다. 한국에서 혐오표현 실태조사가 제대로 실시된 것은 이번 연구가 사실상 처음인 것으로 생각되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혐오표현의 실태는 설문조사, 면접조사, 온라인 분석의 세 파트로 나눠서 조사,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혐오표현의 전반적인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요 표적집단으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의 4개 집단을 설정하였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한 내용은 혐오표현 경험, 혐오표현 가해 경험,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태도 등이다.

설문조사에서 세밀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양상과 영향력 등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했다. 특히 표적집단의 당사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조사대상은 여성 2명, 이주민 3명, 성소수자 6명, 장애인 8명, 남성이성애자 1명 등 20명이었으며, 1:1 대면 심층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병행했다. 면접조사의 주요 내용은, 혐오표현의 유형과 발생환경, 혐오표현의 심리적 영향, 혐오표현의 사회적 영향, 혐오표현에 대한 대처,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이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온라인 고유의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 혐오표현의 확산에는 온라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은 지속성, 확산성, 다양한 플랫폼, 익명성, 초국가성, 그리고 사기업이 서비스공급을 주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 해악이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징으로는, 혐오 관련 집단/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집단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온라인 뉴스 기사와 온라인 뉴스 기사 댓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 SNS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식영역과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깊게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5장과 6장은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 먼저 5장에서는 4장의 혐오표현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전체적인 규제대안의 방향을 모색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와 법적 규제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현행법상의 규제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하지만 동시에 법적 규제만이 대안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즉, 현재 상황에서 법적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인식개선, 각 기관별 대책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할 때 혐오표현 규제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6장은 5장에서 제시한 혐오표현에 관한 규제론을 기관별로 나눠서 재서술했다. 혐오표현 규제에 협력해야 하는 모든 기관을 망라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입법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부, 공공·교육기관, 사기업, 정보통신 심의기관 및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 나눠서 각 기관별로 할 수 있는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기술했다.

II. 전망과 과제

마지막으로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전망과 과제를 본 연구의 결론과 관련하여 검토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심각한 해악을 규명하고,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규제'는 금지·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제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규제와 행정규제,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 혐오표현이 발붙이기 어렵게 만드는 형성적 규제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 규제방법들 중 어느 하나가 배타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여러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의 모든 관련 행위자들이 각자 노력하면서 적절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사회의 전방위적인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규제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다. 혐오표현 문제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혐오표현 개념이나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혐오표현 개념에 혼란이 있다 보니, 혐오표현을 단순히 욕설 정도로 생각하거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논의를 자유로운 표현을 가로막는 검열 기제로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 점에서 혐오표현이 '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며, '차별행위'로 일침을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혐오표현 규제가 '바른말 쓰기운동' 수준으로 격하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

협하는 남용으로 발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혐오 표현의 해악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해악의 수준이 심각하고,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수자의 입장이 아니라 혐오표현의 표적이 되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혐오표현이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 개념과 그 심각한 해악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다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혐오표현 규제가 어느 하나의 규제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형사법이나 차별금지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금지한다고 해도, 여러 관련 정책들이 적절히 지원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차별시정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일종의 컨트롤 타워로서 혐오표현규제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기도 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혐오표현 정책을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것은 물론,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며, 이러한 종합 대책에 따라, 각 기관에 적절한 대책 수립을 권고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혐오표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간바라 하지메, 『노 헤이트 스피치: 차별과 혐오를 향해 날리는 카운터펀치』, 홍상헌 옮김, 나뭇박스, 2016.
-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 김은영·구자혁·최윤영, 『차별과 연대』, 나경, 2014.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 모로오카 야스코,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조승미·이혜진 옮김, 오월의 봄, 2015.
- 박경신, 『표현·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논형, 2013.
- 박용상, 『표현의 자유』, 현암사, 2002.
- 야스다 고이치, 『거리로 나온 네티즌: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보수가 되었는가』, 김현욱 옮김, 후마니타스, 2013.
- 유기찬, 『형법학: 각론강의』, 법문사, 2012.
- 이영란,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 이일하, 『카운터스』, 21세기북스, 2016.
- 이재상,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3.
- 이정원, 『형법각론』, 신론사, 2012.
- 이준일, 『차별 없는 세상과 법』, 홍문사, 2012.
- Deigh, John, “욕설: 코엔 대 캘리포니아 소송”, Saul Levmore and Martha C. Nussbaum (역음), 『불편한 인터넷』, 김상현 옮김, 에이콘, 2012.
- Greenwald, Anthony G., and Mahzarin R. Banaji, 『마인드버그: 공정한 판단을 방해하는 내 안의 숨겨진 편향들』, 박인균 옮김, 추수밭, 2014.
- Hellman, Deborah, 『차별이란 무엇인가』, 김대근 옮김, 서해문집, 2016.
- Krieger, Nancy, “차별과 건강”, Lisa F. Berkman and Ichiro Kawachi (역음), 『사회 역학』, 신영전 외 옮김, 한울, 2010.
- Mill, John Stuart, 『자유론』, 서병훈 옮김, 책세상, 2005.
- Nussbaum, Martha C., “대상화와 인터넷상의 여성 혐오”, Saul Levmore and

- Martha C. Nussbaum (역음), 『불편한 인터넷』, 김상현 옮김, 에이콘, 2012.
- Nussbaum, Martha C.,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Ruggie, John Gerard, 『기업과 인권』, 이상수 옮김, 필맥, 2014.
- Sausse, Simone, 『시선의 폭력: 편견사회에서 장애인권 바로보기』, 김현아 옮김, 한울림, 2016.
- Smith, Adam, 『국부론』, 유인호 옮김, 2008.
- Sunstein, Cass. R. 『왜 사회에는 이견이 필요한가』, 박지우, 송호창 역, 개정판, 후마니타스, 2015.
- ,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이정인 역, 프리뷰, 2011.
- 김민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홈즈(Mr. Justice Oliver W. Holmes)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33, 2006.
- 김민정,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13(2), 2014.
- 김봉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립논리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23(4), 2011.
-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2), 2015.
- 김우성,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저스티스』 153, 2016.
- 김재윤, “5·18민주화운동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방안”, 『법학논총』 35(2), 2015.
- 김재홍, “정보사회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사회과학』 8(1), 1996.
- 김지혜, “차별선동의 규제: 혐오표현에 관한 국제법적·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법조』 64(9), 2015.
- 김호, “인터넷 혐오표현의 실태”,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 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 도중진, “명예에 관한 죄의 정비방안”, 『형사법연구』 22, 2004.
- 류지성,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 일본 오사카시의 규제 조례를 중심으로”, 『법제』 672, 2016.
-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교토지방법원의 ‘가두선전금지 등 청구사건’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9, 2014.
- 박김영희, “그림자를 벗고 드러난 혐오표현”,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 박건, “모욕과 무시경험의 차별유형화에 대한 연구: 입법화가능성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4(3), 2014.
- 박경신·김가연, “모욕죄의 보호법의 및 법원의 현행 적용방식에 대한 헌법적 평가”, 『언론과 법』 10(2), 2011.
- 박배근, “국제인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증오표현언론에 대한 규제”, 『언론과 정보』 9, 2003.
- 박용숙, “미국에서의 증오표현행위의 규제에 관한 판례경향”, 『강원법학』 41, 2014.
- 박혜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2015.
- 변종필, “집합명칭에 의한 모욕에서 피해자의 특정”, 『형사법연구』 24(3), 2012.
- 서윤정·박지선,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2013.
- 신옥주, “장애인의 인권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연구”, 『토지공법연구』 53, 2011.
- 심경수, “증오언론과 십자가 소각에 관한 판례경향: R. A. V. v. City of St. Paul 및 Virginia v. Black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18(1), 2007.
- 심재진, “영국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제”, 『노동법논총』 25, 2012.
- 안경환, “법치주의와 소수자 보호”, 『법과 사회』 12, 1995.
- , “소수자 보호를 위한 법리”, 『법과 사회』 2, 1990.
- 안상수·김인순·이정현·윤보라, 『남성의 삶에 관한 기초연구(II): 청년층 남성의 성평등 가치 갈등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 『미디어, 젠더 & 문화』 31(2), 2016.
- 이수창, “성희롱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44, 2014.
- 이승선, “언론법제와 규제: 표현의 자유 논의의 흐름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4), 2014.
-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헌법적 이해”, 『공법연구』 44(4), 2016.
- 이우영,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소수자 보호의 헌법적 의의와 구조”, 『서울대학교 법학』 48(3), 2007.
- 이재승, “기억과 법: 홀로코스트 부정”, 『법철학연구』 11(1), 2008.
- 이재진, “가상공간에서의 혐오언론의 문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6, 2000.

- , “혐오표현 현상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언론학보』 19, 1999.
- 이정원,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경남법학』 13, 1998.
- 이종걸, “성소수자 혐오 실태와 사회적 의미”,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3), 2015.
- 이준일, “#혐오표현을_법으로_처벌할_수_있을까?”, 박권일 외, 『#혐오_주의』, 알마, 2016.
- ,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72, 2014.
- , “차별,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학연구』 18(2), 2012.
- , “소수자와 평등원칙”, 『헌법학연구』 8(4), 2002.
- 이춘구,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전개의 법적 고찰: 연원과 현대적 발전을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10(1), 2014.
- 장미경, “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한국사회학』 39(6), 2005.
- 정혜실,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의 실태와 맥락”,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인권센터/혐오표현연구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2016.
- 조소영,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45(1), 2016.
- ,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방법론에 대한 헌법적 평가: 대학 내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학칙을 중심으로”, 『헌법판례연구』 6, 2004.
- , “Cyberspace에서의 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판례와 학술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 8(2), 2002.
- ,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의 헌법적 좌표”, 『공법연구』 30(4), 2002.
- 차선자,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성적언동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5(1), 2015.
- 한상규, “모욕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과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의 성부”, 『법학논총』 27(2), 2014.
-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 제문제”, 『사법논집』 24, 1993.

- 한희정,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 2016.
- 현대호, “개인의 감정적 평온에 관한 불법행위”, 『한양법학』 24, 2008.
- 홍성수,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사회』 50, 2015.
- ,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26, 2008.

해외문헌

- Craig-Henderson, Kellina M., “The Psychological Harms of Hate: Implications and Interventions”, in Paul Iganski, Barbara Perry (ed.), *Hate Crime: The Consequences of Hate Crime*, Praeger Publishers, 2009.
- Evelyn Aswad, “The Role of U.S. Technology Companies as Enforcers of Europe’s New Internet Hate Speech Ban”, *Columbia Human Rights Law Review Online* 1, 2016.
- Gagliardone, Iginio, Danit Gal, Thiago Alves, and Gabriela Martinez, *Countering Online Hate Speech*, UNESCO, 2015.
- Gerstenfeld, Phyllis B., *Hate Crimes: Causes, Controls, and Controversies*, Thousand Oaks, Sage, 2004.
- Heyman, Steven J. (ed.), *Hate Speech and the Constitution: Vol 1. The Development of the Hate Speech Debate*, Routledge, 1996.
- Levin, Brian, “A Long Arc if Justice”, in Barbara Perry (ed.), *Hate Crimes: Understanding and Defining Hate Crimes*, Praeger, 2009.
- Meiklejohn, Alexander, *Political Freedom: The Constitutional Powers of the People*,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Rosenfeld, Michael, “Hate Speech in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 Comparative analysis”, in Michael Herz and Peter Molar (ed.), *The Content and Context of Hate Speech: Rethinking Regulation and Respon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Siegert, Anja, *Minderheitenschutz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uncker und Humblot, 1999.
- Smolla, Rodney A. and Melville B. Nimmer, *Smolla and Nimmer on Freedom of Speech: A Treatise on the First Amendment*, Matthew Bender, 1994.
- Sternberg-Lieben, Detlev, in: Schönke/Schröder (Hrsg.),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29. Auflage, Verlag, C.H.Beck, 2014.
- Waldron, Jeremy, *The Harm in Hate Speech*,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Walker, Julian, *Canadian Anti-hate Laws and Freedom of Expression* (Background Paper), Library of Parliament, 2010 (Revised 2013).

Walker, Samuel, *Hate Speech: The History of an American Controversy*,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4.

金明秀, “ヘイトスピーチ問題の構成過程”, 『支援』 6, 2016.

Brownstein, Alan E., “Hate Speech and Harassment: The Constitutionality of Campus Codes that Prohibit Racial Insults”, *William & Mary Bill of Rights Journal* 3(1), 1994.

Rodney A. Smolla, “Academic Freedom, Hate Speech, and the Idea of a University”,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53(3), 1990.

국제기구 문서

「인종 및 출신민족과 관련된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0/43/EC).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지향 관련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0/78/EC).

「고용 및 직업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73/EC).

「재화 및 용역의 이용 및 공급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대우 원칙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4/113/EC).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Finland*, 10 March 2014, CEDAW/C/FIN/CO/7.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Seventh Periodic Report of Finland*, 28 February 2014, CEDAW/C/FIN/CO/7.

CERD, *Concluding Observations on Japan*, 29 August 2014, CERD/C/JPN/CO/7-9.

CESCR, *General Comment No. 20: Non-Discrimination*, 2 July 2009, E/C.12/GC/20.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30 October 1997.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Strasbourg, 28 January 2003.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C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 of Switzerland*, 26 February 2015, CRC/C/CHE/CO/2-4.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Third to Fifth Periodic Reports of Bulgaria*, 3 June 2016, CRC/C/BGR/CO/3-5.

CRPD,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New Zealand*, 31 October 2014, CRPD/C/NZL/CO/1.

———,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Initial Report of New Zealand*, 31 October 2014, CRPD/C/NZL/CO/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and IT Companies announce Code of Conduct on illegal online hate speech*, 31 May 2016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37_en.htm, 최종검색일: 2016.11.12.).

———, *Report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cil Framework Decision 2008/913/JHA on Combating Certain Form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7 January 2014.

HRC, *Concluding Observations on Poland*, 27 October 2010, CCPR/C/POL/CO/6.

———, *Concluding Observations on Poland*, 27 October 2010, CCPR/C/POL/CO/6.

———, *Concluding Observations on Republic of Korea*, 3 December 2015, CCPR/C/KOR/CO/4.

———, *Concluding Observations on Ukraine*, 26 July 2013, CCPR/C/UKR/CO/7.

———, *General Comment No. 18: Non-Discrimination*, 10 November 1989, HRI/GEN/1/Rev.9 (Vol. I).

———, *General Comment No. 24 Issues Relating to Reservations made upon ratification or accession to the Covenant or the Optional Protocols thereto, or in relation to declarations under article 41 of the Covenant*, 4 November 1994, CCPR/C/21/Rev.1/Add.6.

———,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12 September 2011, CCPR/C/GC/34.

International Mechanisms for Promoting Freedom of Expression, Joint Statement on Racism and the Media by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e OSCE Representative on Freedom of the Media and the OAS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London, 27 February 2001.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 Frank La Rue, *Report on Hate Speech and Incitement to Hatred*, 7 September 2012, 1/67/357.

자료집/보고서

- 『인터넷에서의 혐오표현(Hate Speech) 규제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발간예정).
-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 토론회>,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민주노총교육원, 2013.7.18.
- 국가인권위원회, 『2015 인권상담사례집』, 국가인권위원회, 2015.
- 김수아 외,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한국여성단체연합, 2014.
- 김지영·이재일,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 박선영 외, 『기업 등 조직에서의 성희롱 예방체계 강화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5 통신심의 사례집』, 2016.
- 서진환 외, 『정신장애인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2.
- 이나영 외,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5.
- 장서연 외,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4.
- 정인섭 외,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발간위원회, 2005.
- 정혜숙 외,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2015.
- ,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 2012.

- Anti-Defamation League, "Pyramid of Hate" (<http://www.adl.org/assets/pdf/education-outreach/Pyramid-of-Hate.pdf>, 최종검색일: 2016.11.21.).
- Article 19, 'Hate Speech' Explained: A Toolkit, 2015.
- ,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2013.
- ,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
- ,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2009.
-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Your Guide to Understanding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http://www.chrc-ccdp.gc.ca/eng/content/your-guide-understanding-canadian-human-rights-act-page1>, 최종검색일: 2016.11.12.).
- Council of Europe, "Seminar: Combating Sexist Hate Speech", 2016 (<http://blog.nohatespeec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16/02/Combat-Sexist-Hate-Speech-Seminar-report-online-version.pdf>).
- Rabat Plan of Action on the Prohibition of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5 October, 2012.

언론 기사

- "미 정부, '헤이트스피치 금지령'에 반대", 『ZDnet Korea』, 2002.11.1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0000616>, 최종검색일: 2016.11.12.)
- "박원순 서울시장 '동성애 지지할 수 없다'", 『한겨레』, 2014.12.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67517.html, 최종검색일: 2016.12.21.)
- "성소수자 혐오의 뿌리, 보수 기독교-정치권의 '더러운 커넥션'", 『참세상』, 2016.3.15.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615>, 최종검색일: 2016.11.16.)
- "스웨덴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표현' 논란", 『연합뉴스』, 2005.1.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898943>, 최종검색일: 2016.11.12.)
- "심의위, 5·18 북한군 개입설 TV조선 채널A 중징계", 『미디어스』, 2013.6.1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58>, 최종검색일: 2016.11.21.)
- "英, 외국인 혐오 언론, 정치권이 조장<UNHCR>", 『연합뉴스』, 2001.8.11. (ht

- 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0091750, 최종검색일: 2016.11.12.)
- “인권위 ‘인터넷상 ‘인종차별’ 표현 없애야”, 『연합뉴스』, 2011.5.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053274>, 최종검색일: 2016.11.12.)
- “‘인종차별적 발언’ 법원서 첫 모욕죄 인정”, 『연합뉴스』, 2009.11.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96128>, 최종검색일: 2016.8.25.)
- “日 대법원, 재특회 상고 기각, 배상확정...폭언 당한 여성 “승소””, 『교도통신』, 2016.11.1.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6/11/148337.html, 최종검색일: 2016.11.12.)
- “日, “헤이트 스피치”는 인종차별... 일본 재특회 배상 명령”, 『CBS노컷뉴스』, 2014.7.8. (<http://www.nocutnews.co.kr/news/4055316>, 최종검색일: 2016.11.12.)
- “일본 대법원, “헤이트 스피치” 재특회 상고 기각”, 『연합뉴스』, 2014.12.1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10/0200000000AKR20141210159900073.HTML?input=1195m>, 최종검색일: 2016.11.12.)
- “일본 법원, 혐한 단체에 4800여만원 배상 판결 ‘확정’”, 『경향신문』, 2016.11.1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021749001&code=970203, 최종검색일: 2016.11.12.)
- “일베가 세력화하기엔 통일된 이념이 없다, 그들은 배설을 할 뿐”, 『경향신문』, 2013.6.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062218235&code=940202, 최종검색일: 2016.11.12.)
- “일베 디씨에 메갈까지...온라인 '차별·비하·혐오' 넘쳐난다”, 『뉴스1』, 2016.9.6. (<http://news1.kr/articles/?2767641>, 최종검색일: 2016.11.12.)
- “프랑스 ‘동성애 차별’ 처벌 논란”, 『세계일보』, 2004.12.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0068587>, 최종검색일: 2016.11.12.)
- “채널A TV조선, 또다시 성소수자 혐오 조장 보도”, 『오마이뉴스』, 2016.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903, 최종검색일: 2016.11.21.)
-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이유”, 『오마이뉴스』, 2016.3.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3629, 최종검색일: 2016.11.16.)
- “SNS 혐오표현은 세계적 문제... 씻기 힘든 상처 입혀”, 『연합뉴스』, 2016.11.

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067900017.HTML>, 최종검색일: 2016.11.16.)
- “TV조선, '성소수자 혐오'를 메인뉴스에”, 『미디어스』, 2016.5.3.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50>, 최종검색일: 2016.11.21.)
- 박영선,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보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신문』, 2015.12.15.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97416&page=1>, 최종검색일: 2016.8.22.)
- 홍인택, “혐오표현, ‘일베층’은 아니고 ‘유족층’은 맞다”, 『서울대 저널』, 2015.6.17. (<http://www.snujn.com/news/13535>, 최종검색일: 2016.8.22.)
- Gates, Gary J.,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the Williams Institute*, April 2011 (<https://escholarship.org/uc/item/09h684x2>, 최종검색일: 2016.11.16.).
- Gates, Gary J. and Frank Newport, “Special Report: 3.4% of U.S. Adults Identify as LGBT”, 2012.10.18. (<http://www.gallup.com/poll/158066/special-report-adults-identify-lgbt.aspx>, 최종검색일: 2016.11.16.)
- Miller, Michael E., “Killing Jews is Worship’ posters will soon appear on NYC subways and buses”, *The Washington Post*, April 22, 2015.
- “Zaitokukai ordered to pay damages for defaming Korean resident of Japan”, *The Japan Times*, 2016.9.27. (http://www.japantimes.co.jp/news/2016/09/27/national/crime-legal/zaitokukai-ordered-pay-damages-defaming-korean-resident-japan/#.WGKZn_mLSUk, 최종검색일: 2016.11.21.)

부 록

부록 1. 혐오표현 관련 국제기준·입법례

(1) 국제기준

1) 세계인권선언³⁵⁰⁾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³⁵¹⁾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한다.

제20조 제2항: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중

350)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351)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이하 국제조약의 번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국제인권조약집』, 2000 참조.

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3)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³⁵²⁾

제2조 제2항: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³⁵³⁾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 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52)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

353)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5)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³⁵⁴⁾

제7조 (인도에 반한 죄)

1. 이 규정의 목적상 “인도에 반한 죄”라 함은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범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아. 이 항에 규정된 어떠한 행위나 재판소 관할범죄와 관련하여, 정치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제3항에 정의된 성별 또는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하여 어떠한 동일시될 수 있는 집단이나 집합체에 대한 박해

차. 인종차별범죄

2. 제1항의 목적상,

사. “박해”라 함은 집단 또는 집합체와의 동일성을 이유로 국제법에 반하는 기본권의 의도적이고 심각한 박탈을 말한다.

아. “인종차별범죄”라 함은 한 인종집단의 다른 인종집단에 대한 조직적 억압과 지배의 제도화된 체제의 맥락에서 그러한 체제를 유지시킬 의도로 범하여진,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들과 유사한 성격의 비인도적인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개인의 형사책임)

1.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2. 재판소의 관할범죄를 범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재판소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며 처벌을 받는다.

[중략]

마. 집단살해죄와 관련하여 집단살해죄를 범하도록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타인을 선동한 경우

[...]

354)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6) 유럽연합, '형사법에 의한,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의 특정 형태 및 표현 방지에 관한 기본 결정'³⁵⁵⁾

제1조: 각 회원국은 다음의 고의성 있는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또는 출신 국적 및 민족에 따라 규정된 집단 또는 그 일원에게 공개적으로 폭력과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

(b) 유인물, 이미지, 기타 자료의 공개적 보급 혹은 배포를 통한 위 (a)에서 언급한 행위의 구성

[하략]

7) 유럽평의회, '혐오표현에 관한 권고'³⁵⁶⁾

[...] 회원국의 정부에게 권고한다:

1. 이 권고에서 제시한 원칙을 토대로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2. 혐오표현 현상과 그러한 현상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및 기타 근본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속에서 위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유엔협약을 아직 서명, 비준하지 않거나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증오 선동에 대응하는 조치에 관한 유럽평의회 결의 (68) 30에 따라 협약을 서명, 비준하고 국내법 하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

4. 본 권고안 부록에서 설정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법률과 실제상황을 검토할 것

권고 R(97) 20의 부록

355)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Certain Forms and Expressions of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 2008/913/JHA of 28 November 2008.

356)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f Ministers, *Recommendation No. R (97) 20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Member States on "Hate Speech"*, 30 October 1997.

범위

여기에서 제시된 원칙들은 혐오표현, 특히 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혐오표현에 적용된다.

이러한 원칙들의 적용을 위해, “혐오표현”이라는 용어는 인종적 혐오,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 또는 공격적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소수자, 이민자, 이민자 출신의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적대를 포함한, 불관용에 근거한 여타 형태의 혐오를 퍼뜨리거나 선동하거나,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8) 유럽평의회, ‘컴퓨터를 통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적 행위의 처벌에 관한 사이버범죄 협약의 추가의정서’³⁵⁷⁾

제3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인종주의적, 외국인혐오적 자료의 유포

1. 각 당사국은 고의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자국의 국내법 상의 형사 범죄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인종주의적이고 외국인혐오적인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

[...]

제4조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를 동기로 하는 협박

1. 각 당사국은 고의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자국의 국내법 상의 형사 범죄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이러한 요소들을 구실로 식별가능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i) 그 집단에 속한 개인, 또는 ii) 집단에 대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국내법상 중대한 형사상 범죄행위를 행하겠다고 하는 협박

제5조 인종주의 및 외국인혐오를 동기로 하는 모욕

1. 각 당사국은 고의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

357) Council of Europe,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concerning the Criminalisation of acts of a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s* (ETS No. 189), Strasbourg, 28 January 2003.

를 자국의 국내법 상의 형사 범죄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이러한 요소들을 구실로 식별가능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i) 그 집단에 속한 개인, 또는 ii) 집단에 대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가하는 공개적인 모욕

[...]

제6조 제노사이드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의 부인, 중대한 축소, 승인 또는 정당화

1. 각 당사국은 고의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자국의 국내법 상의 형사 범죄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국제법에서 규정하고, 1945년 8월 8일 런던 협정에 의해 설립된 국제군사법정 또는 관련 국제문서에 의해 설립되고 당사국이 그 관할권을 인정한 기타 다른 국제재판소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에서 인정한 제노사이드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부인, 중대하게 축소, 승인하거나 정당화하는 자료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이용가능하게 하는 행위

[...]

제7조 방조

각 당사국은 고의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가 행해지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그러한 범죄를 방조한 행위를 자국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다스리는 데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한다

9)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든 원칙 (2009)³⁵⁸⁾

원칙 12: 증오선동

12.1. 모든 국가는 차별, 적대감, 폭력을 선동하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에 대한 모든 옹호(혐오표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국가적 법제도에서는 명시적으로 또는 권위있는 해석을 통해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358) Article 19,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2009. 번역은 국제인권소식 "통"의 번역본 참조 (<http://www.tongcenter.org/ccpr/cp11-2>, 최종검색일: 2016.11.12.)

하여야 한다.

i. '증오'와 '적대감'이라는 용어는 표적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혐오의 감정을 말한다.

ii. '옹호'라는 용어는, 표적집단을 향한 증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하려는 의도를 요건으로 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iii. '선동'이라는 용어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집단에 대한 발언으로,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 적대감,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압박한 위협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iv. 여러 공동체가 집단정체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고양하는 것은 증오발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12.2. 국가는 제노사이드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를 묵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지만, 원칙 12.1에 정의된 혐오표현에 해당될 때에만 그러한 발언을 금지해야 한다.

12.3. 국가는 특정 사상, 믿음이나 이데올로기, 종교나 종교적 기관에 대한 비판 혹은 논쟁에서, 그 표현이 원칙 12.1에 정의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비판이나 논쟁을 금지하지 않아야 한다.

12.4. 국가는 원칙 12.1에서 정의된 혐오표현의 결과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피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 등 효과적인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해야 한다.

12.5. 국가는 모든 혐오표현 규제들이 위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국내법체계를 검토해야 한다.

(2) 혐오표현 관련 각국 입법례

1) 미국

■ 1964년 민권법³⁵⁹⁾

359) Title VII, 42 U.S.C. § 2000e-2(a).

제7장 703(a)(1) 고용차별 위반: 인종, 피부색, 종교, 임신 여부를 포함한 성별, 출신국가, 연령(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정보에 기초해, 관리자, 동료, 기타 직장관계자가 욕설, 놀림, 위협, 조롱, 모욕, 불쾌한 농담 등 괴롭힘(harassment)으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적대적 업무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조건을 변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동 조항 위반으로 본다.

2) 독일

■ 일반평등대우법³⁶⁰⁾

제3조 ③ 괴롭힘(Belästigung)이라 함은 제1조에 열거된 사유와 관련하여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 등에 의해 존엄성을 침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④ 성적 괴롭힘(sexuelle Belästigung)이라 함은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와 성적 행위에 대한 요구, 성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신체접촉, 성적인 내용에 대한 언동 및 원하지 않는 음란 표현물의 적시·현출 등 취업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가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특히 위협, 적대시, 멸시, 품위손상 또는 모욕 등에 의해 존엄성을 침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1조에 열거된 사유로 특정인에 대한 차별을 지시한 경우도 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시는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특정인에게 제1조에 열거된 사유를 이유로 취업자를 차별하거나 차별할 수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한 때에 인정된다.

■ 형법³⁶¹⁾

제130조(국민선동)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그에 대한 폭력적, 자의적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
2. 일부 주민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360) 법무부, 『독일 일반평등대우법』, 2008.

361) 법무부, 『독일 형법』, 2008.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일부 주민,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 또는 민족성에 의하여 분류된 집단에 대한 증오심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폭력적·자의적 조치를 촉구하거나, 일부 주민 또는 위 집단을 모욕 또는 악의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문서(제11조 제3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 a) 반포행위
 - b) 공연히 전시, 게시, 상영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c)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양여하거나 기타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 d) 위 문서 또는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제작물을 a 내지 c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 취득, 인도, 보관, 공여, 광고, 선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의 표현물을 방송, 미디어 또는 전신을 통하여 반포한 자

③ 국가사회주의(나치) 지배 하에서 범하여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승인, 부인, 고무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3) 캐나다

■ 인권법³⁶²⁾

제14조 1항: a)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재화, 서비스, 시설, 숙소의 제공, b) 상업용 부지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제공, c) 고용 관련 사안에서,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제3조 1항)를 이유로 어떤 개인을 괴롭히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제12조(차별적 표지 등의 공표): (a)이 법 5조부터 11조 그리고 14조에서

362) 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1985.

금지하는 차별행위³⁶³⁾ 또는 그와 같은 차별행위를 할 의도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또는 (b)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별하도록 선동하거나 선동이 계산된 통지, 사인, 상징, 로고 및 기타 표현물을 공개 출판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야기하는 것은 차별행위이다.

■ 형법³⁶⁴⁾

제318조 1항 제노사이드를 옹호 또는 고무하는 모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연령,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식별가능한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그 집단의 구성원을 살해하거나 그 집단의 생존조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제노사이드라고 한다.

제3항 이 장의 위반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4항 이 장에서, 식별가능한 집단이란 피부색, 인종, 종교, 출신 국가 또는 민족, 연령, 성별, 성적지향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공개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집단을 말한다.

제319조 1항 공공장소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해 혐오를 선동하고, 그것이 평화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런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은 다음의 처벌을 받는다.

(a)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위법행위는 약식재판으로 다룰 수 있다.

2항 사적인 대화를 제외하고, 진술하는 방법으로, 식별가능한 집단에 대하여 혐오를 의도적으로 조장한 사람은

(a)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위법행위는 약식재판으로 다룰 수 있다.

363) 캐나다 인권법은 제5조-11조, 14조에 걸쳐,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혼인상태, 가족상태, 장애 및 사면 혹은 말소를 허가받은 전과를 이유로, 재화·서비스·시설·숙소의 이용, 고용기회 및 업무관계, 임금 등의 영역에서의 부당한 대우 및 괴롭힘 등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규정한다.

364) Criminal Code of Canada, 1985.

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a) 소통된 진술이 사실인 경우

(b) 선의로 종교적 주제 또는 종교문헌에서의 믿음에 근거한 의견을 주장으로 표현하거나 규명하려고 하는 경우

(c) 공적 관심사인 주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논의이거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d) 캐나다의 인식가능한 집단에 대해 혐오의 감정을 만들어 내거나 만드는 경향이 있는 문제를, 그것을 제거할 목적으로, 선의로 지적한 경우

■ 캐나다 사스캐츨완 주 인권법³⁶⁵⁾

제14조 1항(a): 종교, 신앙, 혼인상태, 가족상태,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피부색, 혈통, 국적, 출생지, 인종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인종, 공적부조의 수급 여부, 성별정체성(제2조 1항)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이 법률에 의해 보장된 권리의 향유를 박탈, 약화 또는 제약할 경향이 있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한, 공지, 표지, 상징, 기호, 기사, 진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자신이 소유, 통제, 배포, 혹은 판매하는 특정 부지 또는 건물, 신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기타의 방송수단, 각종 인쇄방법 및 출판, 또는 기타 다른 매체를 통해, 발간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한다.

제14조 1항(b): 제2조 1항의 차별금지 사유(종교, 신앙, 혼인상태, 가족상태, 성별, 성적지향, 장애, 연령, 피부색, 혈통, 국적, 출생지, 인종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인종, 공적부조의 수급 여부, 성별정체성)에 기초해 개인 또는 집단을 혐오에 노출시키거나 그러한 경향이 있는 공지, 표지, 상징, 기호, 기사, 진술, 또는 기타 표현물을 자신이 소유, 통제, 배포, 혹은 판매하는 특정 부지 또는 건물, 신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국, 기타 방송매체, 각종 인쇄방법 및 출판, 그 밖의 매체를 통해, 발간 또는 게시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금한다. 이러한 행위는 차별행위의 일환으로서, 인권위원장은 당사자 간 문제에 대한 합의를 조정하거나,(제29조 5항) 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위법행위 중지 및 위법행위로 인한 인간 존엄의 손상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 법원의 명령(제31조 제3-4항)을 구할 수 있다.

365) The Saskatchewan Human Rights Code, 1979.

4) 일본

■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헤이트스피치 억제법)³⁶⁶⁾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로부터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이루어져, 그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 큰 고통을 겪음과동시에 해당 지역사회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

애당초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사태를 그대로 간과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에 비추어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서받을 수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더 심화된 인권교육과 인권계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이해와 협력을 얻고,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가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하여, 그 해소를 위한 대책에 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 국가 등의 책무를 밝힘과 동시에 기본적 시책을 정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란 오로지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출신자 또는 그 자손이며 적법하게 거주하는 사람(이하, 본 조에서 ‘본국외 출신자’라 함)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또는 본국외 출신자를 현저하게 모욕하는 등 본국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366) 일본 법무성의 가변역문 참조. (<http://www.moj.go.jp/content/001199585.pdf>, 최종검색일: 2016.11.12.)

본국의 출신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말한다.

(기본이념)

제3조. 국민은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과 동시에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이 없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4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실시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 및 기타 조치를 강구할 책무가 있다.

2. 지방공공단체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상담체제의 정비)

제5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에 관한 상담에 적절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이에 관한 분쟁의 방지 또는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교육의 강화 등)

제6조. 국가는 본국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계발활동 등)

제7조. 국가는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 필요성에 대해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및 기타 계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

■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³⁶⁷⁾

(목적)

제1조 본 조례는 헤이트스피치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헤이트스피치에 대처하기 위해 본 시가 실시하는 조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시민 등의 인권을 옹호하고 헤이트스피치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본 조례에서 '헤이트스피치'는 다음에 기재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표현활동을 말한다.

(1) 다음 중 하나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에 대해서는 해당 목적이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가. 인종 혹은 민족에 관한 특정 속성을 지닌 개인 또는 해당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 (이하, '특정인 등'이라 함.)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행위

나. 특정인 등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다. 특정인 등에 대한 증오 또는 차별의식,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

(2) 표현내용 또는 표현활동 형태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

가. 특정인 등을 상당한 모멸 또는 비방증상하는 행위

나. 특정인 등(해당 특정인이 집단인 경우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 상당수)

367)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번역본 참조. <http://jpn-osaka.mofa.go.kr>의 관할 지역 개관. 관할지역 정세동향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

이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불특정 다수가 표현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행위

2. 본 조례에서 말하는 '표현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1) 여타 표현활동 내용을 기록한 인쇄물, 광디스크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정 사항을 확실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을 포함), 그 외 물건을 판매 혹은 배포, 상영하는 행위

(2) 인터넷 및 기타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른 표현활동 내용을 기록한 문서 사진, 영상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 또는 시청 가능한 상태로 두는 행위

(3) 기타 다른 표현활동 내용을 확산시키는 활동

3. 본 조례에서 '시민'이란 본 시의 구역 내 거주자 또는 본 시의 구역 내로 통근, 통학하는 자를 말함.

4. 본 조례에서 '시민 등'이란 시민 또는 인종, 민족과 관련하여 특정한 속성을 지닌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계발)

제3조 본 시는 헤이트스피치가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헤이트스피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계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조치 등의 기본원칙)

제4조 다음 조 및 제6조에서의 조치 및 공표는 시민 등의 인권옹호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구제제도 등에 따른 구제조치를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동 구제제도 등과 연계를 도모하여 실시해야 한다.

(확산방지 조치 및 인식 등의 공표)

제5조 시장은 다음에 거론하는 표현활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사안 내용에 입각하여 해당 표현활동과 관련된 표현내용의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와 함께 해당 표현활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는 내용 및 표현내용에 대한 개요, 확산방지를 위해 실시한 조치 및 해당 표현활동을 한 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공표하도록 한다.

단, 해당 표현활동을 실시한 자의 이름 또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를 공표함으로써 제1조의 목적에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표현활동을 실시한 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않았을 경우,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본 시의 구역 내에서의 표현활동

(2) 본 시의 구역 외에서의 표현활동 (본 시의 구역 내에서의 실시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표현활동을 포함함)에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가. 표현내용이 시민 등과 관련 사실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표현활동

나. ‘가’ 이외의 표현활동으로 본 시의 구역 내에서 실시되는 헤이트스피치 내용을 본 시의 구역 내에서 확산시키는 것

2. 전항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공표는 표현활동이 본인에 대한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특정인 등인 시민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함.

3. 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공표하고자 할 때 사전에 해당 공표와 관련된 헤이트스피치 실시자에게 공표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단, 해당공표와 관련된 헤이트스피치 실시자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공표내용이 다음 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7조 규정에 따른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심사회(이하 ‘심사회’라 함)의 의견을 듣는 대상으로 한 공표 내용과 동일하며 심사회에서 해당 공표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전항 본문에 대한 의견은 시장이 구두발언을 인정했을 때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5.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관련하여 해당 헤이트스피치 내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6. 제1항 규정에 따른 공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기타 시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심사회의 의견청취)

제6조 시장은 전조 제2항 신고가 있을 경우 또는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제시한 표현활동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단, 동조 제2항의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된 표현활동이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인정되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표현활동이 전조 제1항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2) 해당 표현활동 속에 헤이트스피치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2. 시장은 전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심사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경우 신속하게 그 내용을 심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회는 시장에게 해당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전 2항 규정에 기반하여 심사회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전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조치 및 공표를 하고자 할 때는 해당 조치 및 공표내용에 대해 사전에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단, 동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긴급을 요할 때, 그 외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심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다.

4. 시장은 전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심사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전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는 신속하게 그 내용을 심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회는 시장에게 해당 보고의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시장은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심사회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전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공표 시 해당 의견에 대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한다.

(심사회의 설치)

제7조 전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를 실시 또는 보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시장 부속기관으로 심사회를 설치한다.

2. 심사회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본 조례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시장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략]

5) 영국

■ 평등법³⁶⁸⁾

제26조 괴롭힘

- (1) A가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한다.
 - (a) 관련 보호되는 속성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원치 않는 행위에 개입되었으며, (b) B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B에 대해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굴욕적,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행위
- (2) 또한 A가 B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한다.
 - (a) “성적인 성격(sexual nature)”을 갖는 원치 않는 행위에 개입되었으며, (b) 제1항에서 언급된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경우
- (3) 또한 A가 B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괴롭힘이 성립한다.
 - (a) 성적 성격 또는 성전환이나 성별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위로서, 제1항에서 언급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며, (b)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굴복한 것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공공질서법³⁶⁹⁾

인종적 증오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공공질서법 제3부는 인종적 증오의 법률적 정의를 제시하고(제17조), 인종적 증오 고무를 선동하거나 고무할 개연성이 있는 행위를 양태별로 △언어나 행동, 자료의 게시 (제18조), △자료의 출판 또는 배포(제19조), △극의 공개적 상연(제20조), △음성 및 영상자료의 배포, 상영 및 재생(제21조), △방송 또는 케이블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제22조)으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인종적으로 강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의 소지(제23조), 수색 권한(제24조), 몰수 명령 권한(제25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적 증오 선동 또는 고무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 관련 형사절차와 처벌(제27조)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종교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사람에 대한 증오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제3A부는 2006년 인종 및 종교 관련 증오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Act 2006)에 따라 신설되었고, 이후 2008년 제정된 형사정의와 이민법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74조에 따라 성적지향 관련 증오선동죄가 추가되었다. 인종적 증오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증오

368) Equality Act, 2010.

369) Public Order Act, 1986. 이하는 Part 3 and Part 3A의 관련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각각을 제29조A와 제29조AB에서 정의하고, 종교적 증오 또는 성적지향 관련 증오 고무를 의도하는 행위 양태를 제29조B부터 F까지 열거하고 있다. 이어서 종교 또는 성적지향 관련 위협적인 자료의 소지(제29조G)와 압수수색권한(제29조H), 몰수명령권한(제29조I)을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해 종교 혹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증오선동의 해석에 대한 규정(제29조J, 제29조JA)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인종적 증오선동 조항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제29조L에서는 종교 및 성적지향 관련 증오선동에 대한 형사절차와 처벌에 대해 규정한다.

6) 덴마크

■ 형법³⁷⁰⁾

제226b조: “공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퍼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술하거나 다른 공표를 한 모든 사람은, 그것에 의해 사람들의 집단이 그들의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적 배경, 믿음 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위협받거나 조롱되거나 비하를 당한 경우,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구금형으로 처벌된다.”

7) 뉴질랜드

■ 인권법³⁷¹⁾

제61조 제1항: 다음과 같은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나 불법이다. (a)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문자 자료를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것 또는 라디오, TV,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방송하는 것, 또는 (b) Summary Offences Act 1981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장소에서 또는 그러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 또는 대중들이 초대받거나 접근 가능한 회합 자리에서,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 또는 (c)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의 말이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라디오, TV에서 방송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한 경우,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이거나, 욕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여, 뉴질랜드에서나 뉴질랜드에 올지 모르는 사

370) Danish Criminal Code, 2005.

371) Human Rights Act, 1993.

람들의 집단을 그 집단의 피부색, 인종, 출신 민족 및 국적을 근거로 하여 경멸하거나 그에 대한 적대를 자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8) 프랑스

■ 게이소법³⁷²⁾

1945년 런던헌장(London Chart of 1945, The Charter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 Annex to the Agreement for the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e major war criminals of the European Axis)에 정의되어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속하는 범죄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우호적 판단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자)를 정당화하는 자를 부추기는 출판 또는 공개적 의견 표명을 한 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 형법³⁷³⁾

제R. 624-3조(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성과 성적편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하는 비공연한 차별적 명예훼손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제R. 624-4조(비공연한 차별적 모욕)

① 공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출신을 이유로 또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민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의 소속 여부를 이유로 하여 사람 또는 사람의 집단을 모욕하는 자는 제4급 위경죄에 대한 벌금에 처한다.

② 성과 성적편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하여 행하는 비공연한 차별적 모욕행위도 동일한 형에 처한다.

372) 게이소(Jean-Claude Gayssot)가 제안한 법으로 일명 ‘게이소법’(Loi Gayssot, Gayssot Act)이라고 불리나, 법률의 정식명칭은 “Loi n° 90-615 du 13 juillet 1990 tendant à réprimer tout acte raciste, antisémite ou xénophobe” (모든 인종차별, 반유대인 또는 외국인혐오 행위 처벌에 관한 1990년 7월 13일자 법률)이다. 이하는 관련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373) 법무부, 『프랑스 형법』, 2008.

9) 오스트리아

■ 형법³⁷⁴⁾

제283조(적대행위선동): ① 공공질서를 위태롭게 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국내에 존재하는 교회나 종교단체나 또는 그 구성원, 인종, 국민, 민족 또는 국가로 특정되는 집단에 대한 적대행위를 선동하거나 고무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공연히 제1항에 기재된 집단에 반하여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방식으로 그 집단을 모욕하거나 경멸하도록 시도한 자도 전항의 벌과 같다.

374) 법무부, 『오스트리아 형법』, 2009.

부록 2. 설문조사 설문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표현 경험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만 15~59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표현 경험과 대응 지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답을 선택하거나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10~20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설문 도중에 표현 경험을 기억하면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설문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설문을 중단하면, 결과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문을 모두 완료해주시는 분들께는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2,000원)이 제공됩니다.

이 연구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나이, 성별, 국적, 학력 등입니다. 이름은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핸드폰번호는 상품권 제공 목적으로만 수집, 사용하며, 응답 결과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이므로, 연구진은 각 설문의 응답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조사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학술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설문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공될 수 있으나, 응답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사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담당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정혜 [이메일주소]

연구책임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홍성수 [이메일주소]

2016년 8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조사에 참여하겠습니다.

18세 이상입니까? 18세 미만 AQ1 18세 이상 SQ1

AQ1. 18세 미만의 응답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조사 참여에 동의합니다. SQ1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조사 참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을 종료합니다. 설문종료

SQ1.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 ① 한국 ☞SQ2 ②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 ☞1-1

※ 이 설문을 작성하면서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사전(<http://dic.naver.com>)을 찾아 주세요!
보기가 어려울 때, 보기 중에 '기타'가 있으면 '기타' 옆 빈 칸에 답을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1-1. 출신 국가는 어디입니까? (_____)

1-2.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 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②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

1-3.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⑥ 한국에서 태어났음

SQ2.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만 나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4세 이하 ② 15~18세 ③ 19~24세 ④ 25~29세
⑤ 30~34세 ⑥ 35~39세 ⑦ 40~44세 ⑧ 45~49세
⑨ 50~54세 ⑩ 55~59세 ⑪ 60세 이상

TQ1.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세종 ⑧ 울산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⑱ 해외

TQ2. 현재 장애가 있으십니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응답하여 주십시오.

- ① 있다 ☞2-1 ② 없다 ☞TQ3

2-1.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보기가 어렵다면, '⑯ 기타'를 선택하고, 빈 칸에 적어 주십시오.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지적장애 ⑦ 자폐성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심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뇌전증장애 ⑯ 기타 (_____)

TQ3. 성별은 무엇입니까?

[모든 응답자가 응답]

이하에서는 혐오표현 경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깔보거나) 위협하는 표현
 -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하는 표현
 - 그들을 차별하자고 하거나 그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자고 하는 표현
- 등을 말합니다.

혐오표현의 대상은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사회적 소수자란, 사회적,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말합니다. 숫자가 많더라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성적 소수자(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장애인,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 이주민 등), 소수 종교 신도 등의 집단을 비난하거나 차별하자고 한다면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국인을 오랫동안 차별하였던 어떤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비난하는 말이나 시위가 자주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식하고 바보같다”, “한국인은 사람이 아니다, 한국인을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야 한다” 같은 말은 그 나라에서 소수자인 한국인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Q1. 온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온라인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에 연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채팅, 게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이 포함됩니다.

- ① 있다 ☞1-1 ② 없다 ☞CQ2

까지 적어 주십시오.

--

1-5.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랬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의견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별 생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2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3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4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1-6.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대상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있다
1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2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3	동의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①	②
4	무시하였다	①	②
5	반대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①	②
6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였다	①	②
7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①	②
8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게 되었다	①	②

1-7. 온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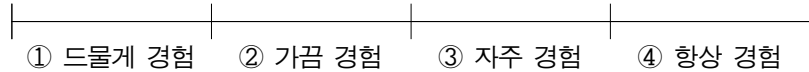
줄씩 읽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그랬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의견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곳에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글을 쓰기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3	자존감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4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5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CQ2.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2-1 ② 없다 CQ3

2-1.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2-2.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경험하였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의견	경험 없음	드물 게 경험	가끔 경험	자주 경험	항상 경험
1	가족이나 친구 등 친한 사람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2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3	시장, 마트, 가게 등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4	길거리, 교통수단, 공중화장실 등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①	②	③	④	⑤
5	교사, 강사, 교수 등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번호	의견	경험 없음	드물 게 경험	가끔 경험	자주 경험	항상 경험
6	직장 동료나 고용주 등 업무상 만난 사람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7	목사님 등 교회(개신교) 성직자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8	교회(개신교)가 아닌 종교의 성직자(신부님, 스님 등)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9	공무원에게서 (복지서비스 신청, 출입국 심사 등)	①	②	③	④	⑤
10	방송인,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한 사람에게서	①	②	③	④	⑤
11	TV, 라디오 등 방송에서	①	②	③	④	⑤
12	길거리의 연설이나 시위에서	①	②	③	④	⑤
13	포스터, 대자보, 현수막 등 공공장소에 있는 인쇄물에서	①	②	③	④	⑤
14	안내문, 리플릿 등 공공장소에서 나눠주는 인쇄물에서	①	②	③	④	⑤
15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영상물에서	①	②	③	④	⑤
16	기타 다른 상황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어 주세요.					

2-3. 혐오표현은 누구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해당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해당되는 응답이 없다면 '기타' 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적어 주십시오.

- ① 여성
- ② 성적 소수자(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 ③ 장애인
- ④ 병에 걸린 사람
- ⑤ 이주민(이주노동자, 다문화가족, 외국인유학생 등)
- ⑥ 흑인이나 동남아, 서남아 사람
- ⑦ 무슬림(이슬람교도)
- ⑧ 무슬림이 아닌 소수 종교 신도
- ⑨ 가난한 사람
- ⑩ 노숙인(집이 없는 사람)
- ⑪ 한국 내의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
- ⑫ 기타 ()

2-4. 오프라인에서 경험한 혐오표현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최대 3개까지 적어 주십시오.

--

2-5.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그랬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의견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별 생각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2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3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4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①	②	③	④

2-6.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와 같은 경험이 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대상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있다
1	재미있어서 또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2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①	②
3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①	②
4	무시하였다	①	②
5	반대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①	②
6	경찰,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였다	①	②
7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을 하거나 참여하게 되었다	①	②

2-7. 오프라인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그랬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의견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그런 표현을 한 사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2	그런 표현을 경험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①	②	③	④
3	자유롭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기 어려워졌다	①	②	③	④
4	자존감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5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①	②	③	④
6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CQ3.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비난, 멸시(깔보기), 위협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CQ4 ② 가끔 있다 ☞3-1 ③ 자주 있다 ☞3-1

3-1. 온라인에서 그와 같은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가장 동의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번호	의견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재미있어 보여서	①	②	③	④
2	다들 그렇게 하니까	①	②	③	④
3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①	②	③	④
4	내가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①	②	③	④
5	상대방이 먼저 내가 속한 집단을 비난하는 내용을 올려서	①	②	③	④
6	인터넷은 모든 표현이 허용되는 자유로운 곳으로	①	②	③	④

Q4.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비난, 멸시(깔보기), 위협하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글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가끔 있다 ③ 자주 있다

Q5. 다음은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온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렇다’ 와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5-1. [표현 A]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깔보거나) 위협하는 표현

번호	의견	그렇다	아니다
1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이 보기에 ‘그렇다’를 선택했다면, 2~5는 ‘아니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①	②
2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면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3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강퇴시키는 등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②
4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손해배상이나 사과 등 피해구제, 가해자 교육, 재발방지 등의 조치)	①	②
5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5-2. [표현 B]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하거나,
그들에게 차별이나 폭력을 가하자고 하는 표현

번호	의견	그렇다	아니다
1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이 보기에 ‘그렇다’를 선택했다면, 2~5는 ‘아니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①	②
2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하면 관리자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3	아이디를 정지하거나 강퇴시키는 등 사이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②
4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손해배상이나 사과 등 피해구제, 가해자 교육, 재발방지 등의 조치)	①	②
5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CQ6. 다음은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을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을 한 줄씩 읽고 ‘그렇다’ 와 ‘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6-1. [표현 C]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멸시하거나(깔보거나) 위협하는 표현

번호	의견	그렇다	아니다
1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이 보기에 ‘그렇다’를 선택했다면, 2~4는 ‘아니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①	②
2	직장(회사, 공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다면, 직장(회사, 공장) 내에서도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3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손해배상이나 사과 등 피해구제, 가해자 교육, 재발방지 등의 조치)	①	②
4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6-2. [표현 D]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에서,
그들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이 당연하다고 느껴지게 하거나,
그들에게 차별이나 폭력을 가하자고 하는 표현

번호	의견	그렇다	아니다
1	제한 없이 허용하여야 한다 (이 보기에 ‘그렇다’를 선택했다면, 2~4는 ‘아니다’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①	②
2	직장(회사, 공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였다면, 직장(회사, 공장) 내에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3	국가인권위원회 등 차별시정기구에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손해배상이나 사과 등 피해구제, 가해자 교육, 재발방지 등의 조치)	①	②
4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CQ7. 어떤 사람이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게 폭력을 행사하자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온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였을 때, 어느 경우가 더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가장 동의하는 의견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오프라인에서의 표현이 온라인에서의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 ② 온라인에서의 표현이 오프라인에서의 표현보다 더 심각하다
- ③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비슷하다

CQ8. 다음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중 일부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한국 여성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 ① 전혀 아니다 ☞8-2 ② 별로 아니다 ☞8-2
- ③ 어느 정도 그렇다 ☞8-1-1 ④ 매우 그렇다 ☞8-1-1

8-1-1. 여성들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여성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 ② 여성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 ③ 여성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 ④ 여성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 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8-2. “한국에서 동성애자(게이나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 ① 전혀 아니다 ☞8-3 ② 별로 아니다 ☞8-3
- ③ 어느 정도 그렇다 ☞8-2-1 ④ 매우 그렇다 ☞8-2-1

8-2-1. 성적 소수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성적 소수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 ② 성적 소수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 ③ 성적 소수자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 ④ 성적 소수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 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8-3. “한국에서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등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 ① 전혀 아니다 ☞8-4 ② 별로 아니다 ☞8-4
 ③ 어느 정도 그렇다 ☞8-3-1 ④ 매우 그렇다 ☞8-3-1

8-3-1.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정신적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② 정신적 장애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③ 정신적 장애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④ 정신적 장애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8-4. “한국에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 ① 전혀 아니다 ☞8-5 ② 별로 아니다 ☞8-5
 ③ 어느 정도 그렇다 ☞8-4-1 ④ 매우 그렇다 ☞8-4-1

8-4-1.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신체적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② 신체적 장애인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③ 신체적 장애인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④ 신체적 장애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8-5.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 ① 전혀 아니다 ☞8-6 ② 별로 아니다 ☞8-6
 ③ 어느 정도 그렇다 ☞8-5-1 ④ 매우 그렇다 ☞8-5-1

8-5-1. 이주노동자들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이주노동자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② 이주노동자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③ 이주노동자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④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8-6. “한국에서 다문화가족들은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 ① 전혀 아니다 ☞CQ9 ② 별로 아니다 ☞CQ9
- ③ 어느 정도 그렇다 ☞8-6-1 ④ 매우 그렇다 ☞8-6-1

8-6-1. 다문화가족들이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응답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다문화가족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 ② 다문화가족들이 특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 ③ 다문화가족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 ④ 다문화가족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 ⑤ 기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어떤 이유인가요?: _____)

CQ9.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활동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빈칸에 시간을 적어 주십시오.

※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 SNS, 메신저, 게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이용 시간을 모두 합쳐서 적어 주십시오.

※ 이주민은 **한국어로 된** 온라인 활동 시간을 적어 주세요.

- ① 평균 하루에 1번 이상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____)
- ② 평균 하루에 1번보다 적게 한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십니까? (____)

CQ10.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성적 소수자(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Q11.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Q12.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중에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인유학생 등)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CQ13. 현재 사는 곳 주변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 ① 그런 편이다 ② 아니다

CQ14. 현재 사는 곳 주변에 이주민들이(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외국인유학생 등) 많이 살고 있습니까?

- ① 그런 편이다 ② 아니다

부록 3. 면접조사 질문목록

조사내용	내용구분	질문내용
조사대상자가 경험한 혐오표현의 사례, 유형과 발생환경	사례, 발생환경	혐오표현은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접했나요.
	발생환경	어떤 형태(의견 광고, 현수막,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일어난 것)였나요.
	유형	가족, 친구, 친척, 이웃, 동료, 선후배와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접했나요. 아니면 얼굴을 모르는 낯선 이에게서 접했나요. 방송, 언론, 인터넷 등에서 접했나요.
	빈도와 목격 사례	얼마나 자주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나요. 또 주변에서 혐오표현 피해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나요.
	사례	혐오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이 가장 인상에 남았나요.
	유형	혐오표현이 놀림, 왕따, 괴롭힘과 같은 행위 또는 폭행 피해 등 혐오 범죄로 이어진 적이 있나요.
조사대상자에게 미친 혐오표현의 영향	정사신체인지 영역의 피해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느꼈습니까.
		그 느낌은 얼마나 지속되었거나 지속되고 있습니까.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 및 사회적 고립과 배제 탐색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미치고 있습니까.
		혐오표현 피해는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습니까.
		혐오표현 피해를 입고 그 전에는 가능했지만 피해 후 못하게 된 일이 있나요.
차별, 낙인과의 관련	왜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혐오표현에 대한 조사 대상자들의 대처	대처유무	혐오표현 피해에 대처해 본 적이 있나요.
	대처방식	혐오표현을 접하고서 어떻게 대처했나요.
	대처유형	가해자(발화자)에 대한 통제(중단 요구)가 가능했나요.
		혐오표현 가해자에 대한 반박, 의견 주장, 사과 요구 등이 가능했나요.
	주변의 대응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주변(목격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회적(정서적·정보적·평가적) 지지 기반	조사 대상자가 혐오표현에 대하여 대처하는 데에 있어서 정서적, 정보적 도움을 주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나요.
	시정유무	혐오표현 피해를 외부(주변 또는 공동체, 국가기관)에 알린 적이 있나요.
	구제유무	외부에 알렸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까.
	대처경험	피해에 대처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사내용	내용구분	질문내용
사회적 대응방안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	공적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혐오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규제 찬성 또는 반대 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대응방안 에 대한 의견	규제 이외에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차별금지법) 과 교육(차별금지 예방교육)이 필요한가요.
	피해자 지원방법 에 대한 의견	혐오표현 피해를 당하면 어떤 사회적 지원이나 구제가 가장 필요할 까요.
	대항표현경험 및 사회적 연결망 확 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과 대비되는 경험을 한 적 있나요 혐오표현과 대조적으로 소수자로서의 나를 지지해주는 표현, 의견을 접한 적 있나요.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2016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인쇄일 | 2016년 12월
| 발행일 | 2016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전 화 | 인권정책과 (02) 2125-9832
| F A X | (02) 2125-0918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ISBN : 978-89-6114-527-5 93330 비매품